

제37호 / 2009 · 3 · 1



교 양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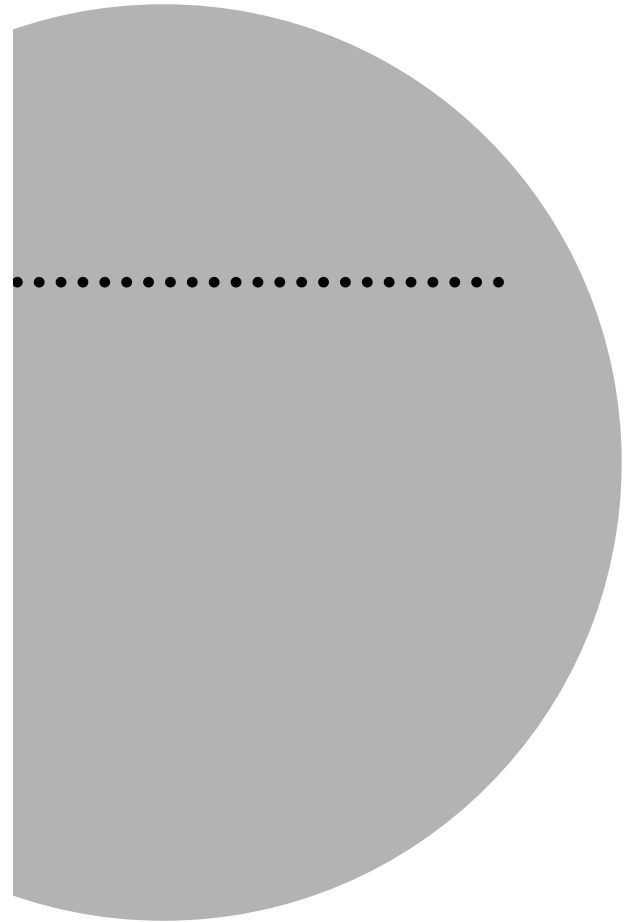
발행처 : 교양사회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82-10

편집 : 한국민족연구원
편집인 : 조정남(☎010-4716-3616)

발행일 : 2009년 3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바 03304 / 등록일자 2004.3.3

ISSN 1229-2796 / 값 15,000원

이 책은 〈百想財團〉의 지원으로 발간 되었음.



37 2009 Spring



특 집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

- 6 한국 재외동포정책 10년의 회고와 전망 - 김봉섭
- 72 캐나다의 재외동포 정책 - 유정석
- 84 러시아의 재외동포 정책 - 김인성
- 103 일본정부의 일계인(日係人) 정책 - 송석원
- 120 중국의 화교(華僑)정책에 대한 연구 - 조정원

논 단

- 158 한국사회의 귀환 입양인 운동과 그 시사점 - 이예원
- 178 충남여성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 김영주

해외투고

- 192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카자흐스탄·한국 관계
-사르셈바예브 엠. 아. / 사르셈바예브 카. 엠. (김병학 역)

Minjok Yeonku

Vol. 37

CONTENTS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Overseas Koreans;
Retrospect and Prospect in 10 Years --- 6

Bong-seop Kim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A report on Canadians abroad --- 72

KCSC¹⁾ / Jung-Seok, Yu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Overseas Russians --- 84

In-Seong Kim (Research Professor,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The Policy on Nikkeijin By Japanese Government
--- 103

Seok -Won Song (Professor, Dept.of Political Science, Kyung Hee Univ)

A Study on China's Policy on Overseas Chinese --- 120
- Comparing with Taiwan's Policy on Overseas Chinese

Jung Won Cho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Observing the History of Overseas Adoption in Macro and
Micro Level --- 158

Ye-won Lee (Migrant woman program manager in <Organization Yori>)

The life and working conditions of migrant women
workers and the policy direction: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case --- 178

Young-Joo Kim (Researcher, The Province of Changnam Woma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특집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

한국 재외동포정책 10년의 회고와 전망 - 김봉섭

캐나다의 재외동포 정책 - 유정석

러시아의 재외동포 정책 - 김인성

일본정부의 일제인 정책 - 송석원

중국의 대화교정책 - 조정원



한국 재외동포 정책 10년의 회고와 전망

— 연구사 전개를 중심으로

김 봉 섭 (재외동포재단)
kbs0117@hanmail.net



들어가는 말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의 도약 이면에는 재외동포의 모국애와 측면 지원이 있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고 한국경제 역시 활로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300만 재외국민과 400만 외국국적동포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필요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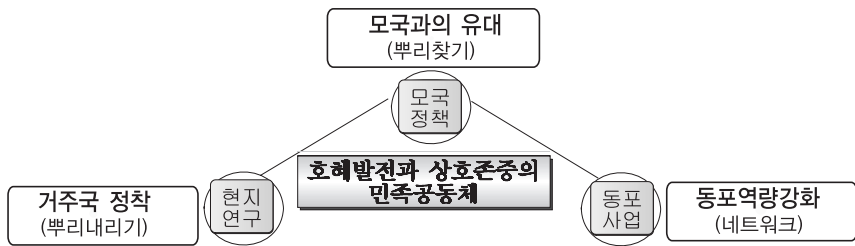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의 전략적 가치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재외동포 사회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급변하는 제반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가 불확실 할수록 과거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표 1>참조).¹⁾

1) SWOT(강점·약점·기회·위협)분석에서 중요한 요점은 어떻게 하면 환경변화의 강점은 살리면서도 약점은 줄일 것인가, 기회요인은 활용하면서도 위협요인은 억제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즉 “좋은 것은 더 좋게”(S-O분석), “불리한 것은 가능한 한 최소화”(W-T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재외동포사회의 환경변화

장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내외동포간 인적교류 활성화 지속 -재외동포인구의 증가 추세 확인 -재외한인단체 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수준의 차세대 인적자원 부상 -재외동포에 대한 대통령 및 관련부처 관심 증대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 개선 미비(소극성 유지) -거주국내 한인동포사회 구심점 부재 -재외동포사회 의견 수렴 미약 -재외동포사회 역량결집 및 공동추진과제 부족 -재외동포 관련법·제도의 미비
기회(Opportunities)	위기(Threats)
-세계한인의 날 제정 등 동포사기진작 발판 구축 -글로벌 동포인재 적극 활용 분위기 고조 -차세대 민족교육 지원 확대 예상 -모국 국정참여 기회 부여(재외국민 투표권 포함) -모국과의 호혜발전·상생협력 분야 확대	-소외지역 및 저발전 재외동포사회지원 시급 -재외동포 전담기구 개편논의 상존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외동포정책 우선순위 낮음 -미래국가전략과의 연계 부재

〈그림 1〉모국↔재외동포↔거주국 관계 개념도



학문세계도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연구주제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연구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듯이 재외동포연구도 하나의 독립학(獨立學) 또는 분과학(分科學)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그동안 산출된 연구업적들에 대한 연구사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²⁾

따라서 이 글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각 시기별로 진행된 연구사의 변천과정과 연구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재외동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함을 주목적으로 한다(<그림1>참조).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전개과정

문헌분석에 따르면 재외동포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다.

2) 이연직, 「해방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성과와 대중서 서술」, 『한일민족문제연구』제5호(한일민족문제학회, 2003.12), 165~169쪽; 장석홍, 「해방 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근현대사연구』25집(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장석홍, 「세미나주제3: 해외동포사?향일독립운동사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6.2.16);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국사편찬위원회, 2005); 김예경, 「중국조선족 연구의 한·중 비교: 연구기관, 연주자 및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동아연구』제50집(서강대 동아연구소, 2006.2) 참조.

한일회담 반대의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관심이 청구권자금과 평화선문제에 쏠려 있던 것에 대한 반작용적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³⁾ 결국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⁴⁾로 촉발된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중심축이 최근 들어 지역별로는 일본·중국·미국·러시아 및 CIS·기타 지역연구로, 주제별로는 역사·사회·경제·정치·문화·교육·정신건강/보건지리·인권/법적지위·해당국가 한인정책·한국/한반도문제와의 관계 및 관련 활동·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독립/민족운동·기타 연구 등으로 확대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⁵⁾

이 글에서는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사를 제1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1948~1965), 제2기: 한일기본조약 발효 이후~유신헌법 시절(1965~1980), 제3기: 헌법의 재외국민보호조항 신설 이후~재외동포재단 설립 이전(1981~1997), 제4기: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후~현재(1998~2009) 등 총 4시기로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제1기(1948.8~1965.6)

제1공화국 · 이승만 시절

정부수립 이전 교포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는 “본국으로의 귀환”이었다.⁶⁾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 반일(反日)과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내 건 자유당 정권은 재일동포를 경원시켰다. 당시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는 소문으로 접할 뿐이었고, 미국·중남미·유럽 등의 교포는 극소수⁷⁾였음에도 이들을 대하는 모국정부의 태도는 매우 냉정했다. 즉 이승만은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하와이동포들에게조차 현지화 할 것을 요구했고⁸⁾, 재일교포들에게 교육지원비를 송금(1957)하면서도 이

3) 제2회 중국지역 한인회장단 교류회 개막식(2007.1.27)에서 이구홍 당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강연내용 참조; 《동아일보》 1964.3.23(3면) “논단: 다시 한일회담을 말한다(2) 문인구/교포의 법적지위, 평화선·청구권문제보다 더 큰 비중, 자녀의 영주권 인정하라” 참조.

4) 김장권,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0), 2쪽 참조.

5) 이구홍·안영진, 「재외동포 관련 문헌자료목록」(2000); 200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재외동포사편람」(논저목록) 참조(약 7천여 편의 연구성과 수록).

6) 關野昭一, 「在日朝鮮人の北鮮歸還問題」(國立國會圖書館, 1960)/박정석, 「적지하의 망향 30년: 재사할린교포의 생활실태와 귀환교섭의 안팎」, 『신동아』43(1968.3)/大沼保昭著·이종원역, 「사할린에 버려진 사람들」(청계연구소, 1993)/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해방직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활동」(글모인, 1995)/金英達·高柳俊男編, 「北朝鮮歸國事業關係資料集」(新幹社, 1995)/國會圖書館編, 「新聞記事クリッピング:北朝鮮歸還(在日朝鮮人):日本國立國會圖書館新聞切抜資料:韓國關聯, 1956, 1959, 1963~1972, 1977, 1979」(2004)/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일본지역 한인귀환과 정책, 1~2」(역사공간, 2004)·「중국지역 한인귀환과 정책, 3~5」(역사공간, 2004)·「중국지역 한인귀환과 정책, 6~9」(역사공간, 2006)·「대만지역 한인귀환과 정책, 10」(역사공간, 2006).

7) 이구홍, 「국력결집을 위한 해외동포의 효과적인 제도방안」, 「정책논단」제1권 제1호(국가안보정책연구소, 1997), 88~89쪽 참조.

8) 공보처, 「이승만대통령박사담화집2」(1956), 196쪽 참조.

들을 “친일파 아니면
공산주의자”⁹⁾로 보아
재일교포의 귀국을 어
렵게 하거나 감시의
눈초리를 보냈다.¹⁰⁾ 재
일 조 선 거 류 민 단



정부수립 이전 교포와 관련된 주요 관심
사는 “본국으로의 귀환”이었으나 정부수
립 이후 반일(反日)과 반공(反共)을 국
시(國是)로 내 건 자유당 정권은 재일동
포를 경원시켰다.

(1946.10.3) 창단 이후 한신교육투쟁(1948.4.24), 남일 성명(1954.8), 조선총련 결성
(1955.5), 북한의 교육원조금 지원(1957), 북송(1959.12.14)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
처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의 ‘기민(棄民)정책’ 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주일대표부’ (1949.1.29) 설치, ‘해외교포분포상황’
(1954)¹¹⁾ 및 ‘재일교포의 실태’ (1961) 정리, ‘재일한인 법적지위문제’ (1958) 발간¹²⁾,
‘해외이민위원회’ (1959.5. 11)¹³⁾ 설치 등 여러 조치들을 취했으나 초보적이거나 단
편적인 대책마련에 불과했다.

한편 국회는 ‘주일한국동포실태조사에 관한 결의안’ (1952)¹⁴⁾, ‘재일교포국회읍
서버 설치’ (1953), ‘재일교포민족교육대책에 관한 건의문’ (1958), ‘재일한인북송
반대에 관한 결의안’ (1959)¹⁵⁾ 등의 채택을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했고¹⁶⁾, 주요 언론
들은 사실을 통해 “재일교포 선도책”과 “교포교육”의 시급함을 지적했다.¹⁷⁾

1952년에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를 다루었지만 제4차 회담(1958)까지¹⁸⁾ 양국의 상호불신은 극심했다.¹⁹⁾ 이
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표 3>의 연구성과들이 생산됐다.

9) 육군본부 군사감실 편,『육군연감』(1961), 236쪽 참조.

10) 부만근 편,『광복제주 30년』(문조사, 1976), 431쪽 참조.

11) 외무부는『재외국민현황』을 1964년, 1967년, 1968년, 1969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5년, 1978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에 펴냈음.『해외동포현황』은 1991년, 1992년, 1995년, 1997년에 펴냈고, 1999년부터는『재외동포현황』을 2년 주기로 발행하고 있다.

12) 내무부 통계국편,『대한민국통계연감 1954(제3회)』(내무부, 1955); 외무부,『재일한인법적지위문제(에 관한 설명서)』(외무부, 1958); 공보부 공보국,『자료』제1집(1961.5) 참조.

13) 한국 대통령(1963-1979: 박정희),『박정희 대통령 결재문서 239』(대통령비서실, 1966) 참조.

14) 제2대 국회 외무위원장 발의(1952.9.3, 원안 가결).

15) 공보실편,『재일교포북송음모의 이면상은 이렇다』,『정보』/유근주,「북한동포에 앞서 재일동포를 구출하자: 재일교포를 위한 몇 가지 논점」,『신태양』7.5/재일교포의 북송과 대일외교: 국내의 움직임,『사상계』7.12/신동준,「교포에게 뻔친 괴뢰의 마수」,『해군』82/김사목,「한일회담의 배후관계: 일본을 본거지로 한 국제공산당의 음모」,『신태양』78/김당산,「황량한 재일교포의 현실」,『사상계』7.1/송태현,「재일교포 북송협정서 전문 및 일본신문의 북송에 관한 논평」,『법조』8.10/김성천,「일본의 교포북송의 결정과 국민의 각오」,『지방행정』8.2/원용석,「인도문제를 일탈한 岸정부의 망동」,『신태양』78호/윤성순,「일본의 재일교포북송에 대한 음모와 해부」,『지방행정』8.2.

16) 국회,『국회사: 025회(임시회)』(국회사무처, 1957); 국회,『국회사: 032회(임시회)』(국회사무처, 1959) 참조.

17) <동아일보> 재일교포문제의 선후책(1949.4.27, 1면)/재일교포자녀들의 교육문제(1954.10.3, 1면)/좌시 못할 교포북송(1959.2.11, 1면); <조선일보> 재일교포와 그 선전문제, 적의 음모토벌에 전력하라(1952.8.20, 1면)/재일교포 사상선도에 노력하라(1952.9.22, 1면)/재일교포의 선도책 시급(1953.5.24, 1면)/재일교포 지도대책을 세우라(1956.9.8, 석간 1면)/이제라도 재일교포의 보호선도책을 강구하라(1959.4.28, 석간 1면).

18) 1차 회담(예비회담 1951.10.20~1952.2; 본회담 1952.2.15~4.21), 2차 회담(1953.4.15~7.23), 3차 회담(1953.10.6~1953.10.21), 4차 회담(예비회담 1957~1957.12.31; 본회담 1958.4.15~1960.4).

〈표 3〉1948~1960년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내용
1945	cf. 鄭哲, 『在日韓國人の民族運動』
1948	법무부, 『사할린교포의 현황과 법적지위』(법무부 법무실) cf.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결성
1949	재외국민등록법 제정공포(11.24)
1950	외무부 주일대표부편, 「재일본 한국동포의 법적지위」, 『외무월보』 제10호 cf. 朴熙哲, 『大韓民國居留民團論』
1951	외무부, 「제1·2·3차 한일회담 재일한인법적지위문제위원회 회의록」 cf. 노재연, 『재미한인사략 上』(L.A)
1952	이한기, 「이승만라인과 국제법: 공해자유의 법리」, 『자유세계』 1,4(홍문사)
1953	이한기, 「소위 재한재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신천지』 8,7(서울신문사) cf. 公安調査廳, 『在日朝鮮人概況』
1955	배제식, 「평화선에 관한 소고」, 『지방행정』 4,9 (55.9)/이건호, 「한국의 혼혈아는 어디로」, 『여성계』 4,8(55.8) cf.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결성(5.26)
1956	cf. 公安調査廳, 『在日朝鮮人總聯合會の現状』/日本赤十字社, 『在日朝鮮人の生活と實態』
1957	윤일상, 「재일교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국회보』 15 cf.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綜合調査研究」(新紀元社)/한국정부 재일교포 교육지원비 송금(22,000\$), 북한의 조총련교육자금 송금(615,580\$) 및 인재양성·조직강화 착수
1958	외무부, 「재일한인법적지위문제에 관한 설명서」/이환남, 『혈혼의 전선: 재일교포학도의용군 수기』(백조사)/한현상, 「온정에 굶주린 재일교포」, 『신태양』 64
1959 ¹⁹⁾	김원룡, 『재미한국인50년사』(박영사)/이한기, 「외교적 승리의 논리적 배후: 국제법상으로 따져본 재일교포복송문제」, 『사상계』 7,5/유진오, 「재일교포복송움모는 실패로 본다」, 『지 방행정』 8,5 cf. 宮田浩人編, 『65万人-在日朝鮮人』/權逸, 『祖國への念願』/在日韓國人經濟人聯合會, 『在 日僑胞商工業者總攬』1(생산업자편)/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在日僑胞實態概要』/재일교포 복송사업 시작

그러나 재일교포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이한기²⁰⁾, 해방 이전의 미주한인사회를 조명한 김원룡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공화국 · 장면 시절

4·19혁명(1960) 이후 총선(7.29)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 정부는 “빵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순위로 정했으나²¹⁾ 신·구파간의 갈등으로 총리 선출에 진통을 겪었고, 연일 터져 나오는 북한의 평화통일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허정(許政) 과도정부의 친일(親日)외교²²⁾를 계승한 장면(張勉) 총리는 북송저지 등 “외교정책 7대 방침”(1960.8.24)²³⁾을 발표했고, 국회 시정방침연설(1960.8.27)에서는

19) 한승조, 「한일회담과 박정희-긍정적 평가」, 『현대사연구』 제6호(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176~177쪽 참조.
20) 이한기, 「외교적 승리의 이론적 배후: 국제법상으로 따져본 재일교포복송문제」, 『사상계』 7,5(1959.5)/「한일회담의 문제점」, 『정경연구』 1,3(정경연구소, 1965.3.4) 참조.
21) 민의원사무처, 『제37회 국회 민의원 속기록』 제12호, 3쪽 참조.
22) 허정 수반은 1960년 4월 27일 “한일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란다”고 발표, 일본의 藤山외상이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고, 일본기자의 한국입국허가와 일본어부의 일본송환을 실행했다.

10 ·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

“한일회담 재개, 재일교포 경제적 지원 및 교육지도 적극화, 교포자본 국내반입” 등을 약속했다.²⁴⁾

또한 국회 민의원 대정부질의(1960.9.19~21)에서 제기된 “한국의 대일예속 우려, 재일교포 복귀침투분쇄 계획, 재일교포실태조사단 파견” 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연구중이라고 답변했고²⁵⁾, 참의원 대정부질의(1960. 9.20~22)에서 제기된 “한일국교정상화의 필요성, 재일교포재산보호방안, 재일교포 지도계몽용 일간신문 발행 용의” 등에 대해서도 “국교정상화의 경제적 실리, 재일교포 재산의 한일회담 개최후 적극 반입 추진, 5백만 달러의 융자기금과 5억환의 지도·보호비 책정” 등을 공언했다.²⁶⁾

그러나 평화선문제와 청구권문제에 막혀 제5차 한일회담(1960.10)²⁷⁾은 뚜렷한 성과 없이 중단됐고, 일본과 북한적십자사간의 북송협정연장(1960.10.28)도 저지하지 못했다.²⁸⁾ 또 ‘재일교포교육실태시찰 귀국보고’ (1961.2.22)²⁹⁾를 한 설창수(민주당)로부터 “책임 있는” 정부의 노력부재를 질타 당하기도 했다. 민의원이 제시한 한일국교 지침(1961.2.3 결의문)³⁰⁾ 역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표 4>의 연구성과가 산출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일교포실태와 교육문제가 주로 다뤄졌으며, 김석후의 “화교교육정책” 소개³¹⁾는 눈여겨볼만하다.

〈표4〉1960~1961년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내용
1960	외무부, 『각국 이민법』/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he immigration and nationalization act of the United States.</i> /민경천, 「그 실태 및 교포교육의 강화책: 재일교포교육 시찰을 마치고」, 『문교월보』 54/편집실, 「해외유학생과 재외교포문제」, 『문교월보』 55/박권숙, 「국제법상으로 본 재일교포복송문제」, 『법정』 15/권일, 「재일교포의 실태와 그 대책」, 『새벽』 7/김석후, 「자유중국의 화교정책: 재일한교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민족문화』 5, 4/한국생산성본부편, 「판매교순으로 본 재일교포 생산기업체의 실태」, 『기업경영』 3 cf. 李瑜煥, 『在日韓國人の五十年史』(新樹物産)/關野昭一, 『在日朝鮮人の北鮮歸還問題』(國立國會圖書館)
1961	전준, 「본국정부에 건의한다」, 『사상계』 9, 1/김규환, 「재일교포는 이방인인가」, 『사상계』 9, 1 /문교부편, 「해외교포 교육강화책을 논함」, 『문교공보』 59

23) 외무부편, 『대한민국외교연표 1948~1961』(1962), 535~536쪽 참조.
24) 『국회보』30(1960.10), 5쪽; 장면,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장면박사 회고록』(가톨릭출판사, 1967), 180쪽 참조.
25) 국회사무처, 『국회사: 제5대 국회 제37회 국회(정기회)』(1960), 131~134쪽 참조.
26) 국회사무처, 앞의 책(1960), 149~151쪽 참조.
27) 5차 회담(1960.10.25~1961.5.15).
28) <동아일보> 1960.9.26(석간 1면. 재일교포대책에 적극성을 보이라).
29) 참의원 사무처, 『제38회 국회 참의원회의록』제17호(1961.2.22), 7쪽 참조. 윤택중(문교정무차관 겸 민의원), 민관식(민의원), 유청(민의원), 설창수(참의원), 이영훈(문교부 설의교육과) 등 5명이 1961.2.6~20까지 현지시찰.
30) 『제38회 국회 민의원 회의록』제18호(민의원사무처), 「한일관계에 관한 민의원의 결의문」.
31) 1. 서언/2. 자유중국과 중화민국이라는 이명 동일국호/3. 한중양국과 중한양국은 형제지국 - 현 중화민국(자유중국)의 형세, 토지개혁과 화교, 화교들에 대한 문교정책, 기타의 화교에 대한 사업, 끝으로 하고 싶은 말.

군사정부 · 제3공화국 초기 시절

5 · 16군사정부 시절 대일외교 정상화에 방해되는 “재일교포 북송을 규탄”하는 국민궐기대회(1961.2.13)와 외교부 성명³²⁾(1961.7.22)이 있었지만 제1차 5개년경제개발(1962~1966)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 기술을 조달해야 했던 박정희로서는 한일회담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자 했다.³³⁾ 혁명정부의 외교시정방침(1961)도 같은 맥락이었다.

4. 대일외교의 정상화. 첫째, 선린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신의와 상호이해로써 양국 외교관계를 하루 속히 정상화한다. 둘째, 재일교포의 북송저지문제 등 현안의 제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수상 또는 외상급의 고위회담을 개최할 수도 있다. …

6. 국민의 해외진출 장려. 첫째, 종래의 편협한 해외진출 억제책을 시정하고 둘째, 이민정책을 강화 추진하고 셋째, 학도들의 외국유학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며 그들의 지도 및 보호에 주력한다.

그 결과 1961년 10월 제6차 한일회담이, 1964년 12월 제7차 한일회담이 각각 열렸다.³⁴⁾ 재일교포 대표단들의 예방을 맞을 때마다³⁵⁾ 박정희는 재일교포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직 · 간접적으로 전달했다.³⁶⁾ 정부차원에서는 외무부 ‘교민과’(1961.10.2)³⁷⁾ 설치, 교포교육을 위한 교사 및 장학관 파견³⁸⁾, ‘재외국민지도위원회’(1962.6.26) 설치, 해외이주법(1962.3.9) 제정 등 이승만 시절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정책을 폈으며, 유공동포의 본국초청, 교포의 모국방문장려, 교민등록 실시, 교민단체육성보조, 교민단체 · 재일민단간부 육성 등 모국과의 협력유대를 적극 추진했다.³⁹⁾ 국회에서는 “재일교포 국회옵써버 설치에 관한 결의안”(1964.4.15)⁴⁰⁾이 논

32) 외무부편, 『대한민국 외교연표, 1948~1961』(1962), 600쪽 참조.

33) 외무부편, 앞의 책(1962), 626쪽 참조.

34) 6차 회담(1961.10.20~1962.3.18, 1962.8.21~1964.4), 7차 회담(1964.12.3~1965.6.22).

35) 권일 재일민단장 예방 《조선일보》 1961.6.23(조간 1면), 1961.6.24(조간 1면); 교포장학생 조국방문단(8.16) 《조선일보》 1961.8.17(조간 1면); 전국체전 참가 재일교포선수단(10.7) 《조선일보》 1961.10.7(석간 3면), 1961. 10.10(석간 1면); 교포실업인(12.22) 《조선일보》 1961.12.23(조간 1면) 참조.

36) 공보부 편, 『박정희의장 방미 · 방일특집』(1961), 63쪽 참조.

37) 정부조직법[폐지제정 1961.10.2 법률 제734호] 제19조(외무부) 제6조(정무국) ①정무국에 아주과, 미주과, 구아과, 특수지역과와 교민과를 둔다. … ⑦교민과는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연구와 교도, 보호에 관한 사항 2. 이민에 관한 섭외사항.

38) 행정백서발간위원회 편, 『행정백서』(1964), 215~216쪽; 대한민국정부, 『행정백서』(1965), 382~383쪽 참조; 《조선일보》 1961.8.10(조간 1면) “재일교포 학교파견 교사 10명 선발”.

39) 행정백서발간위원회 편, 『행정백서』(1962), 66~67쪽 참조.

의됐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재일교포 복송사업도 계속 진행됐고, 주요 언론들은 한일회담 반대와 재일교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⁴¹⁾정책수립을 역설했으며, 김종필·오히라 합의(1962.10.20, 11.12)⁴²⁾로 촉발된 한일회담 반대데모(1964~1965)는 대규모 반정부시위로까지 발전해나갔다.⁴³⁾

이런 상황에서 “교포”를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는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1964~현재)⁴⁴⁾가 출범했다.⁴⁵⁾ 당시 연구소 산파역을 맡았던 이구홍⁴⁶⁾은 강력한 교포 보호육성정책(예: 화교정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⁴⁷⁾ “교포사회형성의 사적 배경[過去]과 당면문제[現在]를 진단하고, 교포사회가 조국에 바라는 바[未來]를 정확히 파악할 때 교포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의 문제의식과 “현황파악(조사)→교포에 대한 대국민 인식관 변화→장기적 안목의 정책수립→차세대교육의 중요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 제시는 이후 후속 연구에 많은 참조가 되었다. 다음 <표 5>는 정부의 경제개발추진과 국민들의 한일회담 반대 분위기 속에서 제기됐던 주요 연구성과물들이다.

〈표 5〉 1961~1965년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내용
1961	문희석, 『해외교포의 실태와 보호지도책: 특히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최고회의보』 3/김창준, 『동남아의 교포실업가』, 『비지네스』 1,5/임묘민, 『문이 열리는 재일교포의 모국투자』, 『비지네스』 1,1/중앙교육연구소편, 『재일교포 교원 재교육 강습회를 마치고』, 『소식(중앙연구)』 2,3/한숙, 『재일교포 계몽방문기행』, 『시사』 11/정연권, 『중남미 이민교포실태와 이민가능지역』, 『사상계』 9,10/정연규, 『재일교포와 일본의 야망』, 『신경제』 10,5 cf.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재일교포에게 보낸 메시지’ (1961.11.12)
1962	외무부, 『이민요람』 (외무부정무국)/외무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문제참고자료』/Ministry of Foreign Affairs, <i>Anaysis of the immigration laws and regulations of Latin American countries.</i> /윤경도, 『이민행정에 대한 고찰: 한국이민송출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한치문, 『재일교포의 자본도입문제』, 『제주도』 2/홍성기, 『재일교포의 실태: 모국의 적극적인 시책이 긴요하다』, 『신사조』 1,4/최준, 『교포신문과 일본의 침략정책』, 『법정논총』 15/김주인, 『오개년계획의 문제점과 해외교포의 국내투자문제』, 『최고회의보』 5/이찬형, 『재일거류민단의 모습』, 『최고회의보』 13/신학빈, 『재일교포 경제인의 약언』, 『비지네스』 2,2/정양수, 『재외교포 교육사업계획, 1962년도』, 『문교공보』 61 ※ 제주도개발협회 조직

40) 국회, 『국회공보: 제41회 제16호』(1964) 참조.
41) 《조선일보》 1961.10.16(석간 1면) “재일교포에 대한 합리적 지도보호책”; 《조선일보》 1962.8.18(석간 1면) “재일교포의 선도를 등한히 하지 말라”
42) 무상원조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도합 6억 달러로 합의. 그러나 1965년 가조인 때에 민간차관 3억 달러로 늘어나 도합 8억 달러선에서 최종 합의.
43)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 결성(1964.3.9), 학생들의 국회의원사당 데모와 김종필 귀국 요구(1964.3.24), 대규모 반정부시위 발발 및 서울시 일원에 비상계엄(1964.6.3), 대일굴욕외교성토대회(1965.3.20).
44) 1964.5.1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위원장: 이구홍, 위원: 이종극 국회의원, 민병기 국회의원, 조득성 경희대 교수, 황성수 변호사, 엄민영 내무부장관, 홍성은 외대교수) <연혁> 1964.9.7 교포문제세미나 개최 /1964.12.16 연구소 창립총회(초대소장: 이종극, 이사: 이종극, 민병기, 황성수, 홍성은, 조득성, 박일경, 사무국장: 이구홍)/1965.2.19 외무부 법인인가/1965.4.30 이사회 개최(초대 이사장: 노영한-재일교포).
45) 《동아일보》1954.3.21(3면); 《경향신문》 1962.8.16(3면).
46) 설립 준비위원장이었던 이구홍(당시 한국의대 영어과 3년)은 연구소 사무국장(1964~1985), 소장(1985~2006)을 거쳐 제4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2006.11~2007.5)을 역임. 대표 저서로는『오늘의 재일한국인 사회』(1974), 『한국 이민사』(1979년) 등이 있다.
47)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교포정책자료』 제1집(1965.6.10) 참조; 행정백서발간위원회 편, 『행정백서』(대한민국정부, 1962); 행정백서편찬위원회 편, 『행정백서』(대한민국정부, 1964) 참조.

1963	김행일, 『악몽 575일: 62차 북송교포의 탈출기』(보진재)/박태준, 『통상시찰단 종합보고』(1963)/김희택, 「한국혼혈아의 생태와 해외입양사업」, 『신세계』 2, 10/문형선, 「파문 일으킬 쇼윈도 자본: 교포·자본재산반입」, 『사상계』 11, 11/신교환, 「이민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최고회의보』 17/남진우, 「伯國의 경제와 우리 이민의 전망」, 『최고회의보』 18/황호을, 「해외교포의 분포와 실태」, 『최고회의보』 19/남진우, 「브라질이민의 합리화에 대하여」, 『최고회의보』 16/김영식, 「재일교포중소기업을 끌어오자」, 『비즈니스』 3, 8/김진근,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제주도』 9/유완식, 「재일교포의 생활」, 『제주도』 8/김영문, 「이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사조』 2, 4 cf. 朴康來渡邊博史, 『在日韓國人社會の綜合調査研究』(民族文化硏究會)/노재연, 「재미한인 사략: 중권-自1925년 至1958년」/북한 국적법 개정(제2조: 그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정치적 및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3조: 외국에 거주하는 공민은 자기 조국으로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다; 제15조: 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의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65조: 해외의 모든 조선공민들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1964	오소백, 『나의 상륙기』(세문사)/오응서, 『이민과 중남미안내』(신생사)/ 한국일보, 『이민백과』(박영사)/한양신문사, 『재일교포실업인 명감』/임종문, 「생지옥 속에서 사는 북송교포들!」, 「자유」 12/김영문, 「브라질이민의 실태를 직관하라」, 『재무』 105/김경희, 「하와이 교포 자녀의 교육관」, 『교육평론』 74/국회도서관 편역, 「재일교포의 법적범위: 일본측의 견해」, 『국회도서관보』 1, 1/이창복, 「이민정책에 바란다: 해외이민정책에 국민은 이렇게 요망한다」, 『신사조』 3, 2/박경래, 「이 현실속의 재일교포」, 『신사조』 3, 2/ 김인재, 「애국의 한 길에서: 재일교포문인들의 근황」, 『현대문학』 10, 1/김태주, 「재일교포와의 유대문제」, 『제주도』 14/이재만, 「해외교포재산반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민주여론』 1/한무숙, 「일본에서 만난 한국인들」, 『신사조』 3, 2/강상보, 「재일교포의 실태」, 『제주도』 13/김파우, 「한·일회담과 재일교포: 재일교포의 입장에서」, 『세대』 2, 6/강상보, 「재일교포의 실태 분석」, 『제주도』 17/실업과생활사편, 「해외에서 성공한 교포실업인: 사라와크와 원목과 김태성씨」, 『실업과생활』 2, 7/김영관, 「재일교포에 대한 나의 신념」, 『제주도』 15/이천상,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 한·일회담의 제쟁점」, 『사상계』 12, 4/고창식, 「재일교포교육실태보고」, 『국어교육』 8/김영문, 「민정에 기대한다: 이민관리를 중심으로」, 『재무』 97/박경래, 「재일교포실태분석」, 『국회보』 37 cf. Hurh, Won Moo, <i>Korean immigrants in America</i> . Rutherford: Farleigh Univ. Press
1965	이구홍, 『재일교포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1)/이한기, 「한일회담의 문제점」, 『정경연구』 1, 3

교포정책면에서 “북한에 절대적 열세”였던 이 시기⁴⁸⁾의 연구들은 한편으로는 그 동안 방관했거나 잊혀져갔던 재일동포(실태, 북송, 법적지위, 교육, 경제) 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사·해외입양 등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었다.

<표6>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한일국교정상화 이전까지 진행된 연구들

〈표 6〉 제1기(1948~1965)의 재외동포 관련 연구 주제

구분	1공화국	2공화국	군정기	3共 초기	비고
재일교포 북송	12	1	-	1	14
재일교포법적지위 (한일회담)	1	-	1	3	5
교육(재일/하와이)	1	3	-	1	5
재일교포실태	1	7	6	6	20
정부정책(건의)	-	1	1	-	2
對교포인식(유대감)	-	-	-	2	2
모국투자(재산반입/ 교포실업인)	-	-	8	2	10
남미이민	-	-	13	4	17
기행(강연)	-	-	2	-	2
교포언론	-	-	1	-	1
재일민단	-	-	1	-	1
계	15	12	33	19	79

14 ·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

의 주요 관심사는 북송
(1共) → 실패(2共) →
이민(軍政) → 실패(3
共初) 등이었음을 나
타낸다.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연구소는 “재
외국민교육의 시급성”을, 해외교포문제
연구소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조총련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기(1965.6~1981.2)

제3공화국 · 유신 이전(1965~1972)

약 14년을 끌어오던 한일회담이 마무리되려고 하자 정부의 관심은 인구과잉 해
소와 경제개발 · 자본유치⁴⁹⁾로 쏠렸고, 재일교포의 현안해결은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했다. ‘해외이주법’ (1962.3.9) 제정, ‘이민공사’ 설립허가(1964.6.1)⁵⁰⁾, ‘해외개
발공사’ (1965.11.3) 발족⁵¹⁾, 대통령과 비서실의 관심(1966.1.17)⁵²⁾ 등 정부의 “적극적
인 이민정책”⁵³⁾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책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⁵⁴⁾

한일회담 타결 직전에도 주요 언론들은 “교포와의 유대강화”⁵⁵⁾와 “모국유학실
시”⁵⁶⁾를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노총과 16개 단위노동조합은 성명서(1965.4.5)를 통
해 “한일회담의 합리적 타결을 촉구”했다.⁵⁷⁾ 그러나 재일교포의 영주권신청
(1966.1.17~1971.1.16)이 예상과 달리 저조하자 또다시 재일교포문제는 언론의 주목
⁵⁸⁾을 받았다.

특히 야당인 민중당⁵⁹⁾은 제7대 총선(1967.6.8)을 앞두고 “재일교포 전 아동에 대
한 의무교육의 실시를 추진하고 중 · 고교와 대학을 설립할 것”을 공약했고⁶⁰⁾, 언론

48) 이구홍, 앞의 글(1997) 90~91쪽 참조.
49) 한치문, 「재일교포의 자본도입문제」, 『제주도』2(1962), 문병선, 「파문 일으킬 쇼윈도 자본: 교포 · 자본재
산반입」, 『사상계』11.11(1963),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교포재산반입문제」(교포정책자료 제3집,
1966.7), 이남옥, 「모국투자를 갈망하는 교포실업인들」, 『은행계』2.5(은행계사, 1967.7), 재경춘추사편, 「한일
경협과 교포실업인의 역할」, 『재경춘추』4.8(72.8)/김두중, 「재일제주도민회의 10년과 전망」, 『제주도』
57(72.10)/안희주, 「재일본 제주도민의 향수」, 『제주도』57(72.10)/김병래, 「일본의 건설업: 재일교포건설인을
중심으로」, 『建設界』1.8(72.11);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결재문서2」(1966) 참조. 박정희는 재일교포
의 본국가족 송금자유화 조치(1966.1.26)문서에 사인했음.
50) 《동아일보》 1964.6.6(7면).
51) 사장 함병선(1920~2001) 일본군 소위, 제주 4 · 3사태 진압한 2연대 연대장, 국가재건최고위원회 기획위
원장 역임.
52) 한국 대통령(1963-1979: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결재문서 108」(대통령비서실, 1966) 참조.
53) 《중앙일보》 1966.1.12(2면).
54) 홍사원, 「한국의 인구와 인구정책」(1978); 《중앙일보》 1969.6.21(2면) 참조.
55) 《한국일보》 1965.3.2(2면).
56) 《한국일보》 1965.5.17(6면).
57) 《동아일보》 1965.4.6(7면).
58) 《동아일보》 1967.1.17(사설: 2면).

들도 “교포정책의 청사진”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⁶¹⁾ 재일민단도 본국정부에 “교민청 설립 등 민단강화방안”을 건의했다.⁶²⁾ 이에 정부는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1969.2.13)⁶³⁾를 설치한 후 재일교포실태 조사단을 파견했고⁶⁴⁾, 정부수립 이후 첫 정부·민단합동회의(1969.8.7~10)를 개최했고⁶⁵⁾, 교민과를 확대한 영사국(1970.8.17)을 외무부내에 설치했다.

한편 동백림사건(1967.7.8)⁶⁶⁾, 김규남사건(1969.5.14)⁶⁷⁾, 서승·서준식사건(1971.4.20)⁶⁸⁾ 이후에는 문화공보부 산하의 한국홍보협회(1972.2.18 설립)⁶⁹⁾를 비롯하여 한국신문연구소, 정경연구소, 인구문제연구소, 북한연구소, 인력개발연구소 등에서 교포문제를 다루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재외국민교육연구소⁷⁰⁾는 “재외국민교육의 시급성”을⁷¹⁾, 해외교포문제연구소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조총련연구의 중요성”을⁷²⁾ 강조했다.

다음 <표 7>은 경제개발과 해외인력수출(광부·간호사·노무자·입양·국제결혼·남미이민)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이슈화됐던 주요 연구성과물들이다.

“1966년 영주권신청운동을 기점으로 재일민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본에서의 남북대결을 펼치기 시작”했던 이 시기의 연구들은 한일회담의 공과와 교포법적지

59) 1965년 제1야당인 민정당과 제2야당인 민주당이 통합하여 창당(초대 대표최고위원: 박순천). 그러나 1965년 8월 한·일협정비준안과 월남파병안 처리를 둘러싸고 당론이 양분. 의원직 사퇴와 당 해산을 주장한 민정당계는 원내투쟁을 주장하는 민주당계와 결별하고 1966년 3월 30일 신한당을 창당함으로써 야당 통합 5개월 만에 민중당은 다시 분당. 제6대 대통령후보로 민중당에서는 유진오(兪鎭午)를, 신한당에서는 윤보선(尹潽善)을 지명. 그러나 야당의 대통령후보단일화와 야당통합추진에 따라 1967년 2월 7일 민중당과 신한당이 합당, 신민당을 창당함으로써 전통적인 야당세력은 다시 통합.

60) 《중앙일보》 1967.1.21(2면).

61) 《중앙일보》 1968.1.20(4면, 홍종인).

62) 《중앙일보》 1968.11.21(6면).

63) <설치목적> 재외국민 지도·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및 관계부 업무조정에 대한 자문; <기능> 재외국민 지도·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사항, 재외국민 교육·유학생지도 사항, 이민보호 사항, 재외국민단체 사항, 기타 필요 사항 <구성>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위원장 외무부차관, 위원:내무·재무·국방·문교·보건사회·교통·공보부 각 차관, 중앙정보부 제3국장 <간사> 서무처리 위해 간사회 설치: 간사장 1인(외무부 정무국장), 간사 9인(각 관계부처 3급 공무원). 1968.9.11 폐지.

64) 《경향신문》 1969.2.24(1면) 참조.

65) 《경향신문》 1969년 8월 7일자(1면).

66) 이종원,「북괴의 대남공작 양상변화: 동백림사건을 중심으로」,『검찰』1(대검찰청, 1968.5); 전건우,「동백림사건과 6·8부정선거: 이용로 사망과 윤이상 파동을 계기로 재추적한 진상」,『신동아』355(1989.4) 참조.

67) 김규남,「재일교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국회보』84(1968.10); 심성택,「간첩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방법에 관하여: 간첩 박노수, 김규남 사건의 일부」,『검찰』43(대검찰청, 1971.11); 《중앙일보》1969.5.14(1~3면).

68) 《중앙일보》 1971.4.20(7면), 1971.7.19(7면); 徐京植 編譯,『徐兄弟獄中からの手紙: 徐勝, 徐俊植の10年』(岩波書店, 1988); 徐勝,『獄中19年: 韓國政治犯のたたかい』(岩波書店, 1994).

69) 한국홍보협회편,「望郷にむせぶ最果ての流民」,『アジア公論』創刊號(1972.9), 문종하,「サハリンで送った四百十日: 被拉より歸國まで」,『アジア公論』創刊號(1972.9), 김우중,「在日僑胞の郷愁」,『アジア公論』1,3(1972.11)

70) 서울대 학생지도연구소 주관으로 1962년부터 재일동포학생의 본국 대학수학과정 운영.

71) 이익섭,「재일교포 유학생의 모국어 학습에 대한 언어심리학적 고찰」,「재외국민교육논총」1(서울대 재외국민연구소, 1971); 장현갑,「재일교포 유학생의 모국생활실태」,「재외국민교육논총」(서울대 재외국민연구소, 1972.4).

72) 1957.6 설립; 전준,「공산권연구총서 11-조총련연구 제1권」(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공산권연구총서 12-조총련연구 제2권」(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田駿,『朝總連: その最近の活動, I 』(東京: 實業の世界社, 1976).

〈표 7〉1965~1972년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내용
1965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미교포독립투쟁약사』(교포정책자료2)/외무부, 『한일회담백서』(1965)/이한기, 「찬성론과 반대론: 한일조약에 대한 해외지식인의 대화」, 『정경연구』 1, 10
1966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교포재산반입문제』(교포정책자료3)/유영중, 『재일교포2세교육문제』(교포정책자료4)/이민호, 『민단의단합방안과 그 지위』(교포정책자료5)/이한기, 「재일교포의 어제와 오늘: 국교정상화와 교포의 장래」, 『정경연구』 2, 2/배제식, 「기본적 인권과 국제법: 특히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하여」, 『법학』 8, 1/장제술, 「조국으로 보내다오! 樺太에 억류되고 있는 한국인들」, 『신동아』 25/박동근, 「양공주와 혼혈아: 한국과 미국」, 『신동아』 25
1967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일본국의 대한교포정책』(교포정책자료6)/내외문제연구소, 『樺太교포의 생활실태』/이민호, 『자유중국과 중공의 화교정책』(교포정책자료7)/현규환, 『한국유이민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의 해외인력개발시장에 관한 연구』
1968	법무부, 『법제자료: 각국의 이민관계법』/공보부, 『재일교포현황과 조선대학인가문제』/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교포교육개요』(주일본대사관 장학관실)/박경석, 「적치하의 망향30년: 재사할린교포의 생활실태와 귀환교섭의 안팎」, 『신동아』 43(68, 3)
1969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브라질이민의 현황과 문제』(교포정책자료8)/김상현, 『재일한국인: 교포80년사』(어문각)/배제식, 「기본적 인권과 국제법: 재일화태한인의 법적 지위를 고찰하기 위하여」(서울대 박사논문) 1
1970	조기선, 「길가의 잡초처럼: 재일교포의 생활실태」(대한기독교서회)/한국해외개발공사, 『미국의 이민제도 및 고용정책』
1971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조총련의 공산교육의 내막과 우리의 대책』(교포정책자료10)/한국해외개발공사, 『인력자원 조사보고서』 1·2/한국해외개발공사, 『유자격 한국간호원 및 간호보조원 독일병원 취업계획』
1972	이영훈, 『재일한국인 교육정책』상·하(교포정책자료 11, 12) /현규환, 『재소한국인의 사적고찰』(교포정책자료13)/한국해외개발공사, 『해외인력진출세미나 주제발표문』/장제영, 『서독의 한국인: 서독과전 한국인광부의 수기』(제3출판사) cf. 북한헌법(1972.12.27) 제15조·65조 ⁷³⁾

위의 미비, 사할린동포 미귀환, 민단강화와 조총련과의 관계설정, 공산권동포의 존재 인식, 해외(이민)진출동포⁷⁴⁾ 등의 문제를 정치적 시각에서 다루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김상현이 제출했던 대정부건의⁷⁵⁾와 그의 연구(<표 8> 참조)⁷⁶⁾와 “해외동포의 날 제정 건의”(1971)⁷⁷⁾, “재일교포학생 설문조사”(1971~)⁷⁸⁾, 강연회(1971~)⁷⁹⁾ 등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섰던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의 활동은 눈여겨볼 만하다.

73)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65조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국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74) 중앙일보사편, 『명사이민의 파문과 그 브레이크』, 『월간중앙』 49(72.4)/한상준, 『이민은 해외에 조국심는 것: 이주희망자의 자세확립을 위한 제언』, 『동서문화』 3.3(72.4)/박희주, 「국제이주론: 정책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민족』 1.3(72.3)/윤성범, 「이민은 가 무얼하누」, 『월간중앙』 50(72.5).
75) 《중앙일보》 1967.1.5(1면); 『한일문화협정체결과 문교행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서』(1966.12.13 제출)/“재외국민교육진흥법안”(1968.6.20 제출)/『재일교포문제조사보고서』(1968.11 제출)/해외교포문제연구소 3대 소장 취임(1969.2)/『재일한국인80년사』(1969. 발간).
76) 자세한 내용은 김봉섭, 「한국 주요 정당의 교민정책 비교분석-한명숙 의원(안)과 권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2006.12) 참조. “재외동포정책이나 법제정의 밑그림은 37년 전에 이미 그려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실천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일 뿐 그 이외의 논의나 주장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77) 《동아일보》 1971.1.14(5면); 이후 ‘해외동포의 날 제정’ 건의는 김중홍(1978), 백영옥(1993),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2004),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2007) 등으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는 2007년 5월,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공식 제정하였다.
78) 《한국일보》 1971.9.17(3면).

〈표 8〉대정부건의 내용과 수용결과

대정부건의(1968) ⁸⁰⁾	경과사항	비 고
①국회내 상임특별위 구성	여러 차례 시도, 끝내 좌절	앞으로 계속 추진 예상
②국무총리직속 재일교포대책위원회 설치	- 재 외 국 민 정 책 심 의 위 원 회 (1985.6.3) - 재 외 동 포 정 책 위 원 회 (1996.2.23) 설치	17년 만에 외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 조정기구 설치, 국무총리소속의 재외동포정책위 원회는 그로부터 11년 후 설치
③해외교포교육진흥 법 & 재외국민 지도육성 위한 교민법 제정	-재외동포재단법(1997.3.27) -재외동포법(1999.9.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 한 법률(2007.1.13) 제정	17대국회 한명숙의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 (안), 권영길의 재외동포기본법(안)은 37년 전 의 대정부건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
④장기적·일관성 교포정책 수립	- 제 1 차 재 외 동 포 정 책 위 원 회 (1996. 5.3) 개최(정책방향·목표 설정)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공식화 하는 데도 만 28년 소요
⑤장기적 민단육성책과 민족교육 추진	-재일교포 95%가 남한출신 ⁸¹⁾ 임 에도 조총련이 민족교육 주도 -전세계 한국학교 25개(14개 국), 한국교육원 35개(14개국) 에 불과	(가칭) ‘재외동포교육현장’ 제정 필요성 제기
⑥교민국 설치(확대개편)	-외무부 영사교민국(1974.9.19) 설치	건외후 6년 만에 교민1·2, 영사, 여권 1·2 등 5개과의 영사교민국 설치. 그러나 30년 이상 局 단위에서 머물고 있음(현재는 재외동포영사국)
⑦신용조합의 일반은행 승격	-일본내 동포은행설립 성사직전 좌초(2002)	신한은행이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현지동 포들에게 도움을 줄 동포은행은 없음. 금융기관 은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는 마지막 보루임
⑧현지 공관과 거주국동포사회와 정례회의	-공식채널 부재	재외동포정책 수립·평가에 동포를 직접 참여시 킴으로써 정책만족도를 높여야 함
⑨일본학교 취학 2~3세 민족위식 함양 특별대책	-교육부(국제교육진흥원)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지교육은 상 대적으로 취약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지역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4공화국 · 유신 이후(1973~1979)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운 유신헌법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자 정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1977) 제정을 통해 교육기관 해외설립 및 교육공무원 해외파견, 예산지원 · 교재 공급, 국내 각종 사업추진 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재일교포들도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1975) 설립으로 모국투자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교포정책은 여전히 이념지향적이었고, 안보를 최우선시 하였다.⁸²⁾

80) 《동아일보》 1968.11.23(4면).

81) 해외교포문제연구소,「광복60주년재일동포 100년 역사사진전」(2005.11.1~7)에서 인용;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재일동포 본적지별 구성」(2003.12 현재) 총 613,791명중 서울(8.86%), 부산(3.98%), 광주(0.32%), 대전(0.28%), 경기(3.78%), 강원(0.74%), 충북(1.58%), 충남(1.88%), 전북(1.78%), 전남(7.04%), 경북(21.4%), 경남(29.62%), 제주(16.92%), 북한(0.52%), 기타(1.04%), 미상(0.26%).

82) 해외교포문제연구소,「교포정책자료」24집(1985), 175쪽 참조; 김태기,「재일한인사회의 현안과 정책적 과제」,「제1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정책세미나」(주최: 외교통상부, 주관: 재외동포재단, 후원: 재외한인학회. 2007.10.4), 96쪽 참조.

이 시기에 남북한 체제에 대한 상호긴장과 대결국면이 첨예화되면서 민간연구자에 의한 연구보다는 정부나 전문연구소의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즉, 외무부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자료”(1974)와 “교민업무편람”(1979)을, 중앙정보부는 “재일교포현황”(1976)을 발간했고, 교육부는 “재외국민교육”(1973)에, 과학기술처(한국과학재단)와 서울대는 “재외한인과학자 유치”⁸³⁾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내외문제연구소와 극동문제연구소는 “재일교포 및 공산권동포”(1974)를, 국토통일원 평화통일연구소는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조국발전방안(1975)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해외이민연구”(1979)를 발간했다.

또한 한국홍보협회(1976년 한국국제문화협회로 개칭)는 민간차원의 해외홍보를,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정책자료 발간·정책건의(교민처 설치 등)⁸⁴⁾, 이민사진전·세미나·좌담회·공개토론회 개최 등으로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혀나갔다. 그리고 서광운·이구홍·고승제 등은 “이민사연구”(1973)를⁸⁵⁾, 유철중은 “재외국민문제”(1974)와 “사할린교포귀환문제”(1976)를⁸⁶⁾, 조규향은 “중아시아 한인촌”(1978)⁸⁷⁾을 다루었고, 중앙일보·동양방송은 미국 39개 도시 1,161명을 대상으로 “재미한국인의 생활 및 의식구조”조사(1979)를⁸⁸⁾, 홍승직·한배호(1977)는 “재일교포의 조국관, 언어 및 자녀문제, 직장생활, 일본인관, 자아의식, 귀화관, 단체의식, 당국에 대한 희망사항”을⁸⁹⁾, 김득렬은 “재미한인교회의 실태”⁹⁰⁾를 각각 실태 조사했다.

다음 <표 9>는 문세광의 저격사건(1974.8.15), “조총련모국방문사업”(1975)⁹¹⁾, “재외국민통일회의”(1975)⁹²⁾ 등 남북대결이 치열했던 시기에 논의됐던 주요 연구성과물들이다.

재일교포의 ‘한국화’ 정책을 강화하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본국과의 교류와 투자를 촉진시켰으나 10월 유신(維新)으로 재일동포사회가 균열되고 재미동포사회가 반정부운동이 시작됐던 이 시기에 연구자들은 해외이민사연구와 재미동포사회 및 사할린한인 등에 대한 관심을 이슈화했다.

83) 《중앙일보》 1979.1.18(4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AID Project가 대학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82) 참조. 서울대 AID프로젝트(1976~1980).

84) 《중앙일보》 1973.12.14(1면).

85) 서광운, 『미주한인70년사』(교포정책자료15집, 1973)/이구홍, 『이민의 전망과 과제』(교포정책자료16집, 1973)/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장문각, 1973).

86) 유철중, 『한국민족주의와 재외국민문제』, 『극동논총』2(전북대 극동문제연구소, 1974.7), 165~186쪽; 유철중, 『Sakhalin 교포의 귀환문제』, 『논문집』4(전북대 교양과정부, 1976), 80~100쪽.

87) 조규향, 『타시켄트의 한인촌』, 『월간 중앙』(1978) 참조.

88) 《중앙일보》 1979.10.8(3면); 《중앙일보》 1979.10.9(3면).

89) 홍승직·한배호, 『재일동포의 실태조사』, 『아세아연구』57(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7.1) 참조.

90) 김득렬, 『재미한인교회』, 『기독교사상』17,5(1973.5) 참조.

91) 《중앙일보》 1975.12.15(6면); 정홍진, 『재일동포모국방문과 그 성과』, 『국민회의보』13(통일주체국민회의 사무처, 76.3).

92) 《중앙일보》 1975.7.21(1면).

〈표 9〉 1973~1979년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국내
1973	서광운, 『미주한인70년사』(교포정책자료15)/이구홍, 『이민의 전망과 과제』(교포정책자료16)/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장문각)/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별법 제정(6.21)/김대상,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정음사) cf. 大阪韓國人商工會, 『商工會20年の歩み: 1953年5月-1973年12月』
1974	외무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자료』/이구홍, 『오늘의 재일한국인사회』(인문출판사) cf. 李恢成, 『北であれ南であれわが祖國』(河出書房新社)/Helen Lewis Givens, <i>The Korean community in Los Angeles County</i> (R and E Research Associates)
1975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편, 『재미한국과학기술자 총람』/양창영·임춘훈 공편, 『이민취업여행 가이드』(문예서림)/이구홍, 『한국이민사』(중앙일보사) cf. 統一日報社 在日韓國人名錄 編纂委員會 編, 『在日韓國人名錄, 1975』/Sangho Joseph Kim, <i>A study of the Korean church and her people in Chicago, Illinois</i> (R&E Research Associates)/ Don Chang Lee, <i>Accultu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Georgia</i> (R&E Research Associates)
1976	한완상, 『오늘의 재미한인사회』(교포정책자료17)/중앙정보부, 『사할린교포문제와 대책』/중앙정보부, 『재일교포 현황』/장민구편, 『사할린에서 온 편지』(한국방송공사) cf. 統一日報社編, 『在日韓國人企業名鑑』/ Emma Gee, ed., <i>Counterpoint: perspectives on Asian America</i> (Univ. of California)
1977	홍국표, 「재일교포 본국투자유치에 관한 연구: 국내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안광호, 「재일국민 자녀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홍승직·한배호, 「재일동포의 실태조사」, 『아세아연구』57(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2.28)-서울대 부설 재외국민교육원 설치 cf. 宮田浩人編, 『65萬人: 在日朝鮮人』(すずさわ書店)/金贊汀, 『祖國を知らない世代: 在日朝鮮人二・三世の現實』(田畑書店)/民團30年史編纂委員會編, 『民團30年史』 / H. Brett Melendy, <i>Asians in America: Filipinos, Koreans, and East Indians</i> (Twayne Publishers)/Steve S. Shim, <i>Korean immigrant churches today in Southern California</i> (R and E Research Associates)/Wayne Patterson and Hyung-Chan Kim, <i>The Koreans in America</i> (Lerner Pub.)/Hyung-chan Kim, ed., <i>The Korean diaspora</i> (ABC-Clío)
1978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남미이민의 현실적과제』(교포정책자료18)/홍사원, 『한국의 인구와 인구정책』(한국개발연구원)/이광규, 「재미·재일한국교포사회의 체문제」(한국문화인류학회 연구발표회, 3.30) cf. 金一勉, 『朝鮮人がなぜ ‘日本名’ を名のるのか: 民族意識と差別』(三一書房)/한국정부는 재일민단에 매년 10억 엔 지원
1979	홍사원·김사현, 『한국해외이민연구』(한국개발연구원)/이구홍, 『한국이민사』(중앙일보·동양방송)/외무부 교민1과, 『교민업무편람』 cf. L.A.한국학연구회, 『미국안의 한인 커뮤니티: 현황과 미래』/朴在一, 『在日朝鮮人に關する總合調査研究』(新紀元社)/ 일본 오사카 백두학원의 한국화 실현

제3기(1980~1997)

제5공화국 · 전두환 시절(1980.8~1988.2)

국가보위입법위원회와 제5공화국은 교포문제를 정부정책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교포들의 국정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⁹³⁾

이 시기에 국민당의 조일제(1981)는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국무총리 직속 교민청 설치, 해외동포의 국내참여” 등을 강조했다.⁹⁴⁾ 한편 김영광은 자신의 학위논문

93) 이구홍, 앞의 글(1997), 93~94쪽 참조.

94) 「제107회 제3차 국회본회의(1981.5.7) 회의록」1.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1981)⁹⁵⁾에서, 해외교포연구소는 내외통신자료(1982)⁹⁶⁾를 통해 “북한의 해외교포정책”을 소개했고, 이종익(1981)은 “교민정책

의 개선”과 “이중국적 허용”을⁹⁷⁾, 김찬규(1983)는 “재일교포법적지위 재협상”을⁹⁸⁾ 강조했다. 또한 이광규(1982)는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을⁹⁹⁾, 이중언어학회의 김민수·남기심·박갑수(1981)와 박영순(1983)은 교포2세들을 위한 “한국어-현지어 이중언어교육”을¹⁰⁰⁾, 한준상(1983)은 “차세대정체성교육”¹⁰¹⁾을, 박병윤¹⁰²⁾과 배재식은 “재일한인의 법적지위”¹⁰³⁾를 각각 역설했다.

평화문제연구소(1983), 한국해외이민문제연구소(1986),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1987)¹⁰⁴⁾, 국제문화연구소(1988)¹⁰⁵⁾, 국제재일한인연구회(1988, 재외한인학회 전신)¹⁰⁶⁾ 등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갔고,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국가보위입법위원회와 제5공화국은 교포문제를 정부정책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교포들의 국정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

95) 김영광, 「남북한의 재외교민정책에 대한 비교연구」(1981,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96) 해외교포문제연구소편, 「북한의 해외교포정책과 침투실태」, 『해외동포』7(1982.12).

97) 이종익, 「교민정책의 포괄적 개선에 부친다: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외동포』20(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1.12), 13~20쪽; 이후 강수웅(1984), 차종환(1994), 노영돈(1995), 박홍환(1995), 이기영(1996), 조병창(1997), 이철우(2005) 등도 이중국적문제를 다루었다.

98) 김찬규, 「교민정책의 선택이 갈림길에 있다」, 『해외동포』9(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3.6), 60~61쪽 참조 (“재일한국인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이후 나창주(1987), 김홍수(1992), 이광규(1998) 등도 동포문제를 정책차원에서 다루었다.

99) 이광규, 「재일한국인사회의 조사연구-大阪 生野區를 중심으로」, 『해외동포』7(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2.12).

10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동포』5(1982.3), 36~53쪽; 이중언어학회, 『해외자녀교육의 현황과 과제』제1호(이중언어학회, 1983), 『해외자녀의 이중언어교육문제』제2호(이중언어학회, 1985) 참조.

101) 한준상, 「해외교포 2세의 교육문제: 소련·중공·남미·독일지역을 중심으로」, 『교포정책자료』제20집(1983) 참조.

102) 박병윤, 「재일교포의 경제활동, 피와 혼을 계승할 책무 있다」, 『해외동포』19(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81.9)/「생존권·영주권·교육권에 문제 있다」, 『해외동포』9(1983.6)/「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권익운동」, 『교포정책자료』제22집(1984.9)/「지문·폐지운동과 재일한국인의 장래」, 『교포정책자료』23(1985.3)/「중공속의 연변한인자치주방문기」, 『해외동포』23(1986.12)/「재일교포와 재중공교포의 비교연구」, 『해외동포』26(1987.11)/「정주외국인의 지위·처우확립: 91년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를 생각한다 <좌담>」, 『교포정책자료』25(1987.6).

103) 배재식, 「기본적인권과 국제법: 특히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하여」, 『法學』8.1(서울대 한국법학연구소, 1966.3)/「강박으로 체결된 조약의 성질 및 효력: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法學』10.2(1968.12)/「재일한인의 법적 지위 및 대우: 실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法學』13.1(1972.9)/「국제법과 소수민족의 보호: 주로 재일한인의 지위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47, 48(1980.12)/「소수민족의 보호에 관한 연구 1. 한인계 소수민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고」, 『法學』48(1982.1)/「사할린간류 한국인의 법적지위의 본질 <특집>」, 『대한변호사협회지』88(1983.7)/「잃어버린 인권을 구제하는 길: 재사할린교포의 송환문제」, 『교포정책자료』21집(1983)/「지문·날인제는 폐지돼야 한다 <대담> 배재식·大沼保昭」, 『신동아』325(1986.10).

104) 홍승직 편, 『연변조선족자치주연구』(고려대출판부, 1988) 1987년 연구사업성과.

105) 『토론회: 해외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1989.11.30)-한국의 해외동포는 어떤 존재인가(이구홍)/재미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김형찬)/재일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박병윤).

106) 1988.10.27 창립. 민관식·이광규·정인섭·이영훈·이구홍·김정규·박영순·임창순·정진성·김응렬 등이 모여 학회 회칙통과 및 회장 이광규, 고문 민관식·조일제 추대; 1988.12.27 소식지 발송, 1989.1.20 1차 운영위, 1989.10.28 1차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재외한인연구회로 개칭).

“재미한국인의 현황과 과제”(1983), “재일한국인의 현황과 과제”(1987) 등 여러 차례의 심포지엄을 통해 교포현안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재일민단(박병헌)도 세계한민족의 대동단결과 서울올림픽대회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를 제안하여 동경에서 첫 대회(1987.11.15~18)를 개최한 후 동경선언(11.17)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¹⁰⁷⁾

다음<표 10>은 ‘교민청’ 설립에는 실패했으나¹⁰⁸⁾ 헌법에 재외국민보호조항¹⁰⁹⁾을 신설하고 해외이주업무를 외교부로 이관(1985.2.13)하고,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1985.6.3)를 설치하는 등 재외국민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인식했던 제5공화국 시절에 주로 논의됐던 주요 연구성과물들이다.

〈표 10〉 1980~1988년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국내
1980	강신표, 『檀山사회와 한국 이주민: Hawaii 한인생활의 인류학적 연구』(한국연구원)/한국해외개발공사, 『파나마이민핸드북』・『미국이민핸드북』・『호주이민핸드북』・『아르헨티나이민핸드북』・『코스타리카이민핸드북』
1981	이광규, 「재일한국인의 조사연구 I」, 『한국문화인류학』 13호(한국문화인류학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재일한국인교육의 문제와 전망: 세미나 보고서』/구해근·유의영, 『한국인의 미국이민』(하와이동서문화센터) cf. Iliso Kim, <i>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이광규, 「재일한국인의 조사연구 II」, 『한국문화인류학』 14호(한국문화인류학회)
1983	이광규, 『재일한국인: 생활실태를 중심으로』(일조각)/권일,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일본 속의 남과 북』(해외교포문제연구소)채영창, 『미국속의 한국인』(창원사)/조선일보 미주지사편, 『한국인이 뛰고 있다: 미국에 뿌리내린 80년대 교포사회』 cf. 玄光洙, 『民族の視点: 在日韓國人の生き方・考え方』(エンタプライズ)/梁泰昊, 『부산港に歸れない: 國際化の中の在日朝鮮・韓國人』(創生社)
1984	한국국제문화협회 ¹¹⁰⁾ , 『재외한인의 사회와 문화』・『조련 중앙아시아의 한인들』/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공・소련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21)/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22)/법무부,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제도』/현웅・현봉학, 『중공의 한인들』(범양사) cf. Won Moo Hurh, Kwang Chun Kim, <i>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i> (Fairleigh Dickinson Univ. Pr.)
1985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23)/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미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24) cf. 金容權, 李宗良 共編, 『在日韓國・朝鮮人: 若者からみた意見と想いと考え』(三一書房)
1986	과학기술처, 『국내 및 재일한국인 과학기술인력 데이테베이스개발에 관한 연구』
1987	법무부, 『법과 생활, 해외동포용』/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25)/이구홍, 『재일조선장학회의 허상과 진실: 조선장학회실태조사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전략』/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본부,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 회의록 및 서울올림픽대회와 재일동포』/교육개혁심의회, 『해외교포교육발전방안』 cf. 徐龍達編, 『韓國・朝鮮人の現状と將來: ‘人權先進國・日本’への提言』(社會評論社)/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 『民團 四十年史』/Song Moo Kho, <i>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i> , (Helsinki)

107)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50년사』(민단50년사편찬위원회, 1997), 322~328쪽 참조.
108) ≪중앙일보≫ 1980.10.2(1면); 제12대 국회 제128회 제8차 국회본회의(1985.10.18).
109) <제7차 전부개정(1980.10.27)>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2조 2항).
110) 문화공보부 산하로 창립(1973), 이후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1991)으로 발전.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재소한인”¹¹¹⁾, “재미동포”¹¹²⁾, “재일동포법적지위”¹¹³⁾, “해외이민”¹¹⁴⁾, “해외우수인재활용”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루었으며, 정책연구의 활성화와 문화인류학자들의 가세 등으로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폭과 깊이가 한층 진일보하기 시작했다.

제 6공화국 · 노태우 시절(1988.2~1993.2)

헌법에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재차 명시한 제6공화국¹¹⁵⁾은 ‘7·7선언’¹¹⁶⁾과 서울 올림픽 개최(1988.10) 이후 한 · 소수교(1990.6.4), 한 · 중수교(1992.8.24) 등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소련과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적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가능케 했다. 이처럼 한반도상황이 급변하면서 외교안보연구원 · 국토개발연구원 및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청계연구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조선족사회를 중점연구하기 시작했고, 평화문제연구소, 아세아정책연구원(1989), 대

111) 이문용, 『중앙아시아의 한국인사회』, 『동아문화』18(서강대, 1918); 김연수, 『모스크바, 한국인』(국풍, 1983) · 김연수, 『소련 속의 한국문제』(일념, 1986) · 김연수, 『소련식으로 우는 한국아이』(주류, 1986) · 김연수, 『재소한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비사』, 『구주논총』4권 1호(1989) · 김연수, 『소련국민의 계몽운동의 모델: 재소한인들』, 『전망』(1989) · 김연수, 『재소한인 작품집: 자밀라 너는 나의 생명』(인문당, 1989); 고송무, 『소련 · 중앙아시아의 한인들』(한국국제문화협회, 1984) · 랍스테트(고성무 역), 『일곱차례 동방여행』(민음사, 1986) · 고송무, 『소련의 한인들』(이론과실천, 1990); 서대숙, 『재외한인의 사회와 문화』, 『소련의 한국인』(1984) · 서대숙, 『소비에트한인백년사』(태암, 1989); 김영환, 『소련 속의 한인들: 어떻게 살고 있나』, 『광장』5(1985); 윤영천, 『한국현대사에 나타난 시베리아 유이민문제의 재인식』, 『한국학보』45(1986); 김경득, 『사할린잔류한인 소환소송의 추이와 법적 투쟁』, 『해외동포』30(1988); 신연자, 『소련의 고려사람들』(동아일보사, 1988); 바질 케르블레(최재현 역), 『오늘의 소련사회』(창작과 비평사, 1988); 조정남, 『소련의 민족문제』(교양사, 1988); 지정일, 『사할린거주 한인의 귀환』, 『해외문제』30(1988); 홍석조, 『사할린잔류한인 귀환에 관련된 제문제점과 대책』, 『해외동포』30(교포문제연구소, 1988); 김순규, 『소련 속의 한국인: 개방정책과 한국어 열기』, 『광장』 · (1989); 김은국, 『소련과 중국, 그리고 잃어버린 동족들』(을유문화사, 1989); 이서구, 『소비에트한인백년사』(태암, 1989); 정채수, 『한민족의 대륙이민사』, 『전망』(1989) · 정태수, 『소련 한족사』(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편완법, 『내가 만난 소련교포들』, 『광장』(1989).

112) 조영환, 『재미교포의 미국정치참여에 관하여』, 『교포정책자료』24(교포문제연구소, 1985); 뉴욕한인회 편, 『미국 속의 한인사회』(1986).

113) 이광규, 『재일한국인: 생활실태를 중심으로』(일조각, 1983); 在日本民團中央本部, 『差別白書』第7集(東京: 民團中央本部, 1984); 吉岡増雄 · 山本冬彦 · 金英達, 『在日外國人と日本社會』(東京: 社會評論社, 1984); 大沼保昭 · 徐龍達 編, 『在日韓國朝鮮人と人權』(東京: 有斐閣, 1986); 徐龍達, 『在日韓國朝鮮人の現況と將來』(東京: 社會評論社, 1987); 박병윤, 『재일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 91년 재일동포 법적지위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문화연구소 편, 『해외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1989); 박명진, 『91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국민문화연구소, 1989); 배재식, 『잃어버린 인권을 구제하는 길』, 『해외동포』30(교포문제연구소, 1988); 姜在彦 · 金東勳, 『在日韓國朝鮮人 歴史と展望』(東京: 労働經濟社, 1989); 在日本大韓民國青年中央本部, 『在日韓國人の居住權』(東京: 在日韓青會, 1989).

114) 이시백, 『한국의 인구환경과 정책방향』, 『한국인구학회지』5권 1호(한국인구학회, 1982); 김수용, 『해외인력진출의 경제적 효과분석』, 『상경논총』5(서강대, 1983); 민만식, 『한국과 일본의 이민정책 비교연구』(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1985); 한국해외개발공사, 『미국이민확대방안연구』(1986) · 한국해외개발공사, 『1990년대의 해외이주정책방향』(1987); 이순기, 『미국이민진출환경과 확대방안』(한국해외개발공사, 1987);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의 해외취업: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8).

115) <제8차 전부개정>(1987.10.29)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2조 2항).

116)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은 ①남북 동포 간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 왕래 … ⑥북한과 미일관계 개선을 협조하고 우리는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추진; 이후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9), 남북한 UN동시가입(1991.9),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1.12.13)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륙연구소(1990)에서도 관심의 지평을 북방쪽으로 넓혀 나갔다.

한편 1991년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협상을 전후로 한일협력위원회 부설 한일문제연구소에서는 “지문날인·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재입국허가·강제퇴거 등 4대악 철폐와 재일한국인의 참정권부여”를 검토했고¹¹⁷⁾, 윤병석은 독립운동과 재외한인을 연결시켰고¹¹⁸⁾, 곽태환 등은 북미한국인교수협회와 함께 재미한인 사회의 당면과제와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평화문제연구소는 재미동포들의 조국관을 설문조사했다.¹¹⁹⁾ 국회 차원에서는 “사할린동포모국방문 및 귀환촉구결의안”(1989)¹²⁰⁾, “재일한국인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보장촉구결의안”(1990)¹²¹⁾ 등을 촉구했으나 이를 입법화하지는 못했다.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해외한민족연구소(1989)의 『한민족공동체』발간¹²²⁾과 “교포연구의 구심점 확보와 학제적 협력연구”를 목적으로 한 재외한인학회의 『재외한인연구』발간이고, 이윤기와 이광규는 “한민족공동체”와 “재외동포학”이라는 시각을 접목시킴으로써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했다.¹²³⁾

다음 <표 11>은 서울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하는 ‘세계한민족체전’(1989) 개최로 중국과 구소련 거주 동포들의 모국방문이 있었고, 미국 L.A폭동(1992)으로 인해 미주동포 이민사회의 반성이 있던 시절에 연구자들이 산출했던 주요 연구성과물들이다.

〈표 11〉1988~1992년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내용
1988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공조련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26)/조영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해외교포의 열원』(교포정책자료28)/김상현, 『재일한국인:재일동포 100년사』(한민족)/외교안보연구원, 『재외국민보호방안』/Lee Seong Hyong , Kwak Tae-Hwan ed. <i>Koreans in North America: new perspectives</i> (Kyungnam Univ. Pr.)/신연자, 『소련의 고려사람들』(동아일보사) cf. Luciano Mangiafico, <i>Contemporary American immigrants: patterns of Filipino, Korean, and Chinese 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i> (Praeger)/Harry H. L. Kitano, Roger Daniels, <i>Asian Americans: emerging minorities</i> (Prentice-Hall)

117) 한일협력위원회 부설 한일문제연구소,「재일한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문제와 관련, 일본국내법상의 문제점」(1989년도 연구보고서, 1989).
118) 윤병석,「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일조각) 참조.
119) 평화통일연구소·한미교육연구원,「미주동포들이 보는 조국: 통일문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1992) 참조.
120) 제13대 국회 외무위원회 위원장 발의(1989.3.8. 원안 가결).
121) 제13대 국회 외무위원회 류인학 의원 등 3인 발의(1990.3.16. 원안 가결).
122) <창간호>(1993) 권두언: 문화적 국경(이윤기)/한민족의 구성(김병모)/고조선의 북계와 남계(윤내현)/한민족사의 전망(최창규)/한중수교 이후 올바른 대중정책의 모색(도준호)/특별좌담: 21세기 한민족공동체형성에 관한 구상(사회: 이윤기, 토론: 손세일·신형식·이만우·장치혁)/고구려유적에 대한 연구전망(박진석)/최근년간 중국에 있어서의 발해사 연구현황(방학봉)/중국조선족역사와 금후 전망(박창욱)/백의민족의 거구를 자랑한 대간치: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 40돌 축제와 제1회 조선족민속절의 날(조성일)/재중동포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사명(정인갑)/서평: 소련한민족(김상수)/서평: 중국 연변(박인주)/해외한민족연구소에 바란다(성기수)/정치발전과 해외동포정책(민병호)/해외한민족연구소 취지문·연혁·향후 추진사업/부록: 러시아연해주 全圖.
123) 이광규,「발간사」,『재외한인연구』창간호(재외한인학회, 1990) 참조.

1989	법무부, 『해외동포 변호사명부』/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미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29)/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30)/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31)/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제일한국인 3세 이하 후손의 바람직한 법적지위』/윤병석, 「연해주에서의 민족운동과 신한촌」, 『한국민족운동사연구』3(독립기념관)/조선조략사편찬조, 『조선족약사』(백산서당)/서대숙, 『소비에트한인백년사』(태암) cf. 崔昌華, 『國籍と人權』(參友會)/姜在彦, 金東勳 共著, 『在日韓國朝鮮人: 歴史と展望』(勞動經濟社)/RAIK(在日韓國人問題研究所)編, 『在日同胞の現状と將來』(亞細亞政策研究院)/李起南, 『在日韓國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日本人の内なる國際化』(伊藤書店)/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編, 『94在日韓國人の居住權: 在日韓國人の法的地位と待遇に關する協定についての韓日兩政府による再協議:協定の抜本的改正を求める』(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中央本部)/大沼保昭, 徐龍達 共編, 『在日韓國・朝鮮人と人權:日本人と定住外國人との共生を目指して』(有斐閣)
1990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중국교포사회와의 교류 및 지원방안』/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공산련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32)/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33)/해외교포문제연구소, 『大阪남북학술회의의교훈』(교포정책자료34)/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35)/민관식, 『제일본한국인: 왜 일본이름을 쓰고 살아야 하나』(중산육영회부설 아세아정책연구원)/고송무, 『소련의 한인들: 고려사람』(이론과 실천)/윤병석,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일조각) cf. 金原左門 外, 『日本のなかの韓國朝鮮人, 中國人: 神奈川縣内在住外國人實態調査より』(明石書店)
1991	곽태환 외, 『재미한인사회』(양영각, 1991)/Kwak Tae-Hwan and Lee Aeong Hyon. ed., <i>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i> (Kyungnam Univ. Pr.)/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공산련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36)/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37)/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산련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38)/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3회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 연구발표논문』(교포정책자료39)/노영돈, 『재소한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성대 박사논문)/김동화, 『중국조선족독립운동사』(느티나무)/고려대 한국학연구소편, 『연변조선족문학』/조성일편철 공편, 『중국조선족문학사』 cf. 林えいだい, 『(證言) 樺太朝鮮人虐殺事件』(風媒社)/Keum-Young Chung, <i>Korean elderly women in America: everyday life, health, and illness</i> (Pang Ams Pr.)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1회 세계한민족학술회의논문집』/정인섭, 『외국인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정주외국인의 경우를 중심으로』(서울대 박사논문)/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산련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40)/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미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41)/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42)/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산련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43)/박경휘, 『조선민족혼인사연구』(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소재영 외, 『연변지역 조선족문학연구』(송실대출판부)/서일권 외편, 『중국조선족문학논저작품목록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1회 세계한민족학술회의 논문집』/강현두외, 『해외교포방송 및 수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한국방송개발원)/문예출판사, 『고국산천이 그리워: 해외동포작가작품집』 cf. 북한헌법(1992.4.9) 제15조第2조 ¹⁾

제 6공화국 · 김영삼 시절(1993.2~1998.2)

세계화와 문민정부를 표방했던 김영삼 정부는 취임사(1993.2.25)에서 “한민족시대”를 강조한 바 있다.¹²⁵⁾ 이른바 ‘신교포정책’ 구상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교민정책은 정부의 정통성문제로 교포사회를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폐단이 없지 않았다. 둘째, 냉전체제의 대결구도로 교포를 끌어

124)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를 옹호한다;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125)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1993.2.25).

안는데 노력함으로써 교포사회를 양분시키는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셋째, 이로 인한 결과로 교포들이 본국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되어 거주국에서 사회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현상을 빚기도 했다. 따라서 교포들의 본래의 이주목적대로 거주국에 잘 적응하고, 교포사회가 정치적·이념적 대결을 지양하고, 정부의 교포에 대한 지원은 ‘자조노력’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교포행정의 창구를 해외공관으로 일원화하며, 교포들이 모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권장·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민병호(1993)는 “외치(外治)의 한 가닥인 해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요구했고¹²⁶⁾, 민주자유당 해외동포위원회(1993)도 “해외동포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교포정책세미나¹²⁷⁾를 개최했다. 그러자 세계화추진위원회(1995.1)는 ‘재외동포사회 활성화방안’ (1995.10)을 발표했고¹²⁸⁾, 정부는 대통령비서실내 교민비서관(1993.5)·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1996.6)¹²⁹⁾·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1997.10) 등을 설치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최초로 공문화 했다(<표 12>참조).¹³⁰⁾

〈표 12〉김영삼 정부 시절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구분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996. 5. 3)	제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996. 12. 4)	제3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997. 12. 12)
기본 목표	①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②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③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		
정 책 방 향	①재외동포의 자조노력권장 및 지원 ②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동거주지역사회내에서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③재외동포의 요구에 부응하여 언어·전통·문화·예술차원에서의 지원 ④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지원 ⑤재외동포의 거주국내 법적·사회적 지위향상 지원 ⑥재외동포의 한국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의 장려 및 재산권 행사 등 이익보호를 위한 국내법 및 제도 개선		
논 의 주 제	①재외동포정책추진계획수립	①재외동포재단설립추진현황 ②재외국민 국내병역문제개선 방안 ③사할린한인영주귀국시범 사업 조기추진방안 ④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어 및 민족교육 강화방안	①1998년도재외동포정책추진계획 방안 ②재외동포교육 내실화방안 ③재외동포재단 사업추진계획안 ④조선족관련 불법행위대책

126) 민병호(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치발전과 해외동포정책」, 『한민족공동체』(해외한민족연구소, 1993), 236~239쪽.
127) 민주자유당 해외동포위원회, 「교포정책세미나: 해외동포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1993.9.15, 프레지던트호텔) 개최사: 김영광; 주제발표: 이광규; 토론: 양창영, 백영옥, 원호식, 이종훈, 이구홍; 총평: 류정렬, 박실. 주관: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28) 세계화추진위원회, 『세계화백서』(1998) 참조; 세계화과제보고서: ‘재외동포사회 활성화지원방안’ (서진영 작성, 1995.12), 세계화과제 53개 중 하나로 재외동포지원과제가 선정.
129) 이형규, 「정책의제형성과 전이에 관한 연구: 재외동포사회활성화지원방안을 중심으로」(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0); 이종훈, 「재외동포정책의 과제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의 문제」, 『입법조사연구』제249호(국회도서관, 1998.2) 참조.
130) 외교부, 『외교백서 1997』, 286~287쪽 참조. 재외동포정책위원회(대통령훈령 제63호, 설치 1996.2.23) 제1차 회의(1996.5.3)에서 결정된 6개항의 기본정책방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세계한민족학술대회(1992) 개최를 통해 “세계 속의 한민족”, “한국문화의 세계



평화통일문제연구소는 “재외동포초청세미나”를 통해 재외동포의 역할문제를 다루었고, 한국방송(KBS)은 애국심과 민족공동체의식을 위한 “해외동포상”(1993)을 제정했다.

화”, “해외한인희생자” 등의 주제연구에 박차를 가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한무역진흥공사·국립민속박물관 및 서울대·부산대·전북대, 한국복지정책연구소·국방군사연구소 등은 중국조선족연구에 값진 성과를 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동포와 남북경협”(1995)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는 “해외한민족 교포자녀와 민족교육”(1995)을 각각 다루었고, 경희대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1994)는 『아태연구』를,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해외민족연구소(1995)는 『민족발전연구』를, 경북대 교민연구소(1995)는 『교민논총』을, 아태정책연구원(1996)은 『아태 Focus』를 발간했으며, 한국문화인류학회와 국립민속박물관은 공동으로 “재외동포생활문화”(1997)를 조사했다.

또한 광복5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국외독립운동 관련인사초청” 사업을 펼쳤으며, 국가안전기획부(1996)와 국제문제조사연구소(1996)는 “해외농장개발실태”와 “해외동포 생활실태”에 관심을 가졌고, 공보처(1995)는 한국궐련에 의뢰하여 “미국·일본·CIS지역 거주동포¹³¹⁾들의 가치관·역사관·통일/북한관·민족공동체의식·생활상” 전반을 조사했다. 특히 평화통일문제연구소는 “재외동포초청세미나”를 통해 재외동포의 역할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한국방송(KBS)은 애국심과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해외동포상”(1993)

〈표 13〉김영삼 정부 시절 제안된 재외동포기본법안

일시	법안명	제안자	개념정의	특기사항	비 고
1997. 10. 15	재 외 동 포 기 본법(안)①	의원입법안 (제정구대표 발의)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 취 득자와 국적 불문하고 한민족 혈통 지닌 자로서 외국 거주생활하는 자 -재외국민(규정 없음)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의 개념 미분리, 재외동포 속에 포함 시킴	기본법의 필요성을 역 설했으나 외교부 등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
1997. 11. 5	재 외 동 포 기 본법(안)②	의원입법안 (김원길대표 발의-새정치 국민회의안)	-재외동포: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 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자 -재외국민: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 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 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 유한 조상을 기준으 로 1/4 이상의 혈통 을 가진 자는 한민족 혈통에 해당	기본법의 필요성을 역 설했으나 외교부 등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

131) 공보처, 『광복50주년 한민족공동체의식조사』(1995), 17~18쪽 참조.

을 제정했다.

한편 이 시기에 한상복, 권태환, 백영옥, 정인섭, 김장권, 이종훈, 이장섭, 윤인진, 유철인, 이진영, 정성호, 조혜영, 한경구, 정진성, 최영호 등 소장학자들과 재외한인 학회의 연구활동은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일조했으며, 제15대 국회도 연구모임인 21세기동북아연구회(회장 제정구)를 조직하여 재외동포문 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여·야 모두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성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음 <표 14>는 정부가 ‘현지화’와 ‘민족정체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던 ‘신교포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됐던 주요 연구성과물들이다.

〈표 14〉김영삼 정부 시기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내용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세계속의 한민족』/이윤환, 『헌법상 외국인의 선거권에 관한 연구: 일본국 헌법상 재일한국인문제를 중심으로』(충남대 박사논문)/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교포정책간담회』(교포정책자료44)/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교포정책간담회』(교포정책자료45)/해외교포문제연구소, 『교포정책간담회』(교포정책자료46)/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교포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교포정책자료47)/이광규원경수, 『재소환인: 인류학적 연구』/유진오, 『한일회담: 제1차 회담을 회고하면서』(외교안보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세계 속의 한민족』/대한무역진흥공사, 『중국의 조선족기업총답』/민족통일연구원, 『한민족공동체형성과정에서의 교포정책』/고재남, 『독립국가연합내 고려인사회에 대한 연구』(외교안보연구원) cf. 李英和, 『在日韓國·朝鮮人と參政權』(明石書店)
1994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동포의 역할과 조국기여방안』(교포정책자료48)/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리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49)/해외교포문제연구소, 『교포사회 바로 알리기심포지움』(교포정책자료50)/이광규, 『한민족의 세계사적 소명』(서울대출판부)/閔寬植著;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編;金敏得·金容權共譯, 『在日韓國人の現状と未來』(白帝社)/한국독립유공자협회, 『러시아지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사』(교문사) cf.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련20년운동사』/福岡安則, 『在日韓國·朝鮮人: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中央公論社)/社會政策學會編, 『日本における外國人労働者問題』(御茶の水書房)/ミレ(未來)編集部編, 『在外朝鮮民族を考える: アメリカ・舊ソ連・中國・日本から報告』(東方出版)/國際在日韓國·朝鮮人研究會編, 『在日韓國人青年の意識と課題』/金敏得, 金英達 共編, 『韓國・北朝鮮の法制度と在日韓國人・朝鮮人』(日本加除出版)
1995	공보처, 『광복50주년 한민족공동체의식조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외희생자 유해현황조사사업보고서: 일제시기 해외한인회생자연구』/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해방직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활동』(글모인)/임영철, 『해외한국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중앙대학교 출판부)/차중환·이구홍, 『한국의 국력신장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교포정책자료51)/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52)/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민족발전연구』1호 cf. 松田利彦, 『戦前期の在日朝鮮人と參政權』(明石書店)/徐龍達編, 『共生社會への地方參政權』(日本評論社)/植田剛彦, 『在日韓國人の底力: 21世紀へ向けて"韓國系日本人"の確立を』(日新報道)/朴鍾鳴編, 『在日朝鮮人: 歴史・現状・展望』(明石書店)/Helen Choi Rhee, <i>The Korean-American experience: a detailed analysis of how well Korean-Americans adjust to life in the United States</i> (Vantage Press)/Nancy Abelman and John Lie, <i>Blue dreams: Korean Americans and the Los Angeles riots</i>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김대성, 『재일한국인의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단국대 박사논문)/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교포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53)/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미교포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54)/국가안전기획부, 『우리의 해외농장개발실태와 지원방향』/국제문제조사연구소, 『해외한민족의 현재와 미래: 해외동포의 생활실태와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국회21세기동북아연구회, 『재외동포정책의 방향과 과제: 재중동포정책을 중심으로』/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해외교포가 한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한국사회사학회, 『중앙아시아한인의 의식과 생활』(문학과 지성사) cf. 高鮮徴,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 關東地方を中心に』(新幹社)/森田芳夫, 『數字が語る在日韓國·朝鮮人の歴史』(明石書店)/姜在彦, 『在日からの視座: 姜在彦在日論文集』(新幹社)/Elaine H. Kim, Eui-Young Yu. eds., <i>East to America: Korean American life stories</i> (New Press)/Pyong Gap Min, <i>Caught in the middle : Korean merchants in America's multiethnic cities</i> (Univ. of California Press)

	제일한국인투자협회, 『제일동포본국투자자 대상 한국투자환경평가 및 실태조사』/한국법제연구원, 『한일 기본관계조약의 당면과제와 법적 대응』/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러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55)/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미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56)/한국문화인류학회,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1997.2)/한국문화인류학회,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1997.11)/경북대 교민연구소, 『교민논총』 창간호/국가안전기획부, 『CIS한인관련 자료집』/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민족통일의 전망과 과제: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동포학자 학술회의 자료집』 ※재외동포재단법 제정(재외동포재단 출범) cf. 民團50年史編纂委員會, 『民團50年史』/原尻英樹, 『日本定住コリアンの日常と生活: 文化人類學的アプローチ』(明石書店)/庄谷怜子, 中山徹 共著, 『高齢在日韓國・朝鮮人: 大阪における'在日'の生活構造と高齢福祉の課題』(御茶の水書房)/金井靖雄, 『13の揺れる想い: 在日コリアン二世・三世の現在』(麥秋社)/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編, 『(圖表でみる)韓國民團50年の歩み』(五月書房)/荒木和博, 『在日韓國・朝鮮人の参政權要求を糾す: 「外國人參政權」という名の虚構』(現代コリア研究所)/國際在日韓國・朝鮮人研究會編, 『21世紀へのビジョン: 在日韓國・朝鮮人社會』/福岡安則・金明秀,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東京大學出版會)/ Kyeyoung Park, <i>The Korean American dream: immigrants and small business in New York City</i> (Cornell Univ. Press)
--	--

냉전구조의 해체로 중국, 러시아·CIS 등 구공산권 거주동포들이 재외동포정책의 영향권 내로 편입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연변지역 등 재중동포사회와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동포사회에 대한 현장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¹³²⁾, 주로 학제적 성격의 연구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참고로 <표 15>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재외한인연구를 통해 다뤄졌던 연구 내용들이다.

<표 15>에 따르면 지역연구가 전체의 87%였으며, 절반 이상이 재중·재러동포에 집중되었고, 나머지가 재미>재일>남미>유럽·아시아지역 순이었다. 그리고 2000년 이전에는 재일→조선족→재미→재러·재CIS 방향으로, 2000년 이후에는 재미→조선족·재CIS 방향으로 연구의 중심축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5〉재외한인연구(1990~2002)의 연구주제

구분		제1호 (1990)	제2호 (1992)	제3호 (1993)	제4호 (1994)	제5호 (1995)	제6호 (1996)	제7호 (1998)	제8호 (1999)	제9호 (2000)	제10호 (2001)	제11호 (2002)	제12호 (2002)	제13호 (2002)	비고	
지역연구	재일	6	-	1	2	-	-	1	-	-	1	-	-	-	11	90
	재미	1	1	1	-	2	4	1	1	3	1	1	1	1	18	
	재카	-	-	-	-	-	-	-	-	-	-	1	-	-	1	
	재중	-	4	3	6	-	2	-	2	2	1	2	2	-	24	
	재러	-	2	2	-	1	1	9	-	1	1	-	-	-	17	
	재CIS	-	-	-	-	-	-	-	4	1	2	1	1	-	9	
	재유럽	-	1	-	-	-	-	-	1	-	-	-	-	-	2	
	재남미	1	-	-	-	3	-	-	-	-	1	-	-	-	5	
	재아주	-	-	-	-	-	-	-	1	-	-	1	-	-	2	
	재호	-	-	-	-	-	-	-	-	-	-	1	-	-	1	
개념연구	정책	-	-	-	-	-	-	-	1	-	-	-	-	-	1	13
	일반	-	-	3	-	-	-	-	-	-	-	-	1	-	4	
	역할	-	1	-	-	-	-	-	-	-	-	-	1	-	2	
	인식	1	-	-	-	-	-	-	-	-	-	-	-	-	1	
	공동체	-	-	-	-	-	-	-	-	-	-	-	-	5	5	
계		9	9	10	8	6	7	11	10	7	7	7	6	6	103	

132) 심현용,『러시아·CIS한인(고려인) 이주정착사 연구경향』(2005).

제47기(1998.2~현재)

제6공화국 · 김대중 시절(1998.2~2003.2)

IMF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과제였던 김대중 정부는 재외동포의 존재를 심분 활용했다. 취임사(1998.2.25)에서 “긴밀한 유대와 권익보호”¹³³⁾를 약속했던 그는 자랑스런 재외동포 집권(1998. 8.11)을 통해 “소수민족이 현명하게 사는 길”¹³⁴⁾을 역설 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차원의 보고서에서도 그동안의 공과를 재점검하고 재외동 포의 전략적 가치와 동포 상호간의 네트워크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¹³⁵⁾

첫째, 정부와 동포사회의 불편한 관계는 상당부분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둘째, 정부는 동포들을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동반자’ 로, ‘한민족의 살아 있는 자산’ 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조직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셋째, 해외거주동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선진 통일한국진입을 위 한 국가발전에 최대한 동참시키되 해외동포가 공감하고 현지 거주국정부가 거부감 갖지 않아야 한다.

넷째, 거주국 정착 및 위상강화 지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고양, 한민족 공동체 형성 지원 등 동포지원체계는 재외동포재단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재단이 실질적인 동포권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공관을 통한 재단 홍보강화와 동포의 건의 · 요망사항을 적극 수렴 ·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보다는 민간단체주 도로 운영되도록 기부금 및 동포성금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97.3.27)과 상호 모순되는 조항이 있었지만 주무부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한 입법의지(정부안)로 ‘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법률’ (1999.2)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동포와 러시아동포를 배제

133) 대통령비서실,『국난극복의 길: 김대중 대통령 취임 6개월 연설문』(1998) 참조.
134) 대통령비서실, 앞의 책(1998) 참조. 자랑스런 재외동포 집권시 말씀(1998.8.11).
135)국가안전기획부,『「21세기 국가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1998) 참조.
136)노영돈,「소위 재외동포법에 관한 연구」,『인천법학논총』2권 1호(인천대 법학연구소, 1999), 58쪽; 이종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해외교포문제연구소 · 재외한인학회 주 최, 재외동포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1999.6.4), 2쪽 참조.

〈표 16〉김대중 정부 시절 제안된 재외동포 관련법안

일시	법안명	제안자	개념정의	특기사항	비 고
1998. 8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특별법 입법예고안	정부안 (법무부)	-재외동포(규정 없음)	재외동포 개념 대신 ‘한국계외국인’이라는 새로운 개념 제시/체류기간 2년으로 한정	김대중 정부 공약실천 차원에서 자유왕래, 참정권, 공직취임권 허용 등 혁신적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중도폐기/외교부의 주도권문제로 ‘과거 국적주의’에 의한 수정안 마련
			-한국계 외국인: 한민족 혈통을 지닌 외국인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1998. 9	재외동포기본법(안)	의원입법 수정안 (김원길 대표발의)	○재외동포: 1997.11 안과 동일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조부, 부 또는 모 혹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기준	정부안과의 사전조율 없이 추진되어 기본법 입법에 실패/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항상 외교부의 반대논리에 부딪히고 있음
			○재외국민: 1997.11 안과 동일	대한민국수립(1948) 이전에 해외이주한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것으로 간주	
1998. 12. 24	재외동포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 법률(안)	정부안 (법무부)	-재외동포(규정 없음)	‘한국계외국인’을 ‘외국국적동포’ 개념으로 대체하여 ‘과거 국적주의’ 채택/법안명칭이 당초 ‘법적지위’에서 ‘출입국과법적지위’로, ‘특별법’이 일반 ‘법률’로 변경/무국적자(조선적재일동포 경우) 해당사항 없음	입법(99.9.2)에는 성공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 제2조2항, 시행령 제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평등 원칙위배) 결정(2004.3 문제조항 개정 ¹³⁷⁾)/이것도 외교부와 중국측의 반대로 혈통주의 개념 포기
			-한국계 외국인(규정 삭제)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국민: 특별법 입법예고안과 동일		

한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표 16> 참조).¹³⁶⁾

이 시기에 재외동포 관련 연구는 질적 성숙과 다변화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즉 학계에서는 재외한인학회 발족 이후 만10년 만에 “재일조선인문제”를 학제적·집중적으로 다루는 한일민족문제학회¹³⁸⁾(2000.6)가 출범했고, 한국문화인류학회는 미국·일본·러시아 등지의 한인 생활문화연구(1999~2003)에 집중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 고려인연구팀은 러시아·CIS 관련 연구성과(2000~2004)를,

137)제2조 제2호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일본내 조총련·조선적(朝鮮籍) 동포(20만 명 추산)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38)당시 회장 김광열(광운대), 감사 최영호(영산대), 한국지역고문 지명관(한림대)·유영렬(숭실대), 일본 지역고문 강덕상(시가현립대)·박재일(문화센터 아리랑), 총무이사 김인덕(국립중앙박물관)·표영수(숭실대), 연구이사 정혜경(한국국가기록연구원)·김태기(호남대), 편집이사 김명섭(강남대), 출판이사 정대성(서울대), 영남지역이사 김기왕(한국디지털대), 일본지역이사 外村大(와세다대).

139)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내의 한민족공동체연구실이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Global Korean Community Research Center)로 발전.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에는 <재외동포연구실>, <탈북자연구실>, <이민정책연구실>이 있어 조사연구, 교육, 학술세미나, 출판, 국내외 학자간 네트워크사업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발전정책과 전략을 개발할 것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대통령취임 교포정책포럼에서 해외동포의 호칭, 교민 행정 일원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활성화, 해외동포의 날 제정, 해외동포보호 및 문화진흥법 제정 등을 제언했다.

고려대 한국학연구소는 “세계속의 한국문학”(1998), “재미한인사회의 현황과 전망”(1999), “재외한인작가연구”(2001)를, 경희대 아태지역원은 “조선족과 고려인연구”를,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는 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2002~2004)를¹⁴⁰⁾,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는 강제이주140주년기념학술대회(2004.8)로 “재러한인들의 이주사와 지위”를, 단국대 아시아아메리카문제연구소는 이민100주년기념학술회의(2005.8)로 “멕시코이민 100주년, 회고와 향후 전망”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또한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는 “민족통합의 새로운 개념과 전략”(1998~1999)을 연구하면서 네트워크이론을 처음 도입했고, 평화문제연구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재외동포의 역할”에 집중했으며, 이호선·이구홍(1998)은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대통령취임 교포정책포럼에서 해외동포의 호칭, 교민행정 일원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활성화, 해외동포의 날 제정, 해외동포보호 및 문화진흥법 제정 등을 제언했다.¹⁴¹⁾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민족연구원(1998)¹⁴²⁾을 설립한 조정남¹⁴³⁾, 김신일, 성경룡, 김인영, 박호성·이종철, 노영돈, 최우길, 최협, 김태기, 성동기, 정혜경, 양창영, 유병용, 권희영, 신지호 등의 연구와 접근방법이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다음 <표 17>은 IMF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나던 시절에 주로 논의됐던 대표적인 연구성과물들이다.

140)그동안의 연구성과는 한국근현대사학회의『한국근현대사연구』25집(2003년 여름호); 28집(2004년 봄호); 29집(2004년 여름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한국독립운동사연구』20집(2003년 8월); 22집(2004년 8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Korea Journal』Vol.44 No.4(Winter 2004) 등을 참조.

141)해외교포문제연구소,『김대중 대통령 취임기념 교포정책포럼』(1998.2.25).

142)『민족연구』제1호(98.7)-카작한인사회의 어제와 오늘(명드미트리), 카작한인들의 의식조사(명드미트리),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조정남), 이중국적문제의 허와 실(오창유)/『민족연구』제3호(99.9)-남북한 재일동포정책의 특성과 문제점(고병국)/『민족연구』제4호(00.3)-재외한인(고병국)/『민족연구』제7호(01.9)-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이준규)/『민족연구』제8호(02.3)-북한의 사할린한인정책(조정남).

143) 조정남,『동아시아의 민족환경과 재외한인』,『평화연구』8(고려대 평화연구소, 1999.12)/『북한의 재외동포정책』(집문당, 2002)/『현대중국의 민족정책』(한국학술정보, 2006)/『단일국적제와 그 변용의 확대』,『(시대의 논리) 민족연구』제24호(한국민족연구원, 2005.12)/『국적의 문화개방시대』,『(시대의 논리) 민족연구』제24호(2005.12)/『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시대의 논리) 민족연구』제30호(2007.6). 군의문사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주최,『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토론회 자료집(2007.11.28) 참조: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형사건(06.4.25~07.4.17),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06.4.25~06.11.28),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사건(06.8.8~07.4.3).

〈표 17〉 1998~2002년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내용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국민생활체육협의회, 『21세기 재외한인의 역할』/유숙자, 『1945년 이후 재일한국인 소설에 나타난 민족적 정체성 연구』(고려대 박사논문)/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외교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57)/국가안전기획부, 『21세기 국가발전과 해외한민족의 역할』/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한국문화인류학회, 『중국 흑룡강성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1998.11)/강인철, 『시베리아횡단-러시아역사기행: 그래도 고려인은 살아 있다』(해인)/박환, 『재소한인민족운동사연구』(국학자료원)/경북대 교민연구소, 『교민논총』2호/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민족발전연구』2호/최협, 『다민족국가의 민족문제와 한인 사회』(김문당)/법무부, 『1997년도 해외동포 법적지원 총람』 cf. 植田剛彦, 『不屈の在日韓國人』(日新報道)/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をめざす市民の會 編, 『定住外國人の地方參政權: 共生社會のために』
1999	정혜경, 『일제하 재일한국인 민족운동의 연구: 大阪지방을 중심으로』(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진회관, 『조종련연구: 역사와 성격을 중심으로』(동국대 박사논문)/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해외동포법적지위와 교포사회의 미래상』(교포정책자료58)/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일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59)/한국문화인류학회, 『우즈베크스탄 한인동포의 생활문화』(1999.11)/경북대 재외동포연구소, 『동포논총』3호/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민족발전연구』3호/강만길, 『강만길 역사기행: 회상을 열차를 타고』(한길사) cf. 金泰泳, 『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クスを超えて: 在日朝鮮人のエスニシティ』(世界思想社)/永六輔, 辛淑玉 共著, 『日本人對朝鮮人: 決裂か和解か?』(光文社)/Kwang Chung Kim, ed., <i>Koreans in the hood : conflict with African Americans</i>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0	유숙자, 『재일한국인 문학연구』(月印)/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1회 국내외 해외동포문제 전문가대토론회』(교포정책자료60)/경북대 재외동포연구소, 『동포논총』4호/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민족발전연구』4호/정대성, 『제2공화국 정부좌회의 일본관과 대일논조: 한일관계, 한일동상, 한일회담, ‘재일교포’를 둘러싼 담론』, 『한국사학보』8(고려사학회)/정혜경, 『일제말기 조선인민족운동연구』(경인문화사) cf. 李仁植, 『日本人になりたい在日韓國人』(朝日ソノラム)/内海愛子 外, 『「三國人」發言と在日外國人: 石原都知事發言が意味するもの』(明石書店)/Claire Jean Kim, <i>Bitter fruit: the politics of Black-Korean conflict in New York City</i> (Yale Univ. Pr.)
2001	정진성,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나남출판)/홍기삼 편, 『재일한국인 문학』(솔출판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2회 국내외 해외동포문제 전문가대토론회』(교포정책자료61)/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62)/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3회 국내외 해외동포문제 전문가대토론회』(교포정책자료63)/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민족발전연구』5호/강일규 외, 『재외동포인적자원 지원 및 활용촉진방안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cf. 崔柄郁, 『「恨」の海峡を越えて: ハミョンテンダの信念で半世紀, 在日韓國人, こころの叫び』(現代書林)/鄭大均, 『在日韓國人の終焉』(文藝春秋)/梁泰昊, 川瀬俊治 共著, 『(知っていますか?)在日韓國・朝鮮人問題: 一問一答』(解放出版社)/河炳旭, 『(第四の選擇)韓國系日本人: 世界六百万韓民族の生きざまと國籍』(文藝社)/在日本大韓民國民團在日韓國人意識調査委員會編, 『在日韓國人意識調査中間報告書, 2000』/Ho-Youn Kwon, Kwang Chung Kim and R. Stephen Warner. eds., <i>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 pilgrams and missionaries from a different shore</i>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2	이건우 외, 『재일국민 조국참정권운동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재일국민의 조국참정권회복을 위한 시민연대)/국회 인권정책연구회·동북아평화센터 공편, 『「21세기와 인권」전: 세기를 넘어,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재일한국인편』/김정자, 『재일한국인 1세의 한국어·일본어 혼용실태에 대한 연구: 오사카지역을 중심으로』(태학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러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64)/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민족발전연구』6호/하병욱 지음·홍구희 옮김, 『재외한국인의 국적문제』(열린책들)/한미동포재단, 『미주한인이민100년사』(미주한인이민100주년기념사업회) cf. 田中宏編, 『在日コリアン權利宣言』(岩波書店)/朴三石, 『海外コリアン: パワーの源泉に迫る』(中央公論新社)/池東旭, 『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角川書店)/飯田剛史, 『在日コリアンの宗教と祭り: 民族と宗教の社會學』(世界思想社)/崔吉城, 『親日と反日の文化人類學』(明石書店)/Jennifer Lee, <i>Civility in the city: Blacks, Jews, and Koreans in urban America</i> (Harvard Univ. Press)/Ji-Yeon Yuh, <i>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i> (New York Univ. Press)/Nazli Kibria, <i>Becoming Asian American: second-generation Chinese and Korean American identities</i> (Johns Hopkins Univ. Press)

제6공화국 · 노무현 시절(2003.2~2008.2)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는 재외동포를 한민족 경제 · 문화네트워크로 그리고 모국과 거주국간의 가교로 인정하여 임기 말(2007.5)에는 동포사회의 숙원 사항인 “기념일 제정”(‘세계한인의 날’)을 성사시켰으나 실제 관심사는 주로 과거 사정산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의 해외동포사’¹⁴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조사’ (2007.11.7)¹⁴⁵⁾,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한 ‘일본 우토로 지역주민의 도일배정에 관한 조사’ (05.4.15~06.9.29) 및 ‘사할린 이중징용 피해진상조사’ (2005.7.29~2007.1.26)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정부정책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2006.3)했으며¹⁴⁶⁾, 제17대 국회가 제출했던 재외동포기본법 등 각종 동포 관련 법들에 대해서도 상호합의점을 찾지 못했다.¹⁴⁷⁾

이 시기에 지구촌동포연대(KIN, 1999)는 “역사와 인권” 측면에서 동포정책비교 · 재외동포법 개정 · 우토로 · 사할린한인 등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으며, 동북아평화연대 등 동포 관련 NGO들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그리고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실천했던 전남대 세계한상연구단(2003~2007)¹⁴⁸⁾의 임채완 · 김재기, 동서대 · 동아대의 NURI한상사업단 이외에 설동훈, 정영훈, 최진욱, 김귀옥, 김승일, 김봉섭, 곽승지, 이정태, 송석원 등 학문후속세대들이 재외동포 관련 연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집단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제17대 국회의 “재외동포문제연구회”(2004.7.8, 대표 박세일)와 “한민족평화네

144)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주최,『과거사정리 활동평가와 향후 과제』토론회 자료집(2007.11.28) 참조: 반탁운동가들의 소련유행사건(06.4.25~07.4.17),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06.4.25~06.11.28), 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사건(06.8.8~07.4.3).

145) 보안사가 수사했던 73개 사건의 재일동포 및 일본관련 간첩사건 중 4건의 사건을 중점 조사: 보안사에 연행되어 43일간 불법구금상태로 조사받은 김양기(86.2.21), 19일간 불법구금되었던 이현치(1981.10.9), 영장 없이 보안사로 연행되어 35일간 불법구금되었던 김태홍(1981.9.9), 하숙집에서 영장 없이 불법 연행(1977.4.21), 구속(5.12)되기까지 20일 이상 불법감금되었던 김정사 등.

146)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외교통상부, 2006) 참조.

147) 자세한 내용은 김봉섭(2005) 참조.

148) <주관연구기관>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경영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여성연구소, 법률행정연구소, <외부 컨소시엄기관>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동신대 동북아연구원, 한국동북아학회, 재외한인학회. 동북아평화연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해외협력기관>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CKAKS, 일본 오사카시립대, 중국 연변대, 우즈베크 타쉬켄트사범대, 카자흐 아딜렛법률대. <참여연구원> 책임자 1명, 공동연구자 37명, 전임연구자 13명, 보조연구원 25명(박사과정15, 석사과정9, 학부1) 등 76명. <연구비> 3년간 총27억2800만원(2003년 9억8820만원, 2004년 8억7160만원, 2005년 8억6820만원).

트위크”(2004.7. 14, 공동대표 이화영 · 고진하), 법무부¹⁴⁹⁾ 출입국관리국(現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정책추진단”(2004.1), “이민행정위원회”(2004.6), “출입국정책포럼(Immigration Policy Forum)” (2004.3), “이민행정연구회” 활동 등을 비롯하여 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한국이민학회(2007.2), “세계한인정책포럼”(PORKA, 2007.7),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정책포럼”(2007.1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발전연구원의 “해외 제주인 인적네트워크 효율적 구축을 위한 전문가포럼”(2007.11.9),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의 ‘다문화정책포럼’(2008.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다문화사회정책포럼” 등 현장을 중시하는 다양한 연구채널이 가동됐다.

또한 근대이민의 발상지인 인천광역시는 학술대회(2004~)를 통해 “근대이민”을 조명중에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도 2003년 이후부터 각 지역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자료수집과 “한민족 재외교민사” 정리 · 편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이다.¹⁵⁰⁾

다음 <표 18>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 재외국민참정권 허용 움직임 등 해외거주 동포사회의 국정참여 여부가 논란됐던 시기에 다루어진 대표적인 연구성과물들이다.

〈표 18〉 2003~2007년의 대표적 연구성과

구분	국내
2003	신숙옥, 『재일조선인의 가슴속』(십년후)/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미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65)/경북대재외동포연구소, 『동포논총』 5호/이덕희, 『하와이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중앙M&B)/김종회편, 『한민족문화권의 문학: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해외동포문학』(국학자료원)/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외국인증장기정책방향』/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39: 미주지역 한인이민사』/한준상, 『한인교포사회와 교육문제』(한국학술정보) cf. 金英達著: 飛田雄一編, 『在日朝鮮人の歴史』(明石書店)/田中由布子, 『ある在日朝鮮人一世との對話: '恨' と '怨' を乗り越えて』(明石書店)/金昌烈, 『朝鮮總聯の大罪: 許されざる、その人びと』(寶島社)/淺川晃廣, 『在日外國人と歸化制度』(新幹社)/ Hugo W. Kim, <i>Korean Americans and inter-Korean relations</i> (EastWest Research Institute)/Samuel Lee, ed. <i>Victorious out of the ashes: the most tragic incident in 100-year history of the Korean Americans</i> (Association)/ Roberta Chang; Wayne Patterson, <i>The Koreans in Hawaii: a pictorial history, 1903-2003</i> (Univ. of Hawaii Press)/Patrick D. Joyce, <i>No fire next time: Black-Korean conflicts and the future of America's cities</i> (Cornell Univ. Press)

149) 법무부, 『주요국가 이민정책 비교연구』(출입국기획과, 2004); 정인섭외, 『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법무부, 2004); 법무부, 『2005년도 출입국관리국 정책연구 보고서』(출입국관리국, 2006); 노병철 외, 『희망을 여는 약속: 법무부 변화전략계획』(법무부, 2006);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통계연보』(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07); 법무부, 『2005년도 출입국관리국 정책연구 보고서』(출입국관리국, 2006).
150)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론 39: 미주지역 한인이민사』(2003)에는 미국서부 한국인의 역사에 대한 개요(김영목)/한인미국이주의 시작-1903년 공식이민 이전의 상황진단(방선주)/하와이한인들이 하와이감리교회에 끼친 영향: 1903~1952(이덕희)/증가주 초기 한인이민사 개요(이자경)/묻혀진 미주한인 이민역사 자료발굴(서동성)/UCLA에 보관된 한국이민역사 관련 자료에 대한 개요(강미경)/USC가 소장한 한국인의 미국이민사 자료(켄 클라인)/미주한인이민사 자료의 현황과 수집방안(김점숙);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편람』(2005); 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 모색』(2005).

2004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중동포사회를 중심으로』(교포정책자료66)/경북대 재외동포연구소, 『동포논총』 제6집/국민대 한국학연구소, 『한인귀환과 정책』 1~5(일본·중국) cf. 大沼保昭, 『在日韓國・朝鮮人の國籍と人権』(東信堂)/櫻井龍彦編, 『東北アジア朝鮮民族の多角的研究』(ユニテ)/Mary Yu Danico, <i>The 1.5 generation: becoming Korean American in Hawai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Ilpyong J. Kim. ed., <i>Korean-Americans: past, present, and future</i> (Hollym)/Sarah J. Shin, <i>Developing in two languages: Korean children in America</i> (Multilingual Matters)
2005	윤병석, 『해외동포의 원류:한인, 고려인, 조선족의 민족운동』/김경근, 『재외한인민족교육의 실태』/해외교포문제연구소, 『교포정책자료』(교포정책자료67)/정진성, 「조총련조직연구」, 『국제지역연구』 14권4호(서울대)/김명재 외, 『재외한인의 법적지위와 기본권현황』(김문당)/국사편찬위원회, 『재외동포사회의 역사적 고찰과 연구방법론모색』/지구촌시대 한민족공동체포럼, 『지구촌시대 한민족공동체론의 의의와 과제』 cf. 朴一, 『在日コリアン』ってなんでんねん?』(講談社)/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30年史: 1974-2004』/李朋彦, 『在日一世』(リトルモア)/王清一 編, 『在日コリアン文化と日本の國際化: より開かれた出會いを求めて』(王利鎬日本學研究所)/金敬得, 『在日コリアン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法的地位』(明石書店)/ソニア・リャン,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 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明石書店)
2006	외교통상부,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재외동포재단, 『국외입양인백서』/김재기, 『세계화시대 글로벌코리아네트워크와 국가발전』(한국학술정보, 2006)/김영순, 『敗戦後の在日韓國・朝鮮人に對する日本政府の歸國政策』(원광대박사논문)/박진희,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연구』(이대박사논문)/국민대한국학연구소, 『한인귀환과 정책』 7~10(중국·대만)/인천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동북아한인공동체와 삶』/문옥표외, 『해외한인의 민족관계』(아카넷)/이자경저·멕시코한인이민100주년기념사업회편, 『멕시코한인이민100년사: 에네켄 가시발의 100년 오딧세이』/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25년사: 1981~2006』 cf. 姜徹, 『在日朝鮮人の人権と日本の法律』(雄山閣)/淺川晃廣, 『「在日」論の嘘: 贖罪の呪縛を解く』(PHP研究所)/在日本大韓民國民團大阪府地方本部編, 『大阪韓國人百年史』/歴史教科書在日コリアンの歴史作成委員會編, 『在日コリアンの歴史: 歴史教科書』/在日コリアンの日本國籍取得權確立協議會編, 『在日コリアンに權利としての日本國籍を』(明石書店)/Eunju Lee, <i>Gendered processes: Korean immigrant small business ownership</i> (LFB Scholarly Pub.)/Pyong Gap Min, ed. <i>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i> (Pine Forge Press)
2007	김남일 외,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 재일한인 100년의 사진기록』(현실문화연구)/성석제 외, 『100년을 울린 겐릭호의 고동소리: 미주한인이민사 100년의 사진기록』/임재완 외, 『재외한인단체의 형성과 현황: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김문당)/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디아스포라연구』창간호/정인섭 역음,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정상우, 『재외국민선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한국법제연구원)/한민족문화연대,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네: 해외입양인 에세이·시 모음집』 cf. 伊藤亞人・韓敬九編, 『中心と週縁からみた日韓社會の諸相』(慶應義塾大學出版會)/白井美友紀編, 『日本國籍を取りますか?: 國家・國籍・民族と在日コリアン』(新幹社)/文京洙, 『在日朝鮮人問題の起源』(クレイン)

이처럼 재외동포사회의 인적 <표 19> 2003~2007년의 대표적 연구성과물적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재외동포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NGO들의 활동과 전문연구가들의 학술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외동포법적지위 향상과 네트워크 적극 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연구소-대학-NGO-재외동포사회들도 점차 자기 전문분야에 집중하면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참고로<표 19>은 재외동포 관련 연구자(또는 연구집단)를 각 세대별로 분류한 내용이다.

<표 19>에 따르면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주체가 전문가그룹, 학자그룹, 연구단체 및 NGO 등 4개 그룹으로 나뉘며, 1세대·2세대·3세대·4세대가 모두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구자→연구소→대학→학회→NGO

36 ·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

〈표 19〉재외동포 관련연구 전문가·학자 세대별 분포

구분	전문가그룹	학자그룹	연구단체 및 NGO
1세대 (1960 ~ 70년대) ¹⁵¹⁾	김원용, 이구홍, 김상현 고승제, 홍승직, 문인구 등	이한기(故), 배제식(故) 등 국제법학자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정경연구소,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등
2세대 (1980년대) 152)	민관식(故), 김영광, 조일제, 박병윤 등	김찬규, 이광규, 박영순, 한준상 등	문화인류학회, 이중언어학회 등
3세대 (1990년대) 153)	이윤기, 양창영, 김병화, 서경석, 김해성 등	전경수, 한정규, 이종훈, 백영옥 정인섭, 노영돈, 윤인진, 이진영 정진성, 최영호, 최우길, 김태기 조정남, 정혜경 등	재외한인학회, 해외한민족연구소, 한일문제연구학회 등
4세대 (2000년대) 154)	교포정책포럼, 재외동포재단 (자문전문위원), 세계한인정책포럼 등	임채완, 김재기, 박호성, 진희관 김승일, 박승지, 송석원, 우평균 등	세계한상연구단(전남대), 지구촌 동포연대, 동북아평화연대, 재외 국민참정권연대, 재외동포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 포럼 등으로 점차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최근 쟁점분석

최근 5년간의 쟁점

최근 5년간은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로 그 어느 때보다 논쟁이 뜨거웠던 시기였다. 재중동포들의 불법입국·체류를 비롯하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위헌 논란과 개정 움직임,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재외국민보호, 병역기피 국적이탈자에 대한 처벌 주장과 이중국적 시비, 크리스티나 김[김초룡]의 정체성 시비, 로버트 김[김채곤] 복역사건에 대한 국가책임 논란,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주장,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불합치 판결 등 재외동포 관련 이슈는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¹⁵⁵⁾

언론들의 이슈제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주요언론들이 제기했거나 다루어졌던 재외

151) 재일교포사회 문제점 부각 & 해외이민 추진.
152) 재일·재미교포사회 현안과제 부각 & 해외우수인재 활용방안 논의.
153) 재중·재러/CIS동포사회 편입 & 현장방문 및 학제적 연구 전개.
154) 재일·재미·재중·재러·기타 교포사회 전체를 조망하기 시작 & 역사와 사실에 기초한 연구 전개.
155) 김봉섭,『한국 주요 정당의 교민정책 비교분석-한명숙 의원(안)과 권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2006.12)
참조: 진중권의 SBS 전망대(2005.9.6); MBC 백분토론(2005.7.7. 23:05-00:45); 최재천,『일명 ‘재외동포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2005.6.30)(http://www.cjc4u.or.kr/).

〈표 20〉재외동포 관련 이슈(소분류)

구분	참정권	동포법	이중국적/병역	한상	불법체류	동포정책	입양동포	국적회복	한글교육	다문화융합	재산반출	한인의날
2003	2	13	2	2	10	1	2	6	1	0	0	0
2004	2	3	0	3	7	3	5	2	1	0	3	0
2005	9	10	11	2	2	3	1	2	2	1	4	0
2006	1	1	4	8	0	6	2	0	6	3	1	0
2007	15	0	2	4	0	0	3	0	0	6	1	8
계	29	27	19	19	19	13	13	10	10	10	9	8

구분	취업	문학상	이사장인터뷰	재중동포	네트워킹	이주노동자	언론방송	동포교육	차세대	정치인포럼	CIS동포	예산	한인회장대회
2003	0	14	3	1	0	3	0	1	1	0	1	1	0
2004	2	1	0	4	2	2	2	1	0	0	2	1	1
2005	0	1	1	0	0	1	3	2	0	0	0	2	0
2006	4	0	3	2	3	0	0	0	0	1	1	0	0
2007	2	2	1	1	2	1	2	3	5	4	0	0	3
계	8	8	8	8	7	7	7	7	6	5	4	4	4

구분	영사업무	재단	이민사	디아스포라	재외국민보호	NGO	조총련	이민	모국장학생	정체성	문화공동체	전담부서	기타 ¹⁵⁷⁾
2003	2	0	0	0	0	0	1	1	0	0	0	0	
2004	1	2	0	2	1	2	0	1	1	2	0	0	
2005	0	2	0	1	0	0	1	0	1	0	1	1	
2006	1	0	0	0	1	1	0	0	0	0	1	1	
2007	0	0	4	0	1	0	0	0	0	0	0	0	
계	4	4	4	3	3	3	3	2	2	2	2	2	

동포 관련 이슈들의 내용은 다음 <표 20>과 같다.¹⁵⁶⁾

<표 21>에 따르면 초기(2003)에는 재외동포법, 불법체류, 국적회복 등 중국조선족 관련사항(2003년)이 주도했으나 2004년에는 불법체류 이외에 입양동포 관련사항이, 2005년에는 재외동포법 개정 이외에 병역시비와 관련된 이중국적과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사항이 부각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정책, 한글교육, 취업 관련사항이, 그리고 2007년에는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세계한인의 날, 다문화, 차세대,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이민사, 이중국적, 입양동포, 동포민족교육,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다양한 소재들이 주목받았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제기된 주요 이슈는 (1)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2)이중국적 허용, (3)출입국 및 취업 자유화, (4)재외동포기본법 등 동포 관련업무 총괄 법안 제정, (5)재외동포 전담기구(재외동포청, 대통령직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 설치 등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권익신장 관련 이슈들이 최대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한민족정체성 강화 등 동포사회 차세대문제, 한국문화·예술작품, 재외동

156) 언론재단(www.kinds.or.kr)에서 ‘재외동포’ 항목으로 검색(조선, 중앙은 제외)(2008.2.20 검색); 김봉섭, 「재외동포 전담기구 개편론의 의미와 향후과제」,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편, 『2008년도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 교포정책개발과 재외동포재단 비전설정연구』(2008), 206~214쪽 참조.
157) 한국어시험, 정책, 대통령간담회, 애니깽, 청년실업, 강제이주, 로버트 김, 과학기술자, 백과사전, 스포츠, 지방이전, 유공동포초청, 코리아넷, 한민족축전, 영화제, 교류, 활용, 신한은행, 인재유출, 중복사업, 해외유적지, 조기유학, 송도국제도시, 우투로, IT연수(각 1).

포 네트워크, 해외 우수인재 활용, 재외동포 정체성, 한글학교, 교포 언론방송, 미주 주류사회진출 및 정치력신장, 무국적자 국적취득 등도 이슈화되었으나 이들 5대 핵심이슈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다소 약했다.



사회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은 지속적으로 연구·비판받고 있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재외동포법, 한글교육·동포민족교육, 한상대회 등은 관심에 비해 상응할 만한 연구결과물이 적었다.

연구집단들의 논의주제

이 시기에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외한인학회, 해외한민족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등 교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집단들은 다음 주제들을 집중 논의하였다(<표 21> 참조).

이들 연구집단들은 언론에서 갖는 현안중심의 관심과 달리 과거-현재-미래의 연

<표 21> 주요 연구집단들의 관심사(2003~2007)

구분	발표·연구주제
해외교포 문제연구소 (교포정책포럼)	<2003년>재미동포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장태한)/재일동포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황영만)/재중동포사회의 현실과 미래상:중국공민이 우선인가, 한국의 동포가 우선인가(조성일) <2004년>재미동포사회의 현실과 바람직한 미래상(장태한)/재중동포사회의 현실과 바람직한 미래상(박금해) /재일동포사회의 현실과 바람직한 미래상(김경득)/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모색(한명숙) <2005년>해외동포와 조국-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한다(신호범)/한국주요정당의 동포정책비교분석(김봉섭)/재미동포사회의 현실과 당면과제(장태한)/재일동포사회의 현실과 당면과제, 귀화는 비애국적인가(한창우)/재중동포사회의 현실과 당면과제 <2006년>일본 사회의 재일동포에 대한 동화정책변화와 추이(박병윤)/재미동포사회의 시민권획득 추이와 아이덴티티(한우성)/중국 조선족의 현실과 바람직한 미래상(김병호) <2007년>재일동포의 일본 지방참정권 획득현황(하정남)/미의회 위안부결의안통과와 그 교훈(김동찬)/남북정상 회담합의문(제8항)에 따른 해외동포지위향상을 위한 남북공동추진방안(박병윤)/중국 소수 민족(조선족)정책은 왜 민감한가(이진영)/ 재외동포참정권 어디까지 왔나(양창영)/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발전방향(정영국 외)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2003년>중국조선족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고찰(허명철)/경계 안팎의 여성 조선족: 삶의 특성과 사회적 인식(김귀옥)/한중관계와 조선족문제: 최근 중국에서의 논의와 한국정부의 선택을 중심으로(최우길)/1990년대 이후 국민국가 독일의 재러 독일계 동포이주자에 대한 정책 고찰(김명희)/캐나다 한인의 이주와 사회적응(윤인진)/중국조선족의 언론현황과 언론관에 관한 조사연구(김원태)/중국 조선족의 도시이주, 사회적응, 도시공동체: 청도 사례연구(윤인진)/중국의 화교, 화인정책 및 특징(정신철, 주경홍)/CIS 및 발트지역 고려인사회의 민간네트워크(임영상황영삼)/한국인 여성의 국제이동과 취로:1980년도 이후를 중심으로(유연숙)/프랑스에 입양한 한국고아의 사회적 적응과 정체성의 형성(임봉길) <2004년>사회조사방법을 통한 재외한인연구(윤인진)/시베리아철도와 고려인들의 이주과정(이철우)/탈북자 고문피해실태(변주나)/세계화와 중국 조선족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박광성)/한민족 네트워크와 재아르헨티나동포(박채순)/미주한인기업 실태조사(장선미) <2005/6년>외국국적동포의 노동시장분석(설동훈)/미국 L.A. 한인단체와 다민족관계(이정덕, 전봉수)/제일코리아기업가의 네트워크 현황 및 활성화방안(임영언)/호주한인동포-그 역사와 정체성(양명득)/제러한인의 현황과 주요과제-연해주 고려인 농업 정착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신상문)

〈표 23〉재외동포 관련 연구주제(소분류)

구분	해외		재외		재일	재미	재중	재소	해외	공동체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재일							재미		C I S		중국		한상	비고							
	교민	국민	교포	동포									한인				한민족		한국인	조선인	한국조선인	코리아인	한인	민단	총련			교포	동포	한국인	고려인	동포	조선족	동포
50년대	-	-	-	-	-	2	1	-	-	-	-	-	1	11	-	2	3	-	-	2	-	-	-	-	-	-	-	-	-	-	단행 일반 학위			
60년대	-	3	-	1	-	-	-	-	-	-	-	-	3	5	4	1	-	-	2	-	-	-	-	-	-	-	-	-	-	-	단행 일반 학위			
70년대	-	5	-	2	-	-	-	-	-	-	-	-	1	5	21	2	-	-	2	1	-	-	-	-	-	-	-	-	-	-	단행 일반 학위			
80년대	2	15	7	13	1	1	-	2	-	3	3	-	-	2	36	9	-	-	3	-	2	3	10	2	-	17	-	1	1	단행 일반 학위				
90년대	23	14	18	46	30	5	13	33	12	55	14	10	1	-	27	56	20	9	3	14	5	-	35	11	4	27	3	327	55	-	단행 일반 학위			
00년대	2	2	1	7	39	19	7	9	4	4	20	2	9	5	2	10	18	7	5	6	3	6	2	-	-	19	-	76	7	9	단행 일반 학위			
소계	77	81	60	89	165	20	60	123	16	74	32	46	26	-	222	241	110	18	13	67	42	24	117	38	17	16	5	841	111	18	단행 일반 학위			
계	94	111	68	137	238	44	79	143	24	91	83	56	38	8	248	311	238	62	21	84	57	37	134	49	32	194	7	1191	134	29				

포법제 등 3대 부분이었고, 재외동포의 역할 · 활용, 이민사, 한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결국 <표 20>,<표 21>,<표 22>에서 나타나듯이 주요 언론에서 제기한 이슈들과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자의 연구주제 상호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즉, 사회적 이슈에 상관없이 재외동포정책은 지속적으로 연구 · 비판받고 있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재외동포법, 한글교육 · 동포민족교육, 한상대회 등은 관심에 비해 상응할 만한 연구결과물이 적었다. 또한 입양동포 · 이중국적 · 참정권 등은 아직 초보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세계한인의 날, 다문화사회, 차세대인재,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에 관한 전문적 연구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대 쟁점사항

최근 5년을 되돌아보면 이종훈(2004)은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관련법정비, 재외국민참정권 부여,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재외동포 관련사업과 예산 등을¹⁵⁹⁾,

159) 이종훈,「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주요 현안」,『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한국 · 러시아 · 중국 · 이스라엘 · 헝가리 정책분석과 비교)』(2004.9.10).

최우길(2005)은 재외동포정책 부재, 재외동포법 논란, 재외동포정책 집행기관(정책위원회 · 외교부 · 재외동포재단) 등을¹⁶⁰⁾ 미주한인회총연합회(2008)은 재외국민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이중국적 허용 국적법 개정, 재외국민대체복무를 위한 병역법 개정,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위원회 제정,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한글교육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교육지원법, 영사직렬 분리를 위한 외무공무원법 개정, 사할린 · 연해주거주 동포지원법 및 예산증액 · 관련부처 예산통합 등을¹⁶¹⁾ 각각 문제시켰으나 이 글에서는 주요 이론적 쟁점 6가지에 국한해서 살펴본다.

공식호칭 정립문제¹⁶²⁾

우선 정부 공식문건에서 나타났던 호칭들은 재일동포 · 재일한국인 · 해외교포¹⁶³⁾, 재일한교¹⁶⁴⁾, 재일한인¹⁶⁵⁾, 재일교포¹⁶⁶⁾, 재일본한국인¹⁶⁷⁾, Korean Residents in Japan¹⁶⁸⁾ 등 너무나 다양했다. 손태근(1983)은 “우리 국민으로 남아 있는 해외이주자”를 교포라고 정의하면서 교포와 동포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¹⁶⁹⁾ 그러나 이에 대해 이구홍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호칭 통일”을 20여년 전부터 줄곧 주장하고 있다.

60만 재일교포의 장래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의 총체적 이름입니다. 즉 재일한국인이냐 재일동포냐 재외국민이냐, 여러분

160) 최우길, 「한민족공동체와 재외동포: 새로운 동포정책수립을 위한 시론」, 『2005년도 개천절 기념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지구촌시대 한민족공동체론의 의의와 과제』(지구촌시대 한민족공동체포럼, 2005).

161)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외동포정책: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동포정책토론회』(2008. 1.17).

162) 개념적으로는 교민(僑民), 해외교포(海外僑胞), 재외동포(在外同胞), 재외한인(在外韓人) 등이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 같으나 사실상 많은 차이가 있다. 이구홍에 따르면 내국민과 해외교포들 상호간에는 서로를 동포(同胞)라고 부를 수 있지만 재일동포와 내국민 상호간에는 서로를 교포(僑胞)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한다; 원래 교(僑)란 화교(華僑)에서 나온 말로서 중국인들은 “중국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해외화인”(僑是指具有中國國籍, 僑居海外的華人)을 뜻할 때 사용하며, “외국거주 화교들의 자손으로서 거주국의 국적을 이미 취득하고 중국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華裔是指華僑在外國所生的兒女子孫, 且已取得居住國的國籍, 沒有中國的國籍)은 화예(華裔)라 불러 서로를 구별한다.; 本條例適用之對象, 爲僑居國外國民. 但具有(中國)大陸地區人民, 香港居民, 澳門居民身分或持有大陸地區所發護照者, 不適用之(中華民國華僑身分證明條例第三條); 歸僑是指回國定居的華僑. 華僑是指定居在國外的中國公民(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第二條).

163) 「재일동포중 일부 악질분자 강제송환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1951.7.16, 외무부장관이 주일대사에게).

164) 외정 제964호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165) 한일대 제2331호 「재일한인의 국적문제에 관한 청훈의 건」(1951.9.10, 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가 외무부장관에게).

166) 「재일교포고문치사사건에 관한 유태하 참사관 담화」(1955.9.7); 「일본정부에 의한 교포의 북한송치를 비난한 조정환 외무부장관 성명」(1957.3.11).

167) 「재일한인복송에 관한 국회 제2차 본회의의 결의문」(1959.2.20).

168) 「일본외무대신과 주일대표부 수석간의 합의의사록」(1957.12.31).

169) 손태근, 「83십포지엄-재미한국인의 현황과 과제」(1983.11.29) 토론시 답변, 『교포정책자료』제24집(1985), 171쪽 참조.

60만 동포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야 합니까 · 명칭은 여러분의 지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재일한국인이라면, 다시 말해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반외국인이 아니라 협정영주권을 가진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재일한국 · 조선인이란 명칭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2개의 국가, 2개의 민족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 여러분의 권익 운동보다 민단과 조총련을 포괄하는 60만 재일동포의 총체적 명칭을 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일동포는 조총련, 귀화인을 포함하여 한겨레라는 의미로 폭넓게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해외동포』31호(1989.5), '대담: 재일동포사회의 장래를 조명한다' 중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외동포들로부터 무형유형의 많은 지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바가 크지만 본국 국민과 정부의 해외교포관은 너무나도 편협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헌법조문과 우리의 그것을 비교해서도, 행정기구에서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는 국회 쪽에서 보아도 그렇다. 폐일언하고 5백만 동포들의 호칭 하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외동포', '해외교포', '재외국민', '재외동포', '해외한민족', '교민' 등 호칭하나 제대로 정립해 놓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인은 이 지면을 빌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해외동포는 민족의 자산이란 시각전환을 전제로 하여 첫째, 5백만 해외동포의 호칭을 정립한다(해외한민족, 해외교포)(『교포정책자료 35집: 해외동포가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1993.12), '정부에 제언한다' 중에서)

한편 화교를 “본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사는 중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북한에서도 “자기 나라를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해외교포’로, “다른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조선민족”을 ‘해외동포’로 부르고 있다. 이 역시 명확한 구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¹⁷⁰⁾

이런 상황에서 1995년 김영삼 정부는 그동안 혼용됐던 교민, 교포, 재외국민, 해외동포 등의 용어를 정리하여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이주민과 체류민을

170) 백과사전출판사,『조선대백과사전』24권(2001), 643쪽;『조선대백과사전』25권(2001), 165쪽. '해외교포운동', '해외동포방송', '화교' 항목 참조. 해외동포에는 재일동포, 재중동포, 재로씨야동포, 재외조선국민 등이 포함; 김일성,『조선해외교포운동에 대하여』(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 주체 67(1978)년 11월 18일』(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재서독교포 윤이상과 한 담화: 주체 68(1979)년 10월 11일』(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해외교포의 운명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의 운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대표적인 우리나라 해외교포조직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이다.”

‘재외국민’으로, 우리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한민족까지를 포괄하여 ‘재외동포’로 공식화했고¹⁷¹⁾, 재외동포재단법 제정과 재외동포재단 설립으로 호칭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표 24>에서 나타나듯 재외동포 관련 호칭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재외동포를 지칭하는 호칭이 해외교민, 재외국민, 해외교포, 재외동포, 재일한인, 재외(재일·재미·재중·재소)한인, 해외한민족, 한민족공동체, 한민족네트워크, 한민족디아스포라 등으로 점점 늘어났으며, 특히 재일동포사회의 경우에는 재일교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한인 등이 혼용되어 사용됨으로써 상호간의 개념정의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재외동포 호칭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한국국적을 갖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재외교민·해외국민·재외국민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계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해외동포·재외교포·해외교포로 정의한다거나 중국 화교처럼 “한교”(韓僑)라는 용어를 재

〈표 23〉재외동포 관련 호칭 빈도수(제목별)¹⁷²⁾

구분	해외		재외		재외	재일	재미	재중	재소	해외	공동체	네트워크	디아스포라	재일							재미		C I S		중국	한상	비고					
	교민	국민	교포	동포	한인				한민족		교포	한국인		조선인	한국조선인	코리안	한인	민단	총련	교포	동포	한국인	고려인	동포				조선족	동포			
50년대	-	-	-	-	-	-	2	1	-	-	-	-	-	1	11	2	3	-	-	2	-	-	-	-	-	-	-	-	-	단행 일반 학위		
60년대	-	3	1	2	11	-	-	-	-	-	-	-	-	3	85	5	1	4	1	-	2	3	-	-	-	-	-	-	-	단행 일반 학위		
70년대	-	5	6	19	10	7	-	-	2	5	-	-	-	1	22	5	23	1	21	2	-	2	1	1	1	8	1	3	-	-	단행 일반 학위	
80년대	2	7	13	17	12	1	1	1	-	2	-	3	3	-	2	68	95	4	11	36	9	-	3	-	2	3	3	9	2	-	단행 일반 학위	
90년대	2	4	4	4	27	9	3	1	5	2	6	18	6	1	-	4	11	33	24	20	9	3	14	5	-	35	11	4	27	3	-	단행 일반 학위
00년대	32	33	4	24	134	15	39	70	4	6	14	36	25	-	2	9	61	85	18	7	5	6	3	6	2	-	19	-	76	7	9	단행 일반 학위
소계	77	81	8	21	88	165	20	60	123	16	74	32	46	26	-	22	241	110	18	13	67	42	24	117	38	17	16	5	841	111	18	단행 일반 학위
계	94	111	68	137	238	44	79	143	24	91	83	56	38	8	248	311	238	62	21	84	57	37	134	49	32	19	7	1191	134	29		

171)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재외동포재단설립문제: 재외동포재단법안을 중심으로』(1996), 3~4쪽.
172) 국회도서관(<http://u-lib.nanet.go.kr:8080/dl/SearchIndex.php>)에서 각 주제어별로 검색.

도입하고 있다.¹⁷³⁾ 또한 정부에서조차 재외동포의 날을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로 명명하면서 호칭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재일동포사회의 경우에는 재일교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한인 등이 혼용되어 사용됨으로써 상호간의 개념정의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중국의 화교·화인이나¹⁷⁴⁾ 이스라엘의 유대인(Jewish)처럼 연구자들 스스로 개념정의(예: 한교·한인)와 호칭상호간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¹⁷⁵⁾

재외동포사회의 건의수렴문제

최근 몇 년 간 제기됐던 재외동포정책 건의안 내용들만 살펴보더라도 재외동포사회가 모국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날, 재외동포재단과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해외동포정책포럼”(2003)을 개최한 후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작성한바 있다.¹⁷⁶⁾

첫째, 재외동포법 개정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주기를 요망한다. 둘째,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주시기를 희망한다. 셋째, 재외동포정책추진체계의 강화를 희망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격상시켜 대통령직속 독립행정위원회로 만들고 여기에 실무조직을 설치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넷째, 신정부의 국정과제추진을 위한 ‘동북아중심국가건설위원회’ 내에 한상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구의 구성, 운영을 요망

173) 윤인진, 「남한과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한민족연구』 제4호(2007), 37~38쪽; 김석후, 「자유중국의 화교정책: 재일한국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민족문화』 5권 4호(민족문화사, 1960.4), 24~28쪽 참조; 김승일은 ‘한교’라는 용어는 한국인의 피를 나누면서 일시적인 거주가 아닌 이들 지역에 생활근거지를 갖고 있는 한민족, 즉 러시아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일본의 재일동포, 북한과 동남아시아에 산거하고 있는 한국인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한국인을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174) 화교: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및 그 후예(1909년 淸 국적법 초안)→교민: 외국에 거주하는 중화민국인민(1924.1 손문이 발표한 내정부 교무국 보호교민專章)→화교: 외국(홍콩·마카오 제외)에 거주하는 중국국민(유학생·관광객·정부파견공무원·변경주민 제외)(1957.12 중화인민공화국화교사무위원회)→화교: 해외에 살면서도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국민이자 외국에서 기반을 잡고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정주자(1984년 중국국무원 교무판공실) 이때부터 현지국적을 취득한 중국인과 그 후예는 화인(華人)·화예(華裔)으로, 중국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은 귀교(歸僑), 재외화인들의 중국내 가족은 교권(僑眷)으로 구분.

175)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朱漢源 교수의 3대원칙(①대만·중국·해외화교의 3자 입장 고려, ②국적인정정책에서 속지주의 채택, ③중화민족의 다원일체(정치의 다원화, 문화의 일체화) 참조.

176) 『노무현대통령취임기념 해외동포정책포럼』(2003.2.25,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104~105쪽 참조.

한다. 다섯째, 재외동포관련 예산의 대폭증액을 희망한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재외동포의 전체 국민 대비 비율과 재외동포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해주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재중동포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주기를 희망한다. 강제퇴거과정에서 재중동포 누구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주기를 기대한다. 일곱째, 동포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동포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요망한다. 여덟째, 재일동포금융기관의 보호와 육성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재일동포금융기관은 이 지역 민족경제의 근간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4가지 현안해결(재외동포법·재외국민참정권·재중동포불법체류자강제퇴거·재일동포금융기관보호육성)과 4가지 정책개선(재외동포정책위원회 격상·한상네트워크관련기구 구성·동포관련 예산 증액·동포관련 업무일원화)이 대정부 건의안의 핵심이다.

그 후 재외동포재단과 전 세계 한인회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세계한인회장대회” 때마다 결의문이 작성되어 정부당국에 제출되고 있다(<표 24> 참조).

재외국민기본법 제정과 재외국민참정권 회복, 민족교육강화와 차세대육성지원, 일본지방참정권운동 지원, 모국발전기여 및 해외기념행사지원 등 권익신장과 인재육성 관련 주제들은 매년 빠지지 않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 위상(승격·이전 반대·동포센타건립)이나 한인회 대표성 및 지원일원화 등 기구와 관련된 문제 이외에 북한핵포기 및 일본역사의식 촉구, 재외동포정책 개선 및 병역법 정비 등 시사성이 강한 주제들도 언급된 바 있다.

물론 모국정부나 정책결정자들이 이런 재외동포사회의 건의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지만 연구자들이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민족교육강화 및 차세대

〈표 24〉 세계한인회장대회 결의문 내용

구분	북한핵포기 촉구	재외국민기본법 제정	재외국민참정권 회복	동포정책개선? 병역법 정비	일본지방참정권운동 지원	민족교육강화? 차세대 지원	모국발전기여	재외동포재단 동포청 승격	한인회 대표성 인정? 일원화	일본역사의식 재정립 촉구	재단이전 반대 센타 건립	비고 (발표 일자)
2003년	○(2)	○(1)	X	○(5)	○(6)	○(4)	○(3)	○(7)	X	X	X	03.8.21
2004년	○(1)	○(2)	○(3)	○(4)	○(5)	○(6)	○(7)	○(8)	X	X	X	04.6.2
2005년	○(1)	○(2)	○(3)	○(4)	○(5)	○(6)	○(7)	○(8)	X	X	X	05.7.14
2006년	X	○(3)	○(3)	X	○(5)	○(4)	○(6)	X	○(1)	○(2)	X	06.6.8
2007년	X	○(3)	○(3)	X	○(5)	○(2)	○(6)	X	○(1)	○(5)	○(4)	07.6.21
채택회수	3번	5번	4번	3번	5번	5번	5번	3번	2번	2번	1번	

육성, 일본지방참정권운동지원, 한인회 위상강화, 재외동포정책 개선 등 재외동포들이 관심 갖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들을 면밀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문제

교민처(청) 설립에 대한 주장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제기됐다. 국회 민의원 옵서버를 역임했던 이원범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재건최고회의(법사위원회)에서 교민청 설립에 대한 내부검토가 있었으나 겨우 결실을 맺은 것은 외무부내 교민과였다고 한다.¹⁷⁷⁾ 이후 해외교포문제연구소·재일민단 등 각계에서 교민처(청) 설립을 요구하는 건의가 끊이지 않았고, 전두환·김영삼·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들도 교민청 설립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내 반대의견과 여러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헌법 재외국민보호조항(1980), 재외동포재단 설립(199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1999) 등으로 우회해왔다.

사실상의 교민청 역할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 출범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제16대와 제17대 국회에서 재외동포재단을 폐지 또는 대체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처럼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한 논란

〈표 25〉 전담기구 신설을 주장하는 의원 발의 재외동포 관련 법안

구분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안)	재외동포기본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조흥규 (2003. 5. 6발의, 2003. 11. 18 수정안, 의안번호 162266)	열린우리당 한명숙 (2005. 4. 13 발의, 의안번호 171641)	민주노동당 권영길 (2005. 12. 16 발의, 의안번호 173635)
전담 기구	재외동포에 관한 제반 문제 에 대처하는 등 정책을 중 합·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소속하에 재외동포위 원회를 둔다(별도의 법률)/ 수정안에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변경	교육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수 립·중앙행정기관의관련정책·계획 심 의·조정·집행하는 대통령 소속 재외 동포교육문화위원회를 둔다/합의 제 15인 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3년 임기·1차 연임), 사무처(처장 1인)	동포관련 제도·정책수립·심의·집행 위하여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 회를 둔다/위원회는 권한에 속하 는 업무를 독립 수행/합의제 15인 위원회(위원장 1인 , 상임위원 2 인 포함, 3년 임기·1차 연임), 사 무처(처장 1인), 분과위원회(전문 위원)
사무처	위원회 사무처	위원회 사무처리(사무처장 1인, 필요 직원 약간)	위원회 사무처리(사무처장 1인, 필요 직원 약간)/업무수행에 필요 한 경우 해외사무소 설치
동포 재단	동포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재외 동포재단을 둔다(별도의 법 률 제정)/수정안에서는 재 외동포재단 조항 삭제	법 공포후 6월 재외동포재단법 폐 지, 재단은 자동 해산, 위원회가 자산·권리 포괄승계, 임직원 임용 특례	법 공포후 재외동포재단법 폐지, 재단은 자동해산, 위원회가 소관 사무 승계, 임직원 임용특례

177) 김봉섭,『한국 주요 정당의 교민정책 비교분석-한명숙 의원(안)과 권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2006.12)
참조. “재일민단 문교국장과 3대 민의원 국회옵서버(2회 역임) 출신의 이원범(해외교포문제연구소 명예이
사장)은 5·16직후 당시 이석채 법사위원장을 만나 교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브리핑했다고 한다.”

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담기구문제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되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표 25> 참조).

지난 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08.1.21) 제25조 ①(외교통일부)에 따르면 “외교통일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과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 내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자 전담기구 설치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도 뉴욕방문시(08.4.15~16) “일 잘하는 동포재단”을 언급했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조직 제2단계(공공기관) 구조조정작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통폐합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련 정책들이 분산되어 있고 관련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는 현재의 재외동포지원체계로는 급변하는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는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영성한 분립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 설립(1997) 이후에도 설치목적이 서로 다른 정부부처·기구들이 동일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저마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분산구조가 심화·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외교통상부(재외동포영사국)가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으나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여전히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¹⁷⁸⁾들과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통 등에게까지 분산되어 있다. 이런 업무 분산이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1996)를 설치하고, 재외동포지원 전담기관으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 (1997)을 설립하였으나 정책의 개선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업무분산구조 해소나 동포지원 전담기구화는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및 사업구조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동

178) 재외동포단체지원 및 재외국민보호업무는 외교통상부, 무역·투자 등 경제분야의 유대강화는 지식경제부, 해외이주자의 이주비와 국내재산 처분대금의 반출 등은 기획재정부, 민족교육은 교육부, 문화·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취업 근로자 관리는 노동부, 외국시민권자의 국내부동산 처분의무관리는 국토해양부, 병역관계는 병무청, 국적 재취득과 출입국문제는 법무부, 재외동포의 국내거류 관리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 북한방문관계는 통일부가 각각 맡고 있다.

포재단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⁷⁹⁾ 만약 유관기구들간의 통합문제를 논의하려면 그 우선순위가 동포관련 정책통합→사업통합→기구통합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며¹⁸⁰⁾, 통합의 대원칙도 예산(기금)확보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족공동이익과 국익에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김봉섭은 교포정책포럼(2007)에서 재외동포재단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¹⁸¹⁾

향후 10년의 비전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다음의 7가지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첫째, 재단 조직운영 및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한다. 둘째, 국민과 해외동포로부터 신뢰받는 재단(투명성·전문성)이 된다. 동포를 이해하고 동포 속으로 찾아가며 동포와 협력하는 재단이 된다. 셋째,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존정책과 사업방식은 과감히 탈피한다. 넷째, 단순 예산지원 또는 은행창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과(outcome)를 창출하고 고급정보를 수집·가공·배분하며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싱크탱크로 키워나간다. 다섯째, 동포권익을 최우선 보호하되 보편적 세계주의(인권·민주주의·세계평화·환경보호·약자지원)와 동포사회 자율의 틀을 최대한 견지해나간다. 여섯째, 자립·자존하는 재외동포사회像을 정립해나간다. 일곱째, 동포의 사기가 한곳으로 결집되는 한민족네트워크의 중추기관이 된다.

이상의 일곱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재단의 미래존재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포관련 사업을 독점(또는 전담)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재단의 역할이 변화되는 만큼 동포사회의 질적 변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백화점식 다양성을 지양하고 독창적인 사업을 특화시켜나가면서 재단활동을 글로벌화(해외 우수 재단과의 교류·협력), 전문화(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효율화(민간기관들과의 역할조정 및 분담체제 구축) 등이 추진되어야 보다 나은 동포사회의 미래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리라 본다.

179) 하는 일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되어야 함. 예: 외교통상부 정책수립기능 강화(동포영사국, 재외공관 역할 재정립),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사업기능 강화(기능강화를 위한 재단법 개정) 등.

180) <1단계> 동포관련 정책통합이 최우선 과제: 재외국민보호정책(외교부), 재외동포지원정책(외교부), 재외동포교육정책(교육부), 재외동포출입국관리정책(법무부), 재외동포문화예술인정책(문화부) 등 관련 정책간 우선순위 확립 시급/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제2차관) 등의 기능 재점검(※→세추위 운영 참조) <2단계> 동포 관련 정책 상호간에 통합의 범위와 수준이 결정되면 사업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 각 부처별 관련법 재정비(개정·폐지 또는 신설), 사업이관·사업폐지 범위 수준 결정 <3단계> 유사 지원기구간의 통합은 가장 마지막: 조직(인원) 효율화 및 사업(예산) 효과 기대.

181) 김봉섭, 『2008년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08), 271~272쪽 참조.

따라서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문제는 “어떻게 해야 재외동포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함양하면서 거주국 모범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외동포 사업대상 범위문제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거권의 자격요건을 ‘주민등록의 유무’로 삼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판결인 ‘헌법불합치’ 결정(2007.6.28)을 내리면서 국회가 관련법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¹⁸²⁾ 이에 따라 2009년 이후부터는 해외거주 한국국적자인 ‘재외국민’들도 본국선거에 투표할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영주목적의 재외국민들에게까지 국내정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학계·전문가 사이에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이는 포함 또는 배제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재단법(1997)에 사업대상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자”로 한정 명시하고 있다. 재단법에 따를 경우 단기체류자·주재상사원(가족)·유학생·정부파견 공무원·불법체류자·무국적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2007년 현재,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재외동포를 170여 개국 70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은 287만5800명¹⁸³⁾이며, 나머지 404만 7934명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된다. 재외국민 중에는 단기체류자·주재상사원(가족)·유학생 등 144만4343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주목적의 재외국민(142만 7590명)¹⁸⁴⁾과 외국국적동포 등 560만 명 정도만이 넓은 의미에서의 사업대상자인 셈이다.¹⁸⁵⁾

한편 이종훈(1996)은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182) 재외국민 참정권문제는 재외국민의 국정참여권 회복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6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 공직선거법 제15조 2항, 제37조 1항,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등을 국민기본법 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183) <외교통상부 자료> 일본지역 576,220명; 중국지역 519,409명; 기타 아주지역 363,090명, 미주지역 1,322,000명; 구주지역 77,644명; 중동지역 9,145명; 아프리카지역 8,292명(07.8.14 현재).

184) <외교통상부 자료> 일본지역 480,320명; 중국지역 1,123명; 기타 아주지역 55,967명, 미주지역 875,143명; 구주지역 14,575명; 중동지역 15명; 아프리카지역 447명(07.8.14 현재).

가 향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¹⁸⁶⁾ 이에 대해 이광규는 입양아·국외 혼혈인 이외에 국제결혼 부인과 북한동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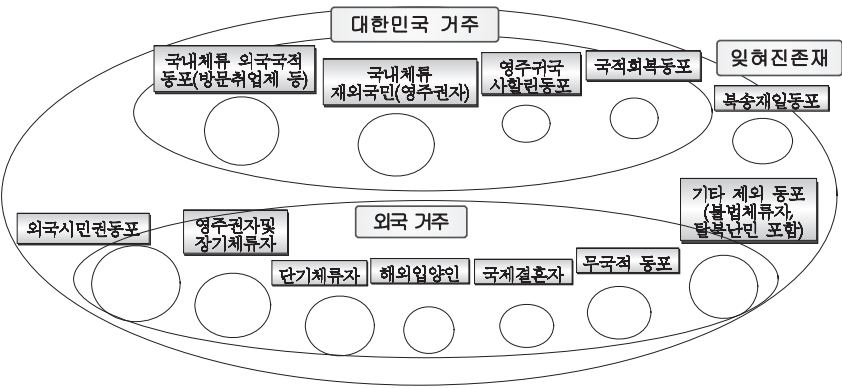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법(1997: 혈통주의)과 재외동포법(1999: 과거국적주의) 상호간에 서로 다르고, 16대~17대 국회에서 입안됐던 재외동포기본법(안) 상호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함시켰고¹⁸⁷⁾, 백영옥은 혈통과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했다¹⁸⁸⁾, 윤인진(2000)은 다중정체성에 입각한 “열린 민족”¹⁸⁹⁾ 개념을, 이종철(2000)은 혈통·문화·의식·

〈표 27〉 주요 부처·기관 사업대상 범위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	법무부 (출입국관리)	교육과학부 (재외동포교육)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활동지원)
해외여행자, 주·장사원, 유학생 등 귀국을 목적으로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재외국민	국적이탈 및 회복자, 외국국적 재외동포출입국(귀국) 체류관리(거소신고, 이중국적자 체류관리 등)	재외동포교육계획 수립 및 한국교육원운영, 귀국학생 교육	이민을 전제로 거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이민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적 동포/광복 전 유이민의 형태로 해외에 이주한 외국적 동포(후손 포함) 및 이로 인해 무국적 상태에 처한 동포/재단 설립 이후 재외동포 관련사업을 전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NGO 지원/방문취업제 등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체류동포 지원 및 귀국 후 친한활동 강화 지원 등

〈그림 2〉 재외동포의 다양한 범주



185) Daniel J. Elazar, Community & Polity: The Organizational Dynamics of American Jewry(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5), p.92 참조. 재미유대인들이 공동체 참여도에 따라 자신들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유대인의 달력주기에 따라 생활하는 완벽한 유대인들(Integral Jews: 25만~45만), ②정기적인 기초(회당) 위에서 유대식 생활에 관계하는 참여자들(Participants: 50만), ③구체적인 방식으로 유대인의 기관·단체에 가입한 회원 유대인들(Affiliated Jews: 140만~180만), ④때때로 기금을 출연하거나 그리고/또는 유대인 제도들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부자와 소비자들(Contributors & consumers: 140만~180만), ⑤어느 정도는 유대인으로 인정되나 유대식 생활에 완전히 관계되지 않는 주변인들(Peripherals: 100만), ⑥자신들의 유대인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기를 꾀하는 거부자들과 탈퇴자들(Repudiators & converts-out: 30만~60만), ⑦족외결혼의 결과로 유대인의 신분이 불명확하거나 다른 종류에 동화된 의사(擬似)유대인들(Quasi-Jews: 2백만).

국적·가족 등을 연계한 “확대된 민족공동체”¹⁸⁶⁾ 개념을 각각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외동포의 개념정의 역시 재외동포재단법(1997: 혈통주의)과 재외동포법(1999: 과거국적주의) 상호간에 서로 다르고, 16대~17대 국회에서 입안됐던 재외동포기본법(안) 상호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에서는 재외동포재단 기능점검(2005.6)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대상 확대를 검토한 바 있었지만 원안에 있던 “국내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는 빼고 “NGO와의 협력방안”이 들어가는 선에서 조정된 바 있다.¹⁹¹⁾ 이는 국외거주 재외동포만을 사업대상으로 보는 외교통상부의 시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표 27>,<그림 2> 참조).

따라서 사업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정부는 정부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논란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국민(영주권자) 부재자투표문제

재외국민 해외부재자투표는 1966년과 1972년 두 차례 실시된 바 있다.¹⁹²⁾ 그러나 유신헌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1980년 헌법에 재외국민보호 조항(제2조 ②) 신설했던 제5공화국 정부에 의해 해외부재자투표의 부활이 한 차례 검토되었고¹⁹³⁾,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신한국당에서도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검토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¹⁹⁴⁾ 또한 1998년 김대중 정부와 새천년국민회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투표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외동포법적지위 특례법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했으나¹⁹⁵⁾ 외교통상부가 이를 정면 반대했

18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앞의 글(1996), 13쪽 참조. “특히 모계나 부계 한 쪽이 한민족인 경우, 대상 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생각건대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입양인은 물론 국외의 혼혈인까지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하지만 대상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는 만큼 한민족의 범위 설정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7) 『김대중대통령 취임기념 교포정책포럼』(1998.2.25), 90쪽 참조.

188) 백영옥, 『한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교포정책』(민족통일연구원, 1993), 7쪽 참조.

189) 윤인진, 「남북한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평화문제연구소 2000년 재외동포초청 통일문제세미나, 2000. 6.27), 16~20쪽 참조.

190) 이종철, 「이산가족문제와 재외동포정책」(평화문제연구소 2000년 재외동포초청 통일문제세미나, 2000. 6.27), 66~67쪽 참조.

191) “첫째, 재외동포 전문기관으로서 각 부처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정보·지식의 구심적 역할). 둘째, 재외동포 관련 NGO와 연계 및 지원 강화(사업의 효율화 및 民官네트워크 구축 추진). 셋째, 모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재외동포들의 경제적 실익도 달성할 수 있는 윈윈방안 마련. 넷째, 차세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수요변화 반영(차세대 동포지원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소외지역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사할린·CIS지역 등, 소외지역 수요 반영). 여섯째, 재외동포 및 동포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강화(국가발전에 기여할 소중한 자산 이미지 제고 및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내의 지지기반 확보)”.

192) 국회안보통일포럼, 『연구활동현황, 2002』(2003) 참조.

193) 《중앙일보》 1980.10.22(1면).

194) 《중앙일보》 1997.7.31(2면).

고¹⁹⁶⁾, 언론들도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¹⁹⁷⁾

한편 재외동포사회는 “해외동포와 조국참정권회복을 위한 시민연대”(1995, 이진우)를 조직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소(1997, 2004)했고¹⁹⁸⁾, 황영만(1999) · 김제완(2000)¹⁹⁹⁾ · 이종훈(2002)²⁰⁰⁾ · 현명철(2004)²⁰¹⁾ · 박채순(2007)²⁰²⁾ · 김민호(2007)²⁰³⁾ · 이병훈(2007)²⁰⁴⁾ 등은 허용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황영만(재일민단중앙본부 사무총장)은 “재외동포사회에서 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1999)이라는 글에서 재일동포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대변했다.²⁰⁵⁾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자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번 특수조치법에 새삼 부여한다고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일부 시행조치가 미비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장기체류를 해도 선거인명부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본국 내에서의 거주증명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되면 공식선거법 및 시행령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외국민의 거주국 현지에서의 선거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시안 수정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재일한국인사회가 3·4세 시대를 맞이하는 현황을 감안하여 재외국민으로서 선거권(단, 거주국 현지에서 행사하는 선거는 국정에만 한함)이 부여됨으로써 재일한국인으로서 조국과의 일체감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식의 함양과 애국심 고양을 위하여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195) 《중앙일보》 1998.8.13(1면).

196) 《중앙일보》 1998.8.29(2면).

197) 《한겨레신문》 1998.8.26(3면, 사설) 동포정책의 획기적 전환점; 《한국일보》 1998.8.27(3면, 사설) 문제 많은 재외동포 특례법; 《국민일보》 2004.10.12(26면, 사설) 재외국민 투표 허용 신중히; 《한국일보》 2007.4.19(39면, 사설) 재외국민 부재자투표 미룰 이유 없다; 《세계일보》 2007.6.29(23면, 사설)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 마땅하다; 《경향신문》 2007.6.30(19면, 사설) 재외국민 선거권 관련법 개정 적극 나서야.

198) 이진우 외 지음 · 이상윤 외 번역 · 백병규 편, 『재외국민 조국참정권운동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재외국민의 조국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2002).

199) 《중앙일보》 2000.5.20(6면) 기고: 해외동포 참정권 언제쯤(김제완 프랑스동포신문 오니바 대표); 김제완, 『재외국민들은 왜 투표권이 없는가』, 『인물과 사상』 49호(인물과 사상사, 2002.5), 102~110쪽.

200) 이종훈, 『영사업무 보완, 보호 · 서비스 강화해야: 헌법 2조 2항 정신에 입각, 참정권 부여 필요』, 『자유공론』 417호(한국자유총연맹, 2001.12), 36~39쪽; 이종훈, 『재외국민 참정권문제: 해외부재자투표 제도 재도입 방향』, 『OK TIMES』 99호(해외교포문제연구소, 2002.2), 40~49쪽.

201) 《중앙일보》 2004.6.7(25면) 기고: 해외동포를 더 슬프게 하자 말라(현명철 모스크바 한인회장).

202) 《중앙일보》 2007.1.2(33면) 기고: 재외국민에 참정권 다시 줘야(박채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03) 김민호, 『재외국민 투표권의 범위와 시기』, 『바른사회』 32권(바른사회시민회의, 2007.9/10), 12~13쪽.

204) 이병훈,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현상과 과제』, 『고려법학』 48호(고려대 법학연구원, 2007.4), 357~384쪽.

205) 『99교포정책포럼: 해외동포 법적지위와 교포사회의 미래상』(해외교포문제연구소 · L.A.한인회 · 뉴욕한인회, 1999.1.29) 참조.

에 대한 국정참여권이 가급적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국회 차원에서도 재외국민참정권 토론회²⁰⁶⁾가 여러 차례 개최됐고 선거법 개정 안도 여러 개가 제출됐으며, 대통령 이하 유력 정치인들은 빠른 시일내 허용가능성을 피력했다.²⁰⁷⁾ 2004년 이후 세계한인의장대회 참석 한인회장들도 한 목소리로 요구했으며, 17대 국회는 9개의 재외국민 참정권 선거법안을 발의(임기만료로 모두 폐기)했고,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²⁰⁸⁾

결국 현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등록법 관련 조항들에게 헌법불합치 결정(2007.6.28)을 내렸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개정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제18대 국회에서 구성된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여·야는 19세 이상 우리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 소지자들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09.1.29)하였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범위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주재상사원·유학생·외교관 등 단기체류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예비 미국시민인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종훈, 윤인진 등은 단계적 확대를²⁰⁹⁾, 김제완 등은 전면 실시를 지지하였지만 조광동 등은 영주권자까지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²¹⁰⁾ 따라서 18대 국회가 헌법불합치 관련 조항들을 어떻게 개정할지, 특히 국내체류하지 않는 해외영주권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참정권을 보장(또는 제한)할 것인지가 매우 주목되고 있다.

재외동포 이중국적 허용문제

지난 2007년 8월, 재외동포재단이 전국 7대 광역도시 만19세 이상 708명을 대상

206) 정범구의원실·한겨레네트워크준비위원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편,『재외국민참정권 법안개정을 위한 공청회』(2002); 국회안보통일포럼·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공편,『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정책체계정비를 위한 공청회』(2003);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미주한인회총연합회·김덕룡의원실 공편,『재외국민참정권 대토론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2005); 김덕룡의원실,『2007 대선, 재외국민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2007) 참조.

207) 《중앙일보》 2005.4.14(3면) 참조.

208) 미주총련과 캐나다한인총연합회의 헌법소원(2005.3.6).

209) 이종훈,『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주요 현안』,『바람직한 재외동포정책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한국·러시아·중국·이스라엘·헝가리 정책분석과 비교)』(2004.9.10).

210) <http://www.toworld.kr/news/articleView.html> · idxno=784.

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²¹¹⁾에 따르면 응답자의 70.9%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는 높으나 외국인·외국문화에 대해서는 폐쇄적·차별적인 반응²¹²⁾을 보였다. 특히 ‘한국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한국국적’ (17.2%), ‘한국혈통’ (15.0%), ‘한국어사용’ (7.2%), ‘한국거주’ (3.2%) 순으로 응답하여 문화나 혈통보다는 국적을 중시하는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외교통상부가 국내성인 1,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4%가 이중국적 허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³⁾

이처럼 국민정서가 이중국적 허용불가인 이유는 병역의무·납세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감정적·정서적 반감이 크게 작용했으며, 일부 지도층인사들의 특권과 부도덕성, 병역이탈자나 원정출산과 같은 암채족 양산, 재중조선족동포의 대량 유입 우려 등도 한 몫을 했다. 그 결과 역대 정부의 정책기조도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표 27> 참조).

〈표 27〉 각 시기별 정책기조 및 관련사항 ²¹⁷⁾

구분	정책기조 (정인섭 분류법)	관련 사항
1948 ~ 76년	적대적· 사실상 방임기	※국적법(1948) 제정 ²¹⁴⁾ , 재외국민등록법 제정(1949), 재일교포 교육보조금 지원(1957), 교민과 설치(1961), 해외이주법 제정(1962),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이중국적 특례(1968) ²¹⁵⁾
1977 ~ 97년	적대적· 적극적 규제기	※대학 특례입학제도(1977) 도입, 재외국민보호 조항(헌법 제2조2) 신설(1981), 세계한민족체전 실시(1989),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1997), 재외동포재단 설립(1997), 국적법 개정 ²¹⁶⁾ (1997, 부모 양계혈통주의 채택 및 국적선택제도 도입)
1998 이후 ~ 2004년	제한적 용인· 궁극적 부인기	※재외동포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 제정(1999), 국적법 개정(2005, 병역기피수단으로 이중국적 악용 편법 봉쇄), 세계인의 날(2007) 제정, 세계한인의 날 제정(2007)
2005 이후 ~ 현재	소극적 용인· 제한적 허용 검토	※국적제도연구T/F 활동(2005.6~12), 제2차 외국인정책위원회 토론회의(2007.10.25), 이명박 대통령 뉴욕방문발언(2008.4.15~16),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토론회의(2008.4.30)

211) <개요> 조사기관: 폴리시 앤 리서치. 조사기간: 8월 2일~16일. 표본수: 성인 남녀 708명. 표본오차: ± 3.74%포인트(95% 신뢰수준).
212) ※ ‘전적으로 동의’ (6.8%), ‘대체로 동의’ (42.2%), ‘보통’ (38.8%) 등 부정적 견해가 거의 50%.
213) 외교통상부 보도자료(08.4.2) <07년말 실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공개> o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o조사기간: 12월 24일 및 26일 o표본수: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20(명) o표본오차: ± 2.8%포인트 (95% 신뢰수준) <질문>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허용해야 한다(35.2%),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64.4%), 모름/무응답(0.5%).
214) 한국 법무부편,『법무백서 1957』참조. 법률 제16호(1948.12.20).
21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글로벌 인재의 이동현황과 각국의 유치전략』(2006.7) 참조. 과학자 등 우수 해외동포에게 이중국적 특례 인정 사례: 1968~94년까지 영귀국자 1,051명, 임시귀국자 1,127명 총 2,178명의 과학자·기술자 모국발전에 기여.
216) 《중앙일보》 1997.9.21(6면, 사실: 시대흐름 반영한 국적법 개정); 《중앙일보》 1984.5.19(2면). 일본은 1984년 국적법 개정: 부모 양계 혈통주의 채택.
217) 정인섭,『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참조; 정인섭 외,『이중국적에 관한 법리적 검토』(법무부 편, 2004) 참조; 김봉섭,『글로벌 코리아와 이중국적정책』,『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 이중국적관리방안을 중심으로』(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7.22) 참조.

현재 법무부가 파악할 수 있는 이중국적자 현황은 국내체류중인 사람들의 경우에만 가능하며,²¹⁸⁾ 해외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한 측면도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어 “제한적 범위에서의 이중국적 허용”을 공론화하고 있다.²¹⁹⁾ 그러나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재외동포사

〈표 28〉 각 시기별 이중국적 논의 및 여론동향²²⁰⁾

구분	정부·국회	전문가·학자	주요 언론	재외동포사회
1940년대	국적법(1948) ²²¹⁾ ·국적법시행령 제정	-	-	-
1950년대	외무부, 미국의 이중국적사례 소개 ²²²⁾	-	-	-
1960년대	과학기술처, 해외과학자 유치(1968)	-	華僑이중국적,인도네시아 인정 ²²³⁾ ; 일본귀화한국인 구속 ²²⁴⁾	-
1970년대	교육부, 재외국민대학특례입학제도(1977)	-	이중국적자재입국불허 ²²⁵⁾ ; 위장·도피성이민규제 ²²⁶⁾ ; 탈세와재산도피용이중국적 ²²⁷⁾	-
1980년대	국회, 해외교민이중국적취득허용질의 및 공직자중 이중국적자 확인요구(1984) ²²⁸⁾	이중익(1981) ²²⁹⁾ ; 강수웅(1984); 김상철(1985)	이중국적·영주권소지국내체류자 5천명 ²³⁰⁾	이중국적·재산권보호 요구 ²³¹⁾ ; 미국시민권자 위해호적법개정요구 ²³²⁾
	법무부, 재일교포국적회복가능 소개(1987) ²³³⁾			
1990년대	국회, 재일교포중 이중국적 소유자 확인요구(1992) ²³⁴⁾ ; 이중국적 현황요구(1992) ²³⁵⁾	차중환(1994); 노영돈(1995/2007) ²³⁶⁾ ; 박홍환(1995); 이기영(1996); 조병창(1997)	대학특례입학시비·특례입학-이중국적약용·교육부특례입학기준강화 ²³⁷⁾ ; 이중국적자 인간박취전형·송자총장신임여부교수회의소집·교민청신설과 이중국적허용문제 함께 생각·이중국적보다 국적회복이 먼저·생존전략이 된 이중국적 ²³⁸⁾	국회청원(이중국적금지제도 폐지) ²³⁹⁾ ; 이중국적인정요구, 재미교포서명운동·큰 나라치고 이중국적허용 않는 나라 별로 없어(정경조)·재외동포특별법제정 서둘러야(채영창)·이중국적, 국내재산권보다 민족정체성교육 더 중요(구삼렬) ²⁴⁰⁾
	정부, 이중국적교민의 병역유보·60세 이상 거주비자발급등개선책마련 ²⁴¹⁾ ; 새추위, 우수교포인력이중국적인정검토 ²⁴²⁾ ; 당정, 교포이중국적허용전면백지화 ²⁴³⁾ ; 여·야3당, 해외과학자 이중국적허용방침 ²⁴⁴⁾ , 재외동포법적지위관한특별법입법예고 ²⁴⁵⁾			
	※국적법개정(1997)			
2000년대	※국적법 개정(2005); 출입국관리행정변화전략(2006)수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 제한허용방안 구상	계성호(2002); 석동현(2003) ²⁴⁶⁾ ; 임지봉(2003) ²⁴⁷⁾ ; 이철우(2004, 2005, 2007, 2008) ²⁴⁸⁾ ; 정인섭외(2004) ²⁴⁹⁾ ; 이진영(2004) ²⁵⁰⁾ ; 조정남(2005); 신성호(2005) ²⁵¹⁾ ; 이구홍(2007); 현택수(2007); 김영근(2008) ²⁵²⁾ ; 이경태·송석원(2008) 등	좀 너그럽게 살자·유승준입국거부논란·장상총리서리장남, 미국국적논란·진대제장관 장남, 이중국적병역면제·이중국적자국적포기·인재유출심각·이중국적논의, 열린마음으로 ²⁵³⁾ ; 원정출산, 지도층 도덕성결핍이 문제 ²⁵⁴⁾	미국: 재미동포의숙원사항; 일본: 국적·민족·조국에대한 정체성 혼란있음; 중국: 한국방문자유화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우선; 러시아·CIS: 문화 동질성회복과경제자립지원 우선

회, 특히 재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줄곧 제기되어 오던 현안과 제로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표 28>참조).



이중국적 허용이 재외동포에게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각 지역 동포사회의 역사적 특성과 거주국간의 국적법 차이로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이 양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를 모국과 거주국간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자”는 법무부의 기본취지²¹⁵⁾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을 빌미

218)이중국적자 체류현황(07.12 현재). 이들은 출생지주의국가에서 우리나라 부모 사이에 태어난 이중국적자들임.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필리핀	중국(한국계)	중국	대만	베트남	기타	계
계	25,838	13,625	1,395	383	346	367	308	228	299	180	1,975	44,944 ¹⁾
국민처우 이중국적자	22,834	13,309	1,333	374	322	300	47	114	291	65	1,644	40,633
외국인등록 이중국적자	3,004	316	62	9	24	67	261	114	8	115	331	4,311

21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 이중국적관리방안을 중심으로』(2008.7.22) 참조; 인종·문화적 갈등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적제도연구T/F 구성(2005.6~12), 병역의무이행 선천적 이중국적자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고급인력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2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토론포로제로 논의(2007.10.25), 이중국적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뉴욕방문시 발언(2008.4.15~16), 선천적 이중국적자 이외에 비자발적 외국국적취득자에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 허용하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토론포로제로 논의(2008.4.30).

220) <반대론 이유> (1)얇체론, 병역기피, 범죄도피 (2)출입국 체류관리 어려움. 중국 등과 외교적 마찰 우려 (3) 외교적 보호권, 범죄인 인도 등 섭외적 문제 해결 어려움 (4)국가는 단일충성의 대상(예: 미국). <찬성론 이유> (1)경제적 이득을 비롯한 국익에 크게 기여 (2)우수 인적자원 활용 위해 필요 (3)시대적 상황이 다중국적 요구 (4)국외이민 신장. 재외국민의 거주국 정착 및 동화에 도움 (5)인도적 차원에서 해외동포의 이중국적 필요 (6)부모와 자녀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 (7)이중국적 금지로 인하여 이민국 국적취득과 동시에 한국적 박탈하는 제도는 거주국 시민권 획득에 소극적이게 하여 거주국에 성공적 정착에 장애 (8)납세 등 의무이행하면서도 참정권 행사 못하는 불이익 감소 (9)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적 부여함으로써 인권국가 이미지, 공동체 동화.

221) 제12조(국적상실 조항).

222) 외무부 정무국,『이중국적법』(1952) “출생시 미국시민권과 다른 한 외국의 시민권을 모두 획득한 사람은 22세 이후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미국시민권 상실한다.”

223) 《조선일보》 1960.1.27(조간 2면).

224) 《조선일보》 1966.6.30(조간 7면).

225) 《중앙일보》 1971.12.4(7면).

226) 《중앙일보》 1974.7.10(2면).

227) 《조선일보》 1975.5.25(조간 2면).

228)『제11대 국회 제121회 제1차 외무위원회 회의록』(1984.3.12, 유한열 의원질의); 『제11대 국회 제123회 제3차 외무위원회 회의록』(1984.10.18, 임종기 의원질의).

229) 이종익,『교민정책의 포괄적 개선에 부친다: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해외동포』20(해외교포문제 연구소, 1981.12), 13~20쪽.

230) 《중앙일보》 1986.4.22(2면).

231) 《중앙일보》 1989.7.1(9면).

232) 《중앙일보》 1989.11.7(9면).

233) 법무부,『재일동포용: 법과 생활』(1987, 1989) 참조.

234)『제13대 국회 제156회 제20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92.2.6, 박찬중 의원 서면질의).

235)『제14대 국회 제165회 제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1993.10.28, 김영일 의원 질의).

로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에서 병역의무 이행한 사람과 비자발적 이중국적자 그리고 국익에 부합되는 글로벌 고급인력에게만 이중(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순수 재외동포들은 배제할 경우에는 상당수의 재외동포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 외교통상부의 분석에 따르면 이중국적 허용이 재외동포에게까지 확대될 경우에는 각 지역 동포사회의 역사적 특성과 거주국간의 국적법 차이로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이 미국과 러시아·CIS지역(찬성), 중국과 일본지역(반대)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⁵⁶⁾

한국정부가 조선족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해도 조선족은 중국에서 이중국적자가 될 수 없다. 조선족은 한국국적을 부여받는 순간 더 이상 중국국적자나 조선족이 아니다. 병역의무와 관련짓는 한 조선족 젊은층 엘리트들의 한국국적취득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조선족이 중국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이 정치·경제·교육 등 여러 면에서 조선족사회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조선족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중국주류사회에서 활약한다면 이들이야말로 한중우호증진과 한국발전에 거대한 성장동력으로 되리라 확신한다.²⁵⁷⁾

236)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이중국적인정문제」.
237) 《조선일보》 1993.3.3(31면), 1993.5.19(5면), 1993.10.6(30면).
238) 《중앙일보》 1993.3.8(5면, 정규웅), 1993.10.9(23면), 1998.4.2(길정우 칼럼).
239) 1993.7.15 제출(이성태 외 1,417명), 법사위 상정 1993.11.15, 소위원회 심의 1994.7.12.
240) 《중앙일보》 1992.3.28(2면), 1995.4.29(10면), 1998.10.10(6면), 1999.5.31(7면).
241) 《중앙일보》 1992.7.27(2면) LA사태를 계기로 교민정책 대폭 개선.
242) 《중앙일보》 1995.4.6(2면).
243) 《중앙일보》 1995.12.4(2면).
244) 《중앙일보》 1998.6.8(1면); 1998.7.7(2면) 국적법 개정으로 고급두뇌(과학자, 예술인, 운동선수, 벤처기업인) 등에게 이중국적 허용 방침.
245) 《중앙일보》 1998.8.26, 2면).
246) 《중앙일보》 2003.6.24(10면).
247) 《중앙일보》 2003.3.11(30면).
248) 「재외동포와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한국과 멕시코의 비교」(재외한인학회, 2004); 「이중국적, 그 오해와 진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토론회, 2008).
249) 「이중국적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법무부, 2004).
250) 「재중한인의 국적과 이중국적 관련 논쟁에 대하여」(재외한인학회, 2004).
251) 《중앙일보》 2005.6.7(35면) <이중국적, 실리적 해법을 찾자>.
252) 「재외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동포정책 토론회」(2008.1.17) <기조발표: 이명박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고찰>.
253) 《중앙일보》 2000.9.1(6면, 권영빈 칼럼), 2002.2.3(15면), 2002.7.13(2면), 2003.3.4(8면), 2005.5.18(E6면), 2006. 7.12(2면), 2007.10.27(34면: 국경을 넘는 왕래가 일상화한 세계화시대를 맞아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처럼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열린 마음으로 이중국적 허용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254) 《중앙일보》 2003.10.7(33면).
255) 제13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2008.5.14) 법무부 제출자료 참조.
256) 중국: 중국은 이중국적을 명시적으로 불허하므로 이중국적 도입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재중동포들의 소외감을 초래하는 동시에 별도의 혜택을 요구할 가능성 농후; 일본: 이중국적 도입은 그간 여러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귀화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고수해온 재일동포들의 자존심에 대한 훼손으로 간주될 가능성 다분; 미국: 대부분의 재미동포들은 이중국적 허용을 갈망하므로 환영; 러시아·CIS: 대부분의 재러 및 CIS지역동포들은 이중국적 허용을 선호할 것으로 관측.

What does it mean to be Korean? There needs to be a re-definition of what it means to be Korean. Many times adoptees encounter problems just because they don't speak Korean or not fluent enough or they behave in different ways. Does that make them non-Korean? In today's world it is important to widen one's horizon. In the time of globalization there is no place for isolationism and cultural centrism. By giving dual citizenship to Korean adoptees Korea could show its belonging to the global community.²⁵⁸⁾

지난 30년 이상 동안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허용하느냐 허용해서는 안 되느냐의 찬반양론을 뛰어넘어 이중국적을 전향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을 찾아내야 할 때다.²⁵⁹⁾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발전방향

우리 학계 현황

일반적으로 특정 연구대상이 존재하며, 그 연구대상을 특정방법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고유의 ‘연구방법’이 있을 때, 그리고 그 특정현상을 특정시각으로 인식·기술하며 그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 구성의 총체를 학문이라고 부르고 있다.²⁶⁰⁾ 이런 학문의 세계도 역사가 길고 학문을 구성하는 지식이 잘 조직되어 있어 그 지식들이 경험적인 검증을 거쳐서 일반화된 ‘발달된 학문’이 있는 반면 새로 생성되는 단계에 있어서 아직 법칙이 정립되지 못하거나 지식의 체계화가 아직 잘 되지 못한 ‘생성 도중에 있는 학문’이 있다. 정치학·경제학·행정학·사회학 등과 같이 학과명으로 불리는 것들은 이른바 독립된

257) 김봉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토론회(2008.7.22) 참조(김삼 조글로 대표의 답변내용).
258) 김대원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토론회(2008.7.22)「Dual Citizenship for Korean adoptees」.
259) 김봉섭, 앞의 글(2008.7.22) 참조.
260) 하나의 학문분야가 새로이 생성·발전·소멸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4가지 관점이 있다.; Pace, R., Smith, P., & Mills, G. (1991).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 fiel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① 주기설(cyclicalism): 어떤 사회적 도전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 ②진화론(evolutionism): 초기에 잘 다들여지지 않은 아이디어나 직무실행(practice)이 정제·개선되어 새로운 버전(version)으로 변모, 그것이 또 개정되어 새롭고 더 좋은 아이디어나 직무실행이 됨. ③기능론(functionalism): 사회에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요소 또는 과거에 중요하지 않던 요소가 그 변화(새로운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 ④갈등론(conflictism): 정(thesis/action)·반(antithesis/reaction)·합(synthesis/merger)의 과정을 거침.

학문(‘발달된 학문’)에 속한다.

그렇다면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사정은 어떨까?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연구분야 분류표’²⁶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생 또는 걸음마 단계의 학문분야에 속한다.²⁶²⁾ 모든 연구가 ‘관찰’ → ‘개념화(추상화)’ → (새로운 경험적 증명) → (기존 개념의 再개념화) → ‘일반화’ (사실간의 체계적 서술) → ‘이론’ (학자·전문가의 공인) → ‘법칙’ (이론의 공고화: 예측과 통제 가능)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정교화 되듯이²⁶³⁾ 재외동포연구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독립학 또는 분과학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조동일은『우리 학문의 길』에서 “수입학→시비학→개조학→창조학” 등의 4단계를 천명한 바 있다.²⁶⁴⁾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재외동포연구는 1964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발족을 기점으로 하여 1990년 이후 재외한인학회와 해외한민족연구소의 탄생, 2000년 이후 다양한 포럼과 학회와 학술지들로 진화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들 학술연구 단체들은 저마다의 설립목적에 따라 재일·재미·재중·재러/CIS동포사회의 지역연구와 인물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독자적 연구영역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검토·분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인구통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해외교포현황을 처음 공개한 것이 1954년이고, 지금도 매2년마다 재외동포 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 근현대사와의 연결작업도 보완되어야 한다. 재외동포연구가 정책학적 연구→법학적 연구→정치학적 연구→인류학적 연구→사회학적 연구 등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적 연구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동포사회의 현상이 본질을 앞서갔다는 지적²⁶⁵⁾은 연구자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각각의 연구목적에 따라 현장체험·실태조사 위주로 진행되는 인류학적 연구, 설문조사·인구계량화 등 통계학적 연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전공의 참여로 진행되는 학제적 연구, 사료와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학적 연구 등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활용하더라도 일반이론을 도출하려는 노력들이 더욱 강구되어야 한다. 이민관련 1차 자료·회고록·생존자 구술 정리 등 기초사료 수집과 연구목록의 작성을

261) 어문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학, 수해양, 예술체육분야 등으로 8가지로 구분.
262)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연구를 독립된 연구영역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신생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는 관광학, 부동산학, 여성학, 청소년학, 생태경제학, 기록학, 음향학, 민족음악학, 생명공학, NGO학, 생명윤리학, 진화심리학, 북한학 등이 있다.
263) R. S. Rudner(1966),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pp.28~47; A. Kaplan(1964), The conduct of inquiry. Scranton, Penn.: Chandler Publishing Company. 27~42.
264) 조동일,『우리 학문의 길』(지식산업사, 1993) 참조.
265) 이연직,「해방후 재일조선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성과와 대중서 서술」(2003); 장석홍,「해방후 귀환문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2003);「해외동포사·향일독립운동사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2006) 참조.

통해 재외동포 본질에 대한 기초연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연구(예: 재일·재미·재중·재러 및 남미·대양주·동남아·아중동 등)와 주제별연구(예: 국적회복·정체성교육·차세대동화·한인경제권문제 등)를 수행할 때에도 연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며, 학제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간의 상호 연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한국사회가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물론 국내체류 외국인들과의 공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역할 분담

재외동포연구는 연구자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다음의 4가지 인자들이 모두 다제 역할을 다할 때 성장·발전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 재외동포연구의 전략적 가치 인정해야

해외거주 자국민에 관한 연구를 국가발전과 민족장래에 가장 기초적인 과제로 여기는 나라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한국학을 육성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예: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대학원을 설립한 사례나 노태우 정부가 해외한국학(학자·강좌·세미나·포럼 포함)을 지원하는 정부기구(예: 1992년 한국국제교류재단)를 설립한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 각 대학들이 재외동포문제 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하고, 이들 연구기관에 재외동포 관련 각종 자료들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외교통상부가 발행하고 있는『재외동포단체조직 현황』이나 재외동포재단이 발간하고 있는『한인회 디렉토리』정도가 아니라 700만 재외동포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지역별 동포사회의 현지 사정·활동내역, 해외한인단체의 조직형태·재정형편, 재외동포재단 지원실적, 각 국가별 재외동포 관련 연구자 및 기관 현황 등이 총망라된 (가칭)『재외동포백서』를 재외동포재단·해외한인단체들과 협력하여 발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재외동포영사국에서는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역량(질과 양)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비교·분석기준(지표)²⁶⁶⁾를 갖고 있어야 하며,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재외동포가 우리의 동반자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266) 인구지수(규모), 단체지수(재정자립도, 시민권 획득률, 모국방문회수, 모국투자규모 등), 활동지수(차세대인재풀, 여성참여율 등).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저변을 넓혀야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연구기반조성 및 학술·출판활동 지원을 보다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연구결과를 재단사업의 방향설정과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²⁶⁷⁾ 국내외 민간연구단체와의 협력과 미래연구자 인력풀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전 세계 재외동포 관련자료를 집대성한(가칭) 재외동포자료종합센터를 구축하여 연구자들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음<표 29>은 예산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한 내역이다.

〈표 29〉 재외동포재단 연구기반 지원 내역(1998~2006)

구분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 성과
1998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전문가 초청워크숍』/이광규, 『러시아연해주의 한인사회』/재야한인이민문화연구회, 『재야한인사회 97』/ 『(원어) 우즈베키스탄인명록』
1999	전병철, 『20세기 조선족 10대 사진』/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외, 『고려사람, 우리는 누구인가』/김현동·주인영, 『재중동포사회 기초자료집』 1·2·3/서일범, 『중국동북3성 한민족고대사 유적조사 기초연구』/이재락, 『민족문화네트워크형성을 위한 북방지역동포현황 조사연구』/백충현, 『재외동포관련 입법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검토』/이중훈·박호성·이중철, 『주요 국정지표에 기초한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과 재외동포재단 중장기 사업계획』/파라과이한인회, 『파라과이 한인이민 35년사』/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당대중국조선족인물록』
2000	이광규, <i>Overseas Koreans</i> /신대순, 『재중동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중교류실태와 발전방향』/육선화·백희영, 『재미동포가족의 자녀교육 및 가족생활실태조사』/이구홍·안영진, 『재외동포 관련 문헌자료목록』/연변조선족자치주민족사무위원회, 『중국조선족민속』/김블라지미르, 『러시아한인강제이주사』
200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러시아남부 볼고그라드지역 한인(고려인) 정착지원을 위한 기초조사보고서』
2002	차종환,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원어) 나의 백마 높이 날아라』
2003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한미동포재단, 『미주한인이민100주년사』/연변출판,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집』/KINS, 『제일조선인의 가슴속』/다해, 『하리코프에서의 행복의 비결』/조오지 타튼, 『위기의 코리아타운』/유리 미하일로비치 텐, 『나의 사랑 러시아』/국제경제연구소,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세계경제』(영문판)/한유럽연구회, 『유럽한인사』/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독립국가연합지역의 신흥고려인사회 네트워크』/ 『독립국가연합 고려인사회연구』/한중경제포럼, 『현대중국건설과 화교의 역할』/노영돈, 『재외동포법 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임영상, 『CIS지역 한민족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상황 기초조사: 유럽,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2004	오성환(부가이), 『한러외교사에서 발췌한 고려인 발전사』/러시아고려인연합회, 『러시아에서의 140년간』/부가이, 『시간의 시련』/정찬원,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차이』/서용달, 『ロシアの韓朝鮮人問題と日本』/이광규, 『세기의 과제: 연해주 물결운동』/박상희, 『우즈베키스탄 한인아동의 언어와 생활』
2005	아르헨티나 한인이민문화연구원, 『아르헨티나 40년사』/재외동포재단, 『신호범 자서전』/김호림, 『코리안차이니스신화를 창조하는 사람들』/라울 루이스(정경원외 역), 『쿠바의 한국인들』/호세 산체스(서성철 역), 『회상』/김민수, 『시베리아고려인과학자 현황과 학술적 업적』/윤인진, 『재외동포차세대 현황과 육성방안』/이진영, 『한중수교후 중국의 조선족정책과 한국의 과제』/정신철, 『재한중국인의 취업과 문화적 적응에 대한 연구』/임영상, 『시베리아와 유럽아시아의 한민족공동체』
2006	김민 편저, 『(민족의 항해 밝히는) 한민족호 기관장 권영호의 삶과 철학』/이광규, 『뫓 다 이룬 꿈』/성동기, 『김병화: 우즈베키스탄 불멸의 고려인 영웅』

267)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중훈(1996), 이원범·이구홍(1997), 노영돈(1998), 김봉규(1999), 이중훈·박호성·이중철(1999), 이형규(2000), 권병현(2001), 박성범(2004), 한명숙(2004), 권영길(2004), 이광규(2006), 김봉섭(2006, 2007), 정영국(2007) 등 많은 사람들이 연구·검토한 바 있다.

재외동포 관련 연구의 저변을 확장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한 곳에 축적하는 것으로는 백과사전 편찬 이상의 것이 없다. 재

외동포사회의 과거-현재-미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수많은 관련 정보와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정보창고 역할을 하게 될 백과사전 편찬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재외동포 관련 연구기반조성 및 학술·출판활동 지원을 보다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연구결과를 재단사업의 방향설정과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표 30〉 주요 해외 소수민족 관련 백과사전

구분	서명 및 주요 특징
이탈리아	LaGumina, Salvatore J, Frank J. Cavaoli, Salvatore Primeggia, Joseph A. Varacalli, ed. <i>The Italian American Experience: An Encyclopedia</i> (NY: Garland Publishing, Inc. 1999): 재미이태리인의 경험과 공헌도를 최초로 심층적·백과사전식으로 기술 & 저명인사 전기 수록, 5년간 166명 학자 참여, 총735쪽(영어)
아일랜드	Michael Glazier., ed. <i>The Encyclopedia of the Irish in America</i> (ND: Univ. of Notre Dame Press, 1999): 아일랜드역사와 미국내 아이리쉬 이민자의 삶을 최초 기술. 세계 각국 250여 학자 집필 참여, 총988쪽(영어)
러시아	최 브로나 편집책임, <i>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i> (러시아의 고려인백과사전: 유명인사의 생애와 사상)(2003): 1914년 이주50주년기념으로 동방학연구소 포드스타빈 교수에게 집필 의뢰했으나 1차·2차대전 등으로 중단. 50여명의 학자들이 2년간 작업끝에 2003년 발간(고려인명사 1,500명 수록). 총15장, 총1,441쪽(러시아어)
중국	북경대 출판사, 『世界華僑華人詞典』(1993) ²⁶⁸⁾ : 화인·華埠개황/역사·지리/문물유적·저명건축/인물/社團/경제조직/학교·문화·복리기구/정당·정치조직/역사사건·중대활동/법률·조례·정책·조약·협약/정부기구·제도·관직/역사사건/보간(報刊)/저작·이론/전유(專有)명사사건 등 17개 항목 1,025항목 및 ‘세계화교화인대사전표’, ‘근년세계화교화인연구통계표’, ‘지명역명(譯名)대조표’ 등 참고 부록 수록 북경대 아태연구센터·중국화교역사학회, 『華僑華人百科全書』(1997~1999) ²⁶⁹⁾ : 총론/인물/사단(社團)정당/경제/문화교육과기(科技)/신문출판/역사사건/법률조례/저작이론/사구(社區)민속/문학예술/교향(僑鄉) 등으로 구성. 국내외 최신 화교화인 연구성과 반영
일본	Akemi Kikumura-Yano. ed., <i>Encyclopedia of Japanese Descendants in the America: An Illustrated History of the Nikkei</i> (CA: AltaMira Press, 2002): -アメリカ大陸日系人百科事典: 寫眞と繪で見る日系人の歴史/全米日系人博物館 企劃; アケミ・キクムラ・ヤノ編; 小原雅代 他 譯/日系人미주이민사(초기~현재)를 최초로 심층 기술. 국제일제연구프로젝트로서 14개 연구기관과 공동작업, 전미일계인박물관(JANM) 협력과 일본재단 후원으로 출간, 총368쪽(영어)
이스라엘	Shmuel Spector, Elie Wiesel, Geoffrey Wigoder., <i>The Encyclopedia of Jewish Life: Before and During the Holocaust</i> (NY: NYU Press, 2001)(全3권): 80여명의 학자와 야드바셈(홀로코스트박물관)과 협력하여 30여년 노고끝에 결실, 30권짜리 히브리어백과사전을 3권으로 압축, 나찌정권에 의해 홀로코스트시기에 사라져버린 6,500개 이상의 유대공동체문화를 생생한 자료로 재생(생존자 증언 및 6백장 이상의 사진 포함), 총1,924쪽(영어)/ cf. <i>Encyclopaedia Judaica</i> (Jerusalem: Macmillan, 1972)(전16권)/Jack Fischel, Sanford Pinsker, <i>Jewish-American History and Culture: An Encyclopedia</i> (NY: Garland, 1992)
미국	Stephan Thernstrom, Ann Orlov, Oscar Handlin. ed., <i>Harvard Encyclopedia of American Ethnic Groups</i> (Belknap Press, 1980): 200년 미국역사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100개 이상) 종족·민족집단의 기원·역사·현상을 심층적·체계적으로 기술, 미국인 정체성과 미국화·이민정책·편견과·차별 인종과 종교 등을 상세히 설명, 재미한인항목은 김형찬 교수 집필, 총1,104쪽(영어)
한국	아직 없음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아일랜드계, 중국계, 유대인계, 이탈리아계 등 주요 소수민족집단들이 자신들의 백과사전을 어떻게 편찬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표 30> 참조).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연구실에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28권) 전면 개정증보판 편찬작업(10개년 계획, 2011년 간행 예정)에 착수했지만²⁷⁰⁾, 재외동포와 관련된 “해외한민족” 관련사항은 “근대사(일제강점기), 정치/외교/국방” 파트에서 다루고 있을 뿐 독립된 편제로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연구기관과 학자들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재외동포 관련 백과사전 출간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의 조사팀을 (가칭) ‘재외동포연구원’ 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이나 재외동포재단에 구축된 자료실을 재외동포문제 관련 자료들을 집대성하는 본격적인 아카이브(Archive)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연구소·학회의 역할: 재외동포 관련 기초연구와 연구자 네트워크 확대에 집중해야

2006년 재외동포 관련 연구 관련 전문가 리스트가 한 차례 정리된 바 있다.²⁷¹⁾ 이를 국내로 한정해 보면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연구자의 수는 50여 명 안팎이며, 이들 대부분은 재외동포 관련 연구소²⁷²⁾, 재외한인학회, NGO단체²⁷³⁾, 재외동포언론²⁷⁴⁾,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세계한인정책포럼 등에 속해 있으면서 각자의 전문분야를 학문적·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와 학회에서는 이들을 네트워크하여 자신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급정보와 인적자원이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68) <http://coc.lib.cuhk.edu.hk/newsletter/ocs4.pdf>(海外華人研究通訊 1993年9月: 第4期). 사전 편찬에는 주편집자, 부편집자, 편집위원 이외에 북경대학, 중국사회과학원, 하문(廈門)대학, 중산대학, 기남대학, 중국화교역사학회 등에서 40명의 중견연구자들이 집필자로 참여.
269) <http://coc.lib.cuhk.edu.hk/newsletter/ocs7.pdf>(海外華人研究通訊 1994年6月: 第7期).
270) 미술·음악·지리·언어/문자·고전문학·현대문학·선사문화·고대사·고려시대사·조선시대사·근대사(일제강점기), 정치/외교/국방, 기독교, 불교, 유학 등.
271) 이광규, 『못다 이룬 꿈』(집문당), 203~217쪽 참조.
272) 해외교포문제연구소(황선구), 해외한민족연구소(이윤기), 한일민족문제학회(최영호), 한민족학회(정영훈),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임재완), 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신인섭) 등.
273) 한국: 지구촌동포연대, 아시아교육연구원, 해외동포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불교환경연대, 한국교회협의회, 동북아평화연대 등; 일본: 코리아NGO센터, 재일코리안청년연합(KYC) 등; 중국: 조선족연합회; 러시아: 사할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사할린정의복권재단 등.
274) KBS한민족방송(이영희, 강준행), 재외동포신문(이형모, 박상석, 이석호, 이현아, 오재범), 중국동포타운신문(김용필), 통일일보(이민호), 한중동포신문(이영한), 연합뉴스 한민족센터(왕길환), 세계로(김제완), 연변통신(홍건영), 동북아신문(서경석), 한민족신문, 세계한인신문(준비중).

〈표 31〉문헌 및 논저 목록 비교

구분	재외동포관련 문헌자료 목록(2000)	재외동포사 편람(2005)
재외동포 관련단체 및 기관	-	국내 단체 및 기관/연구단체 및 자료소장처/ 언론단체/한국학과 및 한국어과 소재 대학/ 동포단체/한글학교/종교단체/태권도협회
지역별 분류	재외동포 일반/일본/중국/미국/ 러시아 및 구소련/기타 지역	<논저목록>일반/아시아(중국·일본·기타)/독 립국가연합/북미(미국·캐나다)/중남미/유럽/ 오세아니아/기타
주제별 분류	개관/역사/사회/경제/정치/문화/교육/정신건 강·보건/지리/인권·법적지위·해당 국가의 한인 에 대한 정책/한국·한반도문제와의 관계 및 관련 활동/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독립·민 족운동/ 기타	-
비디오 자료	재외동포 일반/일본/중국/미국/ CIS 및 구소 련/기타	-

또한 현재까지 재외동포 관련 문헌·자료의 수집·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은 이구홍·안영진의 “재외동포 관련 문헌자료 목록”(2000)과 국사편찬위원회의
“재외동포사편람”(2005) 등 단 2개뿐이다(<표 31>참조).

그러나 이들 연구성과들은 최소한의 목차와 내용, 중요도와 신뢰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단순 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것 역시 문헌해제수준
까지 보완시켜야 한다. 2005년 이후 국사편찬위원회가 “해외한인들의 역사가 올바
로 정립될 때 비로소 총체적인 한국사상이 정립될 수 있다”는 취지 아래 “한민족
재외교민사” 관련 자료수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해외이주사 연표작성과
각 관련 문헌·자료(잡지, 신문기사, 사진, 비디오 등 포함) 및 관련 조직·단체에
대한 자세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와 학회들이 컨소시엄을
조직해서라도 정확한 문헌해제에 나서야 하며, 연구자 및 단체 상호간에 재외동포
관련 DB도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²⁷⁵⁾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학의 주제로 “재외동포”를 다루고 있으며, 미
국 UC리버사이드대학(소수인종학과)에서 ‘재미동포연구소’(김영옥 대령 기념)를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재외동포연구자 네트워크 확
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역할: 재외동포 관련 학과·과목을 설치해야

재외동포연구가 하나의 독립학문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가 반

275) 홍현진·정혜경·노영희·이미영, 「해외 비영리기관 소장 학술 데이터베이스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제22권 제1호(한국정보관리학회, 2005) 참조.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지수> 정확성, 최
신성, 완전성, 일관성, 포괄성, 권위, 객관성, 유일성, 검색성, 상호작용성, 디자인, 접근성, 비용, 정보적합성,
정보탐색 충족률, 정보유용성, 비용대비 효과성, 이용자만족도 등 19개 평가지표 활용.

드시 길러져야 한다. 이는 대학 내에 독립학과나 관련 강좌, 또는 단설대학원(예: 대학원대학교) 등을 설치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다음 <표 32>은 국내외 대학에 개설

〈표 32〉 국내외 대학의 재외동포 관련 개설과목

구분	세부 추진과제	비 고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재외동포정책론’ 과목 개설(06년 1학기 ~ , 진희관)	-제1전공 이외 연계전공과정
국립 공주대학교	-대학원내 협동과정(석사)으로 ‘재외동포학과’ 신설(2008년도 전기) -한민족교육문화연구원(원장 임연기)내 재외동포교육문화연구 소, 한민족입양인교육문화연구소 개소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와 이주’ 과목 개설(이진영) -국제관계연구소(소장 김의곤) 부설 ‘이주 및 재외동포연구 센터’ (센터장 이진영) 개소(2007.11)	
국립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과 제 중점연구지원사업 ‘세계한상네트워크와 한민족문화공동 체조사연구’ (03~06년) 수행 -학과간 협동과정(석사·박사과정) ‘디아스포라학’ 개설 -정치외교학과 교양과목 ‘세계한민족의 이해’ (임채완) -전공과목 ‘세계한민족네트워크론’ 신설(05년 1학기 ~)	
서울여자대학교	-연계전공 국제학전공 ‘세계속의 한인들’ 개설(05년)	현재는 폐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세계의 한민족’ (교양), ‘해외한인사’ (전공) 개설 -문화콘텐츠학 ‘해외한인문화와 콘텐츠개발’ (연계전공) 개설 -한국학과 ‘해외한인사회연구’ (전공) 개설 -경영대학원내 Executive MBA 및 해외글로벌 최고경영지도 자과정 개설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04년, 06년 1학기)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이민학과’ 개설(05년 8월, 박화서) -사회교육원 개별특별과정(1년) ‘이민행정전문인’ 개설 (08년, 박화서)	관광학과→ 이민학과 (07.6 폐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제간 과목 ‘한민족공동체론’ (01년 2학기, 정영훈) -한국사학·고고학전공 ‘해외한민족역사(협동)’ 개설(07년 2학기,권희영)	
동서대학교	해외한인경제연구소(05~ , 박재진) NURI한상사업단(동서대·동아대, 단장 전현중) -국제서비스경영 전문가양성사업(박재진)	한 상 네 트 워 크 연 구 회 (박 재 진)
동아대학교	NURI한상사업단(동서대·동아대) -국제법률서비스전문가양성사업팀(이학춘)	
중국 中央民族大學 (www.cun.edu.cn)	中國少數民族語言文化學院 개설 강좌(04~05 봄학기) -중국조선족문학사(오상순) -중국조선족현대사(강기주)	한 국 경 제 문 화 연 구 소 (황 유 복)
일본 早稻田大學 (www.waseda.jp)	개방교육센터 -재일교포로부터 배우기 1·2(오카무라 료지)	
일본 조선대학교	-외국어학부, 정경학부, 교육학부, 문학역사학부 등	1956.4.10설립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www.auckland.ac.nz)	아시아학대학(School of Asian Studies) 05년 2학기 -아시아인의 국외이주(송창주)	
미국 뉴욕대학교 (www.nyu.edu)	문리대학 동아시아학(East Asian Studies) 04~05 봄학기 -현대한국과 재외한인(박현옥)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www.wisc.edu/)	문리대학 동아시아어문학과 04~05 봄학기 -아시아계 미국인운동(주로 한국계)(Peggy Choi)	
미국 노스파크대학교 (www.northpa가.edu/)	한국학센터 04~05 가을·봄학기 -한국인 이민사회학	한국학 부전공
미국 캘리포니아국제문화대학교 (www.iic.edu/)	국제문화대학 04~05 여름학기(대학원 선택과목) -한국계 미국인 문학(Hillary Vanessa Finchum-Sung)	
미국 UCLA (www.ucla.edu/)	문리대학 동아시아어문문화학과 -한국계 미국인의 경험(박계영)	
미국 UC 어바인 (www.uci.edu/)	인문대학 동아시아문화학과 04~05 가을·봄학기 -한국계 미국인의 경험(슈테이크)	
미국 하와이대 마노아 캠퍼스 (www.manoa.hawaii.edu/)	하와이·아시아·태평양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 04~05 봄학기 -하와이 이민(알레가도) -하와이 이민(디스 곱타) -한국: 조국과 디아스포라(에드워드 슬츠)	

〈표 33〉재외동포 관련 커리큘럼 상호비교

전남대학교 정외과 '세계한민족의 이해' (2005)	中山대학역사學程 '미국화교사' (200 4) ²⁷⁶⁾	中山대학 역사學程 '현대중국교무사' 277)	輔仁대학 전인 교육과정중심 해외 화인사회연구 ²⁷⁸⁾	日本拓植大學 국제학부 在外華人 (岩崎育夫)
1. 재외동포의 의의와 연구현황 2. 지구화와 디아스포 라의 상관성 3. 세계한민족분포, 이 주, 적응 4. 한인커뮤니티통합과 갈등 5. 타민족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시사점 (화교, 유대인, 인교) 6. 각국부문별(경제정 치사회문화)한인지도 자 탐방 7. 각국한인차세대 민 족정체성과 한국관 8. 중간교사 9. 각국한민족문화예술 탐방 10. 각국한인사회단체 현황과 특징 11. 각국한인교육과 연 론 12. 각국한인정보 및 지식인프라 13. 각국한인인권실태 와 법적 지위 14. 세계한인잠재력과 모국연계(정치경제, 문 화적관절, 민족통합 관 점) 15. 기말고사	1. 미국화교사 과정총 론 및 과정설계 2. 화인의미국이주 溯 源 3. 재미화교인구분포 발전과정 4. 재미차이나타운(華 埠) 변천과정 5. 미국중화회관 6. 재미화교사회풍습 7. 재미화교단체조직 8. 재미화교경제생활 9. 재미화교식당사업/ 중간교사 10. 재미화교문화교육 전과 11. 재미화교종교신앙 12. 재미화교정치활동 13. 재미화교가 직면한 문제 14. 미국의배화(排華) 운동 15. 石泉慘案(1885 ~ 1887) 16. 중국교무행정조직 (대책) 17. 화교 대미국·중국공 현18. 현대중국 불법이 민문제/기말고사	1/2. 중국현대僑務총 론과 과정설계 3/4. 중국현대인구유 동과 교무(인구이동 동인, 원고향, 분포현 황, 교무사상, 정책, 조치, 활동, 조직) 5/7. 중화민국 교무 (上, 11 ~ 49: 교무사 상정책, 조직활동, 기 구조직, 연구성과) 8/10. 중화민국 교무 (下, 49 ~ 04) 11/13. 중화인민공화 국교무(49 ~ 04) 14/16. 중화민국과 중 화인민공화국 교무비 교분석(49 ~ 04) 17/18. 중국현대교무 의 문제, 대책 및 결 론(회고, 전망, 시대 적 의의)	1. 화교의 본질 2. 각종 華人뜻 해설 3. 사회교차권이론: 해 외교민2~3세의 심리와 행위탐구 4. 교무정책(49년이전) 5. 교무정책(50~71, 7 1~91) 6. 교무정책(91년이후) 7. 대만이민변천과 특색 8. 근대대만인의 이민상 황변화와 문제 9. 대만의 동남아교무정 책 반세기(49~00) 10. 화교방문, 교류, 우 의(1대1) 11. 대만이민현상과 대 응책 12. 세계해외화인분포현 황 소개 13. 해외화인사회조직: 해외화인가정, 해외화인 의 종교신앙 14. 해외화인과 모국관 계, 화인과 비화인관계 15. 동남아, 미주, 호주, 대양주, 구주, 인도양 등 화교사회 16. 결론	1. 재외화인: 개념 2. 홍콩(식민지화·이 민·공업화·중국복귀 등) 3. 대만(중국인이민· 국민당·민주화·자립 으로) 4. 말레이시아(복합사 화-화인사회와 말레 이우대정책) 5. 싱가포르화인(화인 사회의 정치경제학) 6. 인도네시아(화인억 압배제와 생존) 7. 필리핀(小화인사회 와 큰 경제력) 8. 태국(화인이 잘 조 화된 사회) 9. 베트남(정치에 농 락당한 화인) 10. 非아시아권화인 11. 아시아 타민족의 이민(일본·한국·인도) 12. 화인을생각한다

되어 있는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 현황이다.

또한 커리큘럼도 보다 전문화·세분화되어야 한다(<표 33> 참조).

결국 정부는 통합적인 입장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은 그것을 기반
으로 중장기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연구소와 학회는 정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아래 수준 높은 각 전문분야별 연구성과물을 양산해내고, 대학은 학문후속세대를
열심히 길러내는 등 각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갈 때 재외동포연구는 새로운 학
문영역으로 발전해나갈 기반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구자들이 ‘재외동포 민족자산화, 재외동포 모국발전기여방안 모색’ (A그

276) 國立中山大學共同科歷史學程 凌林煌 教授/博士 [http://www.course.nsysu.edu.tw/\(美國華僑史\)](http://www.course.nsysu.edu.tw/(美國華僑史)) 참조.

277) 國立中山大學歷史學程專業課程 [http://www.general.nsysu.edu.tw/linhuang/mhoca/default.htm/\(現代中國僑務史\)](http://www.general.nsysu.edu.tw/linhuang/mhoca/default.htm/(現代中國僑務史)) 참조.

278) www.ocac.gov.tw/download.asp?tag=P&file=DownFile/File_14141.pdf&no=14141 참조.

룹), ‘재외동포 관련 DB통합, 재외동포 역량강화, 재외동포 글로벌화 촉진’(B그룹), ‘재외동포 활동인프라구축, 재외동포 권익신장과 재외국민 보호’(C그룹)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임한다면 재외동포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신생 학문분야가 그러하듯이 재외동포연구는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매우 짧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들은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하면서 연구에 임해야 한다.

우선 재외동포연구가 하나의 학문분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보다 그 학문적 토양이 얼마나 지속되며, 재외동포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어느 정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재외동포의 경제적·전략적 활용가치나 모국발전의 조력자 정도로가 아니라 한민족공동체(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축으로 그리고 민족발전의 능동적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과의 유대감과 미래비전 공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재외동포연구는 기능중심의 연구가 아닌 대상 중심의 연구이다. 따라서 각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참여관찰이 대단히 중요하다. 재외동포재단

〈표 34〉 글로벌시대 재외동포정책 선진화구상

구분	大연구주제	中연구주제	비고(이념)
단기 과제 (A그룹)	I. 재외동포 민족자산화	-재외동포정책 전담부처의 정책적 의지 실질 강화 -각 부처별 재외동포 관련사업의 일원화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철학 확립 및 모국과의 유대감유지를 위한 각종 법제도개선 필요 → “국익을 위한 민간외교자산으로 적극 육성한다”
	II. 재외동포 모국발전 기여방안 제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고 -재외동포 모국발전 기여사례 적극 홍보 -재외동포 모국투자·방문·체험프로그램 확대	
중기 과제 (B그룹)	III. 재외동포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통합	-재외동포사회 네트워크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외동포사회 현지조사·분석기능 강화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및 D/B활용	이전 정부정책과의 계속성 또는 차별성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수립 필요 → “재외동포사회의 흠어진 역량을 결집한다”
	IV. 재외동포사회 미래역량강화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재외동포기금의 부활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시스템 구축	
	V. 재외동포 글로벌화 촉진과 교류사업 심화	-세계한인의 날 활성화 및 문화엑스포(EXPO) 연계 -대통령 주재 ‘재외동포특별연석회의’ 추진 -세계한인회장 및 세계한상대회의 위상강화	
장기 과제 (C그룹)	VI. 재외동포 활동촉진을 위한 제반인프라 구축	-재외동포 관련 정부예산의 확대 -재외공관과 한인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한인회관의 현대화 및 지역커뮤니티센터 활 용 유도	정부의 미래지향적 정책의지와 통합시스템구축이 필요 →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VII. 재외동포 권익신장과 재외국민보호 철저	-재외국민 참정권과 이중국적 동시 추진 -재외동포교육현장 제정 및 재외동포백서 발간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및 해외 안전사고 대책 강구	

이나 한국학술연구재단(설립추진중) 등 정부기관에서는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연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 확대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 유산과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모국이 재외동포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상이한 이주배경, 이민시기, 거주국 상황, 문화풍습, 세대별 의식차이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의 삶을 하나의 수치로 일반화하거나 명확한 이론제시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지만 연구자는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기초 자료조사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술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연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어느 특정지역만을 연구하는 ‘반쪽짜리’ 나 ‘편향적’ 연구가 되지 않도록 재외동포연구방법론, 재외동포기업연구, 재외동포언론연구, 재외동포사회연구, 재외동포이주사연구, 재외동포사회발전연구, 재외동포독립·건국운동연구, 재외동포행정연구, 재외동포정책연구 등 다양한 주제와 영역으로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백과사전·백서 발간과 아카이브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사 및 이민사 연표정리, 연구자 현황 파악, 관련 문헌해제, 동포사회의 제반특징 및 동향분석, 주요 국내외 단체 및 인물 정보(DB) 구축 등 고급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관리·활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학제적이면서도 독립학문(학과)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시적인 기초조사연구(관찰→이론→실제적용), 거시적인 정책연구(이론→관찰→정책제언), 타 지역·민족과의 경험비교연구(관찰→동포관련 자료·DB 제공), 그리고 해석학적 연구(관찰+참여+이론→재해석→전문가 재해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과 접근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맺는 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야기된 세계경제의 위기는 내일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불황의 깊은 터널 속으로 모두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차 세계대전과 탈냉전 이후에 형성된 기존의 세계질서는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으며, 자국 이익 확보를 위한 열강들의 치열한 물밑접촉은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700만 재외동포사회 전체를 네트워크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과연 구상하고 있는 ‘재외동포 네트워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그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진다.

700만 재외동포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려면 우선 허브(Hub) 또는 중심축이 있어야 하며,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사진(마스터플랜과 실행계획)이 논리적·이론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지리적·문화적·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세계 각지의 한민족을 하나의 망(網)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슬로건만으로는 안 된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 유산과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물질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모국이 재외동포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 700만 재외동포사회가 직면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말하는 오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그럴 때 미래 재외동포사회의 윤곽을 어느 정도나마 예측할 수 있다.

현실을 모르는데 미래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과거를 모르는데 현실이 어떻게 이해되겠는가?

재외동포문제를 단순히 우리와 같은 눈높이나 정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다. 대륙별·국가별·지역별·도시별·세대별·분야별·신분별로 쪼개고 나눠보고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나 학자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은 채 700만을 네트워크 하겠다는 구상을 비전으로 내놓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또 하나의 성(城)을 쌓는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말 것이다.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듯이 ‘대한민국’이라는 모국 위에 ‘재외동포사회’라는 집을 네트워크 할 때 700만 재외동포는 우리의 든든한 협력자요 동반자요 후원자요 고급정보 제공자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 우리 700만 재외동포는 미·일·중·러(CIS) 등 주변 4대강국에 90% 이상이 집중 거주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재외동포사회를 거점[中核]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틈새시장들을 찾아내야 한다. 결국 재외동포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과연 재외동포가 우리의 민족자산인지 아니면 우리와 무관한 존재인지를 자문자답하기 위함이다.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는 모범적 국민으로 그리고 모국에서는 동포애로 육성되어야 할 소중한 민족자산이다.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제반 환경이 정비되지 않고서는 주류사회에서 세계 유수의 경쟁자들과의 경쟁에 밀릴 수밖에 없다. 따라

서 재외동포들이 사는 곳, 정착정도, 언어, 국적이 다르더라도 그들이 이 땅의 역사·문화를 자신의 뿌리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공동번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연구자들이 재외동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주요 목차〉

제 1 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
4. 내셔널리즘
5. 국민국가론

제 2 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료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샐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캐나다의 재외동포 정책

유 정 석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luxya@hanmail.net



들어가며

한 국가의 민족정책은 해당 국가의 역사적 경로와 맥락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변 국과 국제정치경제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에서의 민족문제는 남북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서 민족정책이라는 개념은 생소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민족구성의 단일성을 크게 상실하지 않은 특수 국가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 구성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민족 간 평등의 문제가 주요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다민족 국가일수록 민족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중국의 경우 헌법 총강 4조에 개별 민족의 평등권을 명시하였고, 구소련의 레닌헌법에서도 민족의 차별 금지 조항이 헌법 주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 역시 민족정책에 있어 상호존중(respect), 평등(equality), 다양성의 인정(diversity)등의 주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정책은 국내에 거주하는 캐나다인뿐 아니라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들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다만 캐나

다는 유대인, 베트남 난민 혹은 세계 대전의 직접적 피해 국가들이 겪었던 민족의 디아스포라(diaspora)를 겪지 않아 재외국민 정책이 민족정책의 핵심이슈는 아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역사적 경험의 산물로서의 고유 민족정책이 있고, 이 민족정책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로 설명된다. 즉, 민족문제는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편재하는 개념이지만 어떻게 한 국가의 현재 민족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는 개별국가의 정치체제, 정치세력, 문화, 경제상황, 역사적 경험 등의 독특하고 특수한 경험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캐나다의 재외국민정책은 국가 중요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다. 이외의 세계의 각 국가들은 화교나 고려인처럼 본국을 떠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민족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수립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및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며 다소 재외 동포 정책을 미흡하게 다루어왔으나, 수 차례의 법령 재개정 과정을 거쳐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 동포 정책의 목표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내에서 그 사회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 한국에서는 재외국민의 개념을 해외이주법과 출입국법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해외이주법”에 의하면 해외이주자라 함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자와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 의 혼인²⁾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재외동포’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그리고,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2008년 개정된 시민권법(the Citizenship Act)에서 국적의 상실 및 취득에 관한 규정만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국적 취득은 기본적으로 2중 국적주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에게 캐나다 국민 자격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여기서 캐나다 영토란, 통상적으로 본토라 부르는 캐나다 육지와 캐나다 국민 소유의 비행기, 선박 안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가운데 한 사람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이의 출산이 있었다면 이 아이 역시 28세 이내에 캐나다 국적 취득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의 상실은 캐나다 국

1)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http://www.okf.or.kr/> 검색일, 2009년 1월 15일).
2)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 포함.

적을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와 거짓으로 귀화하거나 귀화 후 1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에 중국의 화교나, 맥락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처럼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한 뚜렷한 법률적 정의나 개념, 정책이 없는 이유는 캐나다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캐나다는 국가 형성기부터 영국계, 프랑스계, 중국 및 아시아계, 독일 및 유럽계 등 다양한 이민자가 유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세계 대전을 통한 국민 이동, 제국주의를 통한 국민 이동이 없었고, 또한 선진국 대열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량의 노동력을 외국에 공급할 경험도 부재했다. 국민들이 캐나다 영토를 벗어나는 이유는 여행이나, 한국, 일본, 대만 등지의 어학 교육자, 오지 탐험, 은퇴자 이민 등으로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경제적 동기에 따라 이민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이유이다.

캐나다의 이주 변동 현황

캐나다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인구 변동에서 이민 유입자 수가 이민 유출자 수를 월등히 앞서는 구조를 만들었다. 주지하다시피 캐나다와 미국, 호주 등 방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이 없으면 국가 유지 자체가 어려운 국가들이다. 캐나다는 최근 주요 선진국 20개국이 그러하듯이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사회로 고속 진입하고 있다. 프랑스계 민족의 상대적 불평등을 달래주기 위해 이중 언어주의에서 시작한 다문화주의는 이제 캐나다가 이민자 유입을 위해 더욱 확대 시켜야만 하는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2005년 인구 센서스에서 캐나다의 인구는 3천 1백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성장률은 최근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이 저하

〈표 1〉 1986~2001년 인구증감 분석 (단위 : 천명)

기간	총 인구수	인구성장	출생	사망	이민유입 (출입)	해외이민 (출국)
1986-1991	28,031	1,930	1,933	946	1,164	213
1991-1996	29,611	1,580	1,936	1,024	1,118	338
1996-2001	31,021	1,410	1,705	1,089	1,217	376

※ 출처: Statistics Canada 2005, Census of Population.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인구 증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이민 유입자가 다소 변동은 있으나 출생과 사망에



캐나다의 경우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2008년 개정된 시민권법(the Citizenship Act)에서 국적의 상실 및 취득에 관한 규정만 제시하고 있다.

의한 인구 성장율을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표 1>의 우측 마지막 부분에 해외 이민자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국민이 해외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1980년대 후반 20여만 명에서 1990년대 후반 37만 여명으로 10년 사이 17만 명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최근 15년 동안 매년 1백 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유입되고 20~30만 명이 빠져 나가 평균 70~80만명 가량의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표 2>의 2001년 한 해 동안 인구 이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이주자는 5백 4십 만명 가량으로 캐나다 국내 이주자는 4백 4십 만 명, 이 가운데 주(州)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은 3백 5십 만 명, 동일한 주(州)안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9십 만 명,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97만 명 가량으로 나타났다. <표 1>에 의하면 해외이민을 위해 출국한 사람들은 5년 동안 37만 여 명으로 나타나 <표 2>와 모순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이민(emigration)과 이주(migration)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민은 국적 취득의 목적을 가지고 주거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주는 소재지의 변동을 의미한다. 즉, 이민은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터전을 잡고 국적을 취득하여 생활하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는 것이며, 이주는 이보다 넓은 의미로서 캐나다 이외 국가의 국적 취득 목적을 포함하는 동시에 여행, 단기체류, 장기 체류 등 캐나다 영토를 벗어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민은 장기적 차원,

<표 2> 2001년 이주 현황 (단위 : 명)

비고	전체	대도시 내 이주
이주자(Migrants)	5,458,735	4,422,910
내부 이주자(Internal migrants)	4,482,770	3,485,840
지역간 이주(Intraprovincial migrants)	3,577,105	2,752,540
지역내 이주(Interprovincial migrants)	905,665	733,300
외부 이주(External migrants)	975,960	937,075

※ 출처 : statistic Canada 2001 Census

이주는 장·단기적 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에 나타나는 다른 특징은 2001년 한 해 동안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주(州)안에서 거주지를 옮긴 사람들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이주자들이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이주자와 해외 이주자 가운데 상당수는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주하였는데, 2001년 한 해 동안 5백 45만 명의 이주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4백 42만 명이 대도시로 이주하였으며 나머지 1백만 명 만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셈이다.

<표 3>은 2008년도 인구 1,000명당 캐나다를 출국한 사람과 입국한 사람들의 통계비율로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Macau)에서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26%³⁾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아랍 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등지가 뒤를 이었으며 오세아니아와 남아시아 사이의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로 이주하는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아프리카 서북부의 대서양에 10개 섬으로 구성된 국가인 카보베르데(Republic of Cape Verde), 그레나다, 사모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들은 주로 관광 국가 위주로 출국했음을 알 수 있다. 캐

〈표 3〉 2008년 인구 1,000명당 국가별 이주자 유·출입자 비율

순위	국가명	이주 유·출입자수(%)
1	Macau	26.21
2	United Arab Emirates	24.41
3	Afghanistan	21.00
4	Cayman Islands	16.88
5	Kuwait	16.39
·	·	·
·	·	·
·	·	·
169	Ecuador	-7.98
170	Samoa	-9.14
171	Grenada	-11.23
172	Cape Verde	-11.74
173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21.04

※ 출처 :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19rank.html>

3) 이주자유출입 비율(net migration rate)은 모수의 절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치로 모수를 확인할 수는 없음. 따라서 인구 유입의 절대적 수치가 다수인가 아닌가는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음.

〈표 4〉 인구 1,000명당 이주변동율

(단위 : 천명)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	5.0	5.2	5.5	5.5	5.6	5.2	3.9	5.2	6.5	7.9	6.9	6.4	6.4	6.6

※ 출처 : <http://dx.doi.org/10.1787/272370046012>(2008 Fact Book, OECD)

나다 외교 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출국자 유형은 크게 여행, 유학, 취업, 은퇴이민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취업은 주로 한국, 일본, 대만의 어학 교사로의 출국이다. 여행은 일반 해외여행, 오지 탐험 등이며, 은퇴이민은 영국, 호주, 미국 등의 선진국이 상위권을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 여행지 각국의 정보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입출국자 유의사항 등이 설명되어 있고 관련 책자를 PDF 형식으로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표 4>는 OECD의 세계 인구이동 현황에 관한 자료로써, 캐나다의 연간 인구 1천 명 당 국내외 이주자 수를 평균적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표 3>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캐나다 국내의 주(州)간, 주(州)내 그리고 해외로의 거주지 변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인구 1천 명 당 6.6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들 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된 이주자들도 포함된다. 즉 이주 변동율은 유입자와 유출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로 국민의 이동 현황을 보여준다. 결과치가 양의 수가 나온 경우 유입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고, 결과치가 음의 수가 나온 경우 유출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OECD 자료의 경우 캐나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산한 결과치이기 때문에 모수가 3천 1백 만 여명으로 이를 바탕으로 총 인구 증가율의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캐나다에서는 연간 200만명 가량의 인구 증가가 있는데, 이 인구증가는 캐나다인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와, 여행자, 단기 체류, 장기 체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 해 동안 캐나다 땅을 밟아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⁴⁾

떠나는 자, 들어오는 자

캐나다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교통상부, 이민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통해 캐나다로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immigrants)들은 편리하고, 친절한, 대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를 떠나는 사람들의 통계나 자료를 구하고자 할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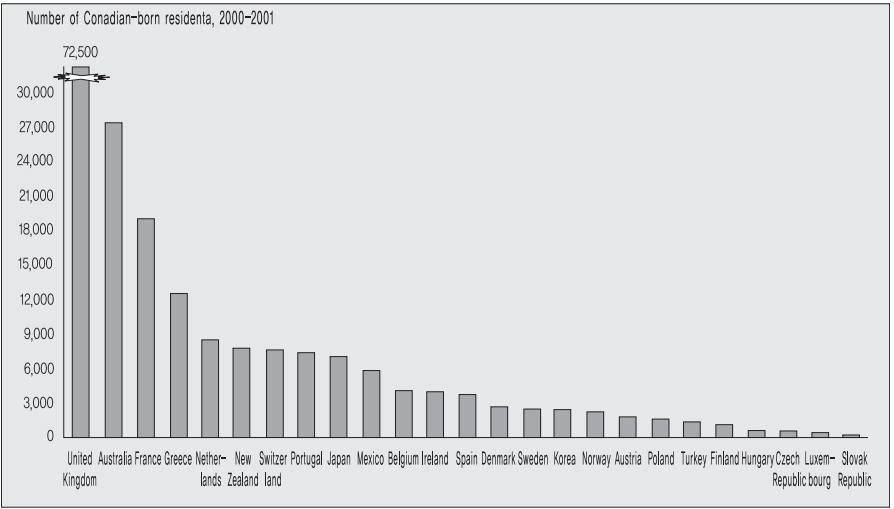
4) 연간 200만명 안에는 여행자와 외국공관 주재인, 사업 파견소 등 캐나다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캐나다 센서스 기준과 무관함.

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의 허용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캐나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하는 혹은 현지의 국적을 취득하고 체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캐나다는 자발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혹은 범죄라든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국적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통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순 이주율(net migration rate)이 인구의 변동 폭을 알려주는 주요 자료로 사용된다. 광활한 영토를 가진 캐나다 혹은 미국, 호주 등 이민자를 확보해야만 국가 유지가 가능한 국가들은 중국 등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국가가 얻는 이익은 어느 정도 국민 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개개인의 민족적, 역사적 이유로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국민들의 통계관리는 정확히 되고 있지 않다. 캐나다의 예에서처럼 캐나다를 떠난 사람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를 선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며, 국가가 이를 강제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1>의 자료는 OECD의 자료로, 이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출생한 사람들 가운데 1백 1십만명이 다른 OECD 국가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90만 2천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만명 가량이 미국에서 20년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가운데 30만명 가량도 10년을 넘게 미국에서 거

〈그림 1〉 캐나다인 외국 거주 현황 (미국 제외)

(단위 : 명)



※ 출처 : Statistic Canada - Catalogue No.11-008

주한 사람들이다. 90여 만명 가운데 45만명 가량은 2000년 무렵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이들은 캐나다로 돌아올 의지가 없다.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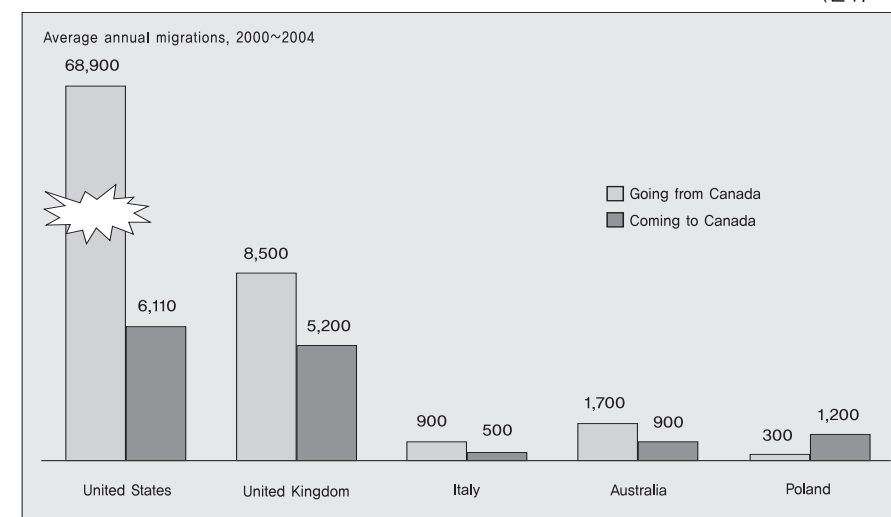


광활한 영토를 가진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이민자를 확보해야만 국가 유지가 가능한 국가들은 중국 등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년도 캐나다 인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지는 영국이었으며 7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호주에 2만7천여명, 프랑스와 그리스에 1만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국경과 인접해 있고, 세계 경제, 군사의 초강대국인 미국으로 오래전부터 결정됐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으로 건너간 캐나다인들은 68,900명인 반면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사람들은 불과 6천 1백 여명이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는 영국이었다. 대략 2세기 동안 많은 영국인들이 캐나다로 이주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인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던 영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영국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 본토로 8천 5백명이 이주했으며 반면 영국인들은 5천 2백명이 캐나다로 이주했다. 이탈리아인들은 20세기 초 캐나다로 대량 이민을 한 민족 가운데 하나로 31만 8천명의 이탈리아인들이 지금 캐나다인으로 살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 중 특이한 것은 이들이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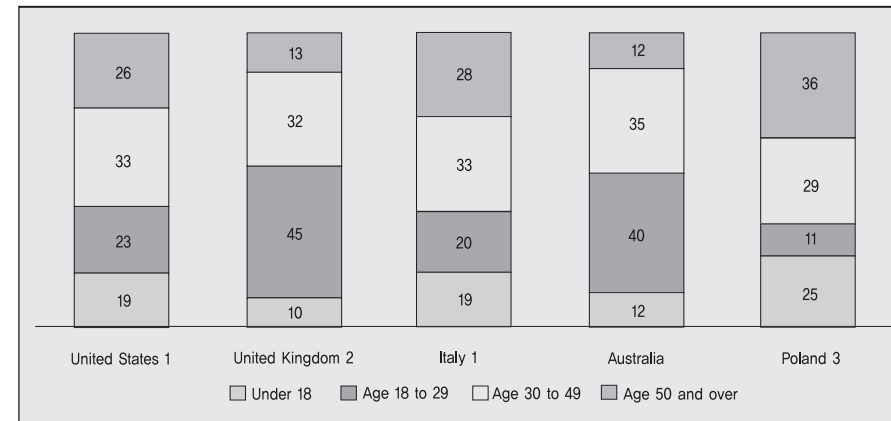
〈그림 2〉 2000년-2004년간 주요 국가별 캐나다인 이주 현황 (단위 : 명)



※ 출처 : Statistic Canada - Catalogue No.11-008

〈그림 3〉 연령대별 이주자 분포

(단위 : %)



※ 출처 : Statistic Canada - Catalogue No.1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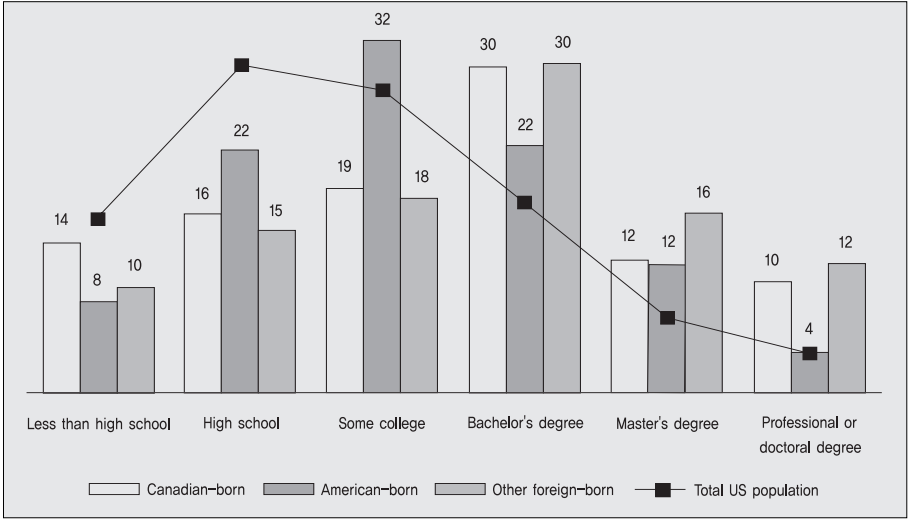
로 돌아가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1천 여 명의 이탈리아 출신 캐나다인이 이탈리아로 이주했다. 이러한 현상은 폴란드인에게서도 발견되는데 폴란드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기간, 그리고 1980년대 캐나다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다. 2001년 통계에 의하면 18만 2천명의 폴란드 태생 캐나다인이 있었는데, 이들 중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불과 300명이었다.

이민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성년이 되었을 때이며, 무작정 떠나는 이민자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민이란 계획적인 인생의 변경을 의미한다. 또한 이민은 최소한 대학이상을 졸업하고 이민 대상국의 노동시장에서 상품성이 발생한 다음에 추진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민은 혼자 가는 경우도 있으나 가족 단위의 이민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이러한 경우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지역으로 이민을 떠나는 캐나다인들은 주로 고학력이며 한참 일할 나이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림 3>에 의하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56%가 노동력으로서의 상품가치가 제일 높은 나이에 위치해있다. 즉 미국으로 떠난 사람들 가운데 10명중 5-6명은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사람이며 50세 이상자는 10명중 3명이 채 못 된다. 영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민자 10명 중 2~3명 만이 18세 이하이거나 50세 이상이며 나머지 7~8명은 한 참 일할 나이의 노동인구이다. 여기서 최근의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존 기간 연장을 고려하면, 50세 이상자들도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기 위한 은퇴이민으로만 볼 수만은 없다. <그림 3>에 의하면 영국과 호주로 떠나는 캐나다인들보다 이탈리아나 폴란드로 떠나는 캐나다인들이 더 고연령층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세계전쟁 등의 이유로 원치 않는 이민을 선택했던 이민 1세대가 호주나 영국의 경우에서보다 이탈리아나 폴란드 등의 본국으로 귀국하여 여생을 보내고 싶어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림 4>는 미국으로 이주한 캐나다인의 학력분포를 보여준다. 네모의 검은 점과 실선으로 이어진 선은 미국의 평균 교육수준을 나타낸다. <그림 4>에 따르면 캐나다 인이 미국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가 미국의 평균치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나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평균치의 경우 고졸 이상은 캐나다 이민자가 학력수준이 높으며, 일반 4년제 대학의 학사 학위의 경우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기타 외국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에서 캐나다인이 미국 평균치보다 학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과 <그림 4>가 의미하는 바는 캐나다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지로 떠나는 많은 이주자들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최고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아이를 데리고 가족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으며, 고학력자라는 점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주자들 가운데 75 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호주에 장기간 체류할 것이라 조사됐으며, 이는 여행과 교육의 이유에서라고 분석된다. 또 다른 인구의 유출은 캐나다에 정착한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이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 후 20년이 지나면 이주자들의 35퍼센트가 본토로 귀국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탈리아 출신자의 경우 2001년 센서스를 통해 50세 이상인 사람들의 52

〈그림 4〉 미국 이주자의 학력별 이주자 분포 (단위 : %)



※ 출처 : Statistic Canada - Catalogue No.11-008

퍼센트가 본토로 재이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오며

세계화 시대란 신자유주의라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정의된다. 국경을 초월하여 기업과 기업, 국가와 국가, 심지어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가능케 된 시대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흐름이 어느 시대보다 빨라졌고, 그에 따라 물류와 노동력의 이동 속도도 빨라졌다. 또한 이러한 인적, 물적 이동을 자유롭게 된 것은 전세계 국가들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관세 및 출입국 절차 및 수위를 낮추었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 인구의 이동이 빨라진다는 것은 다양한 민족이 보편적으로 혼재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개별 국가가 해외의 자국민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호 도움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는 세계 대전 등 국란의 이유로 민족이 흩어져 이를 다시 재결집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한 국가들도 있고, 재외동포 사회의 단결을 통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한 국가들도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이민 유출자(emmigrants) 파악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황이 반증해주고 있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민 유입자에게 더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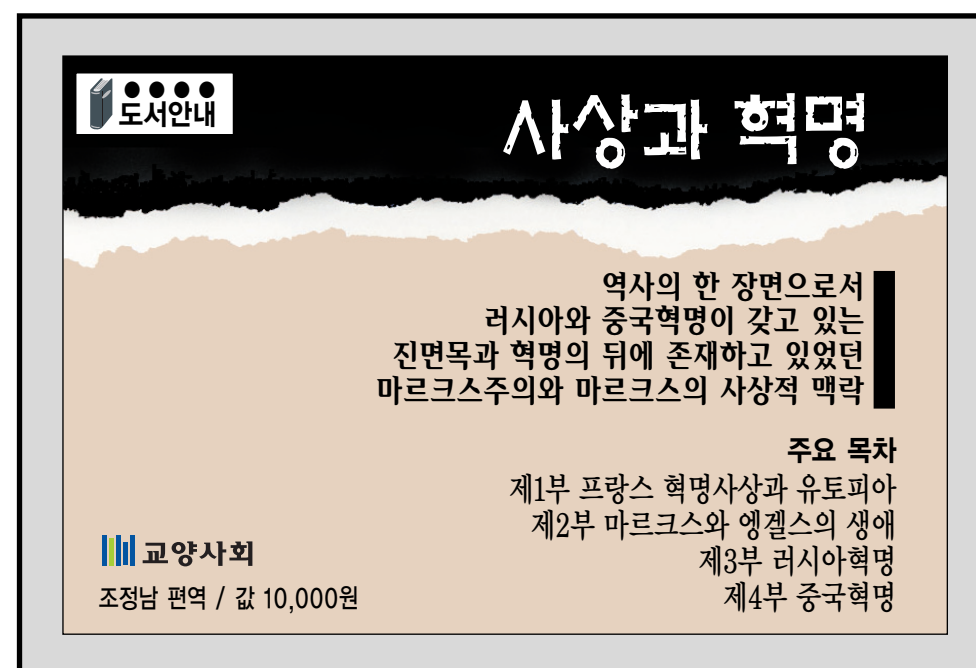
〈참고문헌〉

1. 유정석, 『세계화시대의 다문화주의』(서울: 고려대학교, 2003)
2. Canadian Citizenship Act
3.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제6호, 제23호, 제34호

〈캐나다 정부 간행물〉

1.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Facts and Figures : Immigration Overview”, 2006
2. Minister of Industry, Portrait of the Canadian Population in 2006
3. Minister of Industry, Portrait of the Canadian Population in 2006 by age and sex
4. Minister of Industry, The Canadian Immigrant Labour Market in 2006:

- Analysis by Region or Country of Birth
5. The London Free Press Source: Statistics Canada, 2006 Census
 6. Statistic Canada, Canadians Abroad-Catalogue No.11-008
 7. 2008 Fact Book, OECD
 8. statistic Canada 2001 Census of population
 9. Statistics Canada 2005, Census of Population.
 10. Annual Demographic Estimates: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8
 11. Report on the Demographic Situation in Canada 2005 and 2006



러시아의 재외동포 정책¹⁾

김 인 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kis980117@yahoo.co.kr



러시아민족 이민의 역사와 최근의 경과

198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아닌 구소련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대략 2천5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우크라이나로서 그 규모가 1천1백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에 6백2십만, 우즈베키스탄에 1백7십만, 그리고 벨라루스에 1백2십만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비율상 가장 많은 러시아인이 거주하는 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총인구중 무려 37.8%를 러시아인이 점하고 있다. 다음은 라트비아로 34.0%, 에스토니아에서는 30.3%가 러시아인들이다.

러시아인들이 구소련지역의 남부와 서부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17세기였다. 이

1) 이 글은 “김인성, 「구소련 지역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민족연구』 제32호, 2007, pp. 85~109”의 개정판임.

〈표 1〉구소련 비러시아 지역 러시아인 분포도(1989)

(단위: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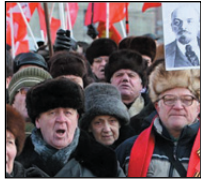
국 명	총인구	러시아인	자민족비율(%)	러시아인비율(%)
우크라이나	51,452	11,356	73	22.1
벨라루스	10,152	1,342	78	13.2
몰도바	4,335	562	64	13.0
아제르바이잔	7,021	392	83	5.6
아르메니아	3,305	52	93	1.6
그루지아	5,401	341	70	6.3
카자흐스탄	16,464	6,228	40	37.8
우즈베키스탄	19,810	1,653	71	8.3
타지키스탄	5,093	388	62	7.6
키르기즈스탄	4,258	917	52	21.5
투르크메니스탄	3,523	334	72	9.0
에스토니아	1,566	475	62	30.3
라트비아	2,667	906	52	34.0
리투아니아	3,657	344	80	9.4

* 출처: Leon Gudkov, “The Disintegration of the USSR and Russian in the Republics,”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9, 1, pp. 4~6, 고재남, “러시아의 근외정책과 CIS 체제의 장래,” 『러시아, 새질서의 모색』 (서울: 열린 책들, 1994), 398쪽에서 재인용.

당시의 이주는 자연발생적인 소규모의 이주였다. 본격적인 국가주도의 대규모 이주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이주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유형의 이주로서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 농부들의 이주이며, 둘째는, 근대적인 유형의 이주로서 비러시아 지역의 산업시설에 취업하기 위한 러시아 근로자 및 산업 인텔리겐차들의 이주이다. 최초의 대규모 이주는 스톨리핀의 개혁이 진행되었던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에 전통적인 유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스톨리핀의 농업개혁은 농지부족과 농촌 지역에서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진압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 개혁에 의해 당시 카자흐스탄 북부지역(현재는 키르기즈스탄 북동부 지역)으로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도 전통적인 유형의 이주는 두차례에 걸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스탈린 집권 당시인 1928년부터 1932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농업집단화에 반발하던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쿨라크들을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강제노동수용소로 추방하는 형태로 이주가 행해졌다. 흐루시초프시기에 이루어졌던 황무지 개척 운동 역시 중앙아시아로의 러시아인들의 이주를 동반하였다.

소비에트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근대적 형태의 이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30년대 이후 급속도로 전개된 비러시아 지역에서의 근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러시아인들이었다. 러시아인들은 다른 민족 집단에 비해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을 일찍 겪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리적 유동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또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인들의 출산율이 꽤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잉여인구



러시아인들이 구소련지역의 남부와 서부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17세기였다. 이 당시의 이주는 자연발생적인 소규모의 이주였다. 본격적인 국가주도의 대규모 이주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다.

의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필요했고,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낮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급속히 진전되는 도시화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이주를 필요로 했다. 또한 브레즈네프 시기에는 당-국가의 관료들이 비러시아 지역으로 꾸준히 이주해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러시아인들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면서부터 러시아 자체의 유희노동력이 고갈됨에 따라, 대규모의 이주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따라서 구소련공화국에 존재하는 러시아인 공동체는 거의 대부분 70년대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부터는 반대로 중앙아시아나 코카서스 지역으로부터 러시아로의 역이주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근외 러시아인들의 지위가 하락하고 생활수준의 저하됨에 따라 역이주의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의 약 11.4%에 해당하는 약 2백8십5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특히 분쟁지역으로부터의 이주가 두드러졌다. 타지키스탄 거주 러시아인 중 55.3%, 아제르바이잔, 아르메이나, 그루지아에서는 각각 45.3%, 56.2%,

〈표 2〉러시아인 이주 경과 개관

시 기	내 용	이 주 지
제정러시아 시기	-농경지 확보를 위한 러시아 농부들의 이주	-중앙아시아
*1906~1910	-스몰리핀의 농업개혁 -농지부족해결, 농촌 지역의 불만 해소 및 진압의 목적	-당시 카자흐스탄북부 (현재 키르기즈스탄북동부 지역)
소비에트 시기	-비러시아 지역의 산업 노동자 및 기술자의 이주	-구소련 전지역
*1928~1932 : 스탈린 시기	-농업집단화에 반발하는 쿨라크들의 강제이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1953~1964 : 흐루시초프 시기	-흐루시초프의 황무지 개척운동	-중앙아시아
*1960년대~1970년대	-당·국가 관료 및 군인들의 이주	-구소련 전지역
러시아연방 시기	-민족주의 및 구소련지역 비러시아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역이민	-러시아연방
*1988년 이후	-개방정책 이후 비구소련국가로의 이주 증가	-서구 각국

〈표 3〉 러시아와 구소련국가간 러시아인 순이민자 증감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우크라이나	-4.9	-24.7	-12.3	38.5	101.3	64.9	61.8	46.3	35.2	39.1	12.5	16.2	6.7	4.6	18.1	20.8	41.0
벨라루스	5.6	-2.0	-4.6	1.2	13.3	9.2	3.4	0.5	-2.3	-3.0	-4.7	-2.0	-1.7	0.0	0.8	-0.7	0.7
몰도바	3.1	4.1	11.1	4.0	7.6	6.9	6.5	4.3	3.2	9.4	5.9	6.2	5.2	3.9	5.8	8.0	13.5
아제르바이잔	42.9	17.6	35.1	22.9	19.0	15.7	12.3	7.8	4.4	11.7	3.4	3.9	2.5	1.2	3.3	7.5	19.6
아르메니아	3.6	3.3	5.6	6.4	4.6	2.4	1.6	1.0	0.9	14.4	4.5	5.7	4.0	2.4	7.0	12.3	30.0
그루지아	9.5	18.0	29.6	33.8	24.2	14.2	9.1	5.5	4.8	18.4	8.3	6.3	4.6	4.1	4.8	6.2	10.0
카자흐스탄	36.3	25.6	82.4	104.4	234.3	143.8	98.2	150.6	130.5	107.0	50.0	41.8	15.4	27.6	39.5	38.0	30.0
우즈베키스탄	40.2	27.9	65.2	50.7	93.5	64.2	23.0	19.7	23.0	37.7	22.9	23.6	20.3	14.2	29.8	36.5	52.1
타지키스탄	31.7	14.4	47.1	40.9	25.8	22.4	15.1	9.8	7.4	9.9	5.7	5.1	4.4	2.8	4.3	6.1	16.8
키르기즈스탄	16.1	15.5	41.4	66.4	42.9	13.4	7.3	4.9	3.3	13.6	9.4	12.1	6.0	8.9	15.1	15.1	24.1
투르크메니스탄	4.4	4.7	10.9	6.7	13.0	12.2	14.0	9.8	5.8	6.1	4.1	4.3	6.0	3.6	4.0	4.0	4.7
에스토니아	2.8	3.6	18.7	10.6	8.2	6.2	4.1	2.3	1.0	0.4	0.1	0.2	0.1	0.2	0.2	0.1	0.2
라트비아	3.5	5.2	19.7	19.4	19.3	10.7	5.9	4.0	2.4	0.6	0.5	0.4	0.3	0.1	0.1	0.5	0.5
리투아니아	5.1	4.5	10.2	13.4	5.4	2.2	1.5	6.0	0.6	1.4	1.0	0.7	0.6	0.6	0.5	0.1	0.3
총 계	199.9	117.7	360.1	419.4	612.4	388.4	263.8	272.5	220.2	254.7	123.6	124.5	74.4	71.8	133.3	154.5	243.5

* 출처: 1) 1990~1998년 통계는 러시아연방정부 통계위원회, 『러시아인구연감』
2) 2000~2007년 통계는 러시아통계청 홈페이지.

〈표 4〉 러시아연방과 비구소련국가간 이민자 유입과 유출 현황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유입	0.2	0.2	0.3	0.3	0.4	0.4	0.4	0.3	0.2	0.2	0.3	0.4	0.4	0.5	0.4	0.4	0.5	12.6	9.8	9.5	9.5	8.8	8.6	7.2	11.2
유출	3.6	3.0	2.6	3.1	2.9	9.8	20.8	47.6	103.7	88.3	103.1	113.9	105.4	110.3	96.7	84.8	83.7	63.4	59.6	54.6	47.9	42.8	33.7	18.1	14.9
순이민	-3.4	-2.8	-2.3	-2.8	-2.5	-9.4	-20.4	-47.3	-103.5	-88.1	-102.8	-113.5	-105.0	-109.8	-96.3	-84.4	-83.2	-50.8	-49.8	-45.1	-38.4	-34.0	-25.1	-10.9	-3.7

43.6%의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귀환하였다.

1992년까지는 민족주의의 열기로 인해 민족들이 각자 자신의 민족단위 공화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1993년부터는 경제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특히 94년 러시아의 경제가 활성화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러시아로의 이민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부터 2007년 사이에 4백만 이상의 구소련 지역 거주자들이 러시아로 돌아왔다. 러시아로의 이민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993년과 1994년으로 이 시기에만 120만 명 이상이 러시아로 이주하였으며, 이후 러시아로의 이민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2007년에는 전년 대비 63.4% 증가한 24만여 명이 유입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표 4>에 보이듯, 개방정책이 본격화되었던 1988년부터 미국, 독일을 위시한 서구지역으로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90년대 중반까지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까지 비구소련지역으로의 이주는 총 4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서구지역으로의 이주 추세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서구지역으로의 이주는 계속되고 있다.

구소련 각국의 소수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

1989년 현재 총인구 5천1백5십만명 중 러시아인은 1천1백4십만명으로 총인구중 22.1%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 민족적 균열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인종적으로 동일하며, 언어는 구분되기는 하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며, 문화와 역사가 서로 얽혀있고, 같은 종교를 믿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주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거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정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 문제는 지역간 균열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0.9%에 해당하는 4십6만5천여 명에 달하였다.²⁾ 두 가지 요소가 러시아인들의 귀환을 부추기고 있다. 먼저 민족주의적 정서를 들 수 있다. 1994년 선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70%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나 CIS와의 통합이나 협력관계를 지

2) 구소련국가로부터 러시아연방으로의 이민자들 중 러시아민족의 비율은 공식적인 통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각 민족공화국으로의 이민자들 중에서 자민족 비율이 높다는 점은 사실이다. 러시아연방으로의 이민자들 역시 타민족 보다는 러시아민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하고 있고, 독립 초기에 위력을 과시했던 민족주의 정당이 95년 이후에는 10%에도 못미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등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열기는 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위기이다. 소련 시기의 경제 체제가 남겨준 유산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과 농업 분야는 만성적인 비생산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95년 들어 인해 러시아인들의 귀환의 열기가 가라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가 러시아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크림미아 자치 공화국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 총인구 250만 중 러시아인이 64%를 점하고 있고, 23%는 우크라이나인, 10%가 타타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림미아는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던 것을 1954년 흐루시초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병 300주년을 기념하여 양도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었다. 이 지역은 러시아 민족적 일체감이 강하게 보존되어 있고 러시아 언어와 문화가 지배적으로 남아있다. 1944년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추방되었던 당시 2십6만의 크림미아 타타르인들 중 다수가 90년대 이후 이 지역으로 귀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민족 차별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 지역의 민족문제는 복잡성을 더하게 되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적당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전체지역 및 크림미아 지역의 분쟁은 폭력이나 무력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벨라루스

1989년 현재, 총인구 1천2십만 중 13.2%에 해당하는 1백3십만 정도가 러시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2차대전 후 정착하였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는 벨라루스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1만 4천여 명이다. 벨라루스에서는 민족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지만 다수 러시아인들은 벨라루스 동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벨라루스 서부 지역은 전통적인 벨라루스의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동부지역은 도시화되어 있다. 벨라루스에서 러시아 문화와 벨라루스 문화는 상호침투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벨라루스인들은 일상언어로서 러시아어를 선호하고 있다. 95년 투표에서는 국민의 83.1%가 러시아어를 벨라루스어와 똑같은 공식어로 채택하자는 안에 찬성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지 않고, 토착문화에 적응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점은 중간급 국가관료층에 러시아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친러시아 정책의 지지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1995년 5월 투표에서 나타났듯이 국민 대다수가 러시아와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강력한 희망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간에 경제적 통합,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조약이 이미 체결된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측에서는 벨라루스의 경제적 부담을 떠맡기를 꺼리고 있는 상태이다.

몰도바

1989년 현재, 총인구 4백3십만 중 러시아인은 56만명으로 총인구의 13.0%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10만9천여 명이다.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2차대전 후에 주로 이주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도시지역과 동부 트랜스드네스트르 지역에 정착하였다. 몰도바의 경제는 소련시기부터 이미 낙후되어 있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지극히 높으며, 생활수준 또한 열악하다.

몰도바는 러시아인들이 직접적으로 군사분쟁과 관련된 유일한 국가이다. 트랜스드네스트르 지역의 러시아인구는 약 20만명으로, 총인구의 23%를 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인들이 25%, 토착 몰도바인들은 약 40%를 점하고 있다. 몰도바 독립직 후부터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은 지속적으로 분리독립을 희망해왔다. 러시아 제14군의 투입과 러시아정부의 중재노력으로 일단 무력분쟁은 종식되었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 지역 주둔 러시아군의 수상쩍은 행동으로 인해 러시아 정부의 속내에 의구심을 표현하는 의견도 많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몰도바인들은 문화적으로 루마니아와 일체감을 가지고 있고 언어 역시 루마니아어를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드네스트르 공화국의 독립을 부추길 경우 몰도바는 열악한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루마니아와의 통합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에게 그러한 모험을 행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1989년 현재 총인구 700만 명 중 러시아인들은 39만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거주 러시아인들은 주로 석유 및 제조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는 약 23만명이다. 아제르

바이잔은 바쿠가 수도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석유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그러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분쟁이 이곳에서 발생함으로써 전쟁비용과 함께 석유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는 경제위기를 결과하였다. 또한 대통령 알리에프 정권의 부패와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으로 인해 사회·정치적 혼란 역시 존재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장래 문제, 안전에 대한 두려움, 사회생활의 어려움, 언어문제, 사회적 지위의 하락, 본국과의 단절감, 주변사람들의 귀환 등의 이유로 인해 본국으로의 귀환을 희망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1989년 현재, 총인구 3백3십만 중 러시아인들은 5만2천명으로 총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비율상으로 볼 때 구소련국가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11만 명으로 러시아인 전체 인구의 2배에 달한다. 따라서 현지러시아인들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귀환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친러시아 정책을 펴고 있고, 러시아 정교회와는 종교적 일체감도 있기 때문에 다른 코카서스 국가들보다는 러시아인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의 본국귀환이 줄을 잇고 있다.

그루지아

1989년 현재, 총인구 5백4십만 중 러시아인은 34만명으로 총인구중 6.3%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현지 러시아인의 약 60%에 해당하는 21만여명이 본국으로 귀환하였다. 러시아인들은 중공업분야, 특히 광업과 금속산업 및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루지아의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 공화국은 러시아의 북부 코카서스 지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루지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주장해 오고 있다. 오랜기간의 내전 끝에 현재는 휴전협정을 맺고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한 상태이다. 두 공화국은 자체적인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그루지아 정부가 두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력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해 그루지아 사회와 경제는 심한 타격을 받았다. 그루지아 정부에게 내전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했고, 따라서 경제개혁에 필요한 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경제 침체는 불가피했다. 경제위기와 내

전은 사회·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미 그루지아를 떠났거나, 떠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1989년 현재, 총인구 1천6백5십만중 러시아인은 6백 2십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7.8%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약1백36만여 명이다. 오랜 동안의 러시아인 유입과 스탈린 시기 백만이 넘는 인명 손실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구소련국가들중 자민족 구성비율이 과반수에 못미치는 유일한 국가이다. 러시아인들은 주로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인 카자흐스탄 북부에 밀집해 살고 있다. 따라서 북부지역은 민족구성비율상 러시아인들이 다수민족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분리독립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자민족화 정책은 러시아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어를 공식어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지만, 교육언어로서 인정하고 있고, 카자흐어를 강제하는 급진적인 언어법안은 부결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키릴문자를 알파벳문자로 바꾸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자민족화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인 사회는 동요하고 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덜하기는 하지만 러시아인들의 본국귀환은 계속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1989년 현재, 총인구 1천9백8십만명 중 러시아인은 165만으로 총인구중 8.3%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64만5천명으로 이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의 3.3%에 달한다.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편이어서 대규모의 귀환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자민족화 정책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본국을 향한 러시아인들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타지키스탄

1989년 현재, 총인구 5백만 중 러시아인은 약 39만으로 총인구중 7.6%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약 27만 명에 달한다. 타지키

스탄은 계속되는 내전
으로 인해 정치적인
불안정에 시달려 왔
고, 경제와 사회 역시
심각한 불안정을 노정
하여 왔다. 아프가니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어를 교육언어로
서 인정하고 있고, 카자흐어를 강제하는
급진적인 언어법안은 부결시켰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키릴문자를 알파벳문자
로 바꾸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스탄과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러시아가 군사적인 원조를 계속하고 있
기는 하지만 정치적 안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키르기즈스탄

1989년 현재, 총인구 426만명 중 러시아인은 약 90만명으로 총인구중 21.5%를 차
지하고 있다.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31만6천여명으로 이는
키르기즈스탄 전체 인구의 약 7.4%에 달한다.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은 93년 6
만6천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
아섰다. 키르기즈스탄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에 의존적이다.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유지와 고급기술을 가진 러시아인
들의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94년과 95년에 걸쳐 러시아인
들을 묶어두기 위한 유인정책을 실시하였다. 비록 의회의 승인을 얻진 못했지만 이
중국적제 도입을 시도하는 한편, 러시아어를 공식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격상시
켰다.

이러한 유인정책이 러시아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키진 못했지만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인들의 본국귀환이 눈에 띄게 줄어들
었을 뿐만 아니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까지 목격되고 있다. 이를테
면 96년에는 1만4천명의 러시아인들이 떠난 반면, 이주해 들어온 러시아인들은 8
천5백명에 달한다. 물론 이주해간 사람의 숫자가 더 많긴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
들 중에 이 정도의 러시아인의 유입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키르기즈스탄이 유일
하다.

투르크메니스탄

1989년 현재, 총인구 350만 중 러시아인은 33만명으로 총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11만8명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러시아로의 역이민의 추세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다음으로 낮다. 현지 러시아인들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에 사활적인 석유·가스 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러시아인들을 국내에 붙잡아두기 위해 구소련국가들중에서 유일하게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조약에 서명한바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이슬람화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인들의 심리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1989년 현재, 총인구 1천6백만 중 러시아인은 48만으로 전체인구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6만여명이다. 에스토니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94년 현재, 4십3만5천8백명의 러시아인중 시민권자는 9만1천5백명으로, 러시아인들중 79.0%는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거주 러시아인의 40%는 에스토니아 태생이다. 반면 92년 4월의 한 조사에 따르면 단 9.2%의 러시아인들만이 에스토니아어를 유창하게 읽고 쓸 줄 알며 32.0%는 단 한마디의 에스토니아어도 구사할 수 없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1.6%만이 확실히 에스토니아를 떠나겠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4.5%만이 에스토니아 문화를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하였다. 일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러시아인들은 에스토니아에 남아서 시민권을 획득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러시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에스토니아어를 배울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에스토니아 거주 러시아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자치지역 추구로 현상화되었다. 1993년 7월 12일 러시아 접경지역인 나르바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97%가 자치지역선포를 지지하였다. 나르바지역은 러시아계가 95%를 차지하고 있다.

라트비아

1989년 현재, 총인구 2백7십만 중에서 러시아인구는 9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러시아계 인구는 우크라이나인과 벨로루시인을 포함하여 45%에 이른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93만1천명으로, 이는 이 지역 러시아 인구의 10%에 달한다. 라트비아의 러시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한편 구소연방 시절 라트비아 러시아인들은 라트비아

의 독립 물결에 합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계들은 주로 수도 리가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갈등은 정치적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곤 했다. 또한 라트비아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군의 철수 문제가 민족차별정책과 결부되면서 라트비아와 러시아 양국간 국제적인 갈등의 양상으로까지 치닫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1994년 8월 31일 러시아군 철수가 완료되었다.

리투아니아

1989년 현재, 총인구 3백7십만 중 러시아인은 34만명으로 전체인구의 9.4%를 점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7년까지 러시아연방으로의 순이민자수는 5만4천명이다. 총인구의 80%에 달하는 리투아니아 민족에 비해 러시아 민족은 소수에 불과하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인들과 본국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고, 러시아인들 자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리투아니아인들은 러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나 독립에 위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여건에 기반하여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인 문제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융화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미 1993년 8월 러시아군의 철수가 완료된 바 있다.

시민법을 통해본 각국의 소수러시아인 정책

대개의 CIS 국가들은 러시아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에 대한 시민법상의 차별은 없다. 시민법이 발효되기 전에 3년 혹은 5년 이상 자국에 영구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각국에 러시아 사회가 형성된 지가 이미 30년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다. 대부분의 시민법이 언어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만, 귀화의 경우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로 인해 러시아인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시민권에 대한 이른바 제로옵션의 적용하여 시민법이 실효를 발휘하는 시점에서 해당 국가에 영구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발트3국의 소수러시아인들은 시민권의 획득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구소련국가들 중 이들 국가만이 제로옵션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에스토니아의 시민법에 따르면 소연방에 강제 편입되었던 1940년 6월 16

일 당시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시민이었던 모든 사람 및 그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로 간주된다.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안에 의해서 시민권을 획득한 비에스토니아인들은 9만 내지 10만명으로서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다수의 비에스토니아인들은 귀화를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에스토니아에 거주하여야 하고, 공화국과 헌법에 대한 충성의 선서를 해야 하며, 에스토니아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993년 2월 10일에는 별도의 언어법을 제정하여 언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였다. 이 법령에 따르면 귀화 희망자들은 시험을 통하여 국가검정언어능력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에스토니아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단어를 생각해내거나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서는 안된다. 또한 문법과 구문에 있어 실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현지러시아인들의 토착어 구사능력이 15%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언어에 대한 까다로운 조항으로 인해 시민권을 획득하는 일이 대다수 러시아인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였다. 게다가 1992년 이후 현지러시아인들이 정치권에서 점차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차별이 이루어져 왔다.

라트비아는 1994년 7월 22일에 시민법을 채택하였다. 독립 초기에는 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1년 최고회의가 발포한 결정이 시민법을 대신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까지 귀화를 위한 절차는 정지되었다. 시민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시민권은 1940년 6월 17일에 라트비아의 시민이었던 자와 그 자손에게 부여된다. 이중국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귀화신청을 위한 조건에는 에스토니아와 마찬가지로 라트비아어 구사능력의 입증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귀화신청 제한규정을 별도로 설정해 놓고 있다. 라트비아 정부와 의회를 비합법적으로 전복시키려는 기도를 했던 자들, 소련군대, 내무성과 KGB에 복무했던 사람, 그리고 소련의 공산당과 콤포소의 일원이었던 사람들은 시민권 부여가 거부된다. 이 조항은 특히 러시아인들에게 불리하다. 러시아인들이 주로 그러한 기관에 복무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1991년 1월 13일 이후로, 공산주의나 친러시아적 성향의 단체 혹은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정치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들 역시 귀화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귀화신청을 하려면 거주자로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개의 러시아인들이 거주자로 등재되는 것 자체를 거부당했기 때문에 귀화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리투아니아는 발트3국 중에서 소수러시아인에 대해서 가장 관용적이다. 리투아니아 시민법도 다른 발트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귀화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귀화를 위해서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의 선서를 해야하고, 리투아니아 언어시험 및 헌법의 기초사항에 대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10년 이상 리투아니아 영토에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살고 있어야 하며, 적법한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의 자동부여 범위가 상당히 폭넓다. 1940년 6월 15일 이전에 리투아니아의 시민이었던 자와 그 자손들, 1991년 11월 4일 이전에 과거의 시민법에 의해 시민권을 획득했던 자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거의 모든 현지러시아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을 부여받은 셈이 된다.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10%만이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사실상, 시민권을 얻지 못한 것은 법률적인 제약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타국적 선택 혹은 시민법에 대한 무지

〈표 5〉 CIS 각국의 시민권 정책

국가	시민권 자동부여범위	귀화신청조건	이중국적허용	기타사항
러시아	-제로옵션적용 -구소련시민권자와 재정러시아신민 및 그 후손에게도 시민권 부여	-5년이상거주	-국제조약에 의해 허용 (투르크메니스탄과 조약체결)	-시민권취득절차간소화 대상이 폭넓음 -타국에 이중국적허용을 촉구해옴
우크라이나	-제로옵션적용	-5년이상 거주 -언어소통능력, 생활능력	-국제조약에 의해 허용	
벨라루스	-제로옵션적용	-7년이상 거주 -언어소통능력, 생활능력	-불허	
몰도바	-90년6월23일 이전 영구거주자	-10년이상 거주 -언어소통능력, 생활능력	-국제조약에 의해 허용 -대통령령에 의해 허용	
아제르바이잔	-해당조항 없음 -속인주의, 속지주의 선택	-해당조항 없음	-불허	-현재 시민법 개정작업중
아르메니아	-구소련 당시 아르메니아 시민권자 -시민법발효3년전부터 영구거주한 자	-3년이상거주 -언어소통능력	-불허	-행정부는 이중국적제 허용 주장
그루지아	-시민법발효5년전부터 영구거주한 자	-10년이상거주 -언어소통능력, 생활능력	-불허	
카자흐스탄	-제로옵션적용	-10년이상거주	-국제조약에 의해 허용	
우즈베키스탄	-제로옵션적용	-5년이상거주 -생활능력	-불허 -대통령령에 의해 허용	
타지키스탄	-제로옵션적용	-국내거주를 희망하는자	-불허	-국제조약이 현행법에 우선험
키르기즈스탄	-시민법발효5년전부터 영구거주한 자	-언어소통능력, 생활능력	-불허	-행정부는 이중국적제 허용 주장
투르크메니스탄	-제로옵션적용		-국제조약에 의해 허용 (러시아와 조약 체결)	-93년12월 러시아와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 체결
에스토니아	-1940년이전 시민권자 및 그 후손	-5년이상거주 -언어능력시험, 생활능력	-불허	-언어조항이 까다로움
라트비아	-1940년이전 시민권자 및 그 후손	-5년이상거주 -언어능력시험, 생활능력	-불허	-구소련의 관리 및 군인, 정보요원출신에게는 시민권 부여 거부
리투아니아	-1940년이전 시민권자 및 그 후손	-10년이상거주 -언어능력시험, 생활능력	-불허	-89년 이전 영구거주자에게는 시민권 부여(89년 시민법 적용)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발트지역에서의 러시아인 차별로 인해 94년까지 이들 국가의 러시아인들은 역 이민이나 러시아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94년부터는 그 숫자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러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수준과 사회적 안정, 같은 유럽인종이자 기독교인으로서의 문화적 동질감 등으로 인해 다수 러시아인들은 발트 사회에 남아있는 쪽을 택하고 있다. 한편 이들 국가의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의 신규이민은 중단된 상태이며, 이는 모국 러시아와의 유대의 끈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트 거주 러시아인들이 거주국의 민족 정책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이 거주 사회에 동화되는 정도는 끊임없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국가의 소수러시아인과 러시아정부의 근외정책

러시아 정부의 근외 외교정책 기조

1993년까지의 러시아 외교정책은 자유주의적 인권의 옹호와 이에 기반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수민족보호라는 사고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크림리아 반도와 트랜스드네스트르 지역, 그리고 발트3국에서 러시아인들이 직접 민족 갈등에 노출되면서 옐친정부의 자유주의적 외교정책은 러시아 내부의 민족주의 세력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의 근외정책에 민족주의적 정서가 배어들기 시작하였다. 1993년 5월,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지침서’에서는 근외 소수 러시아인들 문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이 러시아의 중요한 외교적 자원임을 천명하였다.

〈표 6〉러시아와 구소련국가간 이민자 관련 주요 쌍무협정

체결일자	체결국	조약내용
1993. 12	투르크메니스탄	이중국적에 관한 상호협정
1993. 12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관리 및 이민자 권리보호에 관한 상호협정
1994. 02	라트비아	이민자의 권리정착과 보호를 위한 상호협정
1994. 02	그루지아	이민관리 및 이민자 권리보호에 관한 상호협정
1994. 03	카자흐스탄	러시아거주 카자흐스탄시민과 카자흐스탄거주 러시아시민의 권리 및 법적지위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각서
1994. 04	투르크메니스탄	노동이민자의 노동행위와 사회적 보호에 관한 상호협정
1995. 01	카자흐스탄	타국영토거주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 시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상호협정
1996. 11	벨라루스	벨라루스 거주 러시아 정착민과 러시아 거주 벨라루스 정착민 보호에 관한 상호협정
1997. 07	투르크메니스탄	이민인구 관리에 관한 협정

1991년 11월 28일 채택된 러시아의 시민법에 따르면 구소련의 시민으로서 러시아연방의 영토에 거주하며 1년 내에 반대의 의사



1993년 5월,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 지침서’에서는 근외 소수 러시아인들 문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이 러시아의 중요한 외교적 자원임을 천명하였다.

를 표시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시민권이 부여되었다. 한편, 1991년 9월 1일 현재, 러시아연방이나 구소련 공화국 영토 내에 영구거주하는 자로서 러시아 시민법이 통과된 시점에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자들은 1년 내에 자신의 희망에 의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 법안에 의해 특히 발트 국가를 포함한 신생독립국가의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소수민족들이 러시아 국적을 획득할 수 있었고, 국제법에 따라 해외 거주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93년 6월 13일 개정된 시민법에서는 쌍무협정에 의해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안을 삽입하고, 구소련방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제정러시아 신민의 자손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권의 부여 범위를 한층 확대하는 한편 구소련국가들에게 이중국적의 허용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말부터는 민족주의자들이 위세를 떨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도 민족주의 성향이 한층 강하게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93년 11월 발표된 ‘군사 독트린’은 해외 거주 러시아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개전의 근거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공격적 민족주의와 종교적 박해를 행하는 세력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발트국가에서의 러시아인 차별을 이유로 한 러시아군 철수의 보류와 경제제재 위협, 크림미아 러시아인들의 권리 문제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제재 위협 등은 민족주의 성향의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에도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드러났다. 이는 2001년 7월 20일에 발표된 외교정책독트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독트린은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을 천명하면서, 핵심적인 외교목표로서 러시아 경제 성장에 유리한 환경 조성, 러시아 주변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벨트 형성, 재외 러시아 시민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의 포괄적 보장, 외국에서의 러시아어와 문화의 증진 및 지원 등을 내걸고 있다. 한편 “현재 제한적인 외교적 자원을 우리의 이익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언급은 93년의 코지레프 독트린에서 보여주었던 서구지향성의 퇴색과 구소련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러시아 정부의 구소련지역 러시아인 정책 목표

신생러시아연방 수립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정부의 근외 정책 방향과 중점이 시기에 따라 변하기는 했지만, 구소련지역 거주 소수러시아인들과 관련한 정부정책 목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첫째, 구소련지역 거주 러시아인들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지역에서 발생한 러시아인 관련 문제들에 대해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행사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 거주 러시아인들과 관련한 다양한 쌍무조약체결에 주력하여 왔다. 또한 분쟁이나 민족차별로 인해 이민을 희망하는 소수 러시아인들을 위해 시민권의 부여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1992년 6월에는 러시아연방이민국을 설치하고 역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왔다.

둘째, 국제정치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 지역 거주 러시아인들이 각국에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전달하는 지렛대로서 역할하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민족으로서의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소수민족들까지도 러시아인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영향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 특히 이들이 민족차별이나 분쟁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이들 국가의 차별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이들의 보호를 이유로 각종 압력을 행사해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쌍무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러시아 군을 주축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주도함으로써 구소련국가들을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권내에 묶어두기위해 노력하여 왔다.

셋째,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발트국가들이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이탈하고 있는 지금의 정세는, 1700년대 초반 피터대제가 유럽으로 향하는 출구로 뻘쎈부르크를 선택하고 수도로 삼았던 당시의 정세와 유사하다. 발트국가는 러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중요한 경제적 통로로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발트국가를 러시아의 세력권내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최소한 그곳에 정착하는 러시아인들이 이 통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정치적 측면을 들 수 있다. 93년 이후 민족주의적 세력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러시아정부는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담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구소련지역 거주 소수 러시아인들의 보호가 중요한 외교정책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러시아 연방정부의 재외동포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연방정

책의 변화가 최근들어 두 차례 목도되었다. 첫 번째는 2002년의 새로운 국적법의 도입이고, 두 번째는 2006년의 “재외동포의 러시아연방으로의 자발적 재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에 관한 대통령령”이다.

2002년 새로운 국적법의 도입은 재외러시아인 정책의 급격한 선회를 의미하였다. 무엇보다도 ‘동포’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간소절차’가 도입되었지만, 구소련국민으로서 무국적자이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러시아 국민의 자녀에 한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의 법률자문위원인 쿠타핀 교수는 새로운 국적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³⁾ 첫째, 지난 10년 동안 구소련 국민으로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다. 1992년 국적법에 의해 구소련 국민들 모두에게는 특혜가 부여되었으며, 희망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 특혜를 이용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이미 450만 명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⁴⁾ 둘째, ‘동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구소련 국가의 국민들 모두가 러시아 동포가 될 수는 없다. 러시아 영토 내에 근거를 둔 민족들을 ‘동포’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는 동포란 러시아 국민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은 근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내부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9.11 이후 국제적으로 테러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국가의 내부 안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06년에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재외동포의 러시아연방으로의 자발적 재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에 관한 대통령령”은 러시아연방의 재외동포 정책이 구소련지역의 러시아인들을 중시하는 2002년 국적법 이전으로 회귀함을 의미한다. 이는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2008년 마련된 “재외동포의 러시아연방으로의 자발적 재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이 프로그램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의 지위에 대한 규정은 1999년 러시아연방 의회에서 채택된 “러시아연방정부의 해외동포정책에 관한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의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의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과거 러시아연방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구소련 시민권자들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⁵⁾

3) Nataliya Airapetov, “Grazhdanstvo Rossii dolzhno zaschischats’ i cheloveka i gosudarstvo”, Nezavisimaya Gazeta (2001. 11. 20)

4) Oleg Kutafin, “Pora uregulirovat’ otnosheniya mezhdru grazhdaninom i gosudarstvom adekvatno novym realiyam,” Nezavisimaya Gazeta (2002. 5. 22).

2002년 채택된 새로운 국적법은 근외 러시아인들을 잠정적인 러시아 국민으로 간주하던 정책을 푸틴 정부가 더 이상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6년의 대통령령 발포와 2008년의 러시아연방정부 프로그램 채택은 구소련지역의 러시아인들을 중시하던 정책으로의 회귀이다. 다만, 이 프로그램의 시행이 2007년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연방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인지⁵⁾, 아니면 구소련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지, 혹은 양자 모두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http://www.fms.gov.ru/programs/fmsuds/files/admpro.doc> (검색일: 2009. 1. 5)
6) <http://www.rg.ru/2007/03/10/putin-demografia.html>(검색일: 2009. 1. 5)



21세기의 정치상황을 이론과 실제 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

현대정치의 이해

격변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면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기본서!!

■ 주요목차

- 1부/ 현대 정치학의 기본
- 2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3부/ 현대의 정치현상

교양사회 조정남 편 / 값 20,000원

일본정부의 일계인(日係人) 정책

-JICA의 해외일계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송 석 원 (경희대 정경대학사회과학부 교수)
j06w0178@khu.ac.kr



머리말

20세기가 전쟁과 혁명을 특징으로 하는 시기¹⁾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0세기의 전쟁과 혁명의 양상이 하나같이 민족을 구성단위로 한 민족 국가, 곧 네이션 스테이트(nation state)에 의해 다른 민족과의 사이에 경계를 획정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 세계질서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 역시 이론의 여지없이 수용되는 논의이다.²⁾ 그러한 점에서 20세기는 또한 민족의 세기이기도 하였다. 민족은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모든 인간과 국가는 바로 민족에 의해 구분되고, 또 규율되었다. 이 시기 민족은 국경에 의해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러나 민족으로 규율된 인간이 국경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는

1) 木村雅昭, 『ユートピア以後の政治: 二一世紀への政治を読む』, 有斐閣, 1993, p.214.

2) 민족주의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문헌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헌으로, 우선은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Verso, 1991 참조.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족을 중심단위로 한 세계질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게 되었다. 경제의 글로벌화, 냉전의 붕괴 등은 이러한 변화를 유인한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인간의 사고와 활동은 민족의 단위를 넘어서서 전개되고 있다. 민족이 세계질서를 규율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이었던 시기에는 일국이 타국을 간섭하는 것은 금기의 사항이었다. 따라서 민족자결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이 시기 국제관계의 불문율로 여겨졌다. 그러나 쿠퍼(Robert Cooper)의 지적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세계는 이미 상호 내정에 서로 자유롭게 간섭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³⁾ 글로벌한 사회문제의 출현 속에 그 해결을 일국에만 맡겨둔 채 주변국이 내정불간섭을 이유로 방관하는 일은 더 이상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21세기가 근대국민국가와 다른 가장 현저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이라 할 수 있다. 근대국민국가가 민족 구성원을 국가의 영역 내에 포진시켰다면, 21세기의 탈근대국민국가는 인간의 자유로운 월경(越境)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중국인이나 인도인, 브라질인, 영국인 등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은 자국의 국경을 월경하여 전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 월경하여 세계인이 되어가는 것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기도 한다. 인간 월경의 역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큰 변화를 거쳐 왔다.

월경하는 인간의 존재는 이미 민족만능의 시대가 지났다고 여겨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또 다른 민족의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민이 이주하여 국경을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것과 함께 타국, 타민족의 구성원들이 국경을 넘어 자국 안으로 편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⁴⁾ 20세기의 배타적 민족만능의 민족주의 과잉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민족과 민족 간, 국가와 국가 간의 배타적인 대립과 갈등은 더 이상 21세기의 시대정신과 조응할 수 없다. 확실히, 21세기는 민족 간, 국가 간의 협력과 공생(共生)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이해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이 시기를 규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월경하는 인간의 증가와 더불어 민족 간의 공생적 삶이 모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 그 자체의 가치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의 가치가 과잉이었

3) Robert Cooper, *The Breaking of Nations : Order and Chao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tlantic Monthly Press, 2004.

4) 필자는 다른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외부화하는 국제화’와 ‘내부화하는 국제화’란 표현을 사용한바 있다. 전자는 해외로 향하는 내국인들의 방향, 곧 재외국민과 같은 문제이며, 후자는 국내로 향한 외국인들의 방향, 곧 다문화 문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화는 이 두 방향의 국제화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의 추세는 향후 더 증가는 할지언정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송석원, “일본의 재외동포 현황과 정책적 과제”, 한국정치학회 2008년 연례학술회의 발표문, 2008, p.159.

던 20세기의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여전히 민족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중요한 준거 가운데 하나이다. 세계질서 역시 전적으로 민족



20세기의 배타적 민족만능의 민족주의 과잉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민족과 민족 간, 국가와 국가 간의 배타적인 대립과 갈등은 더 이상 21세기의 시대정신과 조응할 수 없다.

의 문제를 매개로 구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계질서 형성을 구상하는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월경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수만큼의 월경 이유가 있을 것이다. 월경한 사람들의 성격 또한 다양하다. 그리고 이들 월경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 역시 일의적이지 않다. 한 나라의 민족 구성, 민족 원리, 민족 질서, 민족 정책 등을 논의하는데 있어 이들 월경하는 사람, 곧 재외동포의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의 전체상과 방향성이 비로소 시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⁵⁾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재외국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재일동포, 재중동포(조선족), 재미동포, 재러동포(카레이스키) 등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일컫는 것이었고, 한국의 근현대사의 불행한 역사가 투영된 존재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 이들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심정적인 일체감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모르는 거리감을 갖고 대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정부 및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무관심, 혹은 피(避)관심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⁶⁾ 해외에서 성공한 재외동포들의 사례가 점차적으로 소개되고, 나아가 재외국민에의 참정권 부여와 같은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논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사회에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아직도 부족한 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재외동포 문제가 목적적인 개념이기보다는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특히 일본의 민족정책⁷⁾ 가운데 재외동포

5) 글로벌리즘의 확대는 비단 화폐와 물류 및 인간의 교류·순환의 급속한 진전이라는 경제 영역에서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적지 않은 격변을 낳고 있다. 화폐와 물류 및 인간은 근대국가의 '국민'의 경계였던 국경을 이미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특히 국경을 넘는 인간의 증대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출생국가(모국)와 생활국가(체재국), 국적과 시민권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송석원, "일본의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34권 2호), 2008, p.125.

6) 송석원, "일본의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34권 2호), 2008, p.124.

7) 일본의 민족정책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우선, 조정남, "일본의 민족정책", 이기완 외, 『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매봉, 2006. 및 송석원의 일련의 문헌을 제시해둔다.

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재외동포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시사
가 될 만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재외국민정책보다 일제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민족정책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본고는 특히
일본정부의 해외일제인 정책을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담당하는
기구인 JICA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가 JICA의 활동을 중
심으로 한 일본정부의 해외일제인 정책을 분석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사실적 적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일본인’의 유형⁸⁾

후쿠오카 야스노리(福岡安則)는 재일한국/조선인의 아이덴티티를 연구하는 가
운데, 민족적 요소와 국적 요소의 결합에 의한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다. 후쿠오카
에 의하면, 예컨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등과 같은 호칭은 일반적으로 민족
(ethnicity)과 국적(nationality)의 두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 후쿠오카는 민족적 요소
를 다시 ‘혈통’과 ‘문화’로 나누고, 여기에 ‘국적’의 요소를 포함한 세 가지의 요
소를 가지고 ‘일본인’에서 ‘비일본인’까지를 <표 1>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후쿠오카의 분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형 1)은
일본민족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고, 문화면으로도 일본문화를 내면화하고 있는 사
람들로서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일본인
이란 대부분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이들은 일본 국내에서 삶을 영위하
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을 벗어나 외국에서 장기체류하거나 혹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다수가 일본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표 1〉 ‘일본인’의 유형화

유형	1	2	3	4	5	6	7	8
혈 통	+	+	+	-	+	-	-	-
문 화	+	+	-	+	-	+	-	-
국 적	+	-	+	+	-	-	+	-

주) 혈통에서의 +는 소위 ‘일본민족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는 계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곧 다른 민족의 혈통이라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문화에서의 +는 언어, 가치관, 생활습관, 생활양식 등
일본문화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을, -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국적에서의 +는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이다.
* 출처 : 福岡安則, 『在日韓國, 朝鮮人 : 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央公論社, 1993. p.4.

8) 본 장의 내용은 송석원, “일본의 민족 질서”, 조정남 편, 『신세기의 민족 질서와 한민족』, 백상재단, 2008,
pp.283-286을 보완한 것임.

일본국적을 보유한 일본문화와 혈통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형 2)는 일본인의 혈통과 문화적 전통을 내면화하고는 있지만,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원래 일본인이었던 것이 이민 혹은 결혼이나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일본국적을 벗어나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여전히 일본의 문화적 전통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 1세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유형 3)은 일본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고, 또 일본국적도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면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해외에서 성장한 일본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외귀국자녀들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유형 4)는 일본의 문화적 전통을 내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적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일본민족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원래 외국인이었으나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5)는 일본민족의 혈통만을 계승하고 있을 뿐으로, 일본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지도,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민 2세 이후 등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이들은 특히 일계인(日系人, 니케이징)이라 칭한다. 제국주의시대의 종결 후, 한반도와 중국대륙에 분포하고 있던 다수의 일본인이 일본으로 귀환하였으나, 이 가운데 귀환하지 못하고 대륙에 남은 이른바 중국잔류고아들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유형 6)은 일본문화만을 내면화하고 있을 뿐으로 일본민족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지도,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 유형에는 예컨대 민족교육을 받지 않은 재일한인 등이 포함된다. (유형 7)은 현재 일본국적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일본민족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지도, 일본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 유형에는 민족교육을 받은 귀화한 재일한인이나 아이누 등이 포함된다. (유형 8)은 일본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써 일본 국내에서 생활하고는 있으나 장차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이 이 유형에 속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유형 1), (유형 3), (유형 4), (유형 7) 등이다. 혈통, 문화, 국적의 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 ((유형 1))와 국적과 함께 국적 이외 두 요소 중 하나의 요소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유형 3), (유형 4)), 그리고 오로지 국적의 요소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유형 7))이다. 현행 국적법상의 일본국민은 위의 네 유형만을 가리킨다. ‘일본국민’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인’의 범주에는 위의 일본국민의 네 유형 이외에 (유형 2), (유형 5) 등이 더해진다. 환언하면,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일본의 혈통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유형 6)과 같이, 혈통을 계승하거나 국적을 보유하지

는 않지만, 문화적 내면화를 이룬 경우, 예컨대 민족교육을 받지 않은 재일본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일본인’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 재일본인들이 일본인에 준하는 법적권리를 요구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정주외국인의 참정권문제는 바로 이들 유형의 사람들을 ‘일본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유형 8)에서 (유형 1)로의 과정을 거치면서 외국인은 일본인이 될 수 있다. 원리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를 먼저 습득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화적 요소, 국적의 요소, 혈통의 요소의 순으로 일본인다움을 획득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일본사회에서의 민족 질서를 고찰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유형 2)와 (유형 5)에 속하는 재외국민(특히, 니케이징)과 (유형 6)과 (유형 8)에 속하는 재일외국인의 문제이다.

일본의 국적법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겠지만, 일본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을 일본국민으로 간주한다. 후쿠오카 야스노리의 유형화에 의하면, (유형 1), (유형 3), (유형 4), (유형 7)이 국적법에 규정된 일본국민이다. 이들 일본국민은 앞 장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일본 국내에 거주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향유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국경을 넘어 가깝게는 문화적인 차이가 상대적으로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각국으로, 멀게는 전혀 상이한 생활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이나 중남미, 혹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거주하기도 한다. 외국에서의 거주가 일시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체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외국에 체류하는 사유도 각인이 동일하지 않고 저마다의 독특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재외일본인이다. 재외일본인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재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외국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출생국가(모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되어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모국에 대한 생각이 더 애뜻하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장기화에 따른 모국에의 정서적 감각의 고저와는 별개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혹은 이탈했는가에 따라 이들 재외일본인은 재외국민과 일계인으로 구별된다. 재외국민이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채 일본 국내를 벗어나 해외의 어딘가에 거주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재외일본인 가운데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들과 그 후손을 일계인이라 칭한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들 일계인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내면화하지도 못했지만, 혈통의 면에서 일본민족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환언하면, 위의 후지오카의 유형분류

속에서의 (유형 5)가 바로 일계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일계인은 일본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일본국민이 되는 자격으로서의 일본국적을 이탈하였기 때문이다. 일계인이 비록 국민의 범주 밖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재외국민과 일계인 현황⁹⁾

2006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재외국민 총수는 106만 3,695명으로 2005년에 비해 5.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영주자가 32만 8,317명이고 장기체류자는 73만 5,378명이다¹⁰⁾(이하 특별히 년도를 표시하지 않는 한 2006년의 통계임). 일본의 재외국민의 주요한 분포 국가는 많은 순으로 미국(37만 0,386명), 중국(12만 5,417명), 브라질(6만 4,802명), 영국(6만 0,751명)이며, 해외장기체류자의 경우에는 미국(24만 6,988명), 중국(12만 4,476명), 영국(4만 8,2892명), 태국(3만 9,484명)으로, 2005년 통계와 비교할 때, 상위 12위까지의 국가에서는 총수, 장기체류자수 모두 변화가 없었다.¹¹⁾

아래의 표에서 명확한 것은 전체 재외국민의 분포 국가/지역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데에 비해 남북미의 감소와 서구의 정체가 현저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미가 전체의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재외국민 중 영주자는 남북미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약 71%), 장기체류자는 아시아와 북미에 집중되고 있는 바, 특히 아시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시아는 장기체류자 위주의 분포라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평

〈표 2〉 재외국민의 지역별 추이 (단위 : %)

	아시아	대양주	북미	남미	서구
2006년	26.11	7.34	38.97	8.34	16.37
2005년	25.75	7.20	39.27	8.86	16.06
2004년	24.42	7.06	39.55	9.64	16.59
2003년	22.67	6.92	40.57	10.35	16.78
2002년	21.56	7.08	40.42	10.97	17.27
2001년	20.75	6.71	41.47	11.57	16.78

출처 : 外務省領事局政策課(2007), p.10.

9) 본 장의 내용은, 송석원, “일본의 민족 질서”, 조정남 편, 『신세기의 민족 질서와 한민족』, 백상재단, 2008, pp.302-306을 토대로 일계인과 관련한 통계를 추가한 것임.
10) 外務省領事局政策課(2007), p.7.
11) 外務省領事局政策課(2007), p.7.

〈표 3〉 재외국민 중 영주자의 주요 분포 지역 (단위 : %)

	대양주	북미	남미	서구
2006년	11.06	45.93	25.40	12.56
2005년	10.70	45.49	27.16	12.13
2004년	9.98	44.85	28.87	12.05
2003년	9.55	44.42	30.44	11.49
2002년	9.18	43.62	31.59	11.25
2001년	8.48	46.11	31.01	10.56

출처 : 外務省領事局政策課(2007), p.12.

〈표 4〉 재외국민 중 장기체류자의 지역별 추이 (단위 : %)

	아시아	대양주	북미	서구
2006년	36.32	5.68	35.87	18.07
2005년	35.95	5.65	36.51	17.80
2004년	34.41	5.72	37.12	18.68
2003년	32.15	5.68	38.76	19.26
2002년	30.73	6.05	38.87	20.20
2001년	30.66	5.76	38.97	20.14

출처 : 外務省領事局政策課(2007), p.13.

가된다.¹²⁾

도시별 총수로는 뉴욕(6만 1,364명), 로스앤젤레스(5만 9,220명), 상하이(4만 3,990명), 방콕(2만 9,919명)이며, 장기체류자수로는 뉴욕(4만 8,439명), 상하이(4만 3,960명), 로스앤젤레스(3만 8,711명), 방콕(2만 9,347명)¹³⁾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재외국민의 도시별 분포에서 1위인 뉴욕은 2005년의 조사에서 전년비 신장률이 총수와 장기체류자수 모두 감소방향을 나타냈으나 2006년 10월 조사에서는 증가방향으로 전환하여 총수의 전년비 신장률이 1.93%감에서 3.51%증으로, 장기체류자수는 2.50%감에서 4.48%증으로 되었다. 또한, 장기체류자수가 많은 도시에서 최근 수년간 1위의 뉴욕에 이어 2위에 상하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음도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04년에 양 도시의 차이는 1만 3,429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6,134명으로, 2006년에는 4,479명으로 줄어들고

12)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이 영주자(이주자)인 브라질은 전체 재외국민의 총수가 해마다 감소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이 장기체류자인 중국에서는 증가를 보이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13) 外務省領事局政策課(2007), p.7.

있다.¹⁴⁾

한편, 재외방인 중 해외장기체류자는 주로 상사(商社), 은행원(銀行員), 유학생(留學生) 등으로 구성되어



일본의 재외국민 가운데 중남미의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거주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압도적으로 영주자들이 많으며, 이는 일본의 이민사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있다. 일본 외무성 자료는 장기체류자의 직업별 구성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정부관련, 보도, 자유업, 유학 및 연구자, 기타 등으로만 분류하고 있는데, 아시아에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는 70% 이상이 민간 기업으로 분류되며, 중동, 중남미, 중부 및 동유럽 등이 민간기업 종사자의 수가 많은 편이다. 또한, 정부 관련자의 경우, 아프리카(40% 이상)와 중남미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유학 및 연구자의 경우, 북미와 서유럽 등에서 각각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⁵⁾

이상과 같이, 일본의 재외국민의 현황을 볼 때, 일본의 재외국민 가운데 중남미의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거주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압도적으로 영주자들이 많으며, 이는 일본의 이민사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일본의 재외국민은 대체로 경제, 문화적 선진국 혹은 인구 다수의 개발도상국가에 집중되어 편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미의 경우, 영주자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바로 총수에서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체류자는 의미 있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재외국민수의 추이에서, 아시아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미는 점차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고, 영주자의 지역별 추이에서, 아시아와 서구가 점차 증가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남미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미와 서구 등 선진국 거주자 가운데 영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기체류자의 지역별 추이를 보면, 아시아의 증가경향이 특히 현저하여 2006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미와 서구는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보여 함께 주목된다. 나아가 인구 다수의 개발도상국 거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주자가 적은 것은 이들 국가들의 개발과 관련한 정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파견된 인원이 많은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외일계인은 해외일계인협회의 정의에 따르면, 일본에서 해외로 본거지를 옮겨 영주의 목적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 및 그 자손의 2세, 3세, 4세 등으로 국적, 혼혈은 문제 삼지 않는다.¹⁶⁾ 이들 해외일계

14) 外務省領事局政策課(2007), p.8.

15) 外務省領事局政策課(2007), p.22.

〈표 5〉 해외 일계인의 분포			
		(단위 : %)	
국 명	일계인수	국 명	일계인수
캐나다	68,000	페루	80,000
미국	1,000,000	볼리비아	6,700
(미국 하와이)*	240,000	파라과이	7,700
멕시코	17,000	칠레	1,600
쿠바	800	아르헨티나	32,000
도미니카공화국	800	우루과이	500
베네수엘라	800	브라질	1,400,000
콜롬비아	900	오스트레일리아	20,000
에콰도르	300	(일본 국내)	350,000

* 미국 하와이의 일계인수는 미국 거주 전체 일계인 가운데 차지하는 수치임.
출처 : <http://www.jadesas.or.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인은 2004년 현재 약 2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역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일계인의 분포지역은 아메리카대륙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일본인의 이주사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미에서는 미국, 남미에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계인이 합계 약 240만 명으로, 전체 일계인 가운데 약 92% 정도를 차지한다. 이어 페루,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표 4>의 장기체류자의 지역별 추이에서 남미가 누락되어 있는데 반해, 일계인의 분포에서는 남미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특히 재외국민사회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단법인 해외일계인협회이다.¹⁶⁾ 해외일계인협회는 약 26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해외일계인과 일본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1957년부터 거의 매년 해외일계인대회¹⁸⁾를 개최하고 있다. 해외일계인대회는 주로 일본 국내에서 개최되지만, 1968년(하와이)과 2007년(상파울로)에는 해외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동 협회에는 1964년 제6회 해외일계인대회부터 전국지사회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협회회장에는 전국지사회회장이 취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일계인대회에는 1965년의 제6회 대회부터 매회 황족이 출석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07년 7월에 개최된 제48회 대회에는 불참하였지만, 2008년 10월에 개최된 제49회 대회에는 천황의 차남 부부가 참석하였

16) <http://www.jadesas.or.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17) 이에 대해서는, <http://www.jadesas.or.jp/taiken/index.html> 참조.

18) <http://www.jadesas.or.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표 6〉 해외일계인협회의 주요 활동내역

활동목적	활동내역
해외일계인과의 친선교류	해외일계인대회 해외일계신문방송대회
일본에서 생활하는 일계인의 지원	일계인상담센터 일백(日伯)고용서비스센터
연수자 등의 수용과 장학제도	각종 일계연수자 수용
일계인·일계단체와의 연계와 협력	해외일계인방일단 폴뿌리지원 해외일계단체와의 조성 일계사회시니어볼런티어 일계사회청년볼런티어 국제일계네트웍의회 운영
일본어교육지원	계승일본어교육센터 일본어학교학생연수 일본어교사연수 일본어교과서 일계연수자에 대한 일본어연수
대일 이해의 촉진	일계유학생중앙연수회(연2회) 일계학식자 초빙 일계연수자에 대한 브리핑 오리엔테이션 일계연수자 국내여행 교류사업
홍보	계간 ‘해외일계인’ 발행(연2회) ‘일본의 문화’ 강연집 발행(부정기) ‘이주가족’ (격월간) ‘일계인뉴스’ (격월간)
기타	해외이주자료관 도서자료 등 정보정비 일계인에 관한 조사·연구 일계사회볼런티어시찰·납미방문단

출처 : <http://www.jadesas.or.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다. 동 협회는 이외에도 국내외의 일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JICA의 일계사회지원

일본에서는 해외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일본인으로서의 인식이 강하며, 그들의 일본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부여 및 행사에 있어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영주자 중 일본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해외장기체류자와 마찬가지로 일본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부여 및 행사에 있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중국적자는 여하튼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재외국민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계인은 국가의 국민보호 대상이 아니며, 따

라서 그들은 국가에 대해 여하한 권리와 의무의 부여 및 행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해외 일제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및 후원을 하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적기구인 국제협력기구(JIC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민간기구인 일본재단(The Nippon Foundation, 일명 사사가와(笹川)재단) 등이 있다.

JICA는 보통 일본정부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JICA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정당한 것이다. JICA가 실제로 일본정부의 공적개발원조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JICA의 개발도상국 원조는 사업별로 기술협력, 유상자금지원(엔 차관), 무상자금지원, 국제긴급원조 등이 있다. 기술협력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국가 및 과제별 연수, 청년연수 등으로 나뉘는데, 특히 기술협력 프로젝트는 JICA가 해외에서 실시하는 가장 중심적인 사업의 하나로, 현장 중시형의 기술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확실히, JICA가 이러한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JICA는 개발도상국 원조뿐만 아니라, 해외일제인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해외이주자료관 (Japanese Overseas Migration Museum)

JICA는 먼저, 해외이주자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해외이주자료관은 일본인의 해외이주의 역사 및 이주자와 그 자손인 일제인에 대해 국민, 특히 차세대를 담당할 청소년들이 깊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외이주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전시할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일본정부는 해외이주자료관을 개설하기 위해 자료의 개설되기 3년 전부터 조사활동을 개시하여 자료수집에 진력하였다. 로스엔젤라스에 있는 전미 일제인 박물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브라질 일본이민 사료관, 그리고 일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혹은 현지의 일제인단체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갔다.

직접 개인이나 단체와 대면하여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지를 탐문하면서 기증이나 대여교섭을 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약 12,000건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JICA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도서, 사진, 영상, 음성 등도 약 4만 건 정도 있었다.¹⁹⁾

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모두 4종류로 분류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7〉 해외이주자료관 소장 자료 분류 (2006년 1월 현재)

종류	건수	비고
문헌, 도서	20,000건	
아카이브	5,000건	명부, 여권, 신분증명서, 계약서 및 증서, 신문, 회보, 보고서, 교과서 등
사진, 영상, 음성	10,000건	사진, 필름, 비디오필름, 카세트테이프, 레코드
표본	2,000건	일용품, 이주국에서 사용한 농기구와 어구, 복, 야구 용구 등 오락에 관한 용품 등

출처 : <http://www.jomm.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한편, 해외이주자료관은 『해외이주자료관 소식지』를 연 4회(매회 1만 부) 발행하여 방문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소식지는 주로 자료관의 이벤트정보, 소장품에 얹힌 비화의 소개, 기획전 안내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이주’를 느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가 이룩한 역할, ‘이주자, 곧 일계인’의 존재를 가깝게 느끼게 함으로써 이주의 역사를 알뿐만 아니라, 이주를 키워드로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⁰⁾ 참고로 『해외이주자료관 소식지』의 매호별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해외이주자료관 소식지』의 매호별 주요 내용

NO	발행연월	주요 내용	
13	2008.9.	권두 인터뷰	유키 사오리 씨
		자료관 탐험대 13	부드럽고 강하게, 그리고 씹씹하게 : 여성이 떠받친 이주지의 생활
12	2008.7.	권두 인터뷰	라모스 루이 씨
		자료관 탐험대 12	축 브라질 일본이주 100주년 차포네스가란치드
11	2008.3.	권두 인터뷰	오노 리사 씨
		자료관 탐험대 11	꿈과 희망을 운반한 배
10	2007.12.	권두 인터뷰	마르시아 씨
		자료관 탐험대 10	언제나 노래가 있었다.
9	2007.9.	권두 인터뷰	와타나베 사다오 씨
		자료관 탐험대 9	커피와 이주자의 깊은 관계
8	2007.7.	권두 인터뷰	산디 씨
		자료관 탐험대 8	멀고도 가까운 동경(憧憬)의 하와이
7	2007.3.	권두 인터뷰	벳쇼 데쓰야 씨
		자료관 탐험대 7	이주지에 영화가 왔다
6	2006.12.	권두 인터뷰	미야자와 가즈시 씨
		자료관 탐험대 6	남미의 오키나와촌
5	2006.9	권두 인터뷰	기타자와 다케시 씨
		자료관 탐험대 5	파라과이 농업에 일계인의 모습이

19) <http://www.jomm.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20) <http://www.jomm.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4	2006.7.	권두 인터뷰	아라시야마 고사부로 씨, ‘브라질에서 원종(原種)의 일본인을 만났다’
		자료관 탐험대 4	세계가 즐기는 단가, 하이쿠
3	2006.3	권두 인터뷰	잇고쿠도 씨, ‘많은 사람이 웃는 얼굴이 되도록’
		자료관 탐험대 3	무도(武道)와 일계인
2	2005.12.	권두 인터뷰	케인 고스기 씨, ‘세계에 도전하고 싶다!’
		자료관 탐험대 2	남미 이주자의 식탁
특집	2005.11.	특별전시 특집호 NHK방송 80주년기념 드라마 『봄과 여름 전해지지 않은 편지』전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브라질 이주자들이 본 드라마 감상 이주자의 역사 드라마는 위대한 일보 영화 『가이징』 山崎千津薫 감독
		권두 인터뷰	KONISHIKI 씨, '어디에 있건 나는 나'
1	2005.9.	권두 인터뷰	KONISHIKI 씨, '어디에 있건 나는 나'
		자료관 탐험대 1	알로하 샹스와 일본 이민의 역사

출처：http://www.jomm.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해외이주자료관은 또한 이주자료 네트워크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즉, 일본 국내 및 세계 각국의 일본인의 해외이주를 테마로 한 박물관, 자료관 등과 연계하여 해외이주자료관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JICA의 해외이주자료관과는 달리 일본 국내의 지방 수준에서는 히로시마의 히로시마시 디지털 이민박물관과 오키나와의 오키나와볼리비아 역사자료관이 대표적인 일계인 관련 자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

일계사회 지원 사업

JICA는 일계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JICA일계연수, JICA일계사회리더육성사업, JICA일계유학생중앙연수회²¹⁾ 등이 있다. JICA일계연수는 특히 중남미 정주의 일계인을 대상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정주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할 인재의 육성을 위해 연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JICA일계사회리더육성사업은 장래의 일계인 사회의 리더를 육성할 목적으로 일본의 대학원에 유학이 결정되거나 혹은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중남미지역의 일계인에 대해 측면지원으로서 체재비와 학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JICA일계유학생중앙연수회는 일본에 유학중이거나 연수중인 자 가운데 일계인을 대상으로 일본문화 등의 강의와 문화시설의 견학을 통해 대일이해의 축진을 도모하면서 장래 일계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일계인에 대한 이러한 JICA의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민간재단인 일본재단의 일계인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재단의 활동으로는 일계스칼라십·꿈 실현

프로젝트²²⁾를 들 수 있다. 일본재단의 일게스칼라십·꿈 실현 프로젝트는 거주국과 일본 사이의 이해촉진과 거주국 및 지역사회의 발



JICA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계인 및 일계인사회의 더 한 층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국내의 일반국민들에게 일계인 및 일계인사회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전에 공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일계인에 대해 그 실현을 위한 일본유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장학금프로그램이다.

한편, JICA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계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일본의 청년 및 시니어 볼런티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중남미지역의 일계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경험을 살려보고자 하는 청년이나 시니어들을 파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계인들은 일본과는 다른 풍토와 사회에서 새로운 생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스스로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 일계인 및 일계인사회가 향후 더 한 층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거주국의 발전에 공헌하는

〈표 9〉 일계사회 청년볼런티어의 협력분야

	청년해외협력대	일계사회 청년볼런티어
협력분야	농림수산, 가공, 보수조작, 토목건축, 보건위생, 교육문화, 스포츠, 계획 및 행정 등의 120여 직종	교육문화, 보건위생, 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약 10여 직종, 일본어교육 분야가 대부분
모집 시기	봄, 가을(연 2회)	가을(연 1회)
모집 인원	약 1,400명	약 40명

출처 : <http://www.jica.go.jp/activities/jocv/nikkeiseinen/index.html> 참조(검색일 2009년 1월15일).

〈표 10〉 일계사회 시니어볼런티어의 협력분야

	시니어 해외볼런티어	일계사회 시니어볼런티어
협력분야	계획 및 행정, 공공 및 공공사업, 농림수산, 광공업, 에너지, 상업, 관광, 인적 자원, 보건의료, 사회복지의 9 분야	교육문화, 보건위생, 복지부문이 중심이며 일본어교육 분야가 대부분
모집 시기	봄, 가을(연 2회)	가을(연 1회)
모집 인원	약 500명	약 25명

출처 : <http://www.jica.go.jp/activities/sv/nikkeisenior/index.html>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21)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jica.go.jp/Index-j.html> 참조.
22)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http://www.nippon-foundation.or.jp/> 참조.

길이며, 일본에게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점에서, 일제인 및 일제인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청년 및 시니어 볼런티어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제사회 청년볼런티어는 1996년 설립된 이래 중남미의 9개국에 모두 968명의 청년을 파견하여 일제인 및 일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였다.²³⁾

맺음말

일본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축은 해외에서의 일본인의 안전 확보이다. 안전에 대한 교육과 시시각각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경우의 일본인이란 일본국민, 즉 일본국적 보유자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그러나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과 혈연적인 관계를 농후하게 내포하고 있는 해외 거주 일제인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일제인은 일본 ‘국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민족 아이덴티티의 확립을 목표로 재외국민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제인을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적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알고 있는 JICA가 해외일제인 정책을 구상, 실천하는 창구의 역할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ICA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제인 및 일제인사회의 더 한 층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들 일제인 및 일제인사회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해외일제인이 거주국에서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일제인 본인과 거주국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정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퇴임 후 평가가 극명하게 양분되기도 하였지만, 페루에서는 일제인 대통령(후지모리)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브라질과 함께 일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에서도 다수의 유력 정치인, 학자, 과학자, 경제인들을 배출하고 있다.

법적으로 국민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일제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기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일본정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우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정책을 구상, 실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쿠퍼는 일본이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대표적인 포스트근대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이 민족 간, 국가 간의 관계가 매우 유연한 국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쿠퍼의 일본 진단이 상

23) <http://www.jica.go.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동일한 혈통의 계승자로서의 일계인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송석원, “일본의 재외동포 현황과 정책적 과제”, 한국정치학회 2008년 연례학술회의 발표 문, 2008, pp.159~179.
- _____, “일본의 재외국민 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34권 2호), 2008, pp.123~144.
- _____, “일본의 민족 질서”, 조정남 편, 『신세기의 민족 질서와 한민족』, 백상재단, 2008, pp.279~346.
- 조정남, “일본의 민족정책”, 이기완 외, 『현대 일본의 정치와 사회』, 매봉, 2006, pp.277~331.
- 木村雅昭, 『ユートピア以後の政治：二一世紀への政治を読む』, 有斐閣, 1993.
- 福岡安則, 『在日韓國, 朝鮮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央公論社, 1993.
- 外務省領事局政策課(2007), 『海外在留邦人数調査統計 平成19年速報板(平成18年10月1日現在)』.
-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Verso, 1991.
- Robert Cooper, *The Breaking of Nations : Order and Chao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tlantic Monthly Press, 2004.
- <http://www.jadesas.or.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 <http://www.jomm.jp>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 <http://www.jica.go.jp/activities/jocv/nikkeiseinen/index.html>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 <http://www.jica.go.jp/activities/sv/nikkeisenior/index.html> 참조(검색일 2009년 1월 15일).



중국의 화교(華僑)정책에 대한 연구

- 대만의 화교정책과의 비교를 中心으로



조 정 원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cjwipsi@hanmail.net



서론

중국은 2005년에 세계 4위의 경제대국에 진입하였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005년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18조 2,000억 위안(약 2조 2,750억 달러)이다. 2008년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2007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3조2500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9%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중국의 경제 발전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의 원동력의 주요한 요인으로 화교(華僑, overseas chinese)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한번 중국인이면 영원한 중국인이란 말을 증명하듯 화교들이 중국의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막대한 '시드 머니'를 대주었고, 개혁·개방을 선언했지만 자본이 없었던 중국 공산당이 화교자본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한 예로 개혁·개방 초기 대중국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대부분이 화교자본이었고, 현재도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¹⁾

숨어있는 주역으로 알려진 화교들이 드러난 주역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21세기를 중국의 세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화교가 세계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화교들의 경제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여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 화교를 포함한 중국계의 경제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²⁾ 중국 화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동포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90여개 나라에 약 5,500만 명의 화교가 산재해 있다. 화교 경제의 규모는 GDP 개념으로는 약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중국 GDP의 4분의 1 수준이다. 화교들이 운용하는 유동자산만 2조 달러이고 고정자산까지 합하면 약 3조 달러에 달한다.³⁾

중국의 지도자들은 화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손문(쑨원, 孫文)은 신해혁명의 성공을 해외화교들의 공로로 돌리면서 ‘화교는 혁명의 어머니’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모택동도 해외화교들은 ‘중국 공산당의 제2의 생명선’이라 하여 국가건설에서 화교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화교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문화혁명기때 화교배척기라고 할 만큼 화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화교집단의 경제실력 등을 인식하면서 중국의 4개 현대화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화교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었고, 중국정부의 실용주의적 화교정책은 재외화교사회와의 연계성을 더욱 밀접히 했으며 그들의 중국대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적극적인 경제지원으로 이어졌다.

중국과 화교를 하나로 묶어서 ‘중국위협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최승현은 화교가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중국이 화교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보고 있다.⁴⁾ 첫째, 화교가 갖고 있는 경제적 실력에 대한 고려로 개혁개방이래 중국에 투자되는 외자 가운데 반수 이상이 홍콩을 경유해서 유입되는 화교의 자본이다. 둘째, 양안통일이라는 정치적 과제 속에서 대만 당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대신 중국정부에 대한 지지를 위해 화교는 중요하다. 셋째, 다선일체라는 중국식 세계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화교의 존재는 중화민족의 내적 동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역사적 실체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것

1) 박형기, 『친디아의 비밀병기 화교와 인교』, 교보문고, 2007, pp.15-16.

2) 정성호, 『화교』, (서울: 살림출판사), 2004, pp.16.

3)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가 2조 2,750억 달러 이니 화교경제와 중국경제를 합하면 GDP가 2조 8,750억 달러에 달해 세계 3위인 독일의 2조 7,953억 달러를 넘어선다. 박형기, 『친디아의 비밀병기 화교와 인교』, 교보문고, 2007, p.31.

4) 최승현, “현대 중국 교민정책에 대한 소고,” 『중국학논집』, 16호, 2003, p.207.

이다.

화교는 중국과 대만에 있어서 매력적인 집단이다. 정치적 측면이든 경제적 측면이든 양 국가에서 서로 화교를 끌어 들이려고 경쟁을 펼치고 있다. 화교들의 경제력 강화로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들을 더욱 매력적이게 하며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두 국가의 화교정책은 어떠한 원칙하에 변화를 겪어왔고, 그들 국가들에 있어서 화교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양 국가의 화교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본 논문은 중국의 화교정책의 변화와 대만의 화교정책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먼저 화교의 정의와 발생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국의 화교정책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며, 중국의 화교정책과 관련한 기구와 조직 및 법규들을 살펴본 동시에 대만의 화교정책을 연구하여, 중국과 대만의 화교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화교(華僑, overseas chinese)의 정의와 발생배경

“바닷물이 닿는 곳에 화교가 있다.”, “연기 나는 곳에 화교가 있다.” “한 그루 야자나무 밑에는 세 명의 화교가 있다.” 등의 표현은 중국인이 해외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교(華僑)는 일반적으로 중국본토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화(華)는 중국을 의미하며, 교(僑)는 타국에서의 거주(교거) 내지는 임시 거주(교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 다수가 현지 국적으로 바뀌고 2, 3세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은 현지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화교와 구별하여 화인(華人)이라 부르기도 한다.

화교의 개념에 대한 논의

화교의 정의

화교라는 용어는 처음 1898년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살던 중국 상인들이 그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현지에 학교를 세우고 이를 ‘화교학교’ 라고 이름 지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화교 명칭의 출현에 대해 1883년 정관응(鄭觀應)이 이홍장(李鴻章)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미 화교가 거론되었음을 근거로 화교라는 명칭이 최소한 1883년 이전에 등장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1978년 청나라의

초대 주미공사였던 진
란빈(陳蘭彬)의 상소
에 ‘교민(僑民)’이란
명칭이 등장한다고 하
여 화교의 의미가 이
미 1878년에 마련되었



화교들이 중국의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
도록 막대한 ‘시드 머니’를 대주었고,
개혁·개방을 선언했지만 자본이 없었
던 중국 공산당이 화교자본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급성장 할 수 있었다.

다고 주장기도 한다.⁵⁾ 하지만,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야 모든 해외거주 중국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⁶⁾

중국 국무원이 1984년 반포한 ‘화교, 귀국동포, 화교학생, 귀국동포학생, 외국국
적 중국인 신분에 대한 해석’ 중의 규정에 의하면, 화교는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공
민”을 가리킨다.⁷⁾ 일부 학자들 중에는 화교라는 용어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해외
의 중국국민(chinese nationals)과 화족(ethnic chinese)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혈
통과 국적을 기준으로 ‘대체로 중국인으로서는 외국영역에 이주 또는 교거하고, 더
욱이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자’로 규정하는 경우, 혈통과 국적 그리고 사회생
활 여건을 기준으로 ‘화교란 반드시 중국인으로서는 그 본국으로부터 타국이나 타
국의 영토에 이주하여 그곳에 사회경제적 여건을 설정한 화민(華民)이라고 규정하
는 경우가 있다.’⁸⁾

화교(華僑)는 중국 밖의 나라에 거주하는 중국계 민족을 광범위한 의미에서 일컫
는 말로 그동안 중국계 혈통에 대하여 학술적으로는 화교 외에 화인(華人), 화상(華
商), 화예(華裔) 등으로 세분화하여 약간의 의미상 차이를 두고 사용되었다.⁹⁾

① 화교(華僑)

19세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가장 보편적인 용어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민족을 통칭하였으나 거주국에서 현지인과 동화하여 중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경
우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유지자
만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다소 범위가 축소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로 중국인 1세대
이 대부분이다.

② 화인(華人)

화인은 태어난 곳도 중국이 아니며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국적도 중국 국적
이 아니라 현지 국적을 취득하여 그곳 시민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반

5) 최승현,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 (인천: 화약고 출판사), 2007, p.96.

6) 김두진, “중국의 대 ASEAN 화교정책,” 『아세아연구』, 제 84호, 1990, p.278.

7) 위애, “중국의 華僑政策과 海外 華人の 경제협력,” 『中蘇研究』, 제 69집, 1996, p.16.

8) 손준식, “화교경제권과 중국의 화교정책,” 『民族發展研究』, 제 3집, 1999, p.157.

9) 한중경제포럼, 『현대 중국건설과 화교의 역할』, 재외동포재단, 2003, p.15.

적으로 지칭한다. 중국인과 화교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 원래의 의미였지만, 현재는 많은 경우 국외에 거주하면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를 통칭하고 있다. 대부분 화교 2~3세들로, 중국계 미국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등이다. 이러한 화인을 거삼원은 광의와 협의의 의미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광의의 화인은 중국혈통을 갖는 자에 대한 총칭이며, 협의의 화인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화족인(華族人, Ethnic Chinese)을 가리킨다.¹⁰⁾

이 외의 용어들로 화상(華商)이란 화교는 물론이고 화인 중에서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국계 상인을 의미하며, 화예(華裔)는 중국계 혹은 화교의 자손으로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를 의미한다. 화예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의 자손으로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가장 민족적인 연계가 희박한 부류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선조가 5대 이상 현 거주국에 살아왔던 집안의 후예면 이들을 ‘화예’라고 칭하고 그보다 역사가 짧으면 ‘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¹¹⁾

이 외의 법률적 표현으로 용어로 귀교와 교권이 있다. 귀교(歸僑)란 귀국교포, 즉 화교 혹은 화인으로 해외에 거주하다 중국에 귀국하여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¹²⁾ 교권(僑眷)은 화교·귀교의 국내에 있는 권속 즉 화교·귀교의 배우자, 부모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부계, 모계), 손자(부계, 모계) 및 화교·귀교와 장기간에 걸쳐 부양관계에 있는 기타 친족을 의미한다.¹³⁾

이러한 많은 개념들은 화교와 화인 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국적 확인이 어려우며 ‘이중 국적자’ 문제, 통계상 구분 불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화교와 화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법률적 규정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화교와 화인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¹⁴⁾

중국정부는 화교와 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먼저 화교는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해외에 살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범되었을 때에는 중국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10) 거삼원, “중국의 華僑政策과 재외화교기업의 중국대륙 투자,” 『中蘇研究』, 제 69집, 1996, p.61.

11) 조정남,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민족연구』, 제 1호, 1998, p.39.

12) 이진영, “중국의 화교정책: 배제에서 이용으로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축,” 『현상과 인식』, 통권 95호, 2005, p.55.

13) 이러한 귀교와 교권에 대한 정의는 귀교교권권익보호법 2조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외의 다른 표현으로 동포가 있는데, 동포(同胞)란 일반적으로 중국계를 칭하는 표현이나, 사실 마카오, 홍콩, 대만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세 지역은 특별지역에 해당한다.

14) 조정남, 앞의 논문, 1998, p.40.

다. 다음으로 화인은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화교와 다를 바 없으나, 이들은 현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범당해도 중국정부의 보호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도 중국인으로서의 공동의 민족적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원조를 받을 수 있기는 하고,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을 버리고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이것은 중화민족(中華民族)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계들은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도 다양하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종교 또한 다양하며, 심지어는 국적마저 다양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공통요소로 볼 때 여전히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화교의 형성과 배경

화교의 이주과정

중국인의 대규모 해외이주역사는 남송(南宋)시기로부터 추정되며 그 특성에 따라 시기구분이 가능한데, 대체로 4단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¹⁵⁾

① 초기 소규모 이민 단계(12C초~17C초)

중국화교의 해외이주 역사는 중국역사의 시작과 거의 같은 시대에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화교의 해외이주는 상당시간 이후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송의 멸망 후 대규모 유신(遺臣)이 남양(南洋)지역¹⁶⁾으로 피난한 것과 명나라 정화(鄭和)의 7차례에 걸친 대항해의 영향으로 남양지역으로의 이민자가 증가한 시기로 볼 수 있다.

- 이 당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해외이주자들은 남양각지에서 생존 방편 등의 이유로 함께 집중 거주함으로써 중국민족의 독특한 특색을 가진 화교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함

② 광범위한 화교생성기(17C 중엽~1940년대)

1644년에는 청조가 명을 멸한후 많은 유민들이 대만으로 건너가 정성공과 함께 반청복명의 투쟁에 참가하였고, 그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양지역으로 또 다시 이주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서구열강이 청조로 하여금 중국인의 출국을 합법화시

15) 한중경제포럼, 앞의 책, pp.16~18.

16) 대개 동남아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킨 뒤 흑인노예무역의 종식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중국화교의 대외진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③ 이민 수가 감소하고 이민 대상지역도 변화한 시기(1940~1970년대)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 중국정부는 해외이민을 장려하지 않고 해외 화교정책의 기본을 해외의 화교로 하여금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장려한 바 있는데, 전후 동서냉전하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도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또한, 전후 독립한 동남아 국가들이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배화(俳華)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적지 않은 화교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재이주하게 되며 중국대륙의 일부지식인과 동남아 등지의 화교들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선진 실험 설비를 갖춘 서방국가로 이주하게 되어, 구미나 호주등지로 재이주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였다.
- ④ 이민 수가 다시증가, 해외화교들이 구미·호주 등지로 재이주하는 시기(70년대 말~현재)
- 1970년대 말 이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하면서 세계 각국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많은 대륙사람들이 상속과 혼인 및 유학 등을 통해 국외로 이주하기 시

〈표 1〉 화교의 이주 역사시기와 배경¹⁷⁾

연 대	이주국가	이주배경 및 여건
1292	인도네시아	원나라가 자바에 원정하면서 다수의 병사가 잔류
13 - 14 세기 15 세기	태국 말레이시아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주 하였음
17 세기	베트남	명의 이주정책에 의해 호지민에 정착
17 - 18 세기	캄보디아	명 이주민 중에서 일부가 베트남군과 함께 남쪽으로 진출
18 세기	베트남 태국	• 군인에 의해 대규모 시장이 건설 • 鄭昭가 방콕왕조의 시조가 됨(潮州계 화인의 父)
19 세기	말레이시아, 서인도,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 노동자로서 영국 식민지에 이주 • 흑인 노동력을 대체하는 단순 노동자로서 진출
19 - 20 세기	인도네시아	네덜란드가 식민지 경영을 위해 중국에서 노동력 수입
중일전쟁 - 1973		• 세계 각지에서 화교인구가 증가 • 화교 2, 3세대의 등장

17) 더욱 자세한 중국인의 해외 이주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왕경우 저, 윤필준 역, 『화교: 중국 밖의 또 다른 중국인 화교』, (서울: 다락원), 2003.을 참조하기 바람.

작하며 베트남 전쟁과 이후의 공산화로 소위 ‘보트피플’로 알려진 이 지역 화교들이 구미 등지로 피난하였다. 80년대 호주, 뉴질랜드는 아시아와의 경제연계를 강화위해 본격적으로 이민 받아들였고, 홍콩반환과 맞물리면서 대규모의 홍콩인들이 대양주로 이민하게 되었다.

화교의 해외이주 배경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6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¹⁸⁾

① 중국의 내란이나 완조교체기에 대거 해외로 도피 할 경우

진시황이 국가를 통일하여 다민족적 중앙집권제의 봉건국가를 건설하였지만 분서갱유로 상징되는 폭정은 화교사 개시의 초창기로 받아들여졌음. 즉, 진시황의 폭정에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한 바 있다. 진, 당의 대혼란 시대에 많은 화교·화인들이 생성되었고, 농경지에 비해 너무 많은 인구로 인해 다수가 생활고에 직면하면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이주하기 시작했다. 송이 원조에 멸망된 후 송의 유민들이 남양으로 피난하였고, 만주족이 베이징 지역으로 진입한 이후 명의 유민들이 피난하였으며, 태평천국과 민국초년 내전시기에 발생한 이민 및 대륙에서의 공산주의 新중국 성립 후 국민당인의 해외이주가 있었다.

② 토지점병과 가혹한 세금 및 각종 착취와 인구과잉으로 해외로 나가는 경우

1661-1812년 사이 복건의 인구가 5배 증가한데 비해 경작면적은 단지 32%만 증가했고, 광동의 인구는 20배나 증가한데 비해 경작면적은 27% 증가에 그치면서 인구 압력으로 많은 유민이 발생했고, 그 중 상당수 사람이 남양 등지로 이주하였다.

③ 서구열강의 침략과 식민지 확장으로 인한 경우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식민지 경영과 중국의 자급자족 경제붕괴로 상당수 농민 노동자와 수공업자들이 이민과 인신매매의 형태로 해외에 이주하게 되었다.

④ 이민 대상국의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경우

1862년 미국이 서부개척을 위해 대륙횡단 철도를 부설하면서 대량의 화공(華工)¹⁹⁾을 수용함으로써 화교인구의 대규모 미국이주가 시작되었다. 20년 뒤 ‘排華 법안’의 통과로 10년간 중국노동자의 미국입국이 금지되었다.²⁰⁾ 1960년대부터 중국인 입국제한이 완화되어 70, 80년대 세계각지의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의 이민정책 변화도 모두 중국의 이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8) 한중경제포럼, 앞의 책, pp.19-20.

19) 중국인 노동자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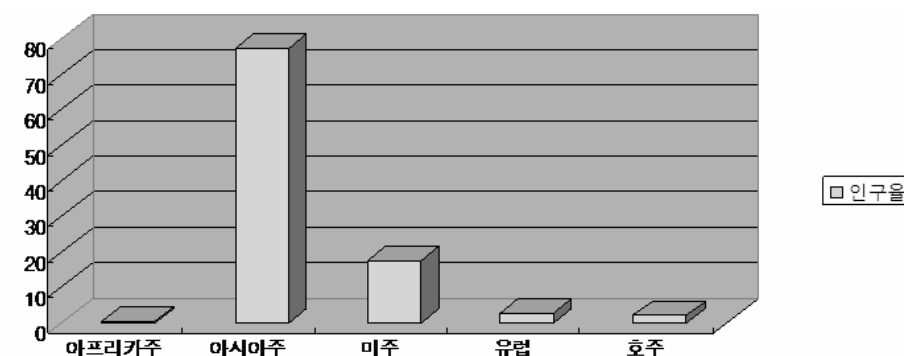
- ⑤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의 이주를 추구하는 경우
 중국인은 아주 실리적인 민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국에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한다.
- ⑥ 유능한 중국인을 유치하려는 상대국의 인재확보 전략에 따른 화교들의 이주경우
 이와 같이 화교의 해외이주는 정치적·경제적 요인, 그리고 자신의 선택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교의 현황과 분포

대만교무위원회의 ‘세계화인연감(2003)’ 과 ‘중국통계연감(2003)’ 에 따르면 대만·홍콩·마카오를 포함한 세계 화교인구는 6,725.2만 명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대만·홍콩·마카오를 제외한 세계 화교인구는 ,750.5만 명이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77.4%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아시아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미주, 유럽, 호주 순이다. 아시아권에 비해 미주 등지의 화교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화교의 새로운 이민 목적지가 서방 선진국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²¹⁾

새로운 이민자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대개 해외에서 유학을 한 후 정착하거나 보다 유리한 경제환경을 찾는 ‘투자이민’ 이나 ‘상업이민’ 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시대에 편승하여 진행되는 새로운 이민 양상이기도 하다. 1980년대 동남아 화상들의 북미, 유럽등지로의 이주와 특히 중국 개혁·개방정책 실시이후 중국인들의 해외이주가 고조되면서 기존의 화상네트워크는 세계적 영

〈그림 1〉 세계 해외 화교·화인 인구분포



출처: 대만교무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ocac.gov.tw>

20) 정식명칭은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인데 이 법안은 1943년 폐지되었다.

역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화교인구는 313만 명이며, 이 숫자는 1950년대 44만 명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캐나다 화교인구



화교인구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아시아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미주, 유럽, 호주 순이다. 아시아권에 비해 미주 등지의 화교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는 1991년까지 67.9만 명이었으나 141.4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호주와 같은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아시아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미주, 유럽, 호주 순이다. 아시아권에 비해 미주 등지의 화교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화교의 새로운 이민목적지가 서방선진국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들 아시아지역 화인들은 동남아 총인구의 10%에도 못 미치지만 그들은

〈표 2〉 전 세계 상위 10위 화인인구 분포 및 경제력 현황

순위	국가명	인구	총인구 비율	총자본 대비율	성장율	원적	주요기업 및 비고
1	인도	757만	19.7	73	1.38	북건, 광둥	상위 10대 재벌 모두가 화인 자본
2	태국	705만	18.4	81	0.85	조주, 객가 북건	CP그룹, 방콕은행 대성그룹 등 최상위 10대재벌 중 9개가 화인 자본
3	말레이시아	619만	16.1	69	1.31	북건, 객가 광둥	Kerry, MPH윤정그룹
4	미국	338만			2.99	광둥, 대만	
5	싱가포르	269만	7.0	81	1.11	북건, 조주 광둥	OCBC, C4C, YHS그룹
6	캐나다	161만			6.18	광둥, 대만	
7	페루	130만				광둥	
8	베트남	126만	3.3		2.2	북건, 객가	
9	필리핀	114만	3.5	50	1.8	북건	편탄유그룹, 제조업, 금융업, 식품가공 등
10	미얀마	111만	2.9		1.05	북건, 객가	

출처: 대만교무위원회 『교무통계년보』, 2006년도: <http://www.ocac.gov.tw/public/public.asp>; 장공자, “중국의 화교정책과 화상망에 대한 연구,” 『통일전략』, 제7권 제3호, 2007. 12, pp.355~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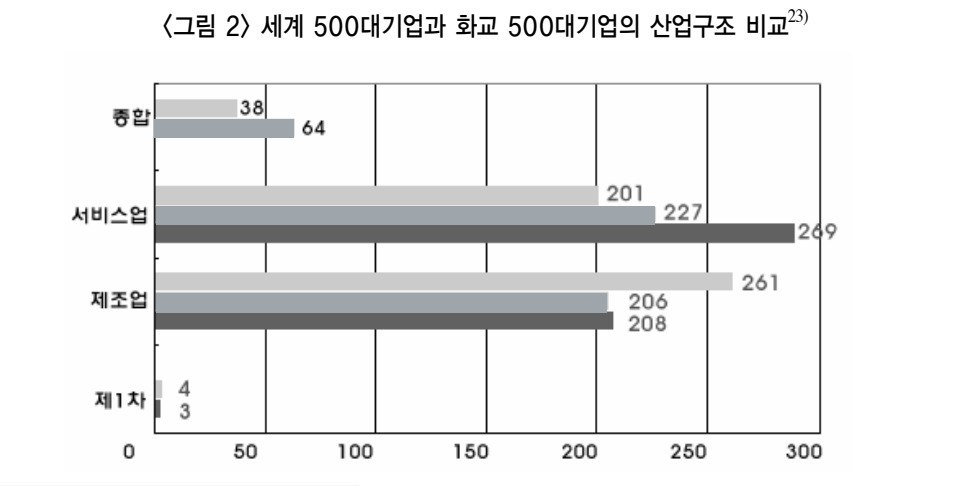
21) 화교의 분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할 사실은 화교가 단일그룹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진영은 화교는 방언과 출신 지역에 따라 광둥인(廣東), 객가인(客家), 민남인(閩南, 福建), 조주인(潮州), 해남인(海南)과 기타 산둥인(山東)및 호남(湖南)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언어, 종족적 차이뿐 아니라, 한 국가의 차이나타운에서도 독립적 집단조직인 방(幫)이나 상회(商會)를 운영하면서 구별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진영, “중국의 화교정책: 배제에서 이용으로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축,” 『현상과 인식』, 통권 95호, 2005, p.57.

역내 무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 부호들의 86%가 화인이다. 세계 10대 갑부 중 홍콩의 이조기(항기그룹), 이가성(장강실업), 대만의 채만림(霖園그룹), 필리핀의 정주민(핀 탄유그룹)등 화인이 4명이나 된다. 또한, 화인계 5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만 211개, 홍콩 140개, 싱가포르 59개, 말레이시아 52개, 필리핀 18개, 태국 12개, 인도네시아 8개로 되어 있다.

화교자본의 특성과 글로벌 네트워크화

화교는 혈연(血緣), 지연(地緣), 업연(業緣)이라는 3연 관계로 연결돼 있는데, 3연에 기초한 각종 화교단체의 활동으로 화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동향관계로, 한 사람이 성공하면 주위에 동향 출신이 모여들고 이들의 초청으로 중국에서 새로 이민이 유입돼 동향자 군이 형성 되면 여기에서 사교,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진다. 중국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동향의 선배 또는 친척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같은 직업에 종사한다.²²⁾ 1940년대에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개별국가 내에서 통합되었으며, 70년대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80년대 이후에는 홍콩, 대만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북미, 구주 지역으로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북미, 구주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계하는 글로벌 화교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화교들 자본의 특성은 전 세계에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 자본의 신속한 이동을 도모하며, 무역, 제조업, 금융,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에서 활약하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과 전자, 정보 산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



22) 박형기, 앞의 책, p.43.
23) 한국 中華總商會, <http://www.kccci.or.kr/> (검색일: 2008. 8. 5)

지하며, 서비스 산업에서는 부동산, 관광, 레저 산업에 특화; 금융, 무역, 물류 산업 등은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계 500대기업과 화교 500대기업의 산업구조를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1980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개방의 사실상 전인차 역할을 했던 화교들은, 1991년에 1차 세계화상대회 개최로 종족·방언적 차이를 넘어서고 있고, 특히 2001년 6차 세계화상대회(중국 남경개최)를 계기로, 해외의 화교와 중국정부가 상호네트워크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화교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이러한 범 세계적 연대를 위한 노력인 ‘중화네트워크’의 움직임은 초국가적이고 초지역적인 제3의 구심점을 찾아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⁴⁾ 이들 움직임 중 가장 의미 있는 역대 ‘세계화상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3연을 바탕으로 이미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화교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화교들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별로 부상해 유일하게 유대자본과 비견되는 세력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범위하고 공식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결정체가 바로

〈표 3〉역대 세계 화상(華商)대회 개최현황

구분	일시	개최지	참가국/참가자	개최자	대회의 테마
1차	91. 8. 10- 12	싱가포르	30/750	이광요 총리	세계화인기업의 연계강화, 상업발전
2차	93.11. 22- 24	홍콩	22/850	펑팅강 총리	세계경제의 신조류와 화인기업의 역할
3차	95.12. 02- 06	방콕	24/1,500	뽀한 총리	세계화인기업의 교류강화, 공동번영촉진, 세계화상 네트워크강화
4차	97. 8. 25- 28	벤쿠버	30/1,400	키뤼티안 총리	화인기업의 정보화와 북미 전세계네트워크
5차	99.10. 06- 09	멜버른	20/800	호화더 총리	신천년의 도전
6차	01. 9. 16- 19	남경	77/4,700	주용기 총리	신세기 화인기업의 평화와 공동번영
7차	03. 7. 17- 30	팔라룸푸르	21/3,500	마하티얼 총리	글로벌성장과 번영을 위한 발전과 공존공영
8차	05.10. 09- 12	서울	32/3,569	노무현 대통령	화상과의 동반성장, 지구촌의 공동번영
9차	07. 9. 15- 17	고베, 오사카	/3,600	아베 총리	화합, 창신, 기회 성심과지혜로서 공생동락
10차	2009. 11. 예정	마닐라			

출처: <http://www.wcecjapan.org/kasyo/chinese/06.html> (검색일: 2008. 5. 17)

24) 조정남, 앞의 논문, 1998, p.58.

‘세계화상대회’이다. 세계화상대회는 중국 본토는 물론, 해외 화교사회에서도 지역과 가문을 넘어서 모든 화상이 모이기에 전 세계화상의 종합적인 정보 교환의 장이 되고 있으며, 화상들은 정보교환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협력으로 화교자본의 효과적인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중국의 화교정책관련 기구와 법규

화교관련 기구와 조직²⁵⁾

중국이 화교사업에서 관장하는 화교업무의 대상은 화교, 귀국화교(歸僑)와 화교권속, 화교와 귀국화교학생, 외국국적의 화인, 해외유학생 등으로 실제로 화교와 화인을 총망라하고 있다.

①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

문혁이전 화교업무의 핵심부서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의 ‘제3실’과 ‘사회부’였다. 제3실에서는 주로 화교, 화인사회의 각종 외부의 조직들을 지도 감독하며 사회부에서는 대체로 정보수집과 무기 비밀수송 등의 임무를 담당해왔었다. 지금도 화교정책은 통일전선공작의 일환으로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 지방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

현재 20여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화교전문위원회 혹은 공작위원회가 있으며 중점교구의 시, 현의 인민대표대회 화교종작위원회가 200여개 있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교무판공실(僑務辦公室, 교판), 전국교판 및 지방교판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의 보조기관으로 현재 티벳을 제외한 29개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점교구인 1300여개의 시, 현의 인민정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④ 중화전국歸國화교연합회(교련), 전국교련 및 지방교련

티벳을 제외한 29개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점교구의 2700개 시, 현, 향, 진, 촌에 8000여개 기구와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해외한인 화교와 연락을 행하는 34만여명의 연락원을 두고 해외 2200여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

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홍콩, 마카오, 대만 교무위원회(화교관련 사무기구)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실용주의 정책을 주창한 덩소핑에 의해 이끌어왔던 정

25) 장공자, “중국의 화교정책과 화상망에 대한 연구,” 『통일전략』, 제7권 제3호, 2007. 12, pp.384~385.

협회의를 통해 그들 화인조직과의 연계를 맺고 있다. 정협은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조직형태로서 국가건립과 동시에 성립되었으며 그 구성은 공산당원보다 민주 제당파, 인민단체, 화교 등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⑥ 중국치공당(致公黨): 화교로 이루어진 정당

이 당은 1925년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도미당(司徒美堂), 진기우(陳其尤) 등에 의해 창당되어, 1948년부터 친중공당파가 되었는데, 조직대상은 귀국화교의 중상층인사로 구성되었으며 18,000명의 당원을 가지고 중국의 17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 79개 조직이 건립되어 있는 중국의 해외한인 통일전선의 주요조직이다.

⑦ 기타

중화해외연의회, 외교부 영사사, 주외영사관, 언론사(신화통신사, 중국국제방송국, 인민일보사, 중국신문사, 화성보사)와 기남대학, 화교대학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화교실태파악 및 화교정책협조, 건의 기능 그리고 선전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화교정책은 종적으로나 횡적으로나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그들과의 밀접한 연계 하에 조직화 되어 있다.

화교에 대한 법률적 제도

중국정부는 국가통일과 경제건설의 요구로 화교에 대한 시기적으로 상이한 정책을 실시했으며, 문혁시기에는 정책기관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등소평은 경제발전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화교정책을 재건’ 하는 방식으로 화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자본유치를 유도하는 적극적 방법들을 실행했다. 개혁·개방 이후 화교정책들은 주로 화교·화인들의 국적문제, 화교 권익보호, 그리고 귀국화교들에 대한 처우문제 및 해외 화교들의 국내 투자에 관한 우혜적 정책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시기 화교정책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들이 100여개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화교정책과 관련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은 민감한 사항이었던 이중국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보호법’: 권익보호

1990년 9월 7일 제 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1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귀

〈표 4〉 중국정부 화교정책 관련 주요법규

주요 내용	관 련 법 규
국적관련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법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출입국관리법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권익보호	•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 권익보호법 • 중화민국 귀국화교연합회 회칙
기증과 지원	•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증법 • 화교기증 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 • 화교 송금에 관한 국무원령
국내투자 우대정책	• 화교들의 국유 황무지 개간 신청에 관한 조례 • 중회합자경영기업법 •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설시세칙 •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 경영기업법

출처: 중국 국무원 교무판공실, 복건교무위원회

교교권권익보호법(권익법)’이 통과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실행기로 하였고, 1993년 7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실행방법’을 반포하였다.²⁶⁾ 이 ‘권익법’은 중국의 교포정책을 크게 진전시켰다. 전문 22개조에 이 법률은 중국의 화교문제에 대한 태도가 집약되어있다.

이 법률은 ‘귀교, 교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정부의 화교들에 대한 일관된 방침의 재확인하고 있다.²⁷⁾ 여기서는 ‘화교’·‘귀교’, ‘교권’ 등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차별의 폐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포들에 대한 사단설립권(6조), 귀교들에 대한 농장이나 임업장 설치와 경영 원조(7조), 화교와 교권들의 공사업 자본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법적인보호(8조), 그리고 이들의 공익사업(교량, 도로, 노인홈, 유치원 등의 건설)경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와 법적보호, 세제면에서의 우대(9조), 가옥사유의 보호(10조), 귀교학생, 귀교자녀 및 화교의 중국 국내 진학, 취직 배려(11조), 화교로부터 송금된 돈의 보호(12조), 유산상속의 보장(13조), 국외 친구들과의 왕래, 통신보장(14조), 친척 방문을 위한 출국의 보장(16조), 국외정착 보장(17조), 유학 보장(18조), 합법적 권리가 침범되었을 경우 관계기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20조)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귀국한 교포들과 그들 가족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명문화했다.

이러한 ‘권익법’은 2000년 10월 31일 제 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18차 회의에

26) 정신철 · 주경홍, “중국의 화교, 화인정책 및 특징,” 『在外韓人研究』, 제13권 2호, 2003, p.112.

27) 조정남, 앞의 논문, 1998, p.57.

서 수정하여 30개 조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2004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실행방법(시행령)’도 수정되



제 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 1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보호법(권익법)’이 통과되어 1993년 7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실행방법’을 반포하였다.

어 총 30개 조항으로 적시되었다. 수정된 ‘권익법’은 제 29조로 “국가는 귀국화교, 화교가족의 친척방문을 위한 출국의 권리를 보장해준다.”이며, 수정된 ‘권익법실행방법’은 귀국한 화교의 출입국, 호적, 사회 기관과의 연관 및 업무처리, 농장 및 토지관련, 소유권, 교육, 송금, 사회보장, 법적 구제장치 등이 명시되어 있다.²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화교의 국적문제

중국정부는 해외화교와의 단결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국적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정권들과는 달리 화교들의 현지국 국적가입을 장려하면서 교민들의 현지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화교들의 이중국적문제가 그들의 현지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또한 화교들의 주요 집거지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측면의 문제도 고려하여 화교들을 단일 국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침을 제정하고 이들을 단일 국적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실행하였다.²⁹⁾ 당시 화교가운데 이중국적 소유자가 절반이상이었는데, 중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이 중국을 공격하고 중국과 동남아국가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문제로 불거졌고, 이에 1951년 중앙교무사업위원회는 화교는 정주국 혁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제출하여 중국과 동남아 각 민족주의 국가와의 모순을 완화시켰던 것이다.

① 처음 공식적 언급

화교의 국적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51년 1월 ‘화교와 동남아혁명에 관하여 모주석과 중앙위원회에 드리는 보고서’와 1952년 1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해외교민공작에 관한지시’에서이다. 여기에서, 화교란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교민을 지칭하며, 부모 쌍방 혹은 어느 일방이 중국인이어야 한다는 혈통주의적 원칙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국적문제의 해결은 엄격하게 본인의 자유의사

28) 이진영, “중국의 화교 정책 :배제에서 이용으로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축,” 『현상과 인식』, 통권 95호, 2005, p.64.

29) 정신철 · 주경홍, 앞의 논문, p.98.

에 따른 선택적 사항임을 밝혔다.

② 1955년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 체결: 중국과 인도네시아

화교의 이중국적 상황은 동남아의 반공산주의 정서와 맞물려 현지 정부 및 원주민으로부터 심각한 의심을 사게 되었다. 중국교민의 정치적 활동은 중국 공산당 ‘5열(Fifth Column)’이라며 동남아 각국의 의심을 확대시켰고, 현지 정부의 정책적인 배척과 현지 반화폭동의 도화선이 되었다.³⁰⁾ 이로 인해 동남아와 중국의 사이가 불편해지자, 화교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논의를 이끌었고, 결과 1950년대 중반 이래 중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각국 정부와 차례로 화교의 이중국적 해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1955년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은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18세 이상의 화예는 2년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하며, 기타 국적은 포기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약의 핵심은 중국국적과 현지국적을 동시에 지닌 모든 화교가 스스로 원하는 것의 원칙으로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중국정부는 중국국적을 포기하고 현지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³¹⁾ 이것의 의미는 ‘뿌리 찾기’에서 현지 삶을 기초로 하는 화교의 ‘뿌리내리기’로 중국정부의 화교정책이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1980년 9월 10일 제 5기 전인대 제 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이 제정되어, 화교국적에 대한 논의가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되기에 이른다.³²⁾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및 회복에 관한 법적 규정은 이 법규에 적용되며 성격상 단일국적제에 속한다.

제 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내인은 물론,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이중국적을 거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주로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선택적으로 혼합 적용하고 있다.³³⁾

- 제 5조: “부모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중국국적을 가진다.” (혈통주의)
- 제 6조: “부모 쌍방이 무국적자거나 국적이 불분명하고, 중국에 정주하고 있고 본인이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중국국적을 가진다.” (출생지주의)

30) 5열이란 ‘중국공산당이 혁명적 목적 추구를 위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김두진, 앞의 논문, p.282.

31) 최승현,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 (인천: 화약고 출판사), 2007, p.73.

32) 비록 화교국적에 대한 논의는 중국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은 헌법에 기초하여 법률형태로 제정된 것이다.

33) 이형석, 『중국정부의 화교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p.50.

중국의 화교정책

중국정부는 해외 거주국에서 장기적으로 뿌리를 내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고, 거주국의 문화를 익혀, 현지의 떳떳한 국민으로써 자리매김을 한 후에 중국인 고유의 중화의식을 발양시켜 중국계 상호간의 민족적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거주국과 모국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 볼 때, 중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성의 원칙으로 전개되고 있다.³⁴⁾ 하나는 현지화(現地化)이고, 다른 하나는 중화의식(中華意識)의 계승이다. 현지화는 ‘단일국적’ 정책과 ‘거주국에서의 정치활동 금지’ 정책을 말하며, 중화의식의 계승은 현지에서의 중국계 학교와 교포 언론매체의 발전에 크게 신경을 썼고 해외에서의 민족 교육기관을 발전시켜 이를 통한 華文교육의 내실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중화의식과 중화문화의 지속과 발전을 겨냥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화교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볼 것이고, 크게 新 중국 성립 이전과 국민당의 화교정책,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화교정책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³⁵⁾

新 중국 성립 이전과 국민당의 화교정책

엄격한 해외이주의 제한금지와 청조의 화교정책

중국은 전통적으로 그들을 문화적으로 우월한 민족으로 생각하여 주변민족을 멸시하였고 유교윤리에 철저해서 조상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것을 불효로 생각했다. 그리고 전통왕조들도 통치 유지에 필요한 조세확보를 위해 인민들을 토지에 속박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중농억상 정책과 엄한 해금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인민들의 상업활동과 해외이주를 제한·금지하였고 심지어 해외이민을 범죄 시 하였기 때문에 해외 화교

34) 조정남, “중국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제 5호, 2000, p.33.

35) 중국의 화교정책의 시기구분을 거삼원은 ㉠봉건왕조 前期 ㉡晚清시기 ㉢北洋군벌정부 시기 ㉣손중산 집권시기 ㉤국민당시기 ㉥解放區의 교무정책 ㉦新중국 시기 ㉧문화대혁명 시기 ㉨개혁·개방시기 등의 9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으며, 마지막 개혁·개방시기를 3단계로 보아 1단계 1978-1984, 2단계 1984-1989, 3단계는 1989부터 지금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거삼원, “중국의 華僑政策과 재외화교기업의 중국대륙 투자,” 『中蘇研究』, 제 69집, 1996, pp.76-84.

36) 1861년 근대적 의미의 국적과 외교영사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총리각국사무아문’이 설치되어 교포들을 상대로 화교사무를 처리하였고, 이때부터 조직적 화교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나 하등의 보호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차 아편전쟁으로 대외개방을 강제 당한 清朝는 서양열강의 압력 하에 각종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면서 차츰 화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³⁶⁾ 당초 화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던 화교정책은 그 후 화교자본을 유치하여 근대공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중국의 화교에 대한 사고는 아편전쟁 이후 화교문제에 관심 갖게 되어, 서구에 의한 중국의 半식민지화 과정에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조가 제정한 주요 화교정책³⁷⁾중 清末 특히 1903~1911년 사이의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영사관 설립을 통한 화교의 권익보호
- 교육사업을 통한 화교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
- 국내에서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와 장려 등을 통한 화교의 국내산업투자 유치
- 혈통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적법의 제정

청末의 이러한 화교정책은 당시 적지 않은 화교자본을 유치하고 화교를 통해 선진 생산기술과 경영관리방법을 도입시킴으로서 중국 민족공상업의 근대화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각 정권의 화교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었으니 특히 北洋정부³⁸⁾의 화교정책은 대부분 청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국민당의 화교정책

화교들은 국민혁명의 뒷 방패로서 중화민국의 성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재정적 기반으로 ‘화교는 혁명의 어머니’ 라고 하였다. 따라서 국민당은 신해혁명 이래로 화교에 대해 강력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화교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로서 ‘교무국’(광동혁명정부), ‘국민당중양해외공작위원회’, ‘행정원교무위원회’(남경정부) 등을 설립하여 각종 화교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1926년에는 화교정책의 3 가지 기본 목표를 설정하였다.³⁹⁾

- ① 화교들이 거주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함.
- ② 화교자녀들의 중국유학을 용이하게 함.
- ③ 중국에 산업건설을 희망하는 화교에게 특별한 보증을 해준다는 것.

37) 손준식, “화교경제권과 중국의 화교정책,” 『民族發展研究』, 제 3집, 1999, p.169.

38) 청조 말기 중국 공화정 초기 등장한 현대식 군사집단으로 약 30년 이상 중국을 지배한 군사 세력을 말한다. 이홍장(리홍장, 李鴻章)의 강력한 북양군(北洋軍)에서 출발해 원세개(위안스카이, 袁世凱)를 거치면서 분열하여 중국을 지배하였다.

39) 손준식, 앞의 논문, pp.169-170.

그리고, 이러한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이 1947년 제정된 중화민국헌법에 반영되었다.

- 화교 중에서도 국민당대회대표 · 입법위원 · 감찰위원을 선출하여 국정에 참여시킴
- 화교권익을 보호
- 화교의 경제사업에 대해 부조 · 보호
- 화교의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에 대해 장려 · 보조

그러나 국민당의 적극적인 화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내동란과 대외전쟁으로 국민정부는 거의 화교보호정책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오히려 화교로부터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쪽에 중점이 두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으로 철수 이후에도 경제적 기반이 안정되기까지 계속되었다.

개혁 · 개방 이전의 화교정책

화교 맹군시기 (1949~문혁이전)

중공정권이 수립되기 이전 중국공산당은 화교가 경제지원을 담당해 주는 것으로도 만족했으나, 국가건립이후에는 화교들에게 ‘민족해방투쟁’의 한 맹군으로서의 정치적인 임무까지도 수행토록 요구했다.⁴⁰⁾ 즉, 신 중국 수립 이후 중국공산당은 ‘정권강화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이용한다’는 통일전선 방침에 입각해서 해외화교를 인민공화국의 유기적 구성분자로 보고, 그것과의 단결을 화교정책의 기본방침으로 하였다.

1954년에 공포된 공화국 헌법 제98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국외화교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천명하고 화교업무를 주관하는 전문기관으로 국무원내에 ‘화교사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화교대표가 참가된다는 것도 규정되어 화교의 국정참가에의 길을 보증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중공정권의 참된 목적은 그들의 경제적 ·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화교를 중시하고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즉, 경제면에서는 ‘교권’에 대한 화교의 부양 · 송금 · 물자송부, 투자를 위한 송금 및 중국산품의 대아시아 판로확대 등이었고 정치면에서는 화교를 중국의 혁명외교노선에 동조한 통일전선공작의 현지 활동 부대로서 활용하는 일이었다.

40) 장공자, “중국의 화교정책과 화상망에 대한 연구,” 『통일전략』, 제7권 제3호, 2007. 12, p.364.

가) 정치적 측면

세계 각국에 산재되어 있는 화교들을 맹군으로 활용하고자 주은래(저우언라이, 周恩來)는 “우리는 화교거주국에서 화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정당한 보호와 존중을 해주기 바란다”며 화교보호주의와 화교의 인권존중을 전 세계에 표방하였다. 더불어 화인사회에 인민민주통일전선을 구축하고 화인들의 이중국적을 인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중국인이면 누구나 중국을 돕는다”며 화교들과의 애국애족대단결 강조하였다.⁴¹⁾ 이러한 애국대단결의 구축공작은 거주국공산당 및 좌익세력과 깊게 유착되어 정변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정변에 대해서는 뒤의 문혁시기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나) 경제적 측면⁴²⁾

정치적인 면 외에도 중국은 경제적인면의 침투를 적극 전개했다. 화교들로부터 중국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지지와 함께 그들의 많은 투자자금과 공업경영의 경험을 중국에 적용시켜 중국사회주의 건설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문화대혁명 이전까지의 중국 화교정책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조치는 <표 5>와 같다.

이러한 화교투자를 위한 우대 조치 외에 중국은 홍콩을 포함한 對동남아 무역에서 흑자를 거두었으니 그 대부분 화교루트를 통한 수출이었으며 화교자신이 그 소비자였다. 이와 같이 중국에 있어서 화교가 갖는 경제적 의의는 매우 큰 것이었지만 이것을 저해하고 파괴한 것은 바로 중국 국내의 정치행동이었다.

화교배척시기 (문화대혁명시기)

가) 중국정부의 해외화교에 대한 반감과 불신감

실권파를 타도하고 부르주아적 노선을 철저히 배격한다는 문화대혁명 노선의

〈표 5〉 화교에 대한 중국정부의 경제적측면의 우대 조치(1949~문혁이전)

년도	조치	목적
1950년	‘화교송금우대집행관법’이 제정	화교송금을 위해
1951년	‘화교투자공사’가 창설 ⁴³⁾	화교투자를 생산건설부문에 도입하기 위해
1955년	‘광둥화교투자공사’ 설립 ⁴⁴⁾	직접 혹은 은행환(money order)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짐
1957년	국무원의 ‘국영화교투자공사에 대한 투자우대관법’을 공포 ⁴⁵⁾	투자장려를 위해

41) 장공자, 앞의 논문, 2007, p.365.
42) 장공자, “중국의 화교정책,” 장공자?한창수 공저, 『현대중국론』, 1987, pp.264-277.

총구는 국내에서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하고 부르주아적 잠재의식을 가진 교권이나 ‘귀교’(중국에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에 겨누



중국인들은 정치와 경제적인면의 침투를 전개했다. 화교들로부터 중국사회주의 건설 지지와 그들의 많은 투자자금과 공업 경영의 경험을 중국에 적용시켜 중국사회주의 건설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어졌다. 홍위병과 조반파는 화교가족을 습격하고 가택수색을 해서 사치품이나 고가품을 탈취하고, 또한 그들을 길거리로 끌어내어 ‘해외 부르조아 계급’이라고 비판투쟁에 회부하였다. 이에 해외화교의 화교투자공사에의 투자나 이익은 동결되고 화교가족과 귀국화교는 가옥 이외의 가산을 몰수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송금이 급감하였다.

한편 문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무원 화교사무위원회 이하 각 지방의 화교사무기관이 거의 파괴되고 화교사무 관련간부는 비판투쟁에 회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교업무는 수년간 사실상 정지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해외화교는 일시 귀국할 수도 없었고 가족을 불러낼 수도 없는 불안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화교에 대한 탄압은 중국정부의 손해와 대만의 화교공작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즉, 이러한 문화혁명 기간의 화교학대와 화교업무의 정지는 곧 큰 마이너스로 중국정부에 반사되었고, 동시에 이 마이너스가 대만 측에 플러스가 되어 대만의 화교공작 신장에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나) 화교 이용한 혁명공작의 실패들과 중국의 고립

중국이 화교를 세계혁명전략의 도구로 간주하고 그들을 혁명공작의 침병으로 이용한 경우 큰 실패들을 초래하였다. 마카오사건(1966년 12월), 홍콩소동사건(1967년 5월), 미얀마의 랭군 반혁명폭동(1967년 6월) 등의 일련의 사건은 모두 중공지도자가 화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로서 현지사회에 있어서의 화교의 비극과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뿐이었고 그 결과 해외화교의 인심을 크게 대만으로 기울게 하였다. 중국을 향한 화교의 애국과 애족은 곧 화교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었다.

43) 송금 중에서도 중국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건설상 특히 중요시되었다.

44) 이것은 국영의 화교투자공사로서 화교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55년에 13개의 공사합영화교투자공사가 생기고, 북경에 총공사가 설치되었다.

45) 그때까지의 공사합영을 국영으로 통일하고 투자에 대해 년 8%의 배당을 붙이고 12년 후의 원금회수와 해외송금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폭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65년의 인도네시아의 ‘9.30사건’으로 모택동(마오쩌둥, 毛澤東)이 인도네시아 화교를 통해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의 쿠데타를 지원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공산화를 획책하였다. 하지만,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인도네시아 화교는 희생되었고, 새롭게 구성된 수하르토(Suharto) 정부의 암묵적 동의와 방관아래에서 反화교폭동은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화교가 학살되었다.⁴⁶⁾ 이때, 외교적 문제를 고려한 중국은 화교의 희생을 모른체 하였고, 화교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위에 배신감을 느꼈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정부는 문화혁명종식 후 화교공작을 부활하고 지방의 화교 사무기구를 재건함과 동시에 새로운 평화공존·우호외교를 전개하였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 이후 더욱 적극적인 화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의 화교정책

국내 화교정책

가) 화교정책의 기본원칙: 16자 원칙

국내 화교정책의 기본은 ‘일시동인, 부득기시, 근거특점, 적당조고(一視同仁, 不得歧視, 根據特點, 適當照顧)’⁴⁷⁾의 16자 방침이다. 즉 귀교와 교권들을 일반 인민들과 같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한편, 해외에서 생활체험과 해외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들의 특징에 기초하여 적절한 배려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침은 문화혁명 이전에는 앞부분의 8자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8자 방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귀교와 교권에 대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차별과 억압이 진행되어 왔다. 문화대혁명 당시에는 ‘해외관계복합론’, ‘화교복잡론’을 근거로 귀교와 교권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절정을 이루기도 했다. 귀교와 교권들은 심문·가택수사·형벌·하방·간부학교 입교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공산당 입당·해방군 입대·임금 및 승진 그리고 결혼문제에 이르기까지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토지 및 재산의 몰수·침해, 해외와의 통신에 대한 간섭, 분묘의 파손 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복장·언어·관습 등 일상생활에서도 귀교 및 교권들과 일반 민중 사이에는 차별이 존재했다.

개혁 및 개방이 시작된 1979년부터 1989년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교판 및公安부는 귀교·교권관계자에 대한 종래의 정치적 판정 가운데 60여만 件에 대한 재

46) 최승현, 앞의 책, 2007, p.74.

47) 모든 것을 동등하게 보고, 차별하지 말며, 장점을 중히 여기면서, 잘 돌봐주라는 것이다.

심사를 실시하여 6만 4500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명예회복을 단행하였다. 이는 귀교·교권에 대하여 ‘일시동인, 부득기시’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개혁·개방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화교 자본에 대한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16자 방침 가운데 후반부인 ‘근거특점, 적당조고’ 방침이 1978년 추가되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화교, 화인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 인식

중국의 국내 화교정책은 1991년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보호법’에 집약되어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제3조에 그 기본 방침이 나타나 있다. 제3조에서는 귀교·교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어떤 조직 단체도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부득기시)라고 명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들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행한다(적당조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구체적 조치는 국무원이 정하도록 명기하고 있어 국내 화교정책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귀교교권권익보호법’의 제정은 귀교·교권을 특수국민 대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시행된 것은 중국이 귀교와 교권이 형성하고 있는 해외 화교·화인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다) 4개 현대화건설 달성위한 화교관련 사업의 강화

이러한 인식 하에서 중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현대화건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⁴⁸⁾

- 화교들의 자금을 유치함과 동시에 그들의 기술과 인재도 함께 흡수하기 위해 노력
- 화교(홍콩·마카오 포함)들의 정보망과 언어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내 산품의 수출을 촉진
- 이미 유치한 화교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친목단체와 활동을 조직·거행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서 더 많은 외자유치를 촉진
- 더 많은 ‘교속’(화교관련)기업들이 현행의 우대정책을 이용하여 자금과 기술·설비·정보를 끌어들이도록 도움
- 화교(홍콩·마카오·대만 포함)들의 기부를 통한 교육사업을 계속 장려하고 화교송금 감소 원인에 대해 연구하여 조정
- 화교 농장의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지도

• 심수 화교성의 개발과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
즉, 중국당국은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화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각종 우대조치와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펴고 있는 중이다.

국외 화교정책

가) 기본방침

중국의 국외 화교정책의 기본방침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화교에 대하여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권유로, 즉 화교의 화인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화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며 화교 거주국 정부에 대하여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화교가 거주국과 거주국의 법률을 존중하고 거주국 국민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간에 걸쳐 공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넷째, 화교동포의 애국주의 정신을 수호하고 발양하며 가족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화교동포 전체 단결을 도모한다.

나) 해외화교에 대한 사업추진

이러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현재 중국당국은 해외화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화교들이 거주국에서 장기적으로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표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중국과 각 국간의 우호협력과 교류의 교량으로 삼는다.
- 화교사회의 종친·동향·상회 등 각종 단체와 거주국 현지에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화교엘리트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실상을 이해시키고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참가시킨다.
- 중국과 대만 양측 모두와 왕래하고 있는 화교들에 대해 이해와 관용의 태도를 갖고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며 아울러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화교단체와 인사들을 통해 대만당국과의 대화의 기회를 만든다.
- 화교들에게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건설과 조국통일대업 및 외교노선과 방침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화교들의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각종 형태의 교육·문화 사업을 전개한다.
- 화교 청소년에게 중국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서 조국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더

48) 손준식, “화교경제권과 중국의 화교정책,” 『民族發展研究』, 제 3집, 1999, p.174.

육 강화하기 위해 해외 화교학교와의 교류를 증대하고 중국 내 화교관련 교육 기관의 교과과정 및 교수법의 개선한다.

다) 중국이 해외화교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정책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해외화교들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이를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⁴⁹⁾

첫째, 거주국에서의 화교들의 생활의 안정,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화인들의 거주국의 국적취득, 거주국에서의 봉사를 권장하는 입장을 일관하여 견지하고 있다. 화교들에 대해서는 ‘落葉歸根(뿌리 찾기)’ 보다는, ‘落地生根(뿌리 내리기)’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해외의 화교들에게 대해 이국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현지국적의 취득을 권장하는 정책을 취해왔고 1980년에 제정한 중국 최초의 국적법에서도 이런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음을 다시 확인했다. 중국정부의 명확한 입장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 해외 중국계의 국적문제는 거의 해결을 보게 되고 화교들의 현지 국적 취득율은 거의 90%대로 상승했다.

둘째, 중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화교들이라도 거주국과 거주국의 법률을 존중하고, 거주지의 사람들과 우호관계를 심화시켜, 장기간에 걸쳐 공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교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현지의 정치적인 문제를 외면함은 물론 거주국의 법률, 문화전통, 풍습 등을 제대로 지켜서 그곳 생활에서의 유리감을 줄이고 그곳 주민들과 거리 단축 시켜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한다.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은 해외교토들이 거주국에서는 모국인 중국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조직과의 연계 활동 또한 엄격히 반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단지 현지 법률의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며, 만약 모국의 정치 단체에 참가하려면 귀국해서 그러한 활동에 참가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중국 정부는 해외화교들의 현지화, 거주국 국적 취득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 모구에게 국적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중화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광범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 사는 중국계이든 간에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의 중국 혼이나 민족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견지될 것을 바라는 것이 중국 측의 대외 교포들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해외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중국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국적의 변경에는 대단히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

49) 조정남, 앞의 논문, 1998, pp.55~56.

의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일체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이 우연이 아니다.

넷째, 해외교포들의 ‘조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을 기대하는 측면이다. 많은 교포들이 공식적으로는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중국의 속담대로 ‘조국’의 경제발전을 바라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서도 이들의 본국에 대한 기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대외개방 이후 화인들의 투자 및 기부는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서두르던 중국으로서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교포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대정책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한다.

다섯째, 중국은 국내에 있는 화교, 화교 연고자를 우대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는 귀국화교가 약 90만명, 화인, 화교들의 중국내 가족들이 대략 3천여만명 정도이다. 중국 정부는 이들 귀국 화교나 화교, 화인들의 가족에 대해 상당기간 차별과, 억압을 가져왔다. ‘문혁’ 시기 많은 귀교와 교권들이 박해를 받았었다. 그러나 이런 귀교나 교권들에 대한 차별은 ‘문혁’ 이후 상당 부분 시정되었다.

중국의 화교정책의 특성

중국정부의 교무정책은 본질적으로 중공정권을 핵심으로 결정된다. 11기 3차 대회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건설의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화교정책도 화교사회와 중국경제 및 과학기술을 포함한 전면적 협력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의 화교정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⁵⁰⁾

① 정책적 성향은 다원화 방향으로 발전

중국정부는 화교정책을 정치·경제·문화 및 외교적 영역과 결부시켜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화교들의 국적을 구분하고 자국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해외화교들에 대한 포섭 활동도 중요시하고 있다. 즉, 해외화교사회에서의 주도권 쟁취는 국민여론을 조성하여 ‘양안통일’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에 착안점을 두고 있다.

②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화교정책

중국정부는 화교관련 사무의 중점이 경제건설로 옮겨지면서 화교사회와 중국의 경제·과학기술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비록 법적으로 중국국적이 아닌 중국계 이주민을 중국국민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

50) 이형석, 『중국정부의 화교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pp.58~59.

51) 정신철·주경홍, “중국의 화교, 화인정책 및 특징,” 『在外韓人研究』, 제13권 2호, 2003, pp.112~114.

로는 화교와 화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화인들의 대 중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또한, 해외 화교들의 합법적 권익을



중국의 화교정책의 특징들로 화교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형성한 ‘화교 자본주의’는 화교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성공하여 중국 본토의 투자를 촉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자금과 기술을 장악하고 대만문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화교사회의 유력인사들을 포섭하기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중국 통일문제에서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③ 화교의 현지화 수준 제고와 중화의식 고양의 병행

중국 민족의 현지화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화교들의 중화의식의 고양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화교에 대한 태도는 해외에서 중국 민족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화교정책의 특징들로 화교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형성한 ‘화교 자본주의’는 화교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성공하여 중국 본토의 투자를 촉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조국을 떠난 교포들 사이에서 형성된 경제체제는 ‘중화경제권’의 형성에 이를 정도로 중화지향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중국정부의 화교정책이 유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화교 · 화인 정책의 성공여건

중국정부의 화교, 화인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약간의 곡절은 있었지만 현재에 와 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그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은 다음의 4가지로 볼 수 있다.⁵¹⁾

① 화교, 화인정책이 명확하다는 것임

중국은 “화교와 외국적 화인을 완전히 동등하게 보지 말고”, “화인과 일반외국인을 동등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국내에서는 화인을 화교와 동등하게 투자, 세수공제 또는 면제, 관광 등 방면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화교, 화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들이 규정되었다. 1990년 9월 7일 제 7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이 통과하였고, 1993년 7월 23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귀교교권권익실행방법’ 반포하였다. 또한, 2004년 6월 23일 수정한 ‘보호법’에 근거한 ‘실행방법’이 국무원총리령

으로 반포되었다.

이 외에 중앙정부의 해당부서와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화교, 화인에 관한 해당 법규와 규정이 백 개 이상 되며, 이러한 법률과 시행령은 사회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의해 귀국화교 및 화교가족과 국외교포들의 중국 내에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수많은 교포, 홍콩과 마카오 동포, 귀국화교 및 화교가족들을 단합하며 그들의 조국과 고향을 사랑하는 열정을 환기하는데 중요 역할을 하였다.

② 중국국가영도자들의 중요시하는 태도

현재 중국에서 귀국화교대표회의 때마다 국가영도자들이 출석하여 교무사업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정책을 위시하였다. 2003년 7월 20일 제 7차 전국 귀국화교, 화교가족 대표대회는 장소가 북경의 인민대회당이고, 국가의 주요책임자 온가보(溫家寶), 오방국(吳邦國)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전체위원들이 대회에 참석하여 축하하였고,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왕조국(王兆國)은 축사를 하였다. 2002년 3월 4일 당시 국가주석인 강택민은 광대한 화교, 화인들은 중국이 세계 각 국, 각 지역과 우호적 교류와 합작하는 중요한 교량이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하고도 유력한 요소라고 말하여 중국국가의 영도자들이 거듭 화교, 화인에 대해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③ 조직기구가 위로부터 기층에까지 있고 온건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중앙과 지방정부에는 교무판공실이 있고, 각 급 인민대표회의와 정치협상회의에도 상응한 기구가 있으며, 국무원 교무판공실 주임은 장관급이다. 또한, 중국해외교류협회와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등의 사회단체의 회장과 주석은 현임 또는 퇴임한 장관급 인사들이 담임하였다.

④ 화교, 화인들의 실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

중국정부는 화교, 화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교무영사를 파견하여 화교, 화인들의 정주국의 법률준수와 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국내에서는 귀국화교, 화인들의 직업, 생활에까지 심경을 써가며 보살피고 있다. 실례로 1950~60년대 일부 나라에서 화교, 화인을 배척하는 운동이 있을 때 중국정부는 그 나라들과 교섭할 뿐만 아니라 귀국하는 수난 화교, 화인들을 위하여 직업과 생활문제를 제때에 해결해 주었는데 그 예로 화교농장을 들 수 있다.

대만의 화교정책

공산당정권이 해외화교들에 대한 정책을 확립하고 그들의 재력을 끌어들이어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자, 이를 저지하고 화교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다. 즉 화교증조복무실(華僑證照服務室)을 설치하여 화교들의 귀국·관광·시찰·방문 등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화교투자장려조례’를 수정하여 화교자본의 본국 유치와 함께 화교기업인 초청, 화교종업원에 대한 직업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해외화교에 대한 교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해외화교학교에 대한 지원과 중국어 교육에 대한 지도, 교재 편찬·보급에 힘쓰며, 현지에서의 어문(語文)·요리·서예·회화·민속무용 등의 학습반 개설과 본국유학을 권장하여 고유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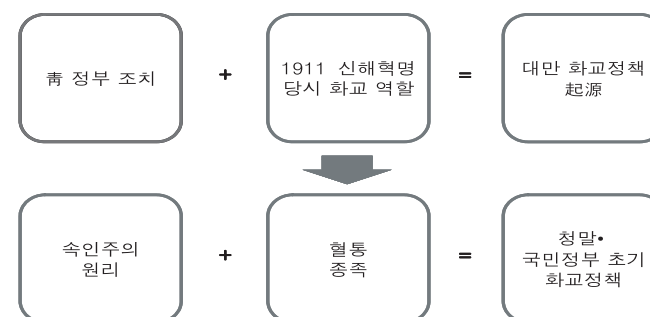
기원과 개괄

화교에 대한 대만의 정책의 기원⁵²⁾은 먼저, 청나라 말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의 생명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 정부가 취한 조치와 손문이 주도했던 1911년 신해혁명에서 화교들이 담당했던 역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로 청나라 말과 국민정부 초기에 내각수준인 교무위원회에 의한 화교정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에는 속인주의(jussanguinis) 원리와 혈통과 종족에 기초한 중국인들의 충성에 대한 관심이 들어 있다. 대만의 화교정책의 기원을 도식화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1949년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후퇴한 이후 국민당정부의 화교정책은 정체되지 않고 본토정부, 미국, 기타 주요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4월 천수이볜 총통의 당선으로 이등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동시에 국민당 정부의 통치를 종식시켰고, 국민당 정부의 화교정책에 대한 장악을 종식시켰다. 이제,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인 민진당이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했다. 다만, 교무위원회 위원장인 장 푸메이(zhang fumei)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그녀가 발표한 정책

〈그림 3〉 대만의 화교정책 기원



내용은 그녀의 화교정책이 국민당의 정책과 크게 다른 점은 없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의 화교정책과 비교해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정책에 의한 권한, 특권, 혜택의 대상이 기존의 화교에서 대만 출신화교에게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 이었다.

국민당, 민진당, 친민당, 신당 등 대만의 주요 정당들은 미국, 일본,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등에 있는 화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과 권력투쟁을 하고 있으나, 화교에 대해 본질적으로 같은 태도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화교정책에 유사성과 계속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만을 보면, 2008년 1월 12일 천수이볜 총통의 민진당이 참패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민당은 입법원 의석 113석 가운데 72%인 81석, 민진당은 23.9%인(40%에서 하락) 27석으로 2000년에 비해 대만 국민들이 등을 돌린 모습이다. 한편,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후보가 3월 22일 당선되었고,⁵³⁾ 이것은 다시 국민당이 대만의 정권을 잡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개과정

2차 대전 직후의 화교정책: 장개석 정권의 양면전략 구사

국민당이 1949년 대만으로 패퇴했지만, 대만은 장개석과 국민당정부를 환영하지 않았고, 이에 국민당은 수천명의 대량학살, 지식인 숙청 등 무력수단으로 저항을 진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백색테러(白色恐怖)통치’⁵⁴⁾라고 불리운다. 장개석 정권은 양면전략을 구사했는데, 자신의 독재 정당화 위함이었다. 먼저, 미국이 군사, 경제, 정치적 수단에 의해 중국 봉쇄정책을 유지하고 대만을 자유민주주의의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국민당정부가 워싱턴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는 전략과 손문의 화교정책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화교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구와 네트워크를 세계 각국에 만드는 전략을 펼쳤다.

가) 1950년대: 화교의 활용

52) 한중경제포럼, 앞의 책, p.60.
53) 마잉주 후보는 모두 765만8224표를 확보,58.4%의 득표율로 544만5239표(41.6%)를 얻은 세창팅 민진당 후보를 16.8%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두 후보의 득표 격차는 221만표로 2004년 3만표가량의 차로 천 총통이 당선된 것에 비교하면 국민당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2008년 3월 23일.
54) 국민당은 50년 하반기부터 대규모의 ‘붉은 분자 색출.숙청(掃紅肅譔)’이라는 백색테러를 감행하기 시작하여 약 10년간 자행되었는데, 체포된 인원은 8만에서 10만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는 5천에서 8천명에 이른다. 체포되어 취조,심판,집행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법행위는 정상적인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군법 폭력이었다. ; 국민당은 ‘백색조국’, 공산당은 ‘적색조국’을 뜻함

국민당정부의 중국에 대한 통치는 대만으로 축소되었고, 군사적·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야 했었고, 이에 국민당정부는 화교를 활용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국민당정부는 화교와 그들의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 동남아, 남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에서 자본주의를 이용하였으며, 화교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① 국민당의 전면적인 개혁: 1950년

전 세계적인 동원은 1950년 국민당의 전면적인 개혁과 화교사회에 있는 당 지부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화에서 시작되었다. 주요개혁 목적은 당의 혁명정신을 새롭게 하고, 반공산주의 및 민족주의 회복이었다. 국민당은 만중일심(萬衆一心)이라는 구호로 전 세계 100여개 국에 거주하고 있는 1,800만 화교들의 구세주를 자처하였다. 국민당이 추구하는 목표는 외교 부문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를 중국본토로 바꾸지 않도록 하고, 중국본토가 대만을 UN 안보리 5개상임 이사국에서 축출하지 못하게 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국내부문에서는 장개석 독재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충성과 반대자들과 야당들에 대한 거부를 요구, 군대에 대한 투자와 건설에 최우선 순위를 두며 당·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② 1952년 제 7차 당대회

국민당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 7차 당대회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을 규정하였는데, “당이 과거 혁명에 성공했던 것은 화교의 지원에 힘입었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주의와 러시아에 대항하는 투쟁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1200만 화교의 역할에 달려있다” 고 발표하였다.

또한, ‘화교관리지침’을 발간하였는데, “개선된 외교관계를 통해 화교들의 권리와 특권을 보호하고 중국 공산주의자와 소비에트에 대항하기 위해 화교 조직간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정책들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었으며, 화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였다.⁵⁵⁾

③ 1957년 제 8차 당대회

화교관련 사업들을 평가하면서 해외에서 당의 역할 강화를 결정하였다.

나) 1960년대: 1963년 1969년의 제9, 10차 당대회- 단일국적 재확인

중국본토의 화교정책의 기초인 속인주의 원리를 거부한 결정은 1950, 60년대 국민당정부를 도와준 것으로 국민당정부는 추종 미디어들로 하여금 중국이 화교들

55) 특히 당대회는 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도록 지시하여, 엄청난 돈이 이 목적을 위해 할당되었고, 그 결과 2000년 국민당의 전세계 추정자산은 180억 달러이며, 이는 정당으로서는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한중 경제포럼, 앞의 책, p.64.

을 버리고 배신하였다고 비난하도록 부추겼고, 냉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민당정부는 많은 이익을 확보하게 되었고, 추종하는 화교들의 전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과 최강대국 미국의 보호를 얻어냈다.

대만정부의 화교 지배력 쇠퇴: 1970년 초부터

가) 1970년대: 대만의 UN 축출과 反국민당 활동

문화대혁명과 중국의 단일국적 정책의 견지로 인해, 화교에 대해 우위에 선 대만은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 대만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먼저, 1971년 10월 25일 밤, 중국에 의해 대만은 UN에서 축출되었다.⁵⁶⁾ 더 이상은 미국의 보호를 못 받게 되었고, 화교사회에서 대만의 지위가 훼손되었다. 또한, 反국민당 활동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2·4세대 화교들과 접촉점이 없던 국민당정부는 화교지식인 2·3세대 중국인 등 그 동안 무시 받았던 유권자들이 조직한 反국민당활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국민당정부의 화교업무가 항상 전통적인 화교사회 하나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당정부와 국민당은 1979년 미·중관계의 정상화를 막는데도 실패하였다.

이러한 70년대의 외교적 어려움 속에서 장개석의 뒤를 이을 장경국이 1972년 5월 행정원장이 되었고, 그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변혁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고, 그 중에 화교에 대한 조치도 있었다.

장경국은 중앙민의기구 대표의 증원 선거를 통해 대만출신과 화교대표의 숫자를 늘리고 대만 출신 정치 엘리트들이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다.⁵⁷⁾ 그렇지만, 대만정부의 화교에 대한 지배력의 쇠퇴는 UN 퇴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⁵⁸⁾

나) 1980년대 초: 재미화교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

1984년 국민당은 손문의 삼민주의 아래 중국통일을 주창하며 중국의 통일전선과 대만 독립운동의 실패를 인정하였고, 국민당정부는 재미화교사회에서 본토중국과 사활을 건 승부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했다.

56) “유엔 총회는 25일 밤(한국 시간 26일 낮) 중공(中共) 가입과 자유중국(대만) 축출을 결의했다. 총회는 이날 결의안을 찬성 76, 반대 35,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가결로 대만의 의석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다.” 중국은 유엔 가입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공식 데뷔했다. 가입과 동시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까지 차지했다. 당시 미국의 조지 부시 유엔대사는 결의안 중에서 대만 축출 조항만은 빼자고 제안했으나 묵살됐다. 『동아일보』, 2006년 10월 25일.

57) 김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1, p.337.

58) 대만이 국제연합에서 축출된 1971년 당시의 수교국을 보면, 66개국에 이르던 것이 1972년 말에는 39개국으로 격감하였다. 김영신, 앞의 책, p.375.

- 선전부문에서 대만 정부는 강력히 통제 받았던 외화 거래를 느슨 하게 하여 미국에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중국과 대만의 화교정책 차이점은 ‘국적’에 대한 정책이다. 중국은 단일국적으로 1955년에 이어 70년대도 단일 국적을 확인하였고, 대만은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 몇 개의 중국어 신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승인함
- 미국에 있는 중국어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
- 화교조직들에게 대만정부에 대한 충성 약속을 분명히 하는 캠페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
- 국민당정부와 국민당에 의한 강압과 처벌이 점점 강해졌음.

불행히도 이러한 조치는 대만정부가 초창기에 취했던 조치들과 일치했는데, 국민당정부는 냉전 초기 30년 동안은 이런 형태의 강압적인 조치들을 용이하게 취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강압과 처벌의 조치는 1980년대의 정치분위기를 잘 인식하지 못한 국민당정부의 실수였다. 결국, 이것은 국민당정부의 조치들의 실패로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으며, 역효과를 내게 되었으며, 전 세계 화교사회에서 국민당정부를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 1990년대: 새로운 비전과 접근방법의 모색

이등휘(리덩후이, 李登輝)⁵⁹⁾는 이전의 것들 폐지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는 국민당을 구출하기 위해 두 개의 중국정책 입장에서 대만을 독립 국가로 다시 세우고, 화교들의 노력에 의지하지 않고 미국과 전 세계에 더 강력하고 전문적이며 비싼 로비를 전개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 천수이볜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민당의 화교정책은 거의 다 폐기되기에 이른다.

라) 2000년대: 화교관련기구의 열세에 놓인 환경

2001년 5월 말 대만에서는 대만 교무위원회(OCAC)가 후원하는 화교대회가 개최

59) 1988년 1월 13일 장징궈 총통의 사망으로 총통직을 이어받은 리덩후이는 타이완 출신 인물들을 대거 기용하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를 도입하는가 하면, 그 동안의 대륙 지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독립을 추구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국민당내의 일부 세력들이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1996년 총통 선거 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리덩후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해 리덩후이가 5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총통에 당선되었고, 이후 1999년에는 “타이완은 중국과 별개인 국가”라는 발언을 해 다시 한 번 중국과의 긴장을 일으켰다. 이듬해인 2000년 총통 선거에서는 겉으로는 국민당의 쟁쟁을 지원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독립주의자인 천수이볜 민주진보당 후보를 지원하였다. 이로 인해 리덩후이는 국민당에서 축출되었으며, 이후 대만단결연맹이라는 신당을 창당하여 천수이볜 정부에 협력하게 되었다.

되어, 전 세계로부터 모여든 300여명의 각지 화교대표자들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화교세력 포섭노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대만은 중국의 적극적인 對화교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바, 중국정부가 화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20만명 이상의 인원과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대만교무위원회의 인원은 360명에 불과하고, 연간예산도 5천6백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대만정부는 중국의 공산주의와 열악한 인권상황을 여론화하여 화교들의 도덕적 가치관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대만의 정치 제도가 중국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화교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대만출신 화교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세가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적·인적자원에 있어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인 대만의 이러한 전략은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국민당정부 시기 화교정책의 기원은 청 말 손문정부에 둔 것으로, 특히 속인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이 원리는 해외에 나간 중국인과 중국본토에 있는 사람들 간에 유대감을 제공해주고, 중국인 지배에 대한 법과 규정상의 근거를 형성해 주었으며, 중국정부로 하여금 화교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게 했던 것이다. 이 원리는 화교들로 하여금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모국에 충성하게 했고, 그러한 충성심은 거주국의 수용과 대우에 따라 모국과 거주국의 관계에 따라 약화되거나 강화되었던 것이다.

결론

중국의 화교에 대한 정책은 그 동안 굴곡을 겪어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중국의 초창기에 화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와 다르게, 문화대혁명의 시기에는 ‘화교배척시기’라고 불릴 정도로 화교정책이 비판받고 전면적으로 부정되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교들의 정당한 권익마저 보장되지 않았고 화교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했었다. 이러한 상황이 개혁·개방의 1970년대를 지나면서 중국정부가 화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점차 화교의 경제실력 등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되어 중국이 4가지 현대화 건설의 추진이나 조국통일의 실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화교정책을 펼쳐 중국이 떠오르는 국가(rising china)로 발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화교정책은 중국내부의 상황에 따라서 몇 차례의 변화를 가졌으나, 지속적으로 기본방침과 임무는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포들에게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중국국적을 취득한 중국 국민만을 화교라 하여 파격적인 우대를 하고, 현지국적보유자는 화인으로 공식구분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분을 두지 않고 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중국은 화교들에 힘입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민족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이 보여준 화교정책에 대한 변화는 화교·화인들을 끌어안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대만은 초반에는 문화대혁명 등으로 중국이 준 기회를 잡아 화교정책에 대해서 중국보다 우위의 전략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가면서 화교들을 적극 이용하여, 국민당의 거대한 자본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70-80년대 대만은 화교정책에 대해서 2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하나는 1970년대에 2·4세대 화교들과의 접촉점이 없었던 것으로 이것은 국민당의 화교업무가 전통적인 화교사회 하나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인데 결국 이로 인해 화교 지식인 2, 3세대 중국인 등 그 동안 무시 받았던 유권자들이 조직한 반 국민당 활동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재미화교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 중에 1950년대의 초창기 조치들과 일치하는 조치들인 강압과 처벌을 실시했고, 이것은 초창기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국민당의 실책이었고, 결국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효과를 일으켜 전 세계 화교사회에서 국민당 정부를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대만은 1970년대 UN의 축출과 반국민당 활동 등으로 인해 화교 지배세력이 후퇴하였고, 그 뒤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 되어 중국경제의 잠재력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화교들로 인해 중국이 유리한 입장이 되었고, 대만정부는 80년대 재미화교에 대한 장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비전과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물질·인적자원에 있어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인 대만의 이러한 전략은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과 대만의 화교정책에 대한 차이점은 ‘국적’에 대한 정책이다. 중국은 단일국적으로 1955년에 이어 70년에도 단일 국적을 확인하였고, 대만은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국적문제에 있어서 과연 단일국적이 더 좋은지 이중국적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은 없다. 다만, 현지화의 저해 가능성이 높은 이중국적이 효과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되며, 현재 현지화와 함께 이중적으로 중화 민족성의 보전을 함께 추구하며 단일국적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이 더 많은 화교들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화교정책이 화교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화교의 경제 규모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엄청나며, 화교네트워크 화상 대회는 9차 대회를 마치며 더욱 조직적으로 거듭나고 있다. 화교집단은 굉장한 실력집단으로 괄목할 만한 역량의 강화를 이룩하였고, 이에 중국과 대만은 이러한 화교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맞게 이용할 것인지를 놓고 첨예한 경쟁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대만에 비해 화교정책 차원에서 경제적 규모면이나 법률면에서 대만보다 우위에서 화교들을 잘 끌어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화교정책은 각 국가들의 동포정책에 있어서 훌륭한 역할모델(role model)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포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좋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참고문헌〉

- 거삼원, “중국의 華僑政策과 재외화교기업의 중국대륙 투자,” 『中蘇研究』, 제 69집, 1996
 김두진, “중국의 대 ASEAN 화교정책,” 『아세아연구』, 제 84호, 1990
 김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1
 박형기, 『친디아의 비밀병기 화교와 인교』, 교보문고, 2007
 손준식, “화교경제권과 중국의 화교정책,” 『民族發展研究』, 제 3집, 1999
 왕경우 저, 윤필준 역, 『화교: 중국 밖의 또 다른 중국인 화교』, (서울: 다락원), 2003
 위애, “중국의 華僑政策과 海外 華人的 경제협력,” 『中蘇研究』, 제 69집, 1996
 이덕훈, 화교경제의 생성과 발전, (서울: 한남대학교 출판부), 2001
 이형석, 『중국정부의 화교정책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이진영, “중국의 화교 정책 :배제에서 이용으로 그리고 네트워크의 구축,” 『현상과 인식』, 통권 95호, 2005
 정신철·주경홍, “중국의 화교, 화인정책 및 특징,” 『在外韓人研究』, 제13권 2호, 2003
 장공자, “중국의 화교정책과 화상망에 대한 연구,” 『통일전략』, 제7권 제3호, 2007. 12
 장공자·한창수 공저, 『현대중국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87
 정성호, 『화교』, (서울: 살림출판사), 2004
 조정남,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민족연구』, 제 1호, 1998, “중국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제 5호, 2000,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교양사회, 2002
 최승현, “현대 중국 교민정책에 대한 소고,” 『중국학논집』, 16호, 2003,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 (인천: 화약고 출판사), 2007
 한중경제포럼, 『현대 중국건설과 화교의 역할』, 재외동포재단, 2003
<http://www.wcecjapan.org/kasyo/chinese/06.html> (검색일: 2007. 5. 17)
 대만교무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ocac.gov.tw>
 한국中華總商會, <http://www.kccci.or.kr/> (검색일: 2008. 8. 5)
 Sterling Seagrave, Lords of the Rim: The Invisible Empire of the Overseas Chinese, (Putnam Pub Group, 1995), 원경주 역, 중국 그리고 화교: 보이지 않는 제국, 화교 네트워크의 역사, (서울: 프리미엄 북스), 2002
 『동아일보』, 2006년 10월 25일.
 『한국경제신문』, 2008년 3월 23일

논 단

한국사회의 귀환 입양인 운동과 그 시사점 - 이예원
충남여성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 김영주

해외 투고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카자흐스탄·한국 관계
- 사르셈바예브 엠. 아. / 사르셈바예브 카. 엠.





논 단

한국사회의 귀환 입양인 운동과 시사점

- 입양 체계라는 관점에서의 해외 입양 역사 서술
그리고 해외 입양인의 구술사를 통하여



이 예 원

〈오가니제이션 요리〉
이주여성기획 담당자
(honeywannie@hotmail.com)

한국전쟁 직후에 시작된 한국의 해외 입양은 50년의 긴 역사를 갖는다. 그리하여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시점인 1980년대에 이미 해외 입양인들의 한국 방문이 시작되었다. 이는 해외 입양인의 국외 송출에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와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한 입양기관들에게 해외 입양인들을 맞이하는 준비가 요구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주로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라는 이름 하에 모국방문 프로그램, 모국연수, 친부모 상봉, 위탁모 상봉 등 입양인 개인의 한평생에 걸쳐 입양된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수 필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또한 1995년에 「입양특례법」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사후관리의 법적 초석이 마련되었다. 한편,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귀환하는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1999년부터는 해외 입양인들이 재외동포로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입양인들에게 한국은 점차 접근성이 좋은 곳이 되어갔다. 또한 성인 해외 입양인들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이자 만남의 장인 <세계한인입양인대회>¹⁾ 3회(2004년)와 4회(2007년)의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1) 일명 <다함께(Gathering)>라고도 불리우는 세계한인입양인대회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의해 조직되고,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초국가적 모임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첫 모임은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고, 두 번째는 2002년 노르웨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서울에서 열렸다.

이를 분기점으로 귀환하는 해외 입양인들의 수는 늘어났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에는 해외 입양인 자신들이 조직하고 꾸려가는 NGO인 <골 (G.O.A' L:Global Overseas Adoptee' Link)>을 중심으로 해외 입양인들의 공동체가 존재한다. 또한 이 밖에도 <애스크(ASK: Adoptee Solidarity Korea)>와 같이 해외입양폐지를 목표로 운동을 하는 단체나 <트랙(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of Adoptee Community in Korea)>이라고 하여 입양 문제에 있어서 '진실과 화해'를 규명하고자 하는 단체 등 각기 다른 목적의식을 갖고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특화된 단체들의 존재는 귀환 입양인들이 이미 한국에서 정착을 하여 각기 다른 요구나 필요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집단적인 목소리로 결집해 내고 있는 시점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해외 입양인들의 귀환이 양적으로나 질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해외 입양 자체, 혹은 해외 입양인에 대한 몰이해와 소통 불능은 여전하다. 해외 입양인은 미디어에서 주로 '친가족'이나 '뿌리', '모국'과 같은 인식의 틀 속에서 조명되어왔다. 이는 해외 입양에 대한 파편적이고 일면적인 인식의 틀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귀환 해외 입양인들은 '비가시성(invisibility)'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익숙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현'하고 규정하는 '습관화된 대중적 재현'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김현미, 2008).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해외 입양의 역사를 개괄하고 한국에서 자신의 삶을 영유해가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두 명의 해외 입양인

을 선정하여 그들의 개인 구술사를 기술한다. 이는 해외 입양의 역사를 보다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는 작업, 그리고 해외 입양이라는 경험을 담지하고 있는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작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해외 입양에 대한 보다 온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함께 가야하는 두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에 해외 입양이나 입양인에 대한 기존의 인식의 틀을 도전하면서 '낯설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본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절반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해외 입양 체계의 배경 및 역사

한국은 가장 오래된 해외 입양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자, 현재까지도 중국, 러시아, 과테말라 다음으로 세계 최대 입양수용국인 미국으로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내는 국가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를 개괄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 입양을 지탱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구조를 분석한다. 따라서 해외 입양 체계(system)라는 단위에서 입양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해외 입양 체계는 입양수용국, 입양송출국, 입양기관이 삼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가는 로컬(local)에서의 입양 법제도 및 관행을 일컫는다. 해외 입양 체계라는 층위에서 입양에 접근하는 것은 해외 입양에 가담하고 있는 주체들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입양의 구조에 보다 천착하기 위함이다.

한국 해외 입양 체계의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 국가들에서 미국이나 그 밖의 중립국·비전투국에 아이들을 피신 보낸 역사적 실천이다(대한사회복지회,

2004). 이 당시 유례가 없는 규모의 아이들이 타국으로 송출되었다. 이 중 일부 입양은 종전 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조건 하에서 임시방편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들에서의 해외 입양은 전후 1953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²⁾.

한편, 세계대전이후 미군 점령 하의 일본에서도 미군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들에 대한 입양의 역사가 존재하였다. 이는 최초로 동양의 아이들을 서구로 입양 보내는 ‘타인종 해외 입양’ 이였다. 1952년과 1975년 사이에 2,000명 이상의 혼혈 아동들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나 그 밖의 해외 거주하는 서양인들에 의하여 입양되었다(Goodman, 2000; 148 ; 김엘리아나 2007b 재인용). 하지만 미국으로 자국의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세계대전 시)적과의 동침’ 으로 인식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해외 입양이 일본 국민 정서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 니었다(김엘리아나 2007b). 따라서 일본에서 ‘1990년대까지는 매년 3 백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되었지만 (Goodman, 2000: 40 ; 김엘리아나 2007b 재인용)’ 2004년 요미우리 신문에서 일본 입양 기관들에 의한 부적절한 해외 입양의 사례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일본의 해외 입양은 점차 줄어들어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³⁾.

따라서 현재까지 매년 이천 명에 가까운 수치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해외 입양은

세계사적으로도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유에서 한국은 입양의 관례나 법적인 토대에 있어서 후발국들의 모델이 되었다. 베트남이나 중남미 지역에서 의 입양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70년대 중반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수많은 아동들이 미군함정이나 항공기로 후송되어 미국인 가정에 위탁보호 되거나 해외 입양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1980년대 초반 중남미 지역에서는 반정부국과 내란 당시 발생한 고아들이 해외 입양되었던 것이다(대한사회복지회, 2004).

한국에서 해외 입양은 6.25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1954년에 시작되었다. 초기 해외 입양은 입양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서 영문번역사무실을 통한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윤혜미, 1995). 그러던 것이 1954년에 당시 사회부 산하에 해외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⁴⁾ 그 후로 해외 입양 알선기관이 많이 생겨났다. 하지만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곳으로 입양알선기관을 제한함으로써 개인 차원에서의 해외 입양을 규제하게끔 하는 개정절차는 1966년에서야 이루어졌다(윤혜미, 1995). 휴비네트(2005b)는 초기 해외 입양이 순수 혈통주의를 강조하는 한국에서 수용할 수 없는 ‘오염된 존재’ 들인 혼혈아를 일시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일국일민주의(一國一民主義; 한 나라에는

2) 이 당시 유럽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진행된 건수는 1940년과 1952년 사이에 4,177건이었다고 한다 (김엘리아나, 2007b).

3) 2007년 미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일본에서 입양되어 미국의 비자를 취득한 아동은 42명, 한국은 1,381명 이었다.

4) 최초 해외 입양기관은 1954년 1월에 설립된 한국아동양호회(Child Placment service: 현 대한사회복지회의 전신)이다. 당시 사회부 사회국장이 초대 회장을 겸임하였다고 한다. 또한 홀트씨 부부가 이 기관을 통해 한국 아동을 입양한 초기 양부모들 중 하나였다고 한다(박인선, 2005). 이 밖에도 카톨릭 구제회(1955), 안식교성육양자회(1955), 홀트양자회(1955), 국제사회봉사회(1957) 등의 외국 민간원조 단체가 설립되었다.

한 민족만이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표방하면서 한국 전쟁 중 미군 사이에서 생긴 혼혈 아동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1955년부터 1961년에 걸쳐 해외 입양된 4,190명의 아동 중에서는 혼혈 아동이 2,691명으로 약62%를 차지하였다(보건사회통계연보, 1962). 하지만 해외 입양은 한국 정부 단독 의지만으로는 성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입양 수용국의 수요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입양수용국, 입양송출국, 입양기관 이 삼자의 상호연계 속에서 해외 입

입양에 대한 종교적인 접근 방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입양을 할 가정을 선정하는 문제이다. 해리 홀트는 입양 가정의 종교적인 지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기독교 가정을 우선 지정(홀트아동복지회, 2005; 145)' 하였다. 그런데 이는 부모 선정 기준의 자의성이라는 문제는 물론이고 당시의 상황과 맞물렸을 때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김엘리아나(2004)는 당시 미국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두가지 흐름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당시 기독교 정신·박애정신에 고취되어있었던 많은 이들이 한국의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

한국에서 해외 입양은 6.25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서 1954년에 시작되었다. 초기 해외 입양은 입양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서 영문번역사무실을 통한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양 체계가 운영되는 그 정치경제학적 동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단 입양수용국의 상황을 분석해 보자면, 해리 홀트(Harry Holt)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해리 홀트는 전지구적으로도 입양 수용국으로써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해외 입양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일산복지센터 홀트 동산에 있는 해리 홀트의 묘비에는 이사야서 43장 6절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가 새겨있다. 이 구절은 해리 홀트가 직접 8명의 아동을 입양하여 키우기로 결심하고 한국으로 향하던 길에 받은 '계시'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해리 홀트는 이와 같이 신의 뜻을 받들어, 기독교적인 이념에 기반하여 '동방의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이렇듯 해리 홀트의 해외

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미국 내부에서 진행되던 국내 입양의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서 입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많은 부모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 홀트가 실시한 것과 같은 사적인 경로를 통한 입양의 경우, 공적인 입양기관이 가정방문이나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입양부모를 검증하는 기존의 미국 내부의 입양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실제로 홀트를 통하여 해외 입양을 한 부모들 중에는 미국 국내 입양을 진행하는 입양기관에 의해서 다양한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부모들이 존재하였다고 전해진다.⁵⁾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입양부모가 아동을 데리러 입양국가로 왕복여행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5) <Adoption History Project> 웹사이트의 Ellen Herman의 논문 "Bertha and Harry Holt"
http://darkwing.uoregon.edu/~adoption/people/holt.htm

기 위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아동을 입양국으로 호송하는 대리입양이 해외 입양의 편의를 돕기 위해 존재 하였는데, 이 법적인 토대가 되었던 것이 미 난민구호법⁶⁾이다. 기존에 이 법은 그 시한이 1956년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대리입양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대규모 아동의 입양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당시 현 홀트아동복지회의 전신인 『홀트씨해외양자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해리 홀트는 난민구호법의 기한이 끝나기 전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입양아동의 수송하기 위해 비행기를 전세하기에 이른다(홀트아동복지회, 2005;38). 그리하여 당시로서는 가장 큰 항공사였던 팬아메리카항공의 중형 항공기인 DC7으로 97명의 아이를 입양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3·4개월에 한번 꼴(홀트아동복지회, 2005)’로 전세기를 통해 아이들을 이송되었다⁷⁾. 이 전세기는 ‘내부의 의자를 일부 떼어내어 입양아동 이송 전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가장 많을 때는 129명, 보통은 90명의 아이를 태우고 다녔다(홀트아동복지회, 2005). 대리입양 자체가 미국 내부에서 아동의 권익에 배치한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대규모의 아동 송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아동의 이송을 서두르는 한편 해리 홀트

는 뉴버거 상원의원과 함께 미 의회에 로비를 한다. 그리하여 1957년 9월 「고아법」이 제정 및 발효되었고 이로써 대리입양의 허용기간이 연장되어 1958년 6월까지 대리입양을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대리입양은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1961년 대리입양 금지 법안⁸⁾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대리 입양이라는 형태의 해외 입양이 어려워지자 해리 홀트는 돌파구를 찾던 끝에 개정된 미 이민귀화법에 의거하여 대리입양을 지속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홀트아동복지회, 2005). 해리 홀트는 이와 같이 대규모의 해외 입양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입양 수용국인 미국 쪽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대리 입양은 오늘날 까지도 한국을 물론이고 이후 해외 입양을 시작한 여러 후발 국가들의 해외 입양 체계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입양 송출국인 한국 측에서는 1961년에야 정식으로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을 해외 입양하게끔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⁹⁾ 이렇게 해외 입양을 법제화하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고아 한사람씩 맡아 기르기〉운동과 시설 보호아동을 국내 가정에서 위탁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6) 1950년대 해외 입양은 대부분의 입양아동을 수용하였던 미국의 법에 영향을 받았다. 미국의 ‘난민구호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초기 한국 아동의 입양에 적용되었다. 이 법은 입양부모가 직접 아이를 보지 않고도 권한을 위임하여 입양을 할 수 있는 대리입양을 인정하였다(홀트아동복지회, 2005). 대리 입양은 아동의 ‘권익’보다는 대규모 아동을 입양하는 절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편의’가 우선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난민구호법은 그 시효가 1956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되어 있었으나 한국에 입양 대기를 하고 있는 아동이 많아 연장되었다.

7) 이렇게 1956년부터 시행한 전세기 입양은 1961년 11월 16일에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다(홀트아동복지회, 2005).

8) 이 법안은 1)아동을 해외에서 입양할 경우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입양수속 이전 혹은 수속 중에 아동을 직접 보거나 관찰해야 하며, 2) ‘아동이 입양되어 미합중국에 오게 될 경우,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그 아동이 거주하게 될 주의 입양 전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홀트아동복지회, 2005:127).

9) 윤혜미(1995)는 이 법제정이 “아동의 복지보다는 전쟁고아나 혼혈아의 송출철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상은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이 특례법이 친족관습법과 민법 제87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실제로 이 법률의 제1조 목적을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를 증진을 도모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윤혜미, 1995).

고안된 〈장기위탁사업〉이 그것이다(홀트 아동복지회, 2005). 이는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두 사업 모두 ‘양부모의 인식부족’과 ‘예산부족’, ‘위탁가정에 대한 감독의 어려움’으로 실패로 끝났다(위와 동).

반면, 해외 입양은 성황을 이루었다. 그 이면에는 초창기 해외 입양 아동 출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보사부 장관이 여의도 공원에서 환송을 해줄 정도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은 깊었다’는 진술(동방사회복지회, 2003; 37)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해외 입양 체계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후원·지지가 있었다.

전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해외 입양 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해외 입양이 이와 같이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는 초기 해외 입양이 시작되었던 때와는 별도의 설명이 요구된다. 휴비네트(2005b)는 전후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이로써 버려지는 아이들을 양산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해외 입양은 국민국가 성공신화의 이면에 자리잡게 되었다. 윤혜미(1995)는 ‘1970년대에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아동복지사업의 중요한 재원이었던 국외의 지원이 줄어들었으며’ 이로써 소요예산을 국내에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1972년 발표한 아동복지시설 정비요강에 따르면 ‘영육아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오히려 ‘시설 수와 수용이 가능한 아동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위와 동). 윤혜미(1995)는 해마다 버려지는 아동 즉, 기아(棄兒)와 같은 요보호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

하여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아동복지시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해외 입양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서구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성의 관념에 균열이 있었던 반면, 미혼모의 아이들과 같이 정상가족의 틀에서 벗어난다고 간주되는 이들에 대하여 사회적 불관용은 고수(휴비네트, 2005b)되었던 의식적 측면도 해외 입양을 지속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듯 해외 입양은 사회복지의 공백과 더불어 사회적 변화에 일반의식의 변화가 부응하지 못하는 문화적 지체에 기대고 있었다. 이밖에도 해외 입양을 196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된 인구과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구조절정책의 일환으로(김영화, 2002), 혹은 서구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기도 한다(휴비네트, 2005b). 이와 같이 해외 입양이 유지되고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겠지만, 그럼에도 그 핵심에는 ‘무책임한 부모와 무책임한 국가 양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휴비네트(2005b)의 비판은 유효하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 입양에 대한 국외의 거센 비난이 제기되면서 입양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 초에 북한 정부는 해외 입양을 두고 남한의 ‘새로운 수출품’, ‘아동 매매’라고 비난하였고 그 여파로 해외 입양이 잠시 주춤했던 적이 있었다. 즉, 1970년과 1974년에는 북유럽으로의 해외 입양이 일시 중단되었고, 또한 정부는 1976년에 국내 입양을 활성화 하고자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1976-1981)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서 입양기관 및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국내의)입양대상 가정을 발굴, 상담, 권고, 계몽 등의 의무를 수행(윤혜미, 1995)’ 하도록 조치가 이루어 졌다. 또한 이렇게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기존의 해외 입양만을 다루던 「고아입양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한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을 연계하는 것이었는데, ‘국내 입양을 증가하기 위하여 해외 입양 알선 기관별로 일정건수의 국내 입양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해외 입양을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위와 동)’ 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점차 국내 입양을 늘리고, 1990년대 초까지 해외 입양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윤혜미(1995)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입양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1981년 전두환 정부 때에 와서는 박정희 정부와는 다른 관점에서 해외 입양에 접근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 이라는 맥락에서 해외 입양을 위치시켜 해외 입양을 완전 개방하는 노선을 취하였던 것이다(보건사회부, 1986). 1981년 제5차 보건사회부 보고서에서는 해외 입양이 ‘친한(親韓) 인사를 만들기 위한 방책’으로 언급되었다고 한다(박인선, 2005). 자연히 ‘국내 입양 부양책으로 실시되었던 쿼터제 및 국외입양종결방침’은 무효화 되었다(윤혜미, 1995).

김영화(2002)는 이 시기 전두환 정부가 해외 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입양 아동이 외국으로 호송될 때 일반인들과 같은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에게 해외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시 보건

사회부 가정 복지국의 문서에는 ‘동일 비행기 편당 입양 아동 6명 이내 및 호송 인원 1명당 3명 이내로 제한’ 하고 ‘해외 입양 통계의 국내외 보안 유지철저히 할 것(보건사회복지부, 1985)’을 지시하고 있다. 김영화(2002)는 이와 같은 지침을 두고 ‘해외 입양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눈가림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영화(2002)는 정부가 이렇게 국내 여론을 의식하는 한편, 해외 입양부모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고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출국 아동의 건강 상태의 면밀한 파악을 요청하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어서 실제 아동의 건강 보다는 입양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염두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양부모가 좋은 첫인상을 갖도록 의복 및 소지품에 세심한 배려’까지 규정함으로써 한국 아동에 대한 수요가 끊기지 않도록 이미지 관리에까지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해외 입양을 성황으로 이끌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79년에 4,144명, 1980년에 4,144명으로 4천 대로 떨어졌던 해외 입양의 수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해외 입양 사상 최고치인 8,837명을 기록하였다(보건복지부, 2003).

윤혜미(1995)는 해외 입양되는 아동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입양대상아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양알선기관끼리 경쟁하는 사태’가 빚어졌음을 지적한다. 또한 김영화(2002)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는데, 당시 보건사회복지부에서는 ‘국내 입양을 하는 입양 위탁 기관에 대해 재정 보조’는 있었지만 ‘입양 알선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는 전무했음을 강조한다. 따

라서 그 구조 상 ‘입양 알선 기관들은 그 운영을 전적으로 후견인들의 기부금과 자체 수익에 의존’ 하여야 했고 이는 자연히 해외 입양을 통해 받는 ‘입양 보상비, 항공료, 회사금 등’ 이 이들의 주 수입원이자, 운영 자금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화, 2002). 김영화(2002)는 또한 의료 기관 및 아동 보호 시설과 입양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언급한다. 그녀는 보건사회복지부의 국정 감사 제출 자료를 인용하면서 입양기관이 ‘산부인과 및 병원, 조산소, 고아원, 미혼모 시설 등에 막대한 돈을 지원금, 홍보비, 섭외비, 및 판공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다. 해외 입양 아동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을 잠재적인 해외 입양 대상으로 지목하고 이 입양을 성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관행이 공공연히 이어져왔던 것이다. 한편, 박인선(2005)은 그 당시가 ‘장기 미아의 부모들이 방송사와 협력하여 미아 찾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고, 소수의 미아 중에는 ‘기아(棄兒)로 분류되어 해외로 입양된 사례들’이 드러났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박인선, 2005).¹⁰⁾ 박인선(2005)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해외 입양 체계의 관행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는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범위탁사업과 지역사회 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으로 대응했다. 또한 1986년에는 ‘기아(棄兒)의 해외 입양을 전면 금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박인선, 2005).

1970년대 북한에서 한국의 해외 입양을 비판한 이래, 국내에서 해외 입양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존재했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해외 입양의 억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상황이 반전되어 해외 입양에 다시금 제동이 걸린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 중이었다. 이 때 한국의 해외 입양이 국제사회의 잇따른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한 국가가 ‘고아수출 세계 1위’라는 사실이 해외 여론에서 잇따라 보도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한국 정부는 ‘1996년까지 혼혈아와 장애아를 제외한 모든 해외 입양을 중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도 대안은 국내 입양 활성화¹¹⁾였다. 윤혜미(1995)는 ‘이 방침이 발표된 다음해인 1990년 해외 입양이 89년의 4,191명에 비해 2,962명으로 급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윤혜미(1995)는 이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국가 체면’만을 고려한 전시 행정이라는 논쟁이 뒤따랐다고 소개한다. 또한 ‘가정보호가 시설 보호를 우선한다는 아동복지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채 해외 입양되던 아동들을 대신 현존하던 시설로 보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로 기관 수익을 해외 입양에서 조달해 오던 국내 입양기관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대한사회복지회가 발간한 <대한사회복지회 50년사>에 따르면 본 기관은 당시

10) 치안본부에서 <미아신고센터>의 직통 전화 182를 설치한 것이 1984년이었고, 1986년에는 한국어린이복지재단(현 한국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어린이 찾기 종합센터를 열었다.<182신고 센터>의 설립 이후 입양기관에서는 친권자가 확실치 않은 아동은 모두 이 센터에 신고 후 육 개월이 지난 후 입양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동방사회복지회, 2003). 또한 KBS 방송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시작된 것도 1986년이었다.

11) 박인선(2005)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7개의 영아원을 국내 입양지정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국내 입양 신청자의 연령상한선을 45세로부터 50세로 상향조정하고, 입양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양아의 학비보조와 입양가정에 대한 아파트 분양 우선권 제공”들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기관 수입의 30-50%를 국외 입양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입양기관은 '수익사업을 한층 더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복지사업 자체를 아예 중단하거나 하는 방안 중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입장' 이었다고 주장한다(대한사회복지회, 2004). 또한 이 사태로 인하여 '재정압박을 견딜 수 없었던 운영진은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위와 동). 이는 현실적으로 해외 입양의 수익을 제외하면, 입양 기관이 운영될 수 없게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는 국내의 입양기관 및 관계자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의도적으로 1996년에 해외 입양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해외 입양은 자연 감소되어 2015년이 되면 장애아를 제외한 해외 입양은 저절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 된다'는 발표와 함께 1996년까지 해외 입양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다시금 철회하였다(박인선, 2005). 이와 같이 정부는 '해외입양폐지' 선언의 번복을 계속하는 등 해외 입양 정책은 국내의 여론에 따라 요동쳐 왔다.

1995년에는 국내 입양 활성화 조치와 함께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¹²⁾ 「입양특례법」을 다시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해외 입양인들의 모국방문사업 추진과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 때 신설되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제정 이후 국가 입양 정책의 큰 방향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2006

년 7월에는 국내입양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입양가정에 국내입양장려금(소득 공제 200만원), 입양 아동이 18세에 이르기까지 매달 양육비 십만원을 지원하고, 입양휴가제(2주)가 2007년 1월부터 공무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독신의 입양을 허용하고 입양연령을 60세로 연장하였으며, 입양이 가능한 인원제한도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 장치를 완화하였다. 나아가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을 묶어서 '국내입양우선 추진제'라 하여 입양대상 아동으로 등록된 후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시도한 후 실패할 경우에 한하여 해외 입양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해외 입양은 전쟁고아 및 핍박받는 혼혈 아동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고, 시간이 흘러 애초의 목적이 사라졌을 때도 다양한 이유로 양산된 요보호아동들에게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고귀한 행위' 혹은 '필요악'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할 때는 해외 입양을 대체하기에는 국내 입양이 미진하다는 분석이 빠지지 않았다. 특히 입양에 대한 국내의 의식 수준의 미달이 국내 입양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 성숙 문제로 입양 문제가 치환되었다. 이 와중에서 간과되었던 것은 입양송출국, 입양수용국, 입양기관이라는 삼자가 연루되어 있는 입양 체계라는 축이다. 본고에서는 세계사적인 위치에서 한국의 해외 입양을 위치지우고 한국의 해외 입양 역사를 개괄하는 데 있어서 해외 입양 체계의 축을 염

12)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시설 보호보다 낫다는 전제 하에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아(棄兒)'의 경우 해외 입양을 허용하는 규정이 주목된다. 또한 입양기관의 입양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시책을 강구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게 된다.

두에 뚝으로써 해외 입양의 형성과 지속이라는 현상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귀환 해외 입양인 구술사

한국에서 거주하는 입양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왜 한국에 살고자 하느냐’ 이다. 조기교육이다, 유학이다, 하

‘성공’ 이나 ‘부적응’ 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서 평가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또한 입양인의 전 생애를 아우르려고 하기 보다는 대신 이들이 한국에 오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입양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방식을 보다 세밀하게 읽어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접을 진행한 많은 입양인들 중 의도적으로 입양 경험이 극단적이

1995년에는 국내 입양 활성화 조치와 함께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입양특례법」을 다시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다못해 어학연수다 하여 글로벌 욕망에 의한 이동이 두드러지는 한국적 맥락에서는 물론이고, 더 나은 기회를 좇아 국경을 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전지구적인 추세 속에서, 소위 ‘선진국’ 에 삶의 기반이 있는 이들이 굳이 한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다. 본고에 소개하는 두 입양인의 구술사는 이러한 의문점에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해외 입양 체계의 공식 역사를 파악하는 것 만큼이나 그 거대 역사에서 파생된 개인의 구술사가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타자와 대면할 때 드러나는 편견과 몰이해의 지점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두 입양인의 구술사를 소개한다. 구술사 면접은 입양인들이 한국에 오기로 마음을 먹은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한국 체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짚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구술 면접들이나 연구들이 자칫 입양인의 유년시절의 입양 경험을 토대로 입양인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방향으로 구성되기 쉽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입양인의 삶을

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두 사례를 선택했다. 기존의 대중매체에서 주로 입양인들의 생애에 있어서 비극적인 요소만을 부각하여 재현되어왔다면, 연구자는 편견 없이 입양인들의 귀환의 이유나 과정을 보다 세밀히 보여주기에는 극단적인지 않은 사례들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이들의 경험이 귀환 입양인의 경험에 대표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본고에서 소개하는 제니퍼는 입양인 단체 <트랙(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of Adoptee Community in Korea)>을 만든 이들 중 하나이고, 노수애는 입양인 단체 <애스크(ASK: Adoptee Solidarity Korea)>의 설립 멤버이다¹³⁾. 따라서 국내에서 입양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입양인이라는 점에서 이 두 입양인은 귀환 입양인들 내부에서도 이미 분명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누구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연구자의 의도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니퍼와 노수애의 사례를 선정한 것 부터도 ‘국내에서 거주 경험의 해외 입양인들로 하여금 입양 문제에 있어서 정치화되게 하는 방식’ 대

한 연구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구술사에 관한 이론적인 서적을 편찬한 한국구술사연구회(2005)에서는 ‘대표성이나 신뢰성을 요구하는 역사연구나 사회과학연구에서 구술사료의 사료적 가치’가 의문시되고 있지만, 구술사료의 한계는 ‘문자로 쓰여진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기록이 구술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의 허구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는 구술사료를 통하여 귀환 해외 입양인에 대한 그 어떤 포괄적인 지식을 제공하거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지 않음을 미리 밝혀 둔다. 연구자는 애초에 중립적일 수 없으며, 구술사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개입을 하는 하나의 주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① 제니퍼의 사례
‘친가족’에서 ‘귀환 입양인 공동체 운동’으로

1972년 생 정 제니퍼는 생후 6개월 때 4살난 언니와 함께 미국의 미네소타로 입양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한국에서 온 친모로부터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제니퍼는 그 해 1988년부터 친부모와 지속적으로 서신을 교환했다.

그녀는 그 때 교환했던 편지들과 이후에 친가족과 재상봉한 후 차차 듣게 된 이야기에 근거하여 자신이 입양되었던 사연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자신을

입양을 보냈던 당시 친가족은 용산에서 살았다. 그녀의 언니는 태어났을 때부터 피부색이 유난히 밝았었다고 한다. 용산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녀의 언니가 미군과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일 것이라고 수군거리는 이웃들이 있었다. 제니퍼도 역시 피부색이 하얀 편인데, 제니퍼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친부는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니퍼와 그녀의 언니를 함께 해외 입양 보내지 않으면 제니퍼를 죽일 것이라고 친모를 협박했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친부에 의해 제니퍼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친모는 제니퍼와 그녀의 언니를 입양 보내기로 하였다. 이처럼 제니퍼의 입양 사연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해야했던 제니퍼의 가족사에는 미국 주둔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제니퍼는 1995년에 드디어 자신의 입양을 주선한 복지기관인 Children’s Home Society의 모국방문단을 통하여 처음 한국을 방문하였다. 그녀는 이 방문 기간 중 일주일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친모가 심장 수술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세 번째로 한국에 왔을 때 그녀의 친모는 실제로 죽음에 임박해 있었다. 암이었다. 그녀는 친모의 병수발을 하면서 한국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그 세 번째 방문 때 까지도 그녀에게 한국은 친가족이 사는 곳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그 때까지도 그녀는 한국어를 거의 할 수 없었고 한국에서 다른 해

13) 인터뷰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한다. 단, 입양인들은 자신의 한국 이름과 입양 국가의 이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작명하였다. 이는 매우 의식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수애과 같은 경우, 수애라는 이름은 자신의 입양부모가 준 영어이름의 앞 글자와 자신의 한국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 어느 한 쪽의 이름에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두 이름 다 그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명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영어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 할 때 su-ae이라고 하여 가운데 ‘.’를 붙였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이름의 합성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외 입양인을 단 한명도 만나본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연고의식이 부재했던 그녀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그녀가 2004년에 한국에 왔을 때였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을 쓰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정보도 모르고 책을 완성하기 위한 영감을 얻고 싶다는 요지의 제안서를 써서 한 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것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지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긴 가야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솔직히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꾸 한국으로 이끌려 돌아 오고는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공간 자체에 애착이나 귀속감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4년에 왔을 때 제니퍼는 인제 대학교에서 입양인들 위하여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여기서 해외 입양인을 만나 연애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 년 반 남짓 한국에서 머물면서 조금씩 한국을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이 방문에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 했다.

일부러 입양인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한국 학생들과 어울려 다녔다.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재미가 붙었다. 그리고 거리에서 파는 토스트를 먹는 것 같은 일. 나는 그 토스트를 정말 미치도록 좋아했다. 햄과 계란과 샐러드를 조금 넣은 그것 말이다. 그것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들 중 하나였다. 그런 것은 처음 먹어보았다. 전통적인 한국식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토스토와 ‘생과일쥬스(한국말로 함)’도 함께 먹을 수 있다! (중략)

그리고 목욕탕에 갔다. 목욕탕에는 예전에 언니들과 같이 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때는 목욕탕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때를 밀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사귀던 사람이 목욕탕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그냥 거기 가서 탕에 앉아 있으

면서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다. 나는 한국인들의 몸을 그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는 한국인인 연인이 있다는 것의 또 한 측면이다. 그리고 찜질방에도 자주 갔다. 가서는 그저 다른 한국 가족들을 지켜보곤 했는데 굉장히 압도하는 경험이었다. 지금도 찜질방에 가서 그저 다른 한국 가족들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

제니퍼가 사귀 사람은 덴마크에서 온 입양인이었다. 그들은 사귄 당시 둘 다 나이 서른을 넘긴 시점이었고 따라서 쌍방이 과거에 수차례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둘 다 그 전까지는 백인만 사귀어 왔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피차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 관계를 두고 ‘상대도 상대지만 우리 자신을 포용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렇게 2004년에 한국에서 체류하였던 경험이 제니퍼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긴 듯했다. 그녀는 미국으로 갔다가 삼 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9년 현재까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처음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소위 말하는 ‘고시텔’의 방 한 칸을 잡아서 살았다. 그녀는 당시 미국에서 출간된 자서전의 반응이 좋아서 벌여놓은 돈도 있었고, 또 다른 지원금을 신청하여 후원을 받고 있었기에 정기적인 자금원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한국에서 최대한 생활비를 아끼면서 ‘그냥 될 대로 살아보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종 영어를 가르치면서 쌈짓돈을 마련했다. 그녀에게 고시텔과 같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답했다.

사실 나의 친모가 살았던 집이랑 비교하면 고시텔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편이었다. 고시텔

에는 모든 게 새것이었고, 샤워막도 있었고. 우리 친모는 굉장히 가난했었다.

1995년에 갔을 때 새로 이사를 했을 때 이었는데, 반지하 같은 곳에서 살았다. 우리 언니가 나중에 이야기 해줬는데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다.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서) 변기통이 있으면 그냥 그 주위를 둘러서 벽 같은 것을 설치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없고 샤워를 할 곳이 없어서 큰 대야에 물을 데워서 부엌에서 목욕을 했고, 빨래한 옷을 널기 위해서 줄 같은 것을 방을 가로질러 매달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시텔에 살면서 '와우!' 하고 생각했다(웃음). 에어컨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세탁기도 있고 끝내준다고 생각했다(웃음). 지금도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10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엄마가 살았던 곳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제니퍼는 그녀의 친가족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삶의 수준을 상상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당초 기대치가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는 미국에 있었을 때 '남편과 큰집, 그리고 자동차 두 대' 즉, 그녀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던 중 2004년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한국에서 사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한국에 얼마간 거주할지 정해 놓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체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임시적인 상태'였다. 그렇게 일 년, 이 년이 지나갔을 때 그녀에게 한 입양인 친구가 충고를하기를,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관광객으로서가 아닌 거주민으로 정착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하였다. 그 친구는 그런 자세로 한국 생활에 임

할 때 한국에서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충고가 아니었으면 자신이 '아직도 고시텔에 있을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그녀에게 한국에서 입양인 운동을 하고자 하면 NGO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한 것도 그 친구였다. 이들은 다른 친구 한 명을 더 영입하여 입양인 운동을 하는 단체인 <트랙(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of Adoptee Community in Korea)>을 만들기에 이른다.

제니퍼는 자신이 해외 입양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시점을 자신의 친모가 돌아가신 2000년으로 되짚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친모가 돌아가신 후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녀는 친모가 살아생전에는 그녀를 입양 보낸 죄책감에 시달리는 친모 앞에서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옳은 결정을 내리셨어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녀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공존하고 있는 자신의 입양 경험을 속 터놓고 이야기 할 수가 없었다. 친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true story)'를 쓰기 시작했다'고 표현하였다. 이 자서전은 그녀에게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게끔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자신의 책을 매개로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녀는 주로 입양인들이나 입양부모 단체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야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자서전을 쓰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은 일련의 과정은 다른 입양인들을 만나고, 입양인들을 복수의 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이자, 자신을 보다 큰 해외 입양이라는 사회 정치적 구조 속에서 위치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입양에 대해 언급하거나 자신의 입양

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자라난 그녀로써는 ‘오랜 고립에서 탈태(transforming)’ 하는 경험이었다고 회상하였다.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하여 그녀가 정착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입양인 공동체와 연대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 이후 그녀는 골의 소식지를 통해서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그녀에 따르면 골의 소식지는 한국어로도 번역되기 때문에 그녀와 같이 한국어로 글을 쓰지 못하는 입양인들이 한국인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통로였다. 그녀가 자녀를 해외 입양 보낸 친모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단체인 『민들레』의 한 어머님과 처음 만난 것도 이렇게 번역된 그녀의 글들을 통해서였다.

XX어머님은 나의 자서전 한국어판을 읽으셨다고 했다. 그리고 골의 소식지에 내가 쓰는 글들을 챙겨 읽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입양에 있어) 나와 생각을 완전히 같이 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나의 친모가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친모와 일종의 자매애를 느끼시는 듯 했다. 나보고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고 해서 ‘이모’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제니퍼는 2007년 세계한인입양인대회¹⁴⁾에서 『민들레』의 친모들과 함께 하는 시위를 기획하였다. 이 시위는 입양문제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들은 ‘해외입양반대(Korean babies not for export)’와 ‘나의 아기, 나의 손으로(real choices for woman and children)’와 같은 구호를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로 외쳤다. 경찰이 곧

해산을 시켰기 때문에 고작 45분 정도 시위가 진행되었을 뿐이지만, ‘80명의 입양인들이 참여하여 같이 운동을 하였고, 8개의 신문사에서 시위를 보도하였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되었다’면서 제니퍼는 이 시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니퍼는 입양에 비판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입양인들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서,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힘이 공중에 떠있다’라는 그녀의 평소 생각을 굳히게 되었고, 이는 종국에는 <트랙>의 출범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② 노수애의 사례

‘자기 찾기’에서 ‘귀환 입양인 공동체 운동’으로

1976년생으로 추정되는¹⁵⁾ 노수애는 제니퍼와 마찬가지로 미국 미네소타 주¹⁶⁾로 입양되었다. 수애의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입양이 되었지만 그녀와 혈족관계는 아닌 두 살 많은 언니, 그리고 미국 내에서 국내 입양이 된 남동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의 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백인인 가족, 백인인 동네 그리고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모두 백인인 환경에서 자라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묻자 ‘해외 입양인들에게 있어서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타인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숨기거나 덮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답을 대신하였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이라는

14) 일명 Gathering으로 불리는 세계한인입양인대회는 해외 입양인들에 의해 조직되고 오로지 성인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초국가적 모임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고, 제 2회는 200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3회와 4회는 각각 2004년과 2007년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

곳이 ‘실제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된 것은 11살 때 그녀의 가족들과 다함께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였다. 그 때부터 그녀는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가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편 그녀는 영국 런던에서 연극을 전공

나는 대개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던 셈이다. 나는 그 때가부기도 하고 검도도 했다. 이것은 아시아 문화인 것은 분명하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은 일본의 것인데, 난 일본인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한국보다 일본 문화에 대

입양인들에게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생생한 감정 그리고 의문점들은 입양인들의 예술활동, 연구 활동 혹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입양 운동 등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한 후 다시 미네소타로 가서 극단에서 활동을 하였다. 그녀가 첫 공연을 했을 때 같이 무대에 섰던 동료들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

이는 그녀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경험이 었다. 그녀는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 백인이 대다수인 환경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자연히 그 전까지 그녀는 백인이 되고 싶었고, 실제로 자신의 내면은 백인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 극단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녀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배출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고, 아시아인으로서 자신을 포용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실존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아시아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 갈수록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감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파고들고 싶어졌다. 그 때는 그야말로 어떤 아시아계 이름을 들었다고 치자, 그럼 그것이 한국 이름인지, 중국이나 일본 이름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수애에게 한국행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탐색하는 ‘자기 찾기’의 여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2002년 여름 한국에 왔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두어 명의 한국계 입양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한국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이라는 곳을 상상을 해 보려고 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한 것도 손에 잡히는 대로 읽기 시작하였다. 그녀가 정작 한국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타인의 도움이나 안내 없이 한국을 스스로 느끼고 알아

15) 친가족을 만나지 못한 입양인의 경우 그들의 출생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추정인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한국에서 입양기록을 연람한 후 자신의 출생 년도가 바뀌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는 입양인들도 종종 있다. 수애의 입양기록에는 ‘추정되는(estimated)’ 생일, 그리고 한국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미혼모인 친모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친부라고 적혀있다고 한다. 이 입양 기록 상으로는 그녀가 백퍼센트 한국인인지조차도 확증되지 않는다.

16) 미네소타 주는 미국에서 인구 당 한인 해외 입양인이 가장 많은 주이다. ‘왜 하필 미네소타주에 한국인 출신 입양인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Meier(1998)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미네소타에서 설립된 Children’s Home Society of Minnesota(CHSM)이다. 이 입양기관은 1950년대 미국 내부에서 타인종 입양에 선두에 있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타인종 입양이 소수인종운동의 저항에 직면하고, 국내 입양이 점차 까다로워졌다. 따라서 CHSM은 해외 입양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네소타에 해외 입양인이 많다는 점은 국내 타인종 입양이 해외 입양의 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는 과정이 자신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고 회상하였다. 한국에 오는 것이 막막하고 두렵지는 않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는 오히려 '하아' 하고 큰 숨을 내쉬어 보이며 '바로 그런 기분' 이었다고 대답했다.

한평생 “너는 한국인”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알 수 없는 큰 덩어리로 자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것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것이 있었다.

수애는 그 이후 2009년 현재까지 한국에서 줄곧 살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이토록 장기간 거주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 그녀 역시 앞선 제니퍼의 경우처럼 체류 기간에 있어서 '두고보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6년이 흘렀다. 그녀가 한국에 장기간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그녀가 깊이 관여하게 된 입양 단체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수애는 '자기 찾기' 의 여정에서 같은 상흔을 안고 있는 입양인들을 만났고 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소위 말하는 '좋은 입양 경험' 을 한 사례라고 하였다. 즉, '사랑을 주는 입양 부모' 가 주어졌던 '운 좋은' 경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자신에게도 입양은 분명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측면' 이 있다고 하였다. 그녀가 한국에서 많은 입양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도 다른 입양인들 역시 자신과 비슷한 상실감이나 해외 입양이라는 제도 자체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어느날 문득 그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자신이 입양과 관련된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상기했다.

2002년 미국 시애틀에서 나는 낭송 대회(spoken word summit)에 참가한 바 있다. 이 경험은 정말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많은 유색인종의 사람들이 자신의 시나 글 등을 발표하였다. 나는 그곳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나는 막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활발할(politically active)'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하게 “자자 시작하자, 시작하자”하며 잔뜩 부풀어 있었다가 점점 일과 일상생활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그것을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득 ‘잠깐만 나는 여기 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수애는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입양인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해외 입양관련 신문 기사나 연구 결과물, 서적을 읽고 토론을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은 처음에 네 명의 입양인으로 시작을 하였고 이후 더 많은 입양인들이 합류 하면서 규모가 확대 되었다. 입양인들이 해외 입양 운동을 하는 단체인 <애스크(ASK: Adoptee Solidarity Korea)>는 수애가 같은 입장의 동료들과 공동체로서 입양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실험하는 장이었다.

결국 <애스크>는 국내외의 더 많은 입양인들에게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한국에서 개최된 2004년 세계한인입양인대회에서 이 모임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소규모 공부 모임이었던 것이 점차 조직화되어 오늘날의 <애스크>가 되었다.

수애에게 있어서는 한국에서 자신이 벌이고 있는 운동이 이곳에서 자신의 실존을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입양인들이 친가족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을 것이라고 으레 가정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반발심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해외 입양’의 문제를 ‘친가족’이나 ‘뿌리 찾기’와 같이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 하는 것을 문제시 하면서, 한국에 온 입양인들도 각자의 문제로 골몰하기 보다는 입양의 문제를 입양 공동체의 공동의 상흔이자 한국 사회의 치부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녀에게 ‘친가족 찾기’는 한국에 온 주요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제로 한국에 온 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가족을 찾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1987년에 입양 부모와 함께 처음 한국을 찾았을 때 우리는 (역시 한국 입양인인) 나의 언니의 고향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녀가 버려졌던 거리에도 가 보았다. 입양모가 나에게 “너의 고향에도 가보려냐”고 물었지만 나는 싫다고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 (중략) 한편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놓아버리자고(let it go)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친부모 찾기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찾기를 시작해서, 그저 찾다가, 차츰 몰입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러는 것이 싫다. 내가 애초에 찾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했던 것도 아닌데 결국 실망하게 되는 것 말이다.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친부모 찾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수애는 자신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족을 찾는 것은 입양인 운동을 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고 보았다. 수애는 그렇기 때문에 <애스크>의 운동 역시 입양인 개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입양인 공동체라는 집합적인 주체를 상정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 이 공동체의 자리를 찾아주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즉, 개인의 문제해결에 앞서 입양인 공동체의 ‘자기-치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니퍼와 수애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 즉, 그 출발점은 상반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제니퍼는 친가족과의 연에서 출발하여 한국에 정을 붙이게 된 경우이고, 수애는 가족의 문제에 앞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의 이해에 도달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온 경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발점이 어찌되었든 이 두 사람은 한국에서 귀환 입양인 운동을 하면서 입양인으로서 자신의 삶이 갖는 의미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경로를 밟고 있었다.

이들의 경우를 보았을 때 ‘왜 한국에 왔는가?’ 만큼 중요한 문제는 ‘왜 한국에 남아있는가?’임을 알 수 있다. 제니퍼와 수애의 경우에는 귀환 입양인 공동체와 그 속에서의 운동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부여해 주고 있었다.

결론

스무명 이상의 해외 입양인들의 구술사를 채록한 연구자는 해외 입양인들의 서사가 합류하는 지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속한 공동체에서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매순간 자신의 ‘차이’를 인식하며 살아왔었는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편안한 감정, 한국에 와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인 다른 해외 입양인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연대감과 한

편으로는 자기와 같은 해외 입양인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경제적으로 살만해 진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씁쓸함. 이와 같이 입양인들에게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생생한 감정 그리고 의문점들은 입양인들의 예술활동, 연구 활동 혹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입양 운동 등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그리고 한국 역사 속의 해외 입양의 역사에 대해 스스로를 교육하게 되면서 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혹은 해외 입양인이라는 집단성에 대해서 깨우치는 과정이 있었다. 더 나아가 입양 문제에 정치화되는 과정 역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몇몇 입양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지점들이었다. 본고에서 해외 입양의 역사를 입양 체계라는 관점에서 개괄하면서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한 단면을 소개한 것도 입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스스로를 교육하게 되는 입양의 역사를 인식함으로써 귀환 입양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보자는 측면이 있다. 또한 귀환 입양인들의 육성을 통해서는 입양인들이 체감하는 ‘모국’, ‘뿌리’, ‘고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한다.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타자와의 공생은 점차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는 것에 비해 이와 같이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설익은 측면이 강하다. 본고는 해외 입양인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다루고 있지만 한 때 국외로 송출되었다가 귀환한 입양인들의 집단적인 역사

성 그리고 개인의 현재의 삶까지 짚어보는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타자와의 소통이라는 과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신문자료〉
 프레시안, 〈해외입양 16만명 중 10만명이 미국으로, 왜?〉 2007.5.10, 전홍기혜 기자
 - 〈‘낳은 정’ ‘기른 정’ 사이서 고민하는 아이들 -김영길의 ‘남미리포트’ 〈306〉 군정의 상처아물 날 언제인가〉, 2008.3.16. 김영길 기획위원
 The Progressive, 〈Babies for Sale: South Koreans Makes Them, Americans Buy them〉, 1988년, Matthew Rothschild 기자
 〈입양인 자서전〉
 제인 정 트렌카. 2005.『피의 언어』 와이젤리
 조미희. 2000. 『나는 55퍼센트 한국인』, 김영사
 〈국내문헌〉
 강은화 2006. 「미혼모와 아동의 분리를 통해서 본 입양제도」,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미래』 이상화[외저], 여성가족부[편]
 김대원. 2006. “입양사후서비스(Post Adoption Services)”, 『국외입양인 사 후 관 리 활 성 화 를 위 한 Workshop』, 주최 재외동포재단
 - 2007. “입양사후서비스 워크숍: 몇 가지 제언” 『제2회 국외입양인 사후 관리 활성화를 위한 입양기관 및 단체 워크숍』, 주관 입양정보센터
 김돈영. 2005. “우리나라 입양 현황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주최 국회의원 최재천.
 김명숙. 1998. “정부의 국외입양정책”, 『입양인 인권과 인권정책』, 국회인권포럼.
 김현미. 2005. 『글로벌시대의 문화변역』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사회발전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대한사회복지회. 2004. 『대한사회복지회 50년사- 나눔, 그 아름다운 삶』
 동방사회복지회. 2003. 『동방사회복지회 30년사』
 박소현. 2006 “국외입양인 대상 사후서비스 현황 고찰 및 발전을 위한 제언”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Workshop』, 주최 재외동포재단
 박인선. 1994.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 1997. “해외입양인의 자아정체감과 입양실천현장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5호:147-168
 -. 2005. “해외입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제언 -국내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정신문화연구』 봄호 제28권 제 1호:23-46.
 보건사회부. 1962. 보건사회통계연보
 보건사회부 가정 복지국, 1985. 7면
 보건사회부. 1986. 입양 기관장 회의 자료 6면
 보건사회부, 1989. 31면
 윤해미 1995.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개선방안” 『동국논집』 14, 인문사회과학편 ('95.12) :259-284
 이미선. 2001. 『해외입양인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 2004. “해외입양인의 사후관리 서비스에 관한 조사”, 『사랑과 나눔의 반세기-대한사회복지회 창립50주년 기념연구논문집』 :49-74
 이삼식. 2000.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건복지포럼』 44:41-51
 장복희. 2006.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저스티스』 통권 제 93호 :221-235
 재외동포재단. 2006. 『국의 입양인 백서』
 조미희, 2005. “Request for Search and Adoptees Rights”,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청회』, 주최 국회의원 최재천 김춘진.
 최재천. 1998. “해외입양인 사후관리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제언”, 『입양인 인권과 인권정책』, 국회인권포럼.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그 방법과 사례”
 홀트아동복지회. 2005.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황승연. 1998. “해외입양인 현황과 지원 정책”, 『입양인 인권과 인권정책』, 국회인권포럼.

〈국외 문헌〉

Anagnost, Ann. 2000. “ Scenes of Misrecognition: Maternal Citizenship in the Age of Transnational Adoption.”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2:389-421.
 Bowie, Fiona. 2004. Cross-Cultural Approaches to Adoption: Routledge
 Brah, Avtar. 1996. Cartographies of Diaspora-Contesting Identities. London: Routledge.
 Cherot, Natalie. 2007. “Transnational Adoptees: Global Biopolitical Orphans or an Activist Community? The Biopolitics of Adoption.” e-journal Cultural Machine,
<http://culturalmachine.tees.ac.uk/Cmach/Backissues/j008/Articles/chrot.htm>
 Cohen, Robin. 1997.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UCL Press.
 Dorow, Sara K. 1998. “The Local-Global Construction of Race and Culture In Families with Children Adopted from China.”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Minnesota.
 Eng, David L. 2003. “Transnational Adoption and Queer Diasporas.” Social Text 21(fall) :1-37.
 Fraser, Nancy. 2000. “ Rethinking Recognition.” New Left Review 3: 107-120.
 -. 2003.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Goodman, Roger. 2000. Children of the Japanese State: The Changing Role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in Contemporary Jap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binette, Tobias, 2005a, “Disembedded and free-floating bodies out-of-place and out-of-control: Examining the borderline existence of adopted Koreans,” in 14th Nordic Adoption Council Meeting and 1st Global Adoption Research Conference: Department of Nordic Studies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Copenhagen.

- 2005b, “The orphaned nation: Korea imagined as an overseas adopted child in Clon’s Abandoned Child and Pard Kwang-su’s Berlin Report,” Inter-Asia Cultural Studies 6,
- 2005c, “한국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비취지는 해외 입양과 입양인.” in Forging a New Community- G. O. A. L’ s 6th Annual Conference, 건국 대학교.
- 2006,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Representation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Adopted Koreans in Korean Popular Culture: Jimoondang.
- Howell, Signe, 2003, “Kinning: The Creation of Life Trajectories in Transnational Adoptive Families,”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9:465-484.
- Kim, Eleana, 2003, “Wedding Citizenship and Culture: Korean Adoptees and the Global Family of Korea,” Social Text 21(1):57-81.
- 2004, “A Permanent Solution to a Temporary Problem? -50years of Korean adoption,” G.O.A.’ L Seminar
- 2007a, “Our Adoptee, Our Alien: Transnational Adoptees as Specters of Foreignness and Family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80(2):497-531.
- 2007b, “Remembering Loss: The Cultural Politics of overseas Adoption from Korea,” Department of Anthropology, New York University.
- Kim, Park Nelson, 2007, “Adoptees as “White” Koreans: Identity, Racial Visibility and the Politics of Passing among Korean American Adoptees,”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Studies Research Symposium, Seoul, Korea.
- Kim, Stoker, 2005, “Beyond Identity Activism in Korean Adoptee Art 정체성을 넘어: 한국 입양인 예술의 실천주의,” 덕성여대논문집 34집: 223-248.
- Klein, Christina, 2003, “Family Ties as Political Obligation,” in Cold War Orient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ifsen, Esben, 2004, “Person, Relation, and Value,” in Cross-Cultural Approaches to Adoption, 1:182-196
- Leong, Karen, 2005, “Pearl Syndenstricker Buck.” in The China Mystiqu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eberthal, Madlyn Freundlich Joy Kim, 2000, “1999년 국제 한국 입양인 대회 -국제 입양에 대한 입양인 인식,” Washington DC: Evan B. Donald Adoption Institute(한국 번역판 홀트 아동복지회).
- Meier, Dani Isaac, 1998, “Loss and Reclaimed Lives: Cultural Identity and Place in Korean-American Intercountry Adoptees,” University of Minnesota.
- Spencer, M, 1998, “Phone interview with founder of post-adoption services at Children’s Home Society of Minnesota on 1/9/98,”
- Safran, William, 1991, “Diaspora in Modern Societies: Myth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83-99.
- Smith, M. P. and Guarnizo, L. E, 2003, “The Locations of Transnationalism,” p. 3-34, Smith, M. P. and Guarnizo, L. E, (eds) in Transnationalism from Below,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 Spivak, Gayatri Chakravorty, 1994[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Discourse- A Reader, edited by Patrick Williams and Laura Christman: Columbia University Press.
- 1996[1993-4]. “Subaltern Talk: Interview with the Editors,” in *The Spivak Reader*, edited by Donna Landry and Gerald Madlen : Routledge.
- Tololian, Khachig, 1991, “The Nation State and Its Others : In Lieu of a Preface,” *Dias-poras* 1(1):3-7.
- Werbner, Pnina, 2004, “Theorizing Complex Diasporas: Purity and Hybridity in the South Asian Public Sphere in Britai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0(5):895-911.
- Yngvesson, Barbara, 2002, “Placing the “gift child” in transnational adoption” Law and Society Review
- 2007, *Refiguring Kinship in the Space of Adoption*,” *Anthropological Quarterly* 80(2):561-579.



여성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및 지원 정책 방안¹⁾

-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 영 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팀장)
(mangdol2@hanmail.net)

들어가는 말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각종 지원 정책의 수립과 제도적인 정비 등이 대대적으로 수행되어 온 가운데, 한국인과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주요 정책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기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각종 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이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나 지원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전국의 거주 외국인은 총 891,341명이고 이 중에서 외국인노동자는 437,727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중 여성은 136,171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31.1%를 나타내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그러나 이 수치가 등록외국인만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각 지역의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규모는 50만명이 넘고, 여성외국인노동자의 규모도 최소 1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특히 민족과 성별로 분절화된 고용구조에서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3D 업종 분야에서도 더욱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 저임금 분야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이나 영세 서비스업체 등과 같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과 성폭력, 임신과 출산 등 기본적인 모성보호의 부재 등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장기 체류자의 증가로 임신 및 출산의 문제와 더불어 자녀 양육의 부담과 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외국인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

1) 이 글은 『충남 여성외국인노동자의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2008) 연구 중에서 발췌·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현실이다.

사실상 90년대부터 외국인 여성들은 국내의 가사노동, 음식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점차 종사자의 규모와 취업 분야에서 수적인 증가와 다양화가 이루어져왔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노동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유입을 허용해왔는데, 향후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사, 육아, 간병 등 돌봄 노동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주인구 중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남성 이주노동자의 동반 이주가 아닌 생계를 책임지는 단신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이른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로 지칭되는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주의 여성화는 국제적인 성별 분업 체제의 강화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성 이주자들은 남성 이주자보다 더 열악한 저임금 분야와 성산업 및 가사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 주로 취업하고 있으며, 결국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가장 주변화된 집단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현재 전국의 거주 외국인은 총 891,341명이고 이 중에서 외국인노동자는 437,727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중 여성은 136,171명으로 외국인노동자의 31.1%를 나타내고 있다.

는 여성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두고 이들의 사회문화적인 적응과 기본적인 인간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 시책들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젠더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여성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지원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국내의 여성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한 연구로는 크게 여성 이주노동의 국제적 배경과 성별화된 노동 현상을 주목하면서, 국내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이주의 특성과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있다(Castles & Miller, 1998; Sassen, 2005; IMO, 2005).

국내에서의 관련 연구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함께 국제적인 성별 분업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의 유입 배경과 성별, 민족별로 분절화된 노동시장 속에서 국내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위치를 탐색하고 있다(김미경, 2004; 이선주 외, 2005; 김현미, 2006a).

또한 본국 가족의 주요 생계담당자로서 가사 서비스업을 비롯한 돌봄 노동과 저임금 비숙련 단순노동에 내몰리게 되는 저개발국 여성 이주노동의 국제적인 배경을 고찰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여성들의 현상과 그 의미들을 고찰하고 있는 연구들도 이루어졌다(이수자, 2004; 이선주 외, 2005; 김현미, 2006b).

한편, 여성외국인노동자의 실태나 복지 욕구 등에 관한 연구들이 2000년 이후 조금

씩 이루어져왔는데, 가사노동과 서비스 부문에 취업한 조선족 여성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이진영, 2003; 이해경, 2004), 필리핀 여성들의 노동실태와 삶에 대한 연구(박수진 · 이지나, 2001; 노은미, 2006)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작업장 내에서의 다양한 성차별 문제 및 복지 욕구에 대한 연구(이금연, 2001; 김민정, 2004)와 여성외국인노동자 노동실태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김현숙, 2005)를 통하여 여성외국인노동자의 직장 내에서의 고충과 노동조건, 사회적 연결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현장에서의 실태 외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나 가족생활에 관한 연구로 관심의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 부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설동훈, 2003; 김정원 외, 2005; 키노시타 미에, 2006; 국가인권위원회, 2007; 한건수, 2008).

그러나 전반적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연구 성과의 축적에 비하여 여성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연구물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특히 지역적 현실에 기반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 지역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현실을 파악하면서, 노동과 생활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향후 여성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한다.

연구방법

여성외국인노동자의 범주와 연구의 초점

“여성외국인노동자”는 넓게 본다면 “여성”이자 “외국인”으로서 다양한 산업체에 고용되어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광의로 접근한다면,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 체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체류의 안정성이나 사회적 · 정책적인 포용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외국인노동자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결혼이민자로서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 혹은 사회 · 경제적 참여와 지위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맥락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전문기술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되는데, 전문기술인력은 체류자격상 연구, 기술, 예술·홍행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이며(E1~E6), 단순기능인력은 산업연수제나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의 유입 경로를 통하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어업 등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로(C3, D3, E8, E9, H2),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이다.

‘예술·홍행’ 부문을 제외한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임금수준이나 노동환경의 측면에서 단순기능인력 분야보다 수준이 양호하고 사회적 차별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성외국인노동자의 범주를 노동이주의 형태로 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외국인으로 보고자

〈표 1〉 여성외국인노동자의 범주와 연구의 초점

노동이주	결혼이주
전문기술(연구, 교육, 기술)	전문기술(연구, 교육, 기술)
전문기술(예술홍행)	
단순기능	단순기능(유흥업 등 서비스업 포함)
	미취업

하며, 연구의 초점은 단순기능인력 분야와 전문기술인력 분야 중 예술홍행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³⁾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활용하였다. 우선, 설문조사의 질문지는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입국 경로와 현재 체류형태, 임금, 근무시간, 부당한 행위 경험 유무 등 직장생활에 관한 질문과 소비 및 여가생활, 친교활동, 의료서비스 접근도, 가족생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등 생활환경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한국어 외에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등 4개 언어로 번역하여 응답자의 국적에 따라 제공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천안, 아산 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를 이용하고 있는 여성외국인노동자와 천안 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이용한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이다. 조사방식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조사원 3명을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최종 수거하여 분석에 활용한 설문지는 총 71부이고 분석은

SPSS 14.0 통계 프로그램이다.

심층면접은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기관 종사자 4명과 생산직 및 서비스직 여성 외국인노동자 11명을 대상으로 과거의 취업경력과 현재 취업활동,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 결혼 및 가족생활, 정부에 대한 제언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의 국적은 필리핀 여성 6명, 몽골여성 5명이며, 면접방식은 몽골여성들은 1시간 30분~2시간 동안 1:1 면접으로 진행하였으며, 필리핀 여성들은 2시간 동안 집단인터뷰(FGI)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충남의 여성외국인노동자 현황

충남지역의 외국인노동자는 20,135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76%, 여성이 24%를 차지하고 있다(<표 3-1> 참조). <표 3-1>의 여성외국인노동자의 수는 4,840명이지만, 이 통계가 등록외국인노동자만 포함된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충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6,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⁴⁾

다음으로 국적별 현황은 조선족의 비율이 전체 여성외국인노동자의 3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필리핀, 베트남, 태국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2) '예술홍행' (E6) 부문은 전문기술인력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대부분 호텔,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가수, 무희 등 엔터테인먼트로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입국 과정과 노동현장에서 성매매 강요, 임금체불, 갑급 및 폭행 등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기술 부문과는 구분해야 한다.

3) 노동이주와 결혼이주의 경계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이주 형태로 임금노동 취업활동을 하면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체류자격이 변화하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의 형태로 입국하였으나 특히 가출 등으로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 여성들도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성결혼이민자로서의 법적,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여성외국인노동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법무부 등 중앙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전체 외국인의 20~30%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비율을 적용해보면 충남지역의 여성외국인노동자 수는 6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표 3-1〉 충남의 거주 외국인 현황

구분		계	남	여
총계		36,591	21,114	15,477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노동자	20,135	15,295	4,840
	국제결혼이주자	4,284	197	4,087
	유학생	4,563	2,369	2,194
	기타 외국인	2,502	1,416	1,086
한국국적 취득자	혼인귀화자	1,590	52	1,538
	기타 국적취득자	96	54	32
국제결혼가족 자녀		3,421	1,731	1,690

* 자료 : 행정안전부, 2008. 『거주외국인 기초실태조사결과』.

〈표 3-2〉 충남 외국인노동자의 성별·국적별 현황

지역	국적	계	남성	여성
전체		20,135	15,295	4,840
동북아시아	중국	2,466	1,883	583
	조선족	4,771	2,974	1,797
	대만	129	84	45
	일본	72	33	39
	몽골	572	482	90
	소계	8,010	5,456	2,554
동남아시아	베트남	3,868	3,117	751
	필리핀	2,289	1,430	859
	태국	1,809	1,556	253
	인도네시아	1,699	1,472	227
	기타	628	589	39
	소계	10,293	8,164	2,129
남부아시아	네팔 등	656	626	30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662	622	40
기타		514	427	87

* 행정안전부, 2008. 『08년 거주외국인실태조사』.

으로 나타난다.

하여 집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

여성외국인노동자의 성별 취업 현황은

기에는 무리가 따른다.⁵⁾

현재 노동부 등 유관부서에서 제공하는 통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충남에서 외국인노

계자료들이 지역별, 성별로 명확하게 분리

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표 3-3〉 충남 북부지역의 외국인노동자 취업 현황

	2006		2007		2008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2,808	894	10,473	1,400	5,938	801
농·축·산·업	91	14	447	27	321	33
제·조·업	2,545	328	9,585	872	5,311	657
서·비·스·업	172	552	68	248	54	108
건·설·업	0	0	373	5	252	3

* 자료: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내부자료(08년은 8월까지)

〈표 3-4〉충남 북부지역의 외국인노동자 국적별 취업 현황

2007																	
구분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우즈벡		기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농축	105	162	0	28	7	138	4	0	0	11	4	55	10	0	0	53	2
제조	9585	1614	190	0	99	1079	107	1295	150	375	41	1899	145	0	0	3321	142
서비	316	1	8	67	240	0	0	0	0	0	0	0	0	0	0	0	0
건설	373	111	1	58	4	74	0	52	0	0	0	61	0	17	0	0	0
2008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농축	354	42	0	18	6	118	16	0	0	33	7	42	2	12	0	56	2
제조	5968	223	59	919	143	554	88	482	98	203	18	462	85	0	0	2468	166
서비	162	1	7	53	101	0	0	0	0	0	0	0	0	0	0	0	0
건설	255	15	0	55	3	94	0	5	0	0	0	83	0	0	0	0	0

* 자료: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내부자료(08년은 8월까지)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천안종합고용지원 센터의 외국인 취업 현황자료를 토대로 충 남의 여성외국인노동자 취업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하였는데⁵⁾, 천안과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충남 북부지역의 외 국인노동자의 취업은 남성의 경우 제조업 이 80%이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농 축산업, 건설업에 조금씩 고용되고 있으며, 여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3> 참조).

국적별 취업 현황으로는,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과 중국은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과 건설업 취업자가 많고, 베트남, 몽골, 태 국 등 다른 국가들은 제조업 취업자가 다수 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서비스업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거의 대부분 취업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양상은 전국적인

경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충남 여성외국인노동자의 노동실태

취업분야

조사대상자들의 현재 취업 분야는 ‘공장/ 건설현장 근로자’가 6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비스직’과 ‘기타’가 10.8%로 나 타난다. 기타는 외국인노동자로 일을 하다 가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4-1〉현재 취업분야

구분	빈도	비율
공장/건설현장 근로자	40	61.5
사무직	2	3.1
판매원	1	1.5
농/어업	3	4.6
서비스직	7	10.8
가정부	1	1.5
기타	7	10.8
일을 잠시 쉬고 있음	4	6.2
합계	65	100.0

5) 대전과 충남지역에는 대전, 천안, 보령, 공주에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외국인노동자 고용관 리 및 취업연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인근 금산 등 충남의 일부 지역도 관할하고 있어, 대전과 충남 지역의 통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6) <거주외국인 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충남 지역 내 천안시의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충남지역 전체 가운 데 35.1%이고, 여성의 경우 4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노동시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10시간’ 이 27.1%, ‘10~12시간’ 이 25.4%, ‘12~14시간’ 이 23.7%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도 30.5%나 차지하고 있다.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실태는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영세, 중소기업체의 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하며, 특히 여관과 같은 서비스직은 노동시간이 더욱 길어 하루 평균 15시간에 이르고 있다.

몇년전에공장에서일할때는일요일빼고6일 동안 12~13시간 하루 중일 일하고 60만원 받았고,전업열심히 해서수당받아야70~90만원 이다.남자들은 80~90만원,여자들은 한 70만원 정도 받는다.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일하면60만원정도된다.여관이나모텔에서일하면 공장보다는 조금 더 받는다.90~120만원 정도 된다.하지만공장보다일이 더 고되다.하루 15시간정도 일하고 한달에2번정도밖에못쉰다.

〈사례1,몽골〉

〈표 4-2〉 하루 평균 노동시간

구분	인원	비율
8시간 미만	10	16.9
8?10시간	16	27.1
10?12시간 미만	15	25.4
12?14시간 미만	14	23.7
15시간 이상	4	6.8
합계	59	100.0

〈표 4-3〉 한 달 평균 임금액수

구분	빈도	비율	평균
50만원 미만	3	5.9	945814.12 (표준편차 259517.01)
50?100만원 미만	27	52.9	
100?150만원 미만	19	37.3	
150만원 이상	2	3.9	
계	51	100.0	

한편, 여성외국인노동자들 중 일부는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시 취업을 하는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례 6>의 필리핀 여성도 한국에서 출산을 하였으나 체류문제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필리핀의 어머니에게 보냈으며, 양육비를 위해 출산 후 1달 뒤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이 임신·출산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이들의 모성보호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했을때 6개월까지 공장에다갔다.6개월때부터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공장을 그만뒀고...임신했을때회사에서그래도 가장쉬운일을나한테주고하라고 했다.출산한다음 1달쉬고 다시 일했다.아기 때문에무작정 실수는 없고...한국에서는아이 낳고 6개월은 쉰다고 하는데나는 그럴수 없다.

〈사례6,필리핀〉

평균임금

조사대상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액은 ‘50·100만원’ 이 절반을 넘는 5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0·150만원 미만’으로 37.3%를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임금은 약95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자들의 인터뷰 결과 공장근로자의 경우 잔업시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75·95만원을 받고, 여관,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 100·12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 심층면접을 한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 종사자에 따르면, 본국에 부양할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인 경우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다보니 노동강도가 더 세고 힘든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직장생활에서 힘든 점
조사대상자들이 직장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꼽은 것은 ‘임금이 너무 낮다’가 33.9%,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가 25.9%를 차지하였다. 2순위로는 ‘임금이 너무 낮다’가 18.2%, ‘일 때문에 몸이 아프다’가 15.9%로 나타났고, 3순위로는 ‘직장상사가 강압적으로 대우’가 18.9%,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안됨’이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노동시간이나 조건에 비추어볼 때 한국인과의 월급 수준의 차이, 한국에서 생활비 지출과 물가에 대한 체감 등으로 임금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감이 줄어들어 월급이 줄어들거나 해고되는 상황과 실직 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취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구직 시,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공식적인 구직통로를 이용하기보다는 주변의 아는 사람들을 통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배경으로는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영세 서비스업의 경우 공식적인 연계망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상당수가 미등록자를 고용), 공장고용주인 경우 여성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구직 경로를 통하여 일자리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일자리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직업소개소는 별로 안 좋고 이상한 곳을 소개시켜주기도 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소개를 통해 알아보는데, 일자리 구하기까지 그냥쉬어야하니깐

〈사례5,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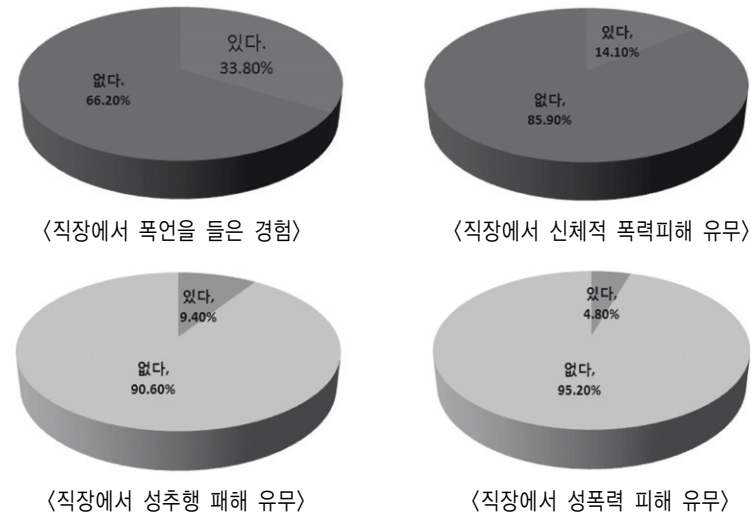
이러한 특성들은 향후 외국인노동자들의 취업연계와 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남성과는 조금 상이한 여성들의 구직활동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야함을 보여준다.

직장 및 일상에서 폭력 피해경험 여부
직장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 결과,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3.8%, 신체적 폭력피해를 입은 경험 비율은 14.1%, 성추행 피해 경험은 9.4%, 성폭력 피해 경험은 4.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직장에서 폭언을 들은 경험은 약 3명 중의 1명꼴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직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25.9	11.4	8.1
임금이 너무 낮다	33.3	18.2	8.1
일이 위험하다	7.4	13.6	5.4
일 때문에 몸이 아프다	7.4	15.9	10.8
임금을 제 때에 주지 않는다	1.9	11.4	13.5
직장에서 의사소통 안됨	5.6	11.4	16.2
다른 일을 강요한다	0.0	0.0	2.7
직장에서 외국인차별이 심하다	3.7	11.4	0.0
직장상사가 강압적으로 대우	0.0	2.3	18.9
한국인 동료와 갈등이 심하다	0.0	0.0	5.4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	0.0	2.3	5.4
요구나 의견을 무시한다	1.9	2.3	0.0
임신, 출산시 배려가 없다	0.0	0.0	0.0
기타	13.0	0.0	5.4
계	100.0	100.0	100.0

〈그림 2〉 직장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유무



장에서 언어적·신체적·성적인 폭력을 당해도 쉽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

직장 변경 사유가 명백한 폭력, 즉 신체적으로 폭력피해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에만 가능하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언어폭력, 성폭력의 경우 피해를 호소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떤 때는 우리한테 욕할 때 있다. 특히 불량 나오면 한국인 사장 중에는 욕 하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해고시켜 버리기도 한다.
〈사례 11, 필리핀〉

아무래도 여성은 남성보다 혼자서 생활하는데 불안감, 심리적 위축감이 더 크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남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현장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다.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가 남성 노동자 기숙사내 통로에 임시

로 만들어서 지내게 했다고 한다. 옆에는 남자사위장도 있고, 항상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사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폭언이나 이런 대우에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직장을 옮기지도 못한다. 현재 회사 변경을 위해서는 직장내에서 명백한 폭력이나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폭언과 같은 이유로 직장을 옮기기는 불가능하다. 또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다.

〈#2, 지원원동기〉

앞으로 폭언과 신체적·성적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각종 폭력 상황에 대하여서도 개입·구제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외국인노동자의 일상생활환경

공식적으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은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장기적인 체류보다는 노동인력의 순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족동반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나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브로커 혹은 밀입국을 통하여 자녀나 배우자를 입국시

울은 약 39%를 차지하였는데, 남편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례들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사 대상자의 26.5%가 애인이 있고, 전체 응답자의 15.6%는 애인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충남 지역의 여성외국인노동자들 중에서 실제로 가족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비율이 일정정도 되고 있으며, 앞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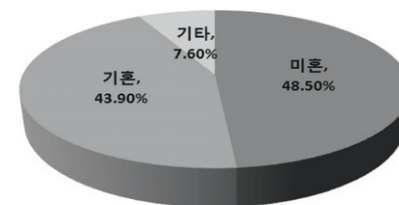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직장상사와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대하여 남성보다 더 많이 취약하며, 모국출신자 집단의 네트워크와 연대도 약한 것이 현실이다.

키거나 한국에서 동거 등의 형태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혼인 및 가족생활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는 미혼이 48.5%, 기혼이 43.9%, 기타 7.6%로 미혼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한국에 남편이 있거나 동거하는 애인이 있는 비

〈그림 3〉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



〈표 5-1〉 한국 거주 남편·동거인 유무

구분	인원	비율
남편이 있다	8	12.5
동거하는 애인이 있다	10	15.6
동거하지는 않지만 애인은 있다	7	10.9
아무도 없다	39	60.9
합계	64	100.0

로 동거를 통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여성외국인노동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는) 그런 사례 많았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도 여기서 키우기 어렵고 불법인 경우 한달 안에 보내야 한다. 내 친구도 커 플이 둘 다 불법인데 여기서 아이를 낳았고 필리핀에 보냈다. 대부분 필리핀에 있는 할머니(여성의 어머니)가 돌봐준다.

〈사례 11, 필리핀〉

특히, 자녀출산시 미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단체 등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데,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모성건강과 인권증진의 차원에서 미등록자라고 할 지라도 출산과 산후조리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달 생활비

조사대상자들의 한 달 생활비는 '50만원 미만' 이 68.8%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50-100만원 미만' 이 15.6%를 나타냈다. 월 소득의 상당부분을 대부분 본국의 가족부양을 위해 송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지출로 생활하고 있다.

이 여성들의 생활비는 주거형태와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난방비 지출로 인하여 여름보다 겨울의 생활비가 더 많이 지출되며,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가 아닌 월세나 전세 등을 얻어서 생활하는 경우는 생활비 지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형태

현재 주거형태는 '회사 기숙사' 가 26.9% 가장 많고, 월세와 기타가 각각 20.9%를 차지하는데, 회사 기숙사는 보통 회사에서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고 여기에 외국인여성 노동자들이 3·4명 같이 거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기타는 한국인과 결혼한 후 남편이나 시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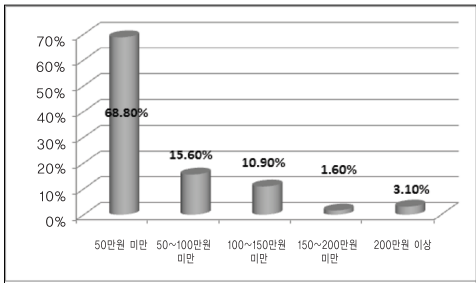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도는 '보통' 이 38.7%, '그렇지 않다' 가 30.6%로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열악하다고 느끼는 비율도 2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임시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모텔, 식당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독립된 숙박공간이 아닌 물품

창고와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많이 생긴다. 건강이 많이 안 좋다. 여자가 혼자 월세방을 구해서 살기는 어렵다.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텔창고나 옥상, 다락방에서 살기도 하고, 또 그런 방에서 2,3 명이 같이 사는 경우도 있다. 다른 물품들이 가득 쌓여있는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사례 4, 몽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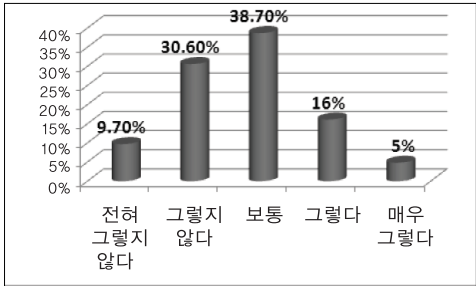
〈그림 4〉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한달 생활비



〈표 5-2〉 현재의 주거형태

구분	인원	비율
직장내 임시숙소	2	3.0
임시건물	1	1.5
회사 기숙사	18	26.9
친구/친척집	10	14.9
고용주의 집	1	1.5
월세	14	20.9
전세	7	10.4
기타	14	20.9
합계	67	100.0

〈그림 5〉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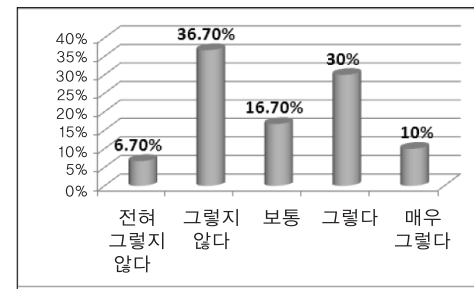


의료서비스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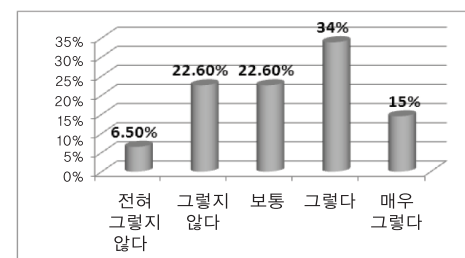
의사소통 때문에 병원이용이 불가능한 정도를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36.7%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가 30%, ‘보통’이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전체의 40%로 10명 중의 4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워 병원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의료비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조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이용이 어려운 정도는 ‘그렇다’가 34%, ‘보통’과 ‘그렇

〈그림 6〉 의사소통이 어려워 병원이용이 불가능한 정도



〈그림 7〉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이용이 어려운 정도



지 않다’가 각각 22.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렵다는 것에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전체 49%로 절반에 가깝다.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이 대부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의사소통의 문제, 의료비의 문제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이들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높게 한다. 향후 여성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확보와 자녀출산 등 모성건강을 위해서 통역 서비스 제공, 산전검사 등 출산 지원 서비스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현재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분명한 정책 대상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만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와 시민사회 모두 고유의 정책 대상 집단으로서 “여성외국인노동자”의 문제를 거의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다.

이주여성의 범주에 여성외국인노동자를 포함시키고, 민간단체나 종교기관 등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이주여성 범주는 결혼이민자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역시 물성적인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정책의 대상이자 범주로서 여성외국인노동자를 여성결혼이민자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집단으로 설정하고, 이 집단에 고유한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충남지역의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공업단지, 농공단지 내 부품조립, 식품가공, 섬유공장 등

에서 미숙련 저기술의 단순반복적인 조립, 포장 등의 일을 하고 있거나 도시 지역의 여관, 모텔, 식당 등에서 청소와 주방, 서빙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적별로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 생산직에 종사하고, 반면에 중국과 몽골 등 국가 출신의 여성들은 서비스업에도 광범위하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조사 결과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의료시설 이용시, 의료비의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장기체류화 과정에서 동거, 자녀출산 등의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출산을 경험한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출산 전후의 의료서비스 지원이나 자녀양육 등의 부분에서 많은 고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는 의료, 생활지원, 구직 등 여러 방면에서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통역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외국인노동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의 모성보호와 안전한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구직연계망이 종합고용지원센터 등 공식적인 경로보다는 개인적인 연결망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처럼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

직 정보가 부족하고, 공식적인 정보 채널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면, 앞으로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종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지자체만이 아니라 지역 내 민간단체와 시민사회 모두가 담당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특성은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 남성과는 또 다른 고충을 경험하는 여성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과 관련하여 여성외국인노동자들은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대하여 남성보다 더 많이 취약하며, 모국출신자 집단의 네트워크와 연대도 약한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들은 지역의 민간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역 NGO와 지역사회에서는 여성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이들과의 연계가 보다 공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이주민 자녀의 인권 현주소』.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2008.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자료집.
- 키노시타 미에. 2006. 『2000년 이후 아시아계 외국인노동자 가족생활 현황과 문제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논문.
- 김규상 외. 2007. 『이주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한국산업안

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미경. 2004. “이주와 여성노동: 외국
 인노동자 문제를 통해 본 노동시장
 의 성별, 민족별 분절화 현상을 중심
 으로”. 《여성이론》. 11호.
 김민정. 2004. 『외국인 이주노동자 성희
 롭 인식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김엘림·오성진. 2002. 『외국인 여성노
 동자의 인권보장 연구』. 한국여성개
 발원.
 김연식. 2008. “이주노동자 고용실태와
 과제”.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10
 주년기념 이주노동자포럼 자료집』.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사
 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
 구”. 《아시아여성연구》 46(2).
 김정원 외. 2005.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
 개발원.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 사회》70.
 김현숙. 2005. 『부산지역 여성이주노동
 자들의 노동상태 및 생활경험에 관
 한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노은미. 2006. “필리핀 여성이주노동자
 들에 관한연구”. 《한국사회연구》14집.
 박배균·정건화. 2004. “안산시 원곡동
 의 외국인노동자의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 10(4).
 박수진·이지나. 2002. “일하며, 기르
 며, 송금하며: 한국사회 이주여성노
 동자의 사례연구”. 《성평등연구》6집.
 법무부. 2007a. 『2007년도 출입국통계
 연보』.
 설동훈. 2003.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조사』. 한국국제노
 동재단.
 설동훈 외. 2005. 『외국인노동자 보건
 의료 실태조사 연구』. 국제보건의료
 발전재단.
 설동훈 외. 2003. 『국내거주 외국인아동
 의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
 책의 형성과 변화”. 《담론 201》 10(2).
 이금연. 2001. 『국내 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이선주 외. 2005. 『세계화와 아시아에
 서의 여성 이주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
 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38(2).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
 국인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정석. 2007. 『경남지역 외국인노동자
 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경남발전
 연구원.
 이주노동자인권연대. 2006. 『고용허가
 제 실태조사 보고서』.
 이진영. 2003. 『한국내 조선족 여성노
 동자에 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
 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해경. 2004. “한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
 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7(2).
 장혜경 외. 2003. 『외국인노동자 가족
 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전경옥. 2007. “젠더 관점에서 본 다문
 화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여성연
 구》 46(1).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국
 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
 사』. 국가 인권위원회.
 한진수. 2008. “국내체류 이주노동자 자
 녀 및 청소년 이주민의 삶과 정체
 성”.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
 해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한국노동연구원. 2003.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조사』.
 Engle Lauren B. 2004. 『the World
 in Motion : short essays on
 migration and gender』. IOM.
 Martin, Susan Forbes. 2004. 『Women and Migration』. 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Ndiaye, Ndioro 2005. 『Migration
 and Gender Issues withi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OM.
 Oishi, Nana. 2002. 『Gender and
 Migration』. The 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Studies.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2006. 『Globalization
 and Feminization of Woment
 Migrants in Korea』.



카자흐스탄 고려인과 카자흐스탄·한국 관계



사르셈바예브 엠. 아.

(Sarsembaev Marat Aldamgharovich)
법학박사 · 구밀료브 명칭 유라시아 대학교 교수
아카데미 〈다네케르〉 총장



사르셈바예브 카. 엠.

(Sarsembaev Kanat Maratovich)
꾸나예브 명칭 대학교 대학원생



〈번역 : 김병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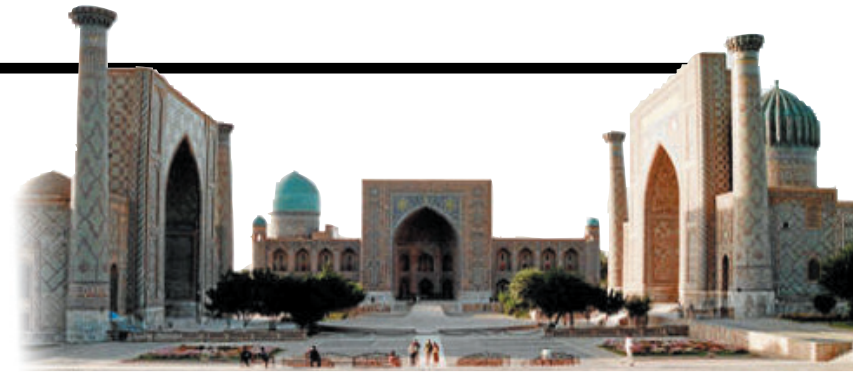
〈필자약력〉

Sarsembaev Marat Aldamgharovich (1949)

Doctor of judicial sciences, professor. He graduated from the judicial faculty of Kazakh National University, worked as a teacher, senior teacher, professor, dean of the judicial faculty and was a rector of the University (Danekeer). Nowadays he works as a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Elected commission of the RK, he published more than 430 scientific works. 20 of them are monographies and text-books.

Sarsembaev Kanat Maratovich (1972)

Doctor of law, he graduated from Kazakh National University, worked in different organization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Now he is the Leader of the Constitutional Department of the RK. He published about 40 scientific works.



카자흐스탄에 고려인이 살기 시작한 건 1930년대이다. 당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의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연해주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였다.(중앙아시아는 현재 중앙아시아로 불리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9만 9천 명이 넘는다. 소비에트 시대와 후기 소비에트 시대에 고려인들은 뛰어난 근면성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어느 한 명의 고려인이 누구에게나 기생하려고 한다면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고려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예외적이다. 농촌에 사는 고려인들은 양파 밭 경작 능력으로 카자흐인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고려인들도 자신들의 특별한 면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전문성과 선량한 인간관계로 수많은 카자흐스탄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김 유리 카자흐스탄 초대 헌법위원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김 게오르기씨는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회원으로서, 검찰차장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직무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통역대학원장 유가이 C.씨는 카자흐스탄 사립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법조계를 살펴보면 까라간다 경찰 전문학교 부학장으로 종사하고,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 민족대학교 법률대학 헌법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는 김 V. C. 박사도 널리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인들은 고려극장 김 블라지미르 가수의 뛰어난 가창 능력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 중 하나가 된 <카자흐미시> 회사를 지도하고 있는 김 블라지미르씨는 우리나라에서 최고경영자 중 한 명이 되었다.(<카자흐미시>는 카자흐스탄의 모든 금속을 생산한다.) 카자흐스탄인들은 알마티시와 아스타나시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 쾌적한 고층빌딩을 짓는 건설회사 <쿠아트>의 남 올레그 사장을 깊이 존경한다. 필자의 자식과 형제도 현지 고려인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함께 건축자재 - 폴리스티롤시멘트 벽돌과 반죽을 생산하는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장려한다.

고려인들이 그들의 고국이나 다른 나라로 집단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30여 민족들이 카자흐스탄 땅에서 신성하게 존경하는 자신들의 언어, 전통, 관습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런 생활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은 적절한 시기에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는데 특히 고려인을 포함한 카자흐스탄인들의 물질적 복지 개선에 기여한 것이 위 문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유착 관계

1992년 1월 28일에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두 나라 간 협력관계는 우리나라를 다방면으로 발전시켰다. 양국간 경제협력에 관한 조직문제는 교역과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카자흐스탄 - 한국 정부간 위원회가 결정해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1992년 7월 3일부로 교역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약을 기초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중요한 문제를 내세웠는데 그 문제에는 기술적 재정적 원조 선상에서 한국이 장기 차관제공을 허용하고 교역과 투자협력을 확장, 발전시키는 문제가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양국간 교역량은 2005년에 4억 4천 3백 60만 달러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5년 5월에 조인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기본 관계와 협력에 관한 선언은 협력의 속도를 촉진시켰다. 우리나라는 양국 파트너 간 자본이동의 문제를 조절하는 중요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것이다. 1996년 3월 20일에 체결되어 동년 12월 26일에 효력이 발생한 카자흐스탄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투자 촉진과 보호에 관한 조약은 투자에 대한 자극과 보호, 그리고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투자를 관리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양국간 이중 과세방지와 소득세 편향 과세 예방 협정의 도움으로 1997년 10월 18일부터 양국은 납세에 있어서 양국의 자연인과 법인이 받아야 할 이익보호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조약 가입국의 국가예산에 세수를 보장하는 영역에서 국익을 보호하는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 간에 조약이 존재함으로써 양국 간의 항구적인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필수



기본 법률의 제정에 관한 담화를 가능하게 한다.

지난 1990년대 말에 동아시아에 밀어닥친 경제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지만 양국은 파트너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 1998년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이 카자흐스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000년 중반 한국의 투자액은 15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대형 항공사 아시아나 에어라인의 서울-알마 직항로 개설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 사업가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2003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공식방문과 2004년 노무현 한국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은 양국 관계발전에 커다란 자극을 주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은 9만 9천명이 넘는다. 소비에트 시대와 후기 소비에트 시대에 고려인들은 뛰어난 근면성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었다. 교역, 투자, 문화, 과학교육 영역에서 양국관계의 강화는 상호이익적 파트너관계의 발전을 위한 다행스런 조건을 만들어준다. 서울시와 아스타나시의 자매결연은 업무의 각기 다른 영역에서 양국간 협력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05년 외부교역 유통액만 9백만 달러에 달하는 십여 개의 한국회사들이 아스타나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광범위한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카자흐스탄의 모든 가정의 <삼성>이나 <LG>상표가 붙은 냉장고, 전축, 가전제품을 소유하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카자흐스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스타나시와 알마티시에는 한국건설회사 <하이빌 카자흐스탄>의 인상 깊은 주거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부터 아스타나시 중심부 20 헥타의 면적에 최신 건설기술이 적용된 <하이빌 아스타나>주거단지가 펼쳐지고 있다. 바로 면전에서 고층건물이 들어섰고, 우리는 <하이빌 아스타나>회사의 지도자와 회담했는데, 회담과정에서 우리는 이 한국의 건설사가 책임성과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



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양국 간의 문화와 경제 교류

한국회사 <갈라마트 아트>는 <애플 타운>(Apple Town)이라고 명명한 다용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단지를 알마티 시내에 건설할 계획이다. 이 타운에는 14~25층의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고 1,8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고급학교, 2,500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유치원이 조성된다. 건설회사 <갈라마트 아트>는 이 타운을 건설함에 있어서 첫 순서로 이미 2억 달러를 책정해놓았다. 2006년 한국의 한명숙 총리가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하였을 때 이 타운의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이는 한국이 한국회사들의 카자흐스탄 투자계획에 얼마만큼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다.

양국 간의 상호문화교류는 우리 국민이 서로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인간과 민족간 친선관계를 강화시켜준다.

한국은 카자흐스탄과 가장 최근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실례로 2006년 9월 23일 알마티시에서 정보통신기술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는데 그 포럼에서, 한국 정보통신부의 보호를 받는 한국 정보기술 영역에 국가간 협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보통신부 지국이 포럼 참가자들에게 한국 정보기술과 국가간 협력 전망 발전에 대한 국가 정치적 업무진행 단계를 소개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서 광범위 지역에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움직이는' 디지털 규격의 텔레비전 방송기술이 선보였다.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자본이 투자된 회사 110개가 활동 중에 있는데 그중 48개는 합자회사이고 62개는 대표부를 둔 회사이다. 양국의 중소 비즈니스는 양국 간 협력을 확고히 하는 노력을 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전제품, 의약품, 직조물 생산에 종사하는 수십여 개의 합동기업이 만들



어졌다. 적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1998년 10월에 알마티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양국은 국제기구와 국제포럼 업무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에서 양국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한국의 대표들은 제2회 카자흐스탄 세계 및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에 참가하여 연설하였다. 이런 유형의 포럼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민족간,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한국은 진보하는 카자흐스탄의 이념 즉 아시아 내 상호신뢰관계에 따른 테두리 내에서 전 아시아 대륙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념에 관계하고 있다. 아시아상호신용협의회에 한국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카자흐스탄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가입을 희망한다. 한국은 이 문제에찬성 의사표명을 할 준비가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서울은 제네바 비무장회의 회원국 가입심사에서 카자흐스탄 가입을 지지하였다. 한국의 지도부는 카자흐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보장하였고 2009년에 카자흐스탄이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의장국이 되는 것을 지지하였다.

양국 간의 상호문화교류는 우리 국민이 서로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인간과 민족간 친선관계를 강화시켜준다. 한국에서 아이만 무싸호자예브의 어린이 합창단 <엘리마이>의 공연이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합창단 <아리랑>의 공연이 있었고 한국 상품전시회와 한국노래 축제가 있었다.

양국 간 상호 경제협력의 중심에는 오직 에너지와 광물자원만 들어있어서는 안된다. 신기술, 정보기술을 뿌리내리는데, 석유화학 단지를 발전시키는데, 교육부문에서 그리고 인재양성부문에서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우정을 공동 습득하는 데에서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과 업무분야의 원격연결에서, 원자력분야에서, 그리고 건설과 교통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에 시의 적절한 양국관계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카자흐스탄과 한국 간 협력의 유용하고도 다양한 양상의 발전을 확신한다.

Abstract

The Trends of the Overseas Koreans Studies in Korea and Future Tasks

Kim, Bong-seop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Overseas Koreans, Historical Review of Research on Overseas Koreans, Overseas Koreans Studies, Global Community of Overseas Koreans, Future Tasks.

This paper examines evolution, scopes, issues, and the tasks of the Overseas Koreans Studies outcomes in Korea during the last 60 years.

It analyses the main topics for the various groups (i.e. scholar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research societies, NGOs, forums) during the four different periods(First, 1948~1965. Second, 1965~1980. Third, 1981~1997. Fourth, 1998~2008). it also considers how the research groups utilize various approaches to secure legal status, to affirm ROK 's political legitimacy, to maintain Korean ethnic identity, and to educate Korean culture and language on Korean residents abroad.

It reveals the six controversial issues in the Overseas Koreans Community, that is standardize official name, participation and opinion receptiveness, establishment of full responsibility organization, target and priority of financial support, approve voting rights for Korean national reside abroad, Dual nationality for foreign nationality Koreans.

In conclusion, this paper indicates that Overseas Koreans Studies will be increasingly play a pivotal role in the decision-making of Korean government's Overseas Koreans Policy. Thus, researchers have to focus on the past-present-future trends of Overseas Koreans in the world, publish white papers annually, compile encyclopedia articles, make bibliographical introductions, and construct archives. Therefore, they will be enabled Overseas Koreans Studies to progress into a higher level.

A report on Canadians abroad

KCSC¹⁾ / Jung-Seok, Yu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migrations, diversity, Canadians abroad,
emigrations,

This report tries to trace Canadians abroad.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here are few informations about Canadians abroad compared to the fact that there are quite plenty of thesis, statistics and reports on Canadian immigrants. Though short, this report tries to explain why there is little efforts of Canadian government to check their people abroad and show how many people are abroad and where. and this report shows that there are few countries that Canadians are living, touring, studying and working. Though it is not exact reason, this report suggests opinions about the reason why Canadian government do not make hard effort to maintain statistics about their people abroad.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Overseas Russians

In-Seong Kim

(Research Professor,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Key words: overseas russians, policy on overseas russians, migratio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Civil 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ollapse of the USSR bequeathed plenty of problems to the Russian Feder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s related to the overseas russian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 To understand this problem we have to know three tensely related issues. First issue is the conditions surrounding overseas russians. Second is the policies of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on overseas russians. The last is polic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overseas russians.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of the overseas russians are various according to the place of the residence. But few of them enjoy stable life, which was the main reason for Russian Government to engage in the protection of the civil rights and freedom of the overseas russians. Meanwhile, Russian Government wants overseas russians to play a role of a leverage to excercise influence over the countries of the former USS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ivil Law in 2002 favorable conditions for overseas russians disappeared, which was resurrec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2006. But whether the decree means that Russian Government intends to exercise influence over the countries of the former USSR is now uncertain.

The Policy on Nikkeijin By Japanese Government?

Seok -Won Song

(Professor, Dept.of Political Science, Kyung Hee Univ)

Key Words : Nikkeijin,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e Association of Nikkeijin & Japanese Abroad, Japanese Overseas Migration Museum.

The most essential part of a policy on overseas Japanese run by Japanese government is to make sure that every Japanese is safe when abroad. Information is offered to its people at every second and they, who have Japanese nationality, also are educated how to be safe. In addition to that, Japanese government tries to provide a wide range of support to residents abroad Nikkeijins even though they are not citizens of Japan. Strictly speaking, these Nikkeijins are not 'Japanese' but Japan's support reached?even them within the category of overseas Japanese to establish its own identity. This is because the country considers Nikkeijin as a national property, 'Japanese peopl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the organization of serving supplies to developing countries by Japanese administration, plays the both role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Nikkeijin policy. It not only carries out a beneficial project to upgrade Nikkeijin community but also actively give information of that society to Japanese living in their own country. This govermentally-formed idea is based on a belief that Nikkeijin being successful, respectable people is advantageous for Nikkeijin himself, the nation he lives now, and eventually Japan. So far, the Nikkeijin policy shows excellent results, We see a typical example of that in case of Nikkeijin President of Peru, Hujimori, though he has been evaluated in very different, debatable ways after stepping down. A majority of influential politicians, scholars, scientists, and economists have been produced within the Nikkeijin community in America ,which has one of the biggest Nikkeijin society with Brazil.

A Study on China's Policy on Overseas Chinese

- Comparing with Taiwan's Policy on Overseas Chinese

Jung Won Cho (Researcher,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China, Taiwan, overseas chinese, unitary and dual
nationality, localization, Zhonghua nationality

Overseas chinese are the attractive groups for China and Taiwan, both countries have competed to bring over overseas chinese in political level and economic level mutually. Enhancing the value of Overseas chinese by strengthening economic power is making them more attractive, and that incite to both countries to compete.

The difference on overseas chinese policy of China and Taiwan, above all, is policy on the nationality. China confirmed 'unitary nationality' in 1955 and 1980, Taiwan acknowledged the 'dual nationality' on overseas chinese's policy. Their is no clear answer which policy is more effective, but the dual nationality has the higher possibility of impediment in 'localization'. China has pursued preservation of 'Zhonghua nationality' with localization dually and adhered 'unitary nationality', who has embraced lots of overseas chinese more than Taiwan. That proved China's policy on overseas chinese are more charming to overseas chinese.

The present time, overseas chinese's the economic scale is prodigious, overseas chinese network which is WCEC (World Chinese Entrepreneurs Convention) has held 9th, after that convention, overseas chinese groups are getting more systematically and strengtheningly, achieved the outstanding capacity. On this, China and Taiwan have competed to take overseas chinese for their own benefit sharply. Right now, however, I can say that China hold the dominant position about overseas chinese more than Taiwan, because China's the large-scale economy and the systematic law for overseas chinese is more effective than Taiwan. Then, such as China's policy on overseas chinese are that provide the great role model for each country in policy of the fellow countrymen, also give good points to Korea's compatriots policy.

Observing the History of Overseas Adoption in Macro and Micro Level

Yewon Lee

Migrant woman program manager in <Organization Yori>

Key words: overseas adoption, migration, multicultural, oral history, system

Overseas adoption in Korea has more than 50-years history, starting right after the Korean War. Korea is still sending up to 2,000 children per year, long after the war has ended. With the increasing numbers of grown-up OAKs(Overseas Adopted Koreans) returning since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urged to respond to the phenomena.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OAKs' legal status as "Overseas Korean (jae wae dong po)," and has called upon them to become a "global human resource" of Korea. OAKs are also conspicuous in the media as the sense of tragedy in the core of their existence draws public fascination. These patterns reflect the habitual ways that OAK's are represented in Korean society.

Here I first, examine overseas adoption history in the broader picture of Korea's modern history that was basically a history striving for nation-building after it being shattered after the war. Also, here I dig into two personal stories of the adoptees. The former approach which observes the history of adoption in the macro and structural level and the latter approach which takes on micro and individual level is equally important, as the two are not separate but intertwined composing the integral picture of overseas adoption. The intention behind examining history of adoption in macro and micro level is to make the familiar unfamiliar by challenging the existing perception of adoption.

The life and working conditions of overseas migrant women workers and the policy direction: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case

Young-Joo Kim

(Researcher, The Province of Chung nam Woma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Key words : overseas migrant women worker, gender-sensitive policy of migrant worker, the life of migrant women worker, gendered division of labor

In order to secure basic human rights and workers rights of overseas migrant women workers, the policy actor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f the host country is required to provide them with various types of supports. The needs of overseas migrant women are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ose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so that the policy actors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introducing the policies meeting the particular needs of overseas migrant women. However, neither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nor the civil society in Korea has seen them as an independent policy target group, the same as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The analyses of the overseas migrant women workers provide the useful ideas of what needs to be done by Chung-cheong-nam-do government to assist the women workers to solve the difficulties they confront in their daily life. The policy areas that are to be examined include employment, medical care, and social welfare. Firstly,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expand the coverage of the medical care service given to these women so that their rights to safe motherhood are protected. Second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migrant women having little access to the information service,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example, by offering better foreign language service and more information channels in various spheres of those women's life. Thirdly, the NGOs in Chung-cheong-nam-do are urg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migrant women and consolidate the network between the migrant women and them.

『민족연구』 논문투고와 집필요령 및 심사과정

한국민족연구원이 연 4회 계간으로 발간하는 『민족연구』는 세계의 민족과 민족문제를 중심적인 연구과제로 설정, 현대세계의 제반 민족문제의 근원적 실체와 이의 발전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입니다. 본 연구원은 관련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환영합니다.

I. 논문투고

1. 편집대상: 민족주의 이론, 각 지역과 개별국가의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소수민족 현황 등과 관련된 논문.
2.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의 논문은 편집대상에서 제외함.
3. 원고는 ‘한글’ 혹은 ‘MS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본 1부와 디스켓을 아래주소로 우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기 바람.
4. 연락처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2-10
전화번호: 010-4716-3616
Fax: 925-3906
Email: goodsociety123@hanmail.net

II. 논문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120매 혹은 A4용지 15-20매 내외.
2. 한자와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넣어 표기.
3.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1) 각주 작성 요령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서울: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292쪽.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p. 95.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 『민족연구』 제5호, 150-151쪽.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pp. 799-801.

2)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 『민족연구』 제5호.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III. 논문심사

1. 본 연구지의 편집의도와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음.
2.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함.
3. 심사위원 3인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개별 심사위원의 “가, 수정, 불가”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됨.
4. 심사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 3인 기준)

가, 가, 가 가, 가, 수정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불가	가, 불가, 불가 수정, 수정,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5. 수정과정에서 논문 필자는 수정한 부분을 별도의 양식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함.

IV. 『민족연구』발행일 및 논문투고 마감일

민족연구 발행일	논문 마감일
2009년 3월 1일	2008년 12월 31일
2009년 6월 1일	2009년 3월 31일
2009년 9월 1일	2009년 6월 31일
2009년 12월 1일	2009년 9월 31일



한국민족연구원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연구 조사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원은 민족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지인 『민족연구』를 연간 4회 발행·보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cncho.pe.kr/krce>)를 통해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인적구성

원 장 : 趙政男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위원 : 葛振家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金秀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 Dmitry V. MYONG (국립 알마티대학교 교수)
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수), 洪敏植 (강원대학교 교수)
王金龍 (중국 台州 成人教育學院 敎授)
우평균 (고려대학 연구교수), 김인성 (고려대학 연구교수),
조화성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위원), 조현구 (고려대학교 교수)
연구원 : 고병국, 김태영, 강권찬, 박지원, 이용승, 김혜림, 김희선
유정석, 송종호, 정려정, 김재원



발행처

민족연구 37 〈계간〉 ISSN 1229-2796	〈저널 편집부〉 ----- 편집 : (사) 한국민족연구원 편집인 : 조 정 남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 우/142-881 (☎ 010-4716-3616)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발행일 : 2009년 3월 1일(연 4회 간) ----- 발행처 : 교양사회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	〈편집위원〉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김인성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기완 (창원대학교 교수) 조정남 (고려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Dmitry V. MYONG (국립 알마티국립대학 교수) 〈편집주간〉 김용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	---	---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메이츠의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메이츠의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절차

1. 아래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연 락 처

<저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 교양사회

----- <절취선> -----

정기구독 신청서

||| 교양사회

저널명	간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시메이츠의 민족연구	계간	4권(1년분)	₩ 60,000	~	
		8권(2년분)	₩ 100,000	~	
구독자	구독자명(기관)			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